

연구보고24-기본06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이지연 · 김영지 · 박지수 · 한윤선 · 박선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저 자 이지연, 김영지, 박지수, 한윤선, 박선영

연구진 연구책임자_이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_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_박지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_한윤선(서울대학교 부교수)
_박선영(한세대학교 부교수)
연구보조원_문세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요약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 범죄 환경과 원인 및 경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 범죄 경로에서 개입이 필요한 지점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교육적·복지적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의 다양한 시도를 살펴보고자 하였음. 이를 통해 청소년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청소년 범죄 예방 환경 및 관련 현안) 소년범죄 관련 법령 및 규칙, 정책 및 개입/예방 프로그램을 포함한 청소년 범죄 예방 정책 환경 및 현안
- (청소년 범죄 특성과 경로) 소년범죄 발생 및 처리 동향, 연령별 사건 특성과 개인 및 환경 특성, 소년범죄 이행 경로 및 재비행 특성과 위험요인의 관계
-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청소년 범죄 예방 환경과 청소년 범죄의 특성 및 경로, 소년범죄 예방 관련 현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범죄 경로를 끊을 수 있는 개입 지점 파악 및 최종 정책과제 발굴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이론 및 실증연구, 법령 및 제도, 정책 및 프로그램 자료 검토
- (2차 자료 분석) 소년범죄사건 처리 동향 관련 국가통계자료 분석
-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통계분석) 소년보호사건 관련 빈도 분석, 재비행 여부에 따른 범죄유형별 위기요인 교차분석, 소년범죄 시퀀스 자료 분석 등
- (개별심층면접 조사 분석) 다양한 처우이력 경험 주제분석
- (기타) 전문가 자문 및 현장 방문, 포럼 및 워크숍,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주요 연구결과

●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결과

- 사건 발생부터 종국결정까지 평균 6.8개월 소요, 종국결정 중 88.6%가 보호처분
- 범죄유형: 재산 52.8%, 폭력 22.3%, 강력 8.9%, 성 5.5%, 교통 12.5%
- 개인 위기요인이 있는 소년 83.2%, 가정 61.8%, 학교 및 또래 72.8%
- 재판 당시 학업중단을 초비행소년 17.5%, 재비행소년 33.2%
- 재산범죄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나 재범 횟수에 따라 피해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지는 않음
- 개인위기요인을 경험하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성범죄의 발현이나 이행이, 가정위 기요인을 경험하는 집단은 폭력범죄의 발현이나 이행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짐

● 다양한 처우이력을 경험한 소년 개별심층면접 조사 및 분석 결과

- 일탈과 비행이 범죄가 되는 과정에서 가족, 학교, 또래 영향이 발견되었으며, 비행과 범죄의 심화에는 유해환경, 세를 과시하기 위한 폭행, 돈을 마련하기 위한 범죄, 가출과 가출탐이 주요
- 소년 및 형사사법체계로의 유입과 처분 시설에서 지냈던 시간과 관련된 키워드는 다음과 같음. △경찰: 보호 없는 훈방 △검찰: 강도 높은 조사만 기억에 남을 뿐 △법원: 자세한 설명 없는 소년보호절차, 천차만별 재판 관계자 △소년분류심사원: 동네 노는 애들을 모아둔 곳 △1호 시설: 인생을 바꿔준 곳 △6호 시설: '제대로 된 어른'이 있는 곳, 혹은 범죄 모의 장소 △소년원: 졸업장과 자격증으로 사회복귀를 도와줘야 △소년보호관찰: 혼자서 지키기에 너무 어려움

● 청소년 범죄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 조건부 기소유예 자체에 대한 부모의 이해가 부족하여 집행에 어려움
- 1호 시설에서 보호자특별교육을 통해 부모 및 가족상담의 효과를 확인
- 맞춤형 학습지도로 성취감을 심어주어 학습자체를 하나의 치유수단으로 활용
- 부산 소년원-교육청의 협업으로 직업훈련소년원에서 학업을 이어간 사례
- 6호 시설에서 보호처분 종료 후에도 주거 및 사회복귀 자체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자활작업장 및 직업훈련프로그램 효과성 확인

핵심 정책제언

정책과제

세부과제

1 보호소년 보호력 제고

1. 시설위탁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보호자특별교육명령 부과
2.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부모에 대한 보호자 특별교육 병행
3.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 제도를 활용한 교사 개입 촉진
4. 학생맞춤통합지원 학교사회복지사 필수 배치를 통한 학교 보호력 제고

2 보호소년 학습권 보장

1. 전국 직업소년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으로 지역에 관계없는 보호소년 학습권 보장 도모
2. 소년원 퇴원 후 학업지속 방안 다양화
3. 현직교원 소년원 파견을 위한 법령 개정

3 소년범죄 유형에 따른 개입방안 마련

1. 우범소년에 대한 복지개입 우선 근거 마련
2.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치료 및 교육적 접근 강화
3. 재산범죄 관련 소년 대상 경제 및 소비교육 강화 추진

4 사회복귀 지원을 통한 재범 방지

1. 직업교육을 위한 청소년 자활작업장 활성화 및 설치 근거 마련
2. 소년원 입사퇴원 후 사회정착지원 방안 내실화 도모
3. 소년범 낙인 방지를 위한 소년보호사건 수사경력자료 삭제 근거 마련

5 사법체계 내 소년중심 전문성 제고

1.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소년보호관계자 역량 강화
2. 소년보호 관련 종사자 교육 효과성 검증 및 내실화
3. 검찰 수사단계 및 기소유예 청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 교육 역량 강화

6 소년범죄예방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통계 기반 마련

1.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정보를 활용한 소년범죄 현황 관련 연구 추진
2. 통계청 승인통계 등록을 통한 법원 사법연감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정확성 제고
3. 소년범죄통계 정확도 제고를 위한 소년범죄분류체계 개발 및 소년형사사법 기관 전부 도입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연구보고24-기본0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5
3. 연구 추진 체계 및 절차	17

II. 논의의 배경

1. 청소년 범죄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21
2. 청소년 범죄 및 비행 대응 관련 법령과 제도	41
3. 청소년 범죄 현황	68
4. 요약 및 시사점	95

III.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1. 자료 소개	101
2. 자료 설계	102

3. 자료 분석 결과	116
4. 요약 및 시사점	213
 IV. 다양한 처우이력을 경험한 소년 대상	
개별심층면접 조사 자료 분석	
1. 조사 개요	221
2. 분석 결과	224
3. 요약 및 시사점	265
 V. 청소년 범죄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검토의 필요성 및 방법	275
2. 청소년 범죄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사례	276
3. 요약 및 시사점	302
 VI. 주요 결과 및 정책제언	
1. 정책 제언 배경	307
2. 정책제언	316
 참고문헌	345
 국문초록	357
 Abstract	358

표 목차

표 I -1.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개요	9
표 I -2. 개별심층면접 조사 개요	10
표 I -3. 현장 방문 및 전문가 자문 개요	10
표 I -4. 포럼 및 워크숍 개요	12
표 I -5.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업무협의회 개요	16
표 II -1. 청소년 범죄 관련 선행연구 요약	35
표 II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관련 조항	42
표 II -3. 「소년업무규칙」 학교전담경찰관 관련 조항	44
표 II -4. 경찰 선도심사위원회 실시 현황	47
표 II -5. 「소년업무규칙」 선도심사위원회 관련 조항	48
표 II -6. 경찰 선도프로그램 실시 현황	49
표 II -7. 경찰 선도프로그램 교육내용	50
표 II -8. 연도별 각 검찰청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건수	53
표 II -9. 연도별 각 검찰청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건수	55
표 II -10. 연도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생 유형별 위탁 건수	56
표 II -11. 연도별 검찰 소년사건 처리 건수 중 기소유예 건수	57
표 II -12.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62
표 II -13. 청소년자립생활관 입주 현황(2018~2022)	66
표 II -14.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입주 및 교육 현황(2018~2022)	67
표 II -15. 소년범죄 인원 및 소년비 추이(2013~2022년)	70
표 II -16. 경찰단계: 소년범 주요 죄명별 검거 현황(2013~2022년)	72
표 II -17. 경찰단계: 소년범 조치 현황(2013~2022년)	74
표 II -18. 경찰단계: 학교폭력 유형 및 조치 현황(2013년~2022년)	76
표 II -19. 검찰단계: 소년사건 주요 범죄별 검거 현황 (2013~2022년)	78
표 II -20. 검찰단계: 소년사건 강력(흉악)범죄 세부 유형 (2013~2022년)	79
표 II -21. 검찰단계: 범죄소년에 대한 처분 현황(2013~2022년)	81

표 II -22. 법원단계: 소년보호사건 접수 동향(2013~2022년)	83
표 II -23. 법원단계: 주요 범죄유형별 접수 동향(2013~2022년)	85
표 II -24. 법원단계: 소년보호 임시조치(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결정) 및 처리인원(2013~2022년)	87
표 II -25. 법원단계: 소년보호사건 처리 동향(2013~2022년)	88
표 II -26. 법원단계: 보호처분 현황(2013~2022년)	90
표 II -27. 법원단계: 제1심 소년형사사건 처리 동향(2013~2022년) ..	94
표 III -1. 조사표의 구성	103
표 III -2. 사건명 분류 체계	106
표 III -3. 개인 위기요인 세부 요인 및 키워드	110
표 III -4. 가정 위기요인 세부 요인 및 키워드	111
표 III -5.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 세부 요인 및 키워드	112
표 III -6. 피해물품 분류 및 키워드	112
표 III -7. 재판, 사건, 소년 기준에 따른 분석 내용	114
표 III -8. 재판 구분에 따른 처리결과	118
표 III -9. 소년 연령별(종국결정 기준) 재판 수	119
표 III -10. 소년보호사건 재판 종국결정 유형 분포	121
표 III -11. 보호처분별 빈도: 병합처분	122
표 III -12. 보호처분별 빈도: 개별처분	124
표 III -13. 소년 연령별 종국결정 유형	125
표 III -14. 종국결정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재판 수별 빈도	127
표 III -15. 처우별 종국결정 소요 기간	128
표 III -16. 사건 수에 따른 재판 빈도	129
표 III -17. 사건 기준 연도별 범죄유형별 빈도	132
표 III -18. 사건 기준 연령별 범죄유형별 빈도	135
표 III -19. 시간대별 사건 발생 빈도	137
표 III -20. 범죄유형별 사건 발생 시간 빈도	139
표 III -21. 공범 수에 따른 사건 빈도	141
표 III -22. 공범 수에 따른 범죄유형별 사건 빈도	143
표 III -23. 최초 사건 당시 보호소년 연령	145
표 III -24. 소년 1인당 재판 수(중복재판 포함)	147
표 III -25. 소년 1인당 재판 수(중복재판 제외)	148
표 III -26. 소년 1인당 종국결정 수	149
표 III -27. 보호소년 보호처분 이력(종국결정 기준)	150
표 III -28. 보호소년 개인 위기요인(3,250명 기준)	152
표 III -29. 보호소년 가정 위기요인(3,250명 기준)	154

표 III-30. 보호소년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3,250명 기준)	156
표 III-31. 사건 발생 빈도 기준 소년 수	158
표 III-32. 범죄유형별 소년의 사건 빈도	160
표 III-33. 재비행 소년의 범죄유형별 사건 발생 간격	162
표 III-34. 사건 발생일부터 재판까지의 소요 기간	163
표 III-35. 범죄유형별 재비행 소년의 개별 사건 분포	165
표 III-36. 재비행 소년의 범죄유형별 재비행 사건 분포	166
표 III-37. 재산범죄 사건순서별 평균 피해금액(평균)	168
표 III-38.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의 재산범죄 사건 피해 금액 비교	170
표 III-39. 피해 물품 수별 빈도	171
표 III-40.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의 피해물품 비교	173
표 III-41. 사건 순서별 평균 상해진단 일수 및 사건 빈도	174
표 III-42.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의 영역별 위기 경험을 비교	176
표 III-43.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의 개인 위기 세부요인	177
표 III-44.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의 가정 위기 세부요인	179
표 III-45.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의 학교 및 또래 위기 세부요인	180
표 III-46. 범죄유형별 비행집단에 따른 위기요인 경험을	182
표 III-47. 범죄유형 및 비행집단별 개인 위기 세부요인 (심리 및 성폭행 피해 관련) 경험을	185
표 III-48. 범죄유형 및 비행집단별 개인 위기 세부요인 (비행성 관련) 경험을	186
표 III-49. 범죄유형 및 비행집단별 개인 위기 세부요인 (신체 및 행동 특성) 경험을	187
표 III-50. 범죄유형 및 비행집단별 가정 위기 세부요인 경험을	189
표 III-51. 범죄유형 및 비행집단별 학교 및 또래 위기 세부요인 경험률	192
표 III-52. 시기별 주요 상태 변화(위기 심도별)	200
표 III-53. 상태(State)별 범죄 구성(개인 위기 요인)	202
표 III-54. 시기별 주요 상태 변화(개인 위기요인)	204
표 III-55. 상태(State)별 범죄 구성(가족 위기요인)	206
표 III-56. 시기별 주요 상태 변화(가족 위기요인)	208
표 III-57. 상태(State)별 범죄 구성(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	210
표 III-58. 시기별 주요 상태 변화(학교 및 또래 위기 요인)	212

표 IV-1. 개별심층면접 연구참여자 정보	222
표 IV-2. 개별심층면접 조사 내용	223
표 IV-3. 심층면접 참여자의 처분이력	237
표 IV-4. 다양한 처우이력을 경험한 소년 개별심층면접 조사 분석 결과 요약	266
표 V-1.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랑의 교실 운영 개요	281
표 V-2.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강명령 위탁집행 개요	287
표 V-3. 나사로 청소년의 집 검정고시 수업 개요	290
표 V-4. 세상을품은아이들 생활관 운영 개요	292
표 V-5.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부산소년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 및 학적 회복 지원 개요	295
표 V-6.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부산소년원 검정고시 등 교육지원 개요	298
표 V-7.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별바라기의 자활작업장의 의의 및 필요성	299
표 V-8.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별바라기의 바리스타 자활훈련 과정	300
표 VI-1. 정책과제 도출 근거	310
표 VI-2.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316
표 VI-3. 소년법 제32조의2 개정안	318
표 VI-4. 소년법 제49조의3 개정안	319
표 VI-5.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개정안(문정복 의원 등 10인) ..	321
표 VI-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개정안	326
표 VI-7.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 개정안	328
표 VI-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개정안	332
표 VI-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개정안	334
표 VI-10.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제5조 개정안 ..	338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 방법	6
그림 II-1. 경찰단계 소년사건 처리절차	45
그림 III-1. 재판 구분에 따른 처리결과	118
그림 III-2. 소년 연령별(중국결정 기준) 재판 수	120
그림 III-3. 소년보호사건 재판 중국결정 처우 분류	121
그림 III-4. 보호처분별 빈도: 병합처분	123
그림 III-5. 보호처분별 빈도: 개별처분	124
그림 III-6. 소년 연령별 중국결정 유형 분포	126
그림 III-7. 중국결정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재판 수별 빈도	127
그림 III-8. 중국결정 소요 기간	129
그림 III-9. 시간대별 사건 발생 빈도	137
그림 III-10. 공범 수에 따른 사건 빈도	142
그림 III-11. 최초 사건 당시 보호소년 연령	146
그림 III-12. 소년 1인당 재판 수(중복재판 포함)	147
그림 III-13. 소년 1인당 재판 수(중복재판 제외)	148
그림 III-14. 소년 1인당 중국결정 수	149
그림 III-15. 보호소년 보호처분 이력(중국결정 기준)	150
그림 III-16. 보호소년 개인 위기 세부요인	153
그림 III-17. 보호소년 가정 위기 세부요인	155
그림 III-18. 보호소년 학교 및 또래 위기 세부요인	156
그림 III-19. 사건 발생 빈도 기준 소년 수	158
그림 III-20. 범죄유형별 소년의 사건 빈도	161
그림 III-21. 범죄유형별 재비행 소년의 개별 사건 분포	165
그림 III-22. 재비행 소년의 범죄유형별 재비행 사건 분포	167
그림 III-23. 재산범죄 사건 순서별 평균 피해 금액	169
그림 III-24. 재산범죄 사건 집단별 평균 피해 금액	170
그림 III-25. 재산범죄 피해 물품 빈도	171
그림 III-26. 사건 발생 순서 구간별 피해 물품 분포	172
그림 III-27. 사건 순서에 따른 평균 상해진단 일수	174

그림 III-28. 사건 발생 순서 구간별 평균 상해진단 일수	175
그림 III-29. 초비행/재비행 소년의 위기요인 경험률	176
그림 III-30. 초비행/재비행 소년의 개인 위기 세부요인	178
그림 III-31. 초비행/재비행 소년의 가정 위기 세부요인	179
그림 III-32. 초비행/재비행 소년의 학교 및 또래 위기 세부요인	181
그림 III-33. 모형 선택	195
그림 III-34. 사건 이행의 그래프 구조(전체)	196
그림 III-35. 상태(State)별 범죄 구성(전체)과 초기 비중	197
그림 III-36. 위기요인 수에 따른 범죄 이행의 그래프 구조	198
그림 III-37. 상태 비율 변화(전체)	199
그림 III-38. 범죄 이행의 그래프 구조 및 상태(state) 특성 (개인 위기요인)	203
그림 III-39. 상태 비율 변화(개인 위기요인)	204
그림 III-40. 범죄 이행의 그래프 구조 및 상태(state) 특성 (가족 위기요인)	207
그림 III-41. 상태 비율 변화(가족 위기요인)	208
그림 III-42. 범죄 이행의 그래프 구조 및 상태(state) 특성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	211
그림 III-43. 상태 비율 변화(학교 및 또래 위기 요인)	212
그림 V-1. 경찰청 선도프로그램: 공통 비행	278
그림 V-2. 경찰청 선도프로그램: 중독범죄	278
그림 V-3. 경찰청 선도프로그램: 성범죄	279
그림 V-4. 경찰청 선도프로그램: 상습절도	279
그림 V-5. 경찰청 선도프로그램: 촉법소년 비행	280
그림 V-6.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 절차	284
그림 V-7.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 접수 알림 발송 및 교육 통보 예시	285
그림 V-8.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 시간표 예시	285
그림 V-9. 행동관찰 교육태도 작성 예시	286
그림 V-10. 똑똑수업 교재 목차	293
그림 VI-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 방법	308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및 방법
- 3. 연구 추진 체계 및 절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자로서 청소년들이 갖는 지위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세계의 확장이나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가족구조의 해체와 개인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청소년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자극적인 언론보도와 함께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것이 현실이고(매일경제, 2024. 2. 11.),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콘텐츠로 소비되며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덧입고 있다(경향신문, 2023. 5. 12.). 정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법무부, 2022. 10. 26. 보도자료) 촉법 소년 연령 상한인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의안번호 2119215; 제출일 2022. 12. 18.). 이를 소년범죄에 대한 정부의 엄벌화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 시점에서 청소년 범죄의 원인과 경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근거기반 정책 마련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법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제1조에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는 것보다 더 먼저 서술하고 있는 것은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소년법이 아직 성년에 이르지 못한 소년 또는 청소년이 보호가 필요한 존재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매체를 통한 뉴스 보도와 드라마나 웹툰 등의 콘텐츠에서 자주 등장하는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일컫는 용어이다(소년법 제4조 제2항).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는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에서 다룬다. 죄를 범한 14세 이상의 소년(범죄소년)이라 할지라도 검사가 해당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면 마찬가지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가 이들의 형사책임능력이 아직 성인만큼 완전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범죄소년에 대해서도 검사의 소년부 송치를 통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범죄를 처벌로만 다스리지 않고 연령상으로는 발달상으로 아직 성숙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의 시기인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인과 구분되는 법제와 정책을 두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아니다. 청소년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엄격하게 대응한다고 평가받고 있는 영국도 연령에 따라 처분의 정도를 다르게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여 소년을 돌보는 환경으로서 지역사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소년사법체계의 방점이 찍혀 있다(박지수, 이지연, 한윤선, 김혁, 2023). 소년청과 소년법원을 두고 복지와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독일 소년사법체계, 아동복지와 소년사법이 서로 교차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일본의 소년사법제도 또한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 우리 소년법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박지수 외, 2023).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이 소년보호이념을 선언하고 있고(김혁, 2016), 소년사법체계 내에서 명시적으로 소년에 대한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소년사법체계가 소년보호를 통한 재범방지 및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청소년이 범죄의 길에 빠져들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는지, 또한 이러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형사사법체계까지 범위를 넓혀 청소년이 비행 또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는 이들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해 교육적 접근과 복지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2022년에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중 교육적·복지적 접근이라 할 수 있는 대책은 주로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 집중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학과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법무부, 2022. 10. 26. 보도자료). 교육부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에서도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적 접근을 시도하는 경우는 소년원생에 대한 교육 지원에 한정되어 있다(교육부, 2022; 교육부, 여성가족부, 2023). 그러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뿐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게도 교육적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며, 이때의 교육적 지원 역시 학교교육에 한정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소년이 비행 또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 거치게 되는 단계마다, 법원의 판결을 받은 이후 소년들이 경험하게 되는 마디마다 청소년들이 비행을 중단하고 더 이상 범죄의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처벌 중심의 접근에 대한 대안 또는 보완책으로 교육적·복지적 접근이 더해져야 하며, 소년에 대한 개입과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범죄 환경과 원인 및 경로를 이해하고, 청소년 범죄 경로에서 개입이 필요한 지점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수차례에 걸친 현장 방문과 포럼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해 교육적·복지적 관점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시도를 살펴보고, 실증 분석에서 발견한 개입 지점과 연계 분석하여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관심 대상은 비행 또는 범죄를 저질러 소년형사사법절차에 진입한 청소년들이며, 본 연구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의 개념은 청소년 범죄 경로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이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다시 범죄의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재범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밝힌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청소년 범죄를 둘러싼 환경과 원인 및 경로를 이해하고, 개입이 필요한 지점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 방법을 요약하면 아래 그림 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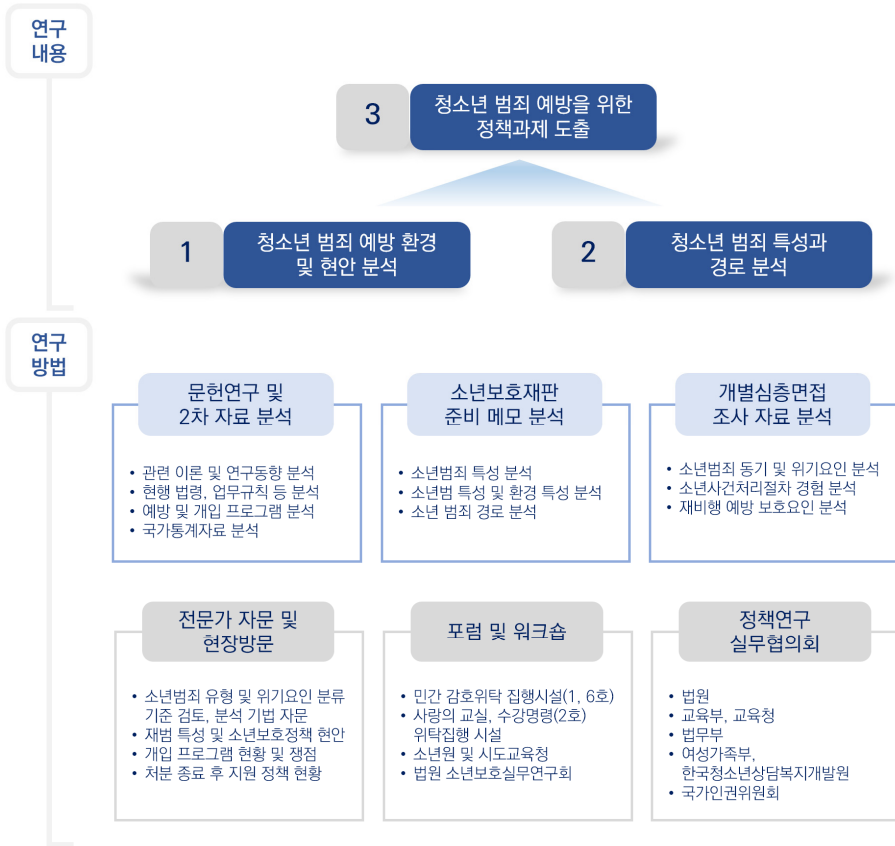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 방법

1) 연구 내용

(1) 청소년 범죄 예방 환경 및 관련 현안

청소년 범죄 예방 환경 및 관련 현안 파악을 위해 소년범죄 관련 법령 및 규칙 검토, 소년범죄 관련 정책 및 개입/예방 프로그램(intervention/prevention program) 검토를 실시하였다. 소년범죄와 관련된 국내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기관 등의 업무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같은 각종 현행 조문과 국회의 입법 동향 등을 정리하여 분석하였고, 필요에 따라 국제기준을 함께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범죄 경로를 파악하고 개입 지점을 찾기 위한 양적, 질적 실증연구 수행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소년범죄 관련 정책과 개입/예방 프로그램 검토를 위하여 먼저 관련 보고서와 논문 및 기관 발간물 등의 국내외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콜로키움 및 워크숍을 기획하여 정책 대상 및 서비스 제공자들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계별 개입/예방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현장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정책과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 청소년 범죄 특성과 경로

본 연구는 실증자료를 분석하여 청소년 범죄의 특성과 경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개입 지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소년범죄 예방 정책과 실효성 있는 예방/개입 프로그램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소년범죄 현황을 소년사법 단계에 따라 살펴보고, 소년의 사건을 발생 순서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고, 집단별로 사건 유형, 사건의 피해 규모, 소년의 특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범죄 경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범죄 특성과 경로를 분석하는 데 사용한 주요 연구자료는 경찰청, 대검찰청, 법원행정처의 소년범죄 관련 국가승인통계 및 법원월간통계 자료,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처우 이력이 있는 청소년 개별심층면접 조사 자료이다.

여기서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란 지방 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가 5년간 소년보호재판을 준비하면서 판결에 필요한 사항들을 메모하여 정리해 둔 자료를 말한다. 해당 자료는 보호처분 결과뿐 아니라 사건 특성과 소년의 개인 및 환경 특성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 분석 가치가 상당히 높으며 희귀한 비정형 기록자료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해당 자료를 연구 목적으로 제공받아 다년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5년 치의 비정형 자료 일체를 정형화하여 연령별 사건 특성과 개인 및 환경 특성에 대한 기초분석, 보호소년의 범죄 이행 경로 및 재범 특성을 분석하였다.

(3)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소년범죄 예방 관련 현안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청소년 범죄 예방 관련 현안 분석은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점층적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지금까지 이루어진 관련 연구 및 언론 보도자료를 포함한 각종 문헌을 검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포럼 및 워크숍에서 정책과 실무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관련 현안과 쟁점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처우이력이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 조사 등의 실증연구 결과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검토해야 할 현안과 쟁점을 정리하였다.

청소년 범죄 예방 환경과 청소년 범죄의 특성 및 경로, 소년범죄 예방 관련 현안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범죄 경로를 끊을 수 있는 개입 지점을 파악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를 최종 발굴하였다. 또한, 포럼 및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정부와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업무협의 등을 개최하고, 발굴한 정책과제의 실현 가능성 타진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 논의를 통해 정책과제를 구체화하였다.

2)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먼저, 소년범죄 관련 국내외 이론 및 학술논문을 분석하고 본 연구 설계에 필요한 내용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소년사건 처리 및 청소년 범죄 예방과 관련된 각종 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기관 등의 업무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각종 현행 조문을 분석하여 현황 및 한계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마련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경찰청, 대검찰청, 법원행정처의 소년범죄 관련 공식 및 내부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재구성하여 청소년 범죄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년범죄 관련 정책과 개입 및 예방 프로그램에 관한 문헌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의 공백을 확인하여 현장 방문 및 포럼 등의 개최 계획을 수립하였다.

(2)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청소년 범죄에 관한 공식 통계 자료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한 법원 소년부의 판사가 소년보호재판 준비를 위해 작성한 메모로 5년간 작성된 것이다. 이러한 자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재판, 사건, 소년 단위로 분석을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범죄의 경로와 청소년을 둘러싼 위기요인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범죄의 특성과 이행 경로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청소년 재범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표 1-1.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개요

구분	내용
분석 자료	• 지방 법원 소년부 판사의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이하 재판 준비 메모)
자료 작성 기간	• (재판 기간) 2013년 3월 ~ 2018년 2월
분석 대상	• 재판 준비 메모에 등장하는 보호소년의 기록 일체 (총 3,348명의 보호소년에 대한 7,393건의 재판 준비 메모)
자료 세부 내용	• (사건 특성) 범죄 행위, 범행 장소, 발생 시간, 공범 정보, 피해 규모 등 • (판결 특성) 보호처분 결과, 처우 이력 등 • (소년 특성) 연령, 행동 및 심리 특성, 학업 상태,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
분석 방법	• 재판 준비 메모 '자료 입력 및 처리 기준' 설계 및 자료 정형화 • 소년보호사건의 연령별 사건 특성과 개인 및 환경 특성에 대한 기초분석 • 보호소년의 범죄 이행 경로 특성 분석 • 보호소년의 재범행 특성에 따른 위기요인 분석

(3) 개별심층면접 조사

청소년 범죄 경로와 위기 요인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개입 및 예방 프로그램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처우이력을 경험한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개별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개개인의 생애과정과 위기요인에 대한 분석 및 소년 사법절차에서의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현재의 정책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표 1-2. 개별심층면접 조사 개요

구분	내용
대상	• 다양한 처우이력이 있는 소년
규모	• 4개 유형(성별*적응여부) / 유형별 3명씩 총 12명
주요 내용	• 처우이력(훈방, 기소유예, 심리불개시, 불처분 등 포함) 및 비행경력 • 조사 또는 재판을 받은 범죄의 내용 및 동기 • 가정 및 주변 환경, 유의미한 성인 • 소년형사사법절차에서의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 • 소년사건 처리 과정 및 보호처분 제도 관련 요구사항
방식	•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오프라인 개별심층면접 • 면접 내용 녹음 후 전사, 녹음이 허락되지 않을 시 현장 전사 • 연구진 직접 면접
참여자 모집방법	• 보호처분 관련 실무자 협의회 등을 통한 모집 • 경찰 및 검찰 단계 다이버전 참여자 대상 모집

(4) 전문가 자문 및 현장 방문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특히, 경찰 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 보호처분 단계, 처분 이후 자립 단계에서 청소년들의 재범 예방을 위해 정책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있는 현장을 고루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온라인 등에서는 얻기 어려운 내부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에 참고하거나 활용하였다. 또한, 현장의 요구사항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정책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수렴할 수 있는 토론 및 워크숍을 기획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한 내용은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구체화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표 1-3. 현장 방문 및 전문가 자문 개요

연번	목적	현장 및 전문가	개최날짜
1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코딩 및 분석 기준 검토, 자료 특성에 적합한 분석 기법 논의	소년법 및 범죄 전문가	7/3, 8/29
2		임상심리 및 상담 전문가	9/13, 9/24
3		경로 분석 연구방법론 전문가	9/14
4	소년 재범 사건의 특성 및 소년보호정책 현안 파악	지방경찰서 여성청소년계	1/18

연번	목적	현장 및 전문가	개최일자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24
6		청소년회복지원시설	4/29
7		보호관찰소	8/21
8		소년원	7/11
9	소년사건 처리 절차 다이버전, 개입 프로그램 현황 및 쟁점 파악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4/23
10		청소년희망재단	6/20
1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6/22
12		서울시립청소년센터	7/4
13		사단법인 만사소년	8/22
14	소년보호처분 종료 후 지원 정책 현황 파악	한국소년보호협회	5/7
15		청소년자립생활관	5/7
16		청소년자립지원관	7/2

(5) 포럼 및 워크숍

정책 현장 방문 및 프로그램 수집 과정에서 포착한 정책 현장의 필요를 충족하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정책과제 개발에 필요한 청소년 재범 예방 우수사례 등을 확보하고자 포럼 및 워크숍을 기획하고 개최하였다. 포럼 및 워크숍에서는 형사사법기관의 처분을 집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자신들이 운영 중인 예방 및 개입프로그램의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각자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참여자 상호 간에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장 실무자들이 현실을 개선하고 지식을 생산 및 공유하는 주체로 역할을 하도록 시도하였다. 또한, 법원, 정부, 공공기관이 후원 또는 협조 기관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국가기관과 현장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포럼 및 워크숍을 활용하였다.

표 1-4. 포럼 및 워크숍 개요

차수

구분

내용

제목

• 소년을 위한 회복적 치유적 공동체 만들기: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해

필요성 및 추진방향

• 보호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민간 감호 위탁집행 사실 관계자들이 소년에 대한 생활 및 학습지도를 수행하는 데에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 보호처분 관련 기관에서 최근 들어 증가세가 관찰되고 있는 경계선 지능 소년에 대한 이론적·임상적 이해를 도모하고, 이와 관련된 개별 기관의 프로그램을 공유

대상

• 보호처분 1호 및 6호 처분 소년을 위탁받아 함께 생활하는 전국 복지시설 관계자 및 관심 있는 일반 대중

날짜/방법

• 2024. 8. 19. / 오프라인 개최

기타

• 후원: 수원가정법원

1차
(포럼)

제59회 청소년정책포럼

소년을 위한 회복적 치유적 공동체 만들기

: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해

2024년 8월 19일 (월) 오후 1시 30분

서울스퀘어 3층 베를린룸 (서울역 8번 출구 앞)

주최 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후원

수원가정법원

프로그램

사회: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시간	내 용
1:30	개회 소년을 위한 회복적 치유적 공동체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40	인사말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박은진 (수원가정법원 소년4단독 판사)
1:50	사례 발표 1호 처분자 위탁기관 부도 전문 상담 치료와 가정 복귀 최광성 (광주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장) 경계를 넘나들며 함께 살아가기 임윤택 (동지청소년회복지원시설장) 6호 처분자 위탁기관 학술·도 하나의 치유와 성장 김자경 (나사로 청소년의 집 시설장) 〈생각에 노크하다〉 세움아 ‘생각수업’ 임수미 (세상물품은아이들 분부장)
2:50	휴 식
3:00	강연 소년을 위한 회복적 치유공동체 만들기 ~ 경계선 지능 및 경도 장애 소년 이해하기 김현수 (성당학교 별 교장,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3:50	종합토론 진행: 김명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발표자 및 보호소년 감호위탁 기관 관계자
4:30	폐 회

차수	구분	내용									
2차 (워크숍)	제목	• 소년사건의 이해: 법원 수감명령, 경찰 사랑의 교실 이해하기									
	필요성 및 추진방향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을 위탁하는 법원(수감명령)과 경찰청(사랑의 교실) 관계자의 직접 강연을 통해 소년법과 소년사건의 특성 및 소년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현장사례 공유를 통해 사랑의 교실 및 수감명령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대상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수감명령, 사랑의 교실 위탁기관 담당자 및 관심 있는 일반 대중									
	날짜/방법	• 2024. 8. 29. / 온라인 개최									
	기타	• 업무협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프로그램	청소년정책워크숍 소년사건의 이해 : 법원 수감명령, 경찰 사랑의 교실 이해하기 2024년 8월 29일 (목) 오후 6시 30분 온라인  ※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ZOOM 링크 안내 예정 주최 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본 행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고유과제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기획된 청소년정책워크숍 시리즈입니다. 프로그램 사회: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table><tr><th>시 간</th><th>내 용</th></tr><tr><td>18:30</td><td>주제강연 소년과 소년사건의 이해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td></tr><tr><td>19:10</td><td>특강 경찰의 소년선도정책과 선도프로그램 소개 김학수 (경찰청 본청 청소년보호과 경감), 전계환 (경찰청 본청 청소년보호과 경사)</td></tr><tr><td>19:30</td><td>사랑의 교실 수감명령 운영사례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내 인생의 네비게이션 정효경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업팀 팀장)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물결에게 관심을 백진영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td></tr><tr><td>19:50</td><td>질문 및 토론</td></tr></table>	시 간	내 용	18:30	주제강연 소년과 소년사건의 이해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9:10	특강 경찰의 소년선도정책과 선도프로그램 소개 김학수 (경찰청 본청 청소년보호과 경감), 전계환 (경찰청 본청 청소년보호과 경사)	19:30	사랑의 교실 수감명령 운영사례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내 인생의 네비게이션 정효경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업팀 팀장)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물결에게 관심을 백진영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19:50
시 간	내 용										
18:30	주제강연 소년과 소년사건의 이해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9:10	특강 경찰의 소년선도정책과 선도프로그램 소개 김학수 (경찰청 본청 청소년보호과 경감), 전계환 (경찰청 본청 청소년보호과 경사)										
19:30	사랑의 교실 수감명령 운영사례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내 인생의 네비게이션 정효경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업팀 팀장)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물결에게 관심을 백진영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19:50	질문 및 토론										

차수	구분	내용																	
3차 (워크숍)	제목	• 보호소년 학업지원을 위한 교육청-소년원 연계·협력 방안: 부산광역시교육청-부산소년원 협업사례 공유																	
	필요성 및 추진방향	• 교육부는 '22. 10.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통해 소년원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23. 11.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에서 보호소년 학업지원 강화 과제, 꿈이음 사업 등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과 진로설계 지원 과제를 제시 • 그러나 소년원생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개별 교육청과 소년원 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므로 본 워크숍을 통해 부산교육청-부산소년원의 협업사례의 실무요령 공유 및 소년원생 교육지원을 위한 전국 교육(지원)청과 소년원 간의 원활한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지원																	
	대상	• 17개 시·도 교육청 및 전국 소년원 관계자																	
	날짜/방법	• 2024. 9. 11. / 오프라인 개최																	
	기타	• 업무협조: 교육부, 법무부																	
	프로그램	청소년정책워크숍 보호소년 학업지원을 위한 교육청-소년원 연계·협력 방안 : 부산광역시교육청-부산소년원 협업사례 공유 2024년 9월 11일 (수) 오후 2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층 대회의실(세종) 주최 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본 행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고유과제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기획된 청소년정책워크숍 시리즈입니다. 프로그램 사회: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table><tr><th>시간</th><th>내 용</th></tr><tr><td>14:00</td><td>개 회</td></tr><tr><td>14:05</td><td>인사말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td></tr><tr><td>14:10</td><td>연구발표 보호소년의 학업특성과 처분 이력과의 관계 박지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td></tr><tr><td>14:20</td><td>사례발표 1 소년원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실무 이성건 (부산학생인성교육원 기획운영부장 / 교육연구관)</td></tr><tr><td>14:40</td><td>사례발표 2 소년원 교육지원의 필요성과 효과성 배시현 (금내중고등학교 / 부산소년원 주무관)</td></tr><tr><td>15:00</td><td>휴 식</td></tr><tr><td>15:10</td><td>질문 및 토론 17개 시·도 교육청 및 전국 소년원학교 관계자 패널 강동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 장학사) 최상일 (부산오륜학교 / 부산소년원 교무계장)</td></tr><tr><td>16:00</td><td>폐 회</td></tr></table>	시간	내 용	14:00	개 회	14:05	인사말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14:10	연구발표 보호소년의 학업특성과 처분 이력과의 관계 박지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4:20	사례발표 1 소년원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실무 이성건 (부산학생인성교육원 기획운영부장 / 교육연구관)	14:40	사례발표 2 소년원 교육지원의 필요성과 효과성 배시현 (금내중고등학교 / 부산소년원 주무관)	15:00	휴 식	15:10	질문 및 토론 17개 시·도 교육청 및 전국 소년원학교 관계자 패널 강동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 장학사) 최상일 (부산오륜학교 / 부산소년원 교무계장)	16:00
시간	내 용																		
14:00	개 회																		
14:05	인사말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14:10	연구발표 보호소년의 학업특성과 처분 이력과의 관계 박지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4:20	사례발표 1 소년원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실무 이성건 (부산학생인성교육원 기획운영부장 / 교육연구관)																		
14:40	사례발표 2 소년원 교육지원의 필요성과 효과성 배시현 (금내중고등학교 / 부산소년원 주무관)																		
15:00	휴 식																		
15:10	질문 및 토론 17개 시·도 교육청 및 전국 소년원학교 관계자 패널 강동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 장학사) 최상일 (부산오륜학교 / 부산소년원 교무계장)																		
16:00	폐 회																		

차수	구분	내용																								
4차 (워크숍)	제목	• 2024 법원 소년보호실무연구회 워크숍																								
	내용	•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성비행의 유형을 살펴보고,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하면서 경험한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을 자유롭게 논의함으로써 소년보호재판의 발전과 보호처분의 실효성을 확보																								
	대상	• 소년보호실무연구회 회원 및 워크숍 참석을 희망한 법원 구성원, 법원행정처, 수원가정법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본 과제 연구진)																								
	날짜/방법	• 2024. 9. 30. / 오프라인 개최																								
	기타	• 주최: 법원 소년보호실무연구회 • 후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수원가정법원																								
	프로그램	<table><tr><th>시 간</th><th>구 분</th><th>세 부 내 용</th><th>비 고</th></tr><tr><td>12:50~13:00</td><td>장내정리</td><td>■ 사회자 안내</td><td rowspan="7">사회 박은진 판사 (수원가정법원)</td></tr><tr><td rowspan="2">13:00~14:10</td><td rowspan="2">주제발표Ⅰ. "공식통계에 나타난 청소년 성비행의 경향 및 특성"</td><td>■ 발표(40분) - 한민경 교수(경찰대학교)</td></tr><tr><td>■ 지정토론(15분) - 김경윤 부장판사(부인가정법원) ■ 질의 및 응답(15분)</td></tr><tr><td>14:10~14:20</td><td colspan="2">휴식 시간</td></tr><tr><td rowspan="2">14:20~15:30</td><td rowspan="2">주제발표Ⅱ. "청소년 성비행 처분 그 이후"</td><td>■ 발표(40분) - 이구화 강사 (수원공기유평센터 성비행 강사)</td></tr><tr><td>■ 지정토론(15분) - 장형윤 소장 (해비리기센터 소장, 아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질의 및 응답(15분)</td></tr><tr><td>15:30~15:40</td><td>현안 공유</td><td>■ 강인혜 법원행정처 특별지원심의관</td></tr><tr><td>15:40</td><td>폐회</td><td>■ 폐회사: 실무연구회 회장</td></tr></table>	시 간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12:50~13:00	장내정리	■ 사회자 안내	사회 박은진 판사 (수원가정법원)	13:00~14:10	주제발표Ⅰ. "공식통계에 나타난 청소년 성비행의 경향 및 특성"	■ 발표(40분) - 한민경 교수(경찰대학교)	■ 지정토론(15분) - 김경윤 부장판사(부인가정법원) ■ 질의 및 응답(15분)	14:10~14:20	휴식 시간		14:20~15:30	주제발표Ⅱ. "청소년 성비행 처분 그 이후"	■ 발표(40분) - 이구화 강사 (수원공기유평센터 성비행 강사)	■ 지정토론(15분) - 장형윤 소장 (해비리기센터 소장, 아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질의 및 응답(15분)	15:30~15:40	현안 공유	■ 강인혜 법원행정처 특별지원심의관	15:40	폐회
시 간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12:50~13:00	장내정리	■ 사회자 안내	사회 박은진 판사 (수원가정법원)																							
13:00~14:10	주제발표Ⅰ. "공식통계에 나타난 청소년 성비행의 경향 및 특성"	■ 발표(40분) - 한민경 교수(경찰대학교)																								
		■ 지정토론(15분) - 김경윤 부장판사(부인가정법원) ■ 질의 및 응답(15분)																								
14:10~14:20	휴식 시간																									
14:20~15:30	주제발표Ⅱ. "청소년 성비행 처분 그 이후"	■ 발표(40분) - 이구화 강사 (수원공기유평센터 성비행 강사)																								
		■ 지정토론(15분) - 장형윤 소장 (해비리기센터 소장, 아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질의 및 응답(15분)																								
15:30~15:40	현안 공유	■ 강인혜 법원행정처 특별지원심의관																								
15:40	폐회	■ 폐회사: 실무연구회 회장																								

(6)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업무협의회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에 대응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교육청, 공공기관 등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를 통해 연구 방향성 등 연구계획을 구체화하였으며, 연구결과의 활용 방안 및 발굴한 정책과제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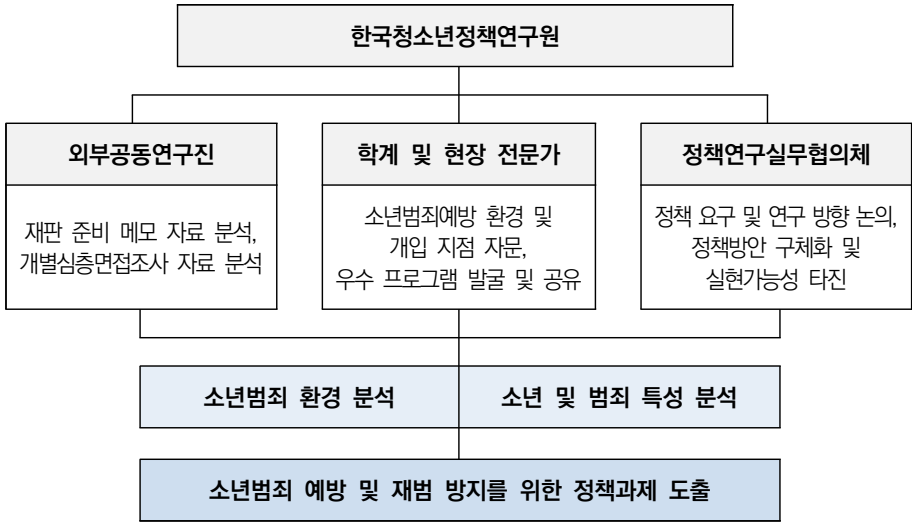
표 1-5.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업무협의회 개요

연번	협의대상	개최날짜	주요내용
1	교육부	1/19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2023.11. 관계부처 합동) 이행 상황 확인 및 보호소년 학업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논의
2	법무부	3/19	법무부 소년보호기관을 통한 재범 방지 정책 방안 논의
3	법원	3/22	소년사법체계 개선 방안 논의
4	법무부	4/19	소년범죄 최근 경향과 소년보호 현안 공유 및 연구 필요 논의
5	국가인권위원회	4/23	국가인권위원회 소년사법 관련 현안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심의 준비 진행 상황 공유 및 연구 필요 논의
6	여성가족부	5/14	법률에 근거한 비행청소년 교육적 선도 운영 현황 공유 및 청소년안전망을 통한 지원 가능성 논의
7	법무부	6/19	소년보호관찰 실무자를 위한 소년범죄 특성별 지도 현황 및 개선 방안 논의
8	교육청	7/11	소년보호기관과 교육청의 연계 가능성 및 실현 방안 논의
9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7/11	경찰 및 법원 연계 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 공유, 개선 및 역량강화 방안 논의
10	법원	9/30	법원 소년보호실무연구회 주요 현안 및 청소년 성비행 관련 조사 및 기관 연계 개선 방안 검토

3. 연구 추진 체계 및 절차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범죄 현황과 경로를 파악하고 이들을 둘러싼 환경과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청소년 재범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 추진 체계와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추진 체계



2) 연구 추진 절차

	내 용	방 법
연구 방향 설정	- 연구자료 수집 및 문헌 조사 - 연구 주제 관련 쟁점 도출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 전문가 자문회의 - 선행연구 고찰
재판 준비 메모 자료 구축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구축	- 문헌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실행계획		
관련 이론 및 실증연구 검토	- 청소년 비행 관련 이론 고찰 - 청소년 비행경로 영향 요인 검토	- 선행연구 고찰 - 전문가 자문회의
법적·제도적 환경 분석	- 소년범죄 관련 법령 및 규칙 검토 - 소년범죄 예방 및 개입 제도/프로그램 수집	- 문헌 조사 - 제도/프로그램 운영 현장 방문 및 전문가 자문회의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별심층면접 설계	다양한 처우이력이 있는 청소년 대상 개별심층면접 조사 설계	- 문헌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중간보고		
국가통계자료 분석	소년범죄 동향 국가통계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통계적 자료 분석
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 비정형자료 정형화 작업 - 소년 특성 및 환경 특성 분석 - 범죄 특성 및 범죄 경로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키워드 사전 구축 및 자료 분류 - 통계적 자료 분석
개별심층면접 조사 및 분석	개별심층면접 조사 및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개별심층면접 조사 - 면접 자료 분석
정책과제 발굴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구체화	- 포럼 및 워크숍 개최 - 분석결과 종합 및 귀납적 결론 도출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최종보고		

○ — 제2장 논의의 배경

- 1. 청소년 범죄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 2. 청소년 범죄 및 비행 대응
관련 법령과 제도
- 3. 청소년 범죄 현황
- 4. 요약 및 시사점

1. 청소년 범죄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이 절에서는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검토한 내용은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를 정형화하기 위한 조사표 설계와 다양한 처우이력을 경험한 소년에 대한 개별심층면접 질문을 구성하는 데 참고하였으며, 실증연구의 조사 결과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해석의 틀을 마련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청소년 비행 및 범죄 관련 이론 중 선행연구에서 이론적 틀로 자주 사용되는 8가지를 정리하였고, 다음으로는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 또는 재비행 및 재범의 원인으로 지목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10년간 청소년 비행 및 범죄에 대해 분석한 학술논문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 다음, 연구에서 지목한 청소년 범죄 관련 요인을 개인 요인, 부모 요인, 또래 요인, 학교 요인, 기타 요인으로 분류하여 각 요인과 청소년 범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범죄 경로를 살펴보기 위한 실증연구 설계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청소년 범죄 관련 이론

(1)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

사회통제이론은 Hirschi(1969)가 제안한 것으로,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 theory)으로 불리기도 한다. 사회통제이론은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유대가 약해지거나 파괴되었을 때 범죄가 발생한다는 기존 통제이론의 가정에서 출발하며, 사회에 대한 유대를 애착(attachment), 관여(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의 4가지 요소로

1) 이 장의 1절은 배한진 박사(서울대학교)가 공동집필 하였음.

분류하여 설명한다. 타인에 대한 애착이 부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바람과 기대를 신경 쓰지 않으므로 사회적 규범에 구속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 관여는 범죄행위에 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재화, 평판, 전망 등의 손해가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만든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학업에 충실하고 직업에 대한 열망을 가지는 청소년은 비행을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참여는 개인이 여러 관습적 활동에 참여하느라 바빠서 일탈 행동을 할 시간이 없다는 개념이다. 약속과 근무시간 등 관습적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는 사람은 일탈행위를 할 기회가 발생하지 않으며, 일탈행위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본다. 신념은 사회 규범의 도덕적 타당성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믿음이 약해질 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Hirschi는 이 네 가지 사회 유대가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만드는 요소이며, 이러한 요소가 약화되면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보았다.

(2) 자기통제이론(self-control theory)

자기통제이론은 Gottfredson과 Hirschi(1990)가 제시한 이론으로 ‘누군가는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자기통제력이 이러한 차이를 만든다는 관점을 취한다. 인간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가정한다면 인간은 범죄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 예견되는 고통에 비해 클 때에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때, 범죄가 가져올 장기적인 손해를 고려하는 능력과 순간적인 유혹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통제력이다. 충동성, 낮은 미래 조망 능력, 위험 감수 경향처럼 낮은 자기통제력과 관련된 특성은 생애 초기에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기통제이론은 이와 같은 특성이 생애 초기에 양육이나 훈련 등으로 다뤄질 수 있다고 본다. 즉, 부모가 훈련을 통해 자녀의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더 큰 목적을 위해 즉각적인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길러주며 장기적인 목표를 고려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통제이론은 충동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는 개인이 생애 초기에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하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3) 차별적 접촉 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차별적 접촉 이론은 Sutherland(1939)가 제안한 것으로 범죄 행동이 친밀한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된다고 설명한다. 범죄의 학습은 주로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친밀한 집단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학습의 내용은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이나 동기 또는 욕구를 합리화하는 태도 등을 포함한다. 범죄의 동기나 욕구를 합리화하는 태도에 관한 학습은 법 규범을 비우호적으로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주변에 법 규범에 비우호적이고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이 더 많다면 차별적 접촉으로 인하여 범죄 성향을 보이게 된다. 이 차별적 접촉의 효과는 접촉의 빈도, 기간, 우선순위,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청소년의 범죄를 차별적 접촉 이론에 따라 설명하면 범죄를 정당화하고 권장하는 주변인과의 접촉이 잦은 청소년들이 범죄에 대한 방법과 동기 및 욕구를 학습하여 범죄를 저지른다고 볼 수 있다.

(4)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Akers(1973)가 제안한 사회학습이론은 개인이 특정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의를 학습하고 모방하며, 차등 강화를 통해 특정 행동이 강화된다고 본다. 이 이론은 Sutherland(1939)의 차별적 접촉 이론에서 출발하여 Burgess와 Akers(1966)의 차별적 접촉-강화 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reinforcement) 이론을 거쳐 발달하였다. 사회학습이론은 차별적 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s), 정의(definitions), 차등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 모방(imitation)이라는 네 가지 주요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서 차별적 접촉의 대상이란 개인이 동일시하고 상호작용하는 사람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Akers, 1998; Hwang & Akers, 2003). 개인은 차별적 접촉을 통해 정의를 접하고 학습하며 행동모델에 노출되고 강화와 처벌을 받기도 한다.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범죄 행동 여부는 예상되는 미래의 보상과 처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범죄 행동에 대한 포괄적 집단의 승인은 범죄 행동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5) 긴장이론(strain theory)

긴장이론은 Merton의 아노미 이론에서 출발하여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으로 확장되었다. Merton(1938)은 문화적으로 정의된 목적과 목표 및 관심,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합법적 수단을 규정하고 규제하며 통제하는 것이 사회 구조라고 보고, 사회적 불균형과 성공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범죄 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Agnew는 구조적 측면에 주목하는 Merton의 긴장이론에서 더 나아가 개인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긴장 요인을 비행의 원인으로 다루면서, 특히 타인과의 부정적 관계에 주목하였다. 개인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받지 못할 때 긴장이 발생하는데 이 긴장의 발생 원인은 긍정적 목적 달성이 가로막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자극이 주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긴장이론은 부정적 관계가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켜 비행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부정적 관계 자체에 명시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청소년 비행의 경우 부정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분노 등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비행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고 본다. 이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목표 달성을 위해 불법적 경로를 이용하거나, 역경의 근원을 공격하거나 회피하도록 만들며, 불법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관리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청소년 비행에 대한 긴장이론의 설명방식이다.

(6)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Cohen과 Felson(1979)이 제안한 일상활동이론은 일상활동패턴의 구조적 변화가 범죄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일상활동이론에 따르면 직접 대면 약탈적 범죄 행위(direct-contact predatory crime)는 범죄 동기를 가진 범죄자(motivated offenders), 적절한 표적(suitable targets), 유능한 보호자의 부재(absence of capable guardians)라는 세 가지 요소가 같은 시간 및 공간에 존재할 때 발생한다. 그러나 개인이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더라도 적절한 표적이 있고 유능한 보호자가 부재하다면 범죄율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일상활동이론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에 주목하기보다는 범죄가 발생하는 전제 조건에 주목하여 범죄 발생의 구조적 조건을 강조하였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의 범죄는 행동을 지도하는 성인이 없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감독 및 관리자가 존재하는 구조화된 활동(structured activities)에 참여하는 경우보다는 또래끼리만 있는 비구조적 사회화 활동(unstructured socializing activities)에 자주 참여하는 경우에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Osgood, Wilson, O'malley, Bachman, & Johnston, 1996).

(7) 낙인이론(labeling theory)

낙인이론은 사회가 특정 개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을 때 개인이 실제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다(Becker, 1963). 낙인이 개인에게 미치는 문제 중 하나는 부정적인 자아 개념(self-concept)을 형성한다는 것인데 이는 인간이 자신을 대하는 타인의 태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기초하여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범죄자로 낙인찍힌 개인에 대해 사람들은 부정적 고정관념에 기반하여 태도를 정하게 되고, 이는 낙인찍힌 개인으로 하여금 반영된 평가 과정(reflected appraisals)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범죄자로 규정짓도록 만들며(Matsueda, 1992), 자기 자신을 범죄자로 보기 시작한 개인은 일탈자로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

또한 범죄자라는 낙인은 타인과의 관계나 적법한 기회로부터 개인을 배제하도록 만들 수 있다(Bernburg, 2019). 범죄자 낙인은 공포, 불신 등 타인의 부정적 반응을 야기하기 때문에 또래나 지역사회 구성원, 선생님이나 고용주와 같은 타자들이 낙인찍힌 개인을 저평가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을 경험한 개인은 사회적 관계망이 더욱 제한되며, 좋은 직업을 찾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는 다시 비행 또는 범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여 범죄의 가능성을 높인다(Becker, 1963). 반면에 비행집단에게는 개인의 비행 낙인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비행 낙인이 찍힌 개인에게 비행집단은 오히려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비행을 장려하는 집단적 합리화를 제공한다(Bernburg, Krohn & Rivera, 2006). 즉, 청소년에게 있어 비행 청소년이라는 낙인은 비행 청소년들끼리 집단을 형성하고 소속되도록 만들며 이를 통해 청소년 개인이 또 다른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8) 생애과정관점(life course perspective): 연령등급이론(age-graded theory)

Laub과 Sampson(1993)은 생애과정관점을 사용하여 범죄 행동의 발달을 설명하였다. 기존의 이론들이 어떤 개인이 범죄에 관여하는지에 대한 차이를 설명한다면, 생애과정관점은 개인 내에서의 안정성과 변화에 대해 설명한다(Sampson & Laub, 1997). 연령등급 이론은 개인의 사회 유대가 약화되었을 때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통제이론의 주요 아이디어를 가져와 생애과정에 걸친 사회적 유대를 주요 원리로 삼았다. 개인의 생애단계에 따라 가정과 학교 같은 비공식적 사회통제 기관이 달라지며, 특정 시기의

중요 사건과 전환점이 개인의 범죄경로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생애과정관점에서 청소년의 범죄는 가정과 학교 등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 중요한 생애 사건을 통해 유대와 애착을 형성하는 등의 사회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 개인은 생애과정에 걸쳐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될 위험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다.

생애과정관점에서는 누적적 연속성(cumulative continuity)의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 개념으로 범죄 경로를 살펴보면 생애 초기의 비행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개인은 낙인효과와 재비행 등으로 인해 누적된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고 성인기에 사회경제적 상태가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생애 초기에 비행을 저지른 개인이 졸업, 입대, 결혼, 취업 등의 중요한 생애 사건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유대와 애착, 그리고 사회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데에 성공하게 되면 그 개인은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수용하게 되고 다시 범죄의 길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청소년의 비행경로에서 탈비행을 바라보는 생애과정관점의 입장이다.

2) 청소년 범죄 관련 요인

(1) 개인 요인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범죄와 관련 있는 요인 중 청소년 개인 요인으로 지목한 것은 자기통제력, 우울이나 스트레스 등의 정서 요인, 범죄 피해 경험, 범죄에 대한 태도 등이 있다. 먼저 자기통제력의 경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하였다(신소라, 이유나, 2016; 윤민영, 노성훈, 2023; 조영오, 2019; 홍명기, 홍성주, 이민식, 2019; Craig, 2016; Huijsmans, Nivette, Eisner, & Ribeaud, 2021; Janssen, Eichelsheim, Deković, & Bruinsma, 2016). 자기통제력이 높은 청소년은 음주, 사이버 비행, 폭력 비행, 성적 비행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조영오, 2019). 반면에,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은 사이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으며(신소라, 이유나, 2016; 윤민영, 노성훈, 2023), 시간이 흐를수록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졌다(정진성, 장응혁, 2021; Huijsmans et al., 2021). 낮은 자기통제력은 그 자체로도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요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자기통제력이 낮은 학생은 비행 친구와의 관계가 좋은 경향이 있었고 자기통제력이 높은 학생은 보호자와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영오, 2019). 자기통제력이 낮은 학생들은 밤에 자주 밖에서 놀거나 오락실, 노래방, 당구장 등에 자주 가는 비구조적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도 하였다(홍명기 외, 2019). 한편, 부모의 모니터링이나 규칙 위반 행동에 대한 개입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낮추었다(Janssen et al., 2016).

청소년의 분노, 우울,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정서 역시 청소년의 범죄와 관련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긴장이론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긴장 요인이 청소년을 분노,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상태에 놓이게 하고 이로 인해 비행을 저지르게 만든다고 설명한다(Agnew, 1992). 긴장이론에 기반한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긴장 요인이 청소년의 부정 정서를 통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증해왔다(박병선, 배성우, 2016; 양윤식, 김수민, 이태현, 2019; 이완희, 황성현, 2016; 임희연, 정일환, 문상호, 2023; Eitle & Eitle, 2016). 예를 들어, 박병선과 배성우(2016)는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폭력 피해, 부모 학대라는 긴장 요인으로 인해 높아진 스트레스와 우울이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메타경로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청소년의 범죄 피해 경험이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또한 긴장이론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긴장이론에서는 청소년을 부정적 감정상태로 만들어 비행을 촉발하는 긴장 요인으로 긍정적 목표 성취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발생 등을 꼽는데(Agnew, 1992), 범죄 피해 경험은 긴장을 발생시키는 부정적 자극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실증분석을 통해 범죄 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비행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우울과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정서를 통해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박병선, 배성우, 2016; 이석영, 이택호, 한윤선, 2015; Moon & Morash, 2017). 예를 들어, 이석영 외(2015)의 연구에서 비행 피해 경험은 사이버 비행 가해 경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oon과 Morash(2017)의 연구에서는 범죄 피해를 경험한 남학생이 폭력 및 재산 비행을 저지르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선과 배성우(2016)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우울을 높여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석영 외(2015)의 연구에서는 비행 피해 경험이 공격성과 우울을 증가시켜 사이버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범죄에 대한 개인의 태도도 범죄행동과 연관성을 보이는데, 특히 청소년은 부모와 또래 집단이 특정 행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청소년 본인이 범죄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따라 범죄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Akers, 1998)의 정의 개념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은 범죄에 대한 태도를 정의로 설정하고 정의와 범죄 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신지희, 홍명기, 황의갑, 2022; 윤민영, 노성훈, 2023). 신지희 외(2022)의 연구에서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을수록 비언어적 사이버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민영과 노성훈(2023)의 연구에서는 범죄에 우호적일수록 사이버범죄 가해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은 범죄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가 우호적일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는 연구 결과를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2) 부모 요인

부모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이론에서 설명을 시도한 바 있다. 그만큼 청소년에게 부모는 가깝고 중요한 존재이며 비행에 미치는 영향 또한 현저하다. 사회통제 이론은 부모와의 유대가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억제 요인이라고 가정하며, 자기통제이론은 범죄를 억제하는 자기통제력의 형성이 부모의 훈육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청소년이 부모의 학대를 모방하여 범죄를 저지룰 수 있다고 설명하고, 긴장이론에서는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긴장을 발생시켜 범죄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또한, 긴장이론은 부부 갈등 및 폭력, 이혼 등도 긍정적 자극의 소멸과 부정적 자극의 제공이라는 긴장을 청소년이 경험하게 만든다고 본다.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부모 요인 중 부모에 대한 애착을 먼저 살펴보면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은 경우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사회통제 이론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유대를 가지는 것이 청소년의 범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한다(Hirschi, 1969). 반면에 타인에 대한 애착이 부족하면 타인의 기대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부 선행연구는 부모에 대한 애착을 부에 대한 애착과 모에 대한 애착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도 하였다(정진성, 정하보, 김정민, 2020; 주용휘, 2021; Brauer & De Coster, 2015; Craig, 2016; Peterson, Lee, Henninger & Cubellis, 2016). 정진성 외(2020)의 연구에서는 부모 애착이 높으면 흡연, 음주, 무단결석 등의 경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았고, Peterson et al.(2016)의 연구에서는 부모 애착이 높을수록 중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구분하여 살펴본

주용휘(2021)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애착이 청소년의 비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Craig(201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대한 유대를 각각 분석하면 두 유대가 모두 청소년 비행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모 유대를 함께 분석하거나 종단적인 분석을 수행했을 때는 어머니와의 유대만이 청소년의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auer와 De Coster(2015)의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비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행에 대한 부모의 반대 수준이 너무 높다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비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조절효과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부모의 규범적 기대를 자신의 자율성을 제한하려는 통제 시도로 해석한 청소년이 부모의 기대에 도전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부모의 감독 및 모니터링과 같은 부모의 통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다뤄져 왔다. 자기통제이론에서는 부모의 모니터링이나 훈육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발달에 영향을 주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한다(Gottfredson & Hirschi, 1990). 차별적 접촉 이론 또는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부모의 모니터링과 통제가 부족한 경우에 범죄에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할 가능성과 비행 또래와의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고 설명한다(Akers, 1973). 관련 실증연구에서도 부모의 모니터링과 감독이 청소년의 비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영, 장현석, 2016; 정진성 외, 2020; Huijsman et al., 2021; Janssen et al., 2016; Peterson et al., 2016). 그러나 부모의 처벌이 남학생의 재산 비행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발견되기도 하였다(Moon & Morash, 2017). 일부 연구들은 부모의 통제와 청소년의 비행이 선형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는데, 예를 들어 Harris-McKoy(201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통제가 낮거나 너무 높을 때 상대적으로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U자형 구조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부모의 학대 역시 청소년의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긴장이론에서는 부모의 학대를 청소년의 긴장을 발생시키는 부정적 자극으로 보며, 부정적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가 청소년의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Agnew, 1992). 또한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청소년이 부모의 학대를 모방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Akers, 1998). 실증연구들 역시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비행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거나(박병선, 배성우, 2016; 이완희, 황성현, 2016; 임희연 외, 2023), 청소년의 우울이나 스트레스 등을 높여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비행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박병선, 배성우, 2016;

양윤식 외, 2019).

부부 갈등 역시 부모의 학대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긴장을 발생시키는 긴장 요인으로 볼 수 있다(Agnew, 1992). 김주영과 장현석(2016)은 부모의 부부싸움을 목격하는 것이 화목한 가정에서 발생하는 긍정적 자극의 소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부부 갈등 자체가 청소년 자녀에게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자극을 발생시키는 부정적 자극이라고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폭력적인 부부싸움은 지위 비행과 폭력 비행을 모두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주영, 장현석, 2016). 부모의 이혼 또한 화목한 가정이라는 긍정적 자극의 소멸로 인해 청소년의 긴장을 발생시키는 부정적 자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제영, 선민숙, 장선희(2016)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청소년의 범법 비행 및 다중 비행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3) 또래 요인

또래 관계는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 중 하나이다. 또래와의 유대는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는 청소년의 범죄를 억제하는 사회적 유대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반면, 차별적 접촉 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에서 비행을 촉진하는 또래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의 범죄를 장려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Akers, 1998). 실증연구 결과에서도 또래와의 유대와 범죄의 관계는 혼재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비행 친구에 대한 유대와 범죄에 거부적인 친구에 대한 유대의 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Peterson 외(2016)의 연구 결과에서는 또래에 대한 애착이 총 비행과 지위 비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진성 외(2020)의 국내연구에서도 또래 애착이 경비행과 중비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Brauer와 De Coster(2015)의 연구에서 또래 친구가 범죄에 대해 반대할 때 청소년의 비행은 감소하였으며, 또래에 대한 애착이 큰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또래의 반대가 청소년의 비행을 감소시키는 영향이 더 커졌다. 조영오(2019)의 연구에서는 자신에게 ‘사고 치지 말라’고 조언하는 친사회적 친구 관계가 존재할 때,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은 감소하지만, 흡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증연구의 결과들은 또래와의 애착을 비행 친구와 친사회적 친구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비행 친구의 유무와 비행 친구의 수도 청소년 범죄와 관련이 있는 요인이다. 차별적 접촉 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에서 청소년은 또래와 같은 친밀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범죄에 대한 태도를 학습하고 범죄 행동을 모방하기도 한다(Akers, 1998). 따라서

범죄를 정당화하고 권장하는 사람과의 접촉이 늘어나면 범죄 동기나 욕구를 학습할 수 있다. 국내 실증연구에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을 때 사이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졌으며(신지희 외, 2022; 윤민영, 노성훈, 2023), 주변에 친구나 선후배 등 불법도박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불법도박 행동 빈도가 증가하였다(임숙희, 김예나, 권선중, 2019). 종단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비행 발달과 비행 또래의 관계를 살펴본 이완희와 황성현(2016)의 연구에서는 비행 친구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날수록 비행을 점점 더 많이 저지르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국외 연구에서 역시 비행을 저지르는 친구의 존재가 비행에 대한 유혹을 증가시켜 비행을 더 저지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Hoeben & Weerman, 2016). 절친한 친구의 비행은 청소년의 비행을 증가시켰고(Huijsmans et al., 2021), 비행 친구와의 유대가 높을수록 비행을 일찍 시작하고 지속적으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했으며(Evans, Simons, & Simons, 2016), 가장 친한 친구들의 약물 사용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비행도 증가하였다(Craig, 2016).

(4) 학교 요인

학교는 청소년 대부분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장소 중 하나이다. 사회통제이론은 학교 또는 교사와의 유대, 학교 및 학업에 대한 관여와 참여(commitment and involvement), 시험과 성적 등이 청소년의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는 여러 선행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차용되고 있다. 학교 또는 교사와의 유대는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는 애착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다. 실증연구 결과에서도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청소년의 비행이 감소하였고(민수홍, 이유미, 2015), 학교에 대한 애착이 높은 여학생은 교육적 긴장으로 인해 일반 비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줄어들었다(Eitle & Eitle, 2016).

학교 또는 학업에 대한 관여와 참여도 청소년 범죄와 관련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 사회통제이론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여는 규칙을 어길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설명한다(Hirschi, 1969). 높은 학교 성적 등은 청소년이 달성하고 싶은 목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업에 대한 관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학습활동에 대한 흥미와 직업에 대한 열망을 관여로 정의한 정진성 외(2020)의 연구에서 관여는 전체 비행과 경비

행을 감소시켰으며, Peterson 외(2016)의 연구에서는 성적이 높을 때 충 비행과 지위 비행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참여의 비행 억제 효과를 살펴본 연구 중 신소라와 이유나(2016)의 연구는 친구 활동, 학업 활동, 교육활동, 학업 이외의 행사 참여가 사이버불링 가해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을 낮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많은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기통제력이 높았고, 사이버불링을 더 적게 저질렀다. 그러나 과학 정보활동, 봉사활동, 직업 체험활동 등에 참여한 경험을 참여로 정의한 정진성 외(2020)의 연구에서는 많은 활동에 참여할수록 중비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의 비행 예방 효과에 관한 연구는 좀 더 축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도 청소년의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긴장이론의 관점에서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청소년을 부정적 영향 아래에 놓이도록 만들기 때문에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긴장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실증연구에서 시험 관련 긴장은 남학생의 폭력 비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Moon & Morash, 2017). 학교의 처벌도 청소년의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된다. 낙인이론은 사회적 낙인이 자아 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처벌로 인해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을 일탈자로 정의하고 범죄를 지속하게 될 수 있다(Matsueda, 1992). 실증연구들도 학교의 공식 처벌이 자아 낙인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비행 행동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김소희, 황의갑, 2015). 일부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학업 중단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낙인감을 청소년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기도 하였다. 이래혁(2021)의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그 자체로 청소년의 비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충동성을 높여 비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기타 요인

이 외에도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범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여러 요인이 있다. 그중 하나가 청소년의 비구조적 사회활동 참여이다. 일상활동이론에서는 범죄 동기를 가진 범죄자, 적절한 표적, 유능한 보호자의 부재라는 세 요소가 같은 시공간에 존재할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데(Cohen & Felson, 1979),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보호자 또는 감독자가 존재하지 않는 비구조적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Osgood et al., 1996). 예를 들어, 홍명기 외(2019)의 연구는 자기통

제력이 낮은 청소년들이 비구조적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이로 인해 비행을 더 많이 저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Hoeben과 Weerman(2016)은 청소년들이 비구조적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비행 친구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며, 비행 가담에 대한 유혹에 빠지고 비행에 대해 관대해짐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일부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재범이나 범죄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청소년 범죄 관련 요인들과 대동소이하였다. 우선, 낙인이론의 자아개념을 적용하여 볼 때,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재비행 또는 탈비행에 영향을 미쳤다. 김경숙과 남현우(2014)의 연구에서는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비행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에, 김소희와 황의갑(2015)의 연구에서는 비행으로 인해 학교의 공식 처벌을 받은 학생은 본인을 문제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비행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홍(2014)의 연구에서는 우울,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부모 지지, 징계 경험이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송주영과 한영선(2014)의 연구에서는 지능지수, 성장 지역, 결혼가정 여부, 부모에 대한 반항적 태도, 재학 시 비행 여부, 비행 친구 유무, 결혼가정 친구 유무 등이 범죄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능지수가 낮고 가출 경험이 있으며 우범지역에서 성장한 청소년의 경우 범죄를 지속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3) 청소년 범죄 관련 선행연구 검토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청소년 범죄 관련 선행연구를 요약하여 표 II-1에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횡단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일부 연구가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 또는 종단자료를 분석하였다. 청소년 범죄에 관한 연구가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는 주요 이론은 사회통제이론, 자기통제이론, 차별적 접촉이론, 사회학습이론, 긴장이론, 일상활동이론, 낙인이론, 생애과정관점이었다. 이론마다 범죄가 발생하도록 하는 기제나 요인에 대한 강조점은 조금씩 달랐다.

사회통제이론에서는 사회에 대한 유대 또는 애착, 자기통제이론에서는 개인의 자기통제력,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동일시와 상호작용의 대상, 긴장이론에서는 사회구조와 일상의 긴장 요인, 일상활동이론에서는 유능한 보호자의 부재, 낙인이론에서는 낙인으로 인한 부정적 자아개념의 형성, 생애과정 관점에서는 생애과정에 걸친 사회적 유대와 누적적

연속성을 범죄와 관련된 중요 요인으로 보았다. 그러나 관련 이론들의 기본이 되는 핵심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청소년 개인의 범죄를 바라볼 때 이들을 둘러싼 환경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으며, 이에 기초한 실증연구들은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개인의 자기통제력을 강조하는 자기통제이론에서조차 충동성, 낮은 미래 조망 능력, 위험 감수 경향과 연관된 낮은 자기통제력은 생애 초기에 양육을 통해 얼마든지 다뤄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고 보았다. 생애과정관점은 누적적 연속성의 개념을 통해 청소년이 특정 시기마다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들이 누적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요한 생애 사건을 겪으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애착을 형성함으로써 탈비행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에 등장하는 소년에 대한 정보를 개인, 가정, 또래 및 학교 영역으로 분류하여 영역별 위기요인을 코딩하고 소년 범죄 이력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자료의 제한 등으로 검토하지 못한 범죄 이력 및 범죄 유형과 위기요인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범죄 관련 학술연구 분야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다양한 처우이력을 경험한 소년에 대한 개별심층면접에서는 생애과정관점에서 강조한 누적적 연속성 개념을 적용하여 소년의 생애과정 전반을 탐색하고 이들의 재비행과 탈비행 과정에 영향을 미친 부정적인 경험과 긍정적인 경험의 축적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들의 생애 경험과 생애 사건의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위해 청소년 범죄 관련 요인을 분류하였던 틀대로 개인, 가정, 또래, 학교를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재구성하였다.

표 II-1. 청소년 범죄 관련 선행연구 요약

연구	범죄 유형	연구 자료	분석 방법	주요 결과	사회 통제	자기 통제	차별 접촉	사회 학습	강화	인상	유인	생애 과정
주용희(2021)	비행(출연, 음주, 마약/보드, 신체적 싸움)	제1차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조사(2019년) 중고등학생 4,649명	구조 방정식 매개모형	아버지와의 애착이 중고생 자녀의 비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정진성 외(2020)	경비행 (출연, 음주, 무단결석, 왕따 등), 중비행 (폭행, 절도, 성폭력 등)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4패널 1,954명(중1, 중3)	음이향 회귀분석	- 사회유대(부모애착, 또래애착, 관여, 참여, 부모감독)가 청소년 비행에 영향 - 사회유대 중 부모 애착과 관여는 경비행에만 영향을 미침 - 사회유대 중 참여는 중비행에만 영향을 미침	○							
Harris-McKoy (2016)	비행 (절도, 폭행, 재물손괴 등)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1994/95년 당시 12-21세 8,607명(1, 2, 4차)	회귀분석	-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통제가 비행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으며 비선형적인 관계 -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통제가 너무 약하거나, 너무 강할 때 비행의 가능성이 증가, 적당한 수준일 때 비행 가능성 낮음	○							
Craig (2016)	비행 (절도, 폭행, 재물손괴 등)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Add health) 1994-1995년 당시 중고등학생 6,401명(1, 2차)	음이향 회귀분석, 고정효과 모형	- 어머니와의 유대가 높을수록 비행 감소 - 또래악물사용이 빈번할수록 비행 증가 - 자기통제가 낮을수록 비행중가 - 아버지와의 유대는 집단모형에서는 유의하였으나,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음	○							
Peterson et al. (2016)	비행 (중비행, 지위 비행, 총 비행)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2패널 2,967명(2003-2007)	랜덤효과 음이향 모형	- 부모에 대한 애착이 중비행을 감소시킴 - 부모의 지도가 총 비행, 지위 비행을 감소시킴 - 또래에 대한 애착이 총 비행, 지위 비행을 증가시킴 - 학교에 대한 관여가 총 비행, 중비행, 지위 비행을 감소시킴	○							

연구	범죄 유형	연구 자료	분석 방법	주요 결과	사회 통제	차별 접촉	사회 학습	강정 활동	인신	생애 과정
				한국의 교육과 부모의 감독역할이 비행감소에 중요한 역할						
신지희 외(2022)	사이버범죄	사이버폭력실태조사 2018, 2019, 2020년(초4-고3)	로지스틱 회귀분석	사이버 범죄에 대한 우호성(정의), 사이버 범죄를 저지를 친구 유무(접촉)가 언어적/비언어적 사이버범죄 기회 경험에 영향			○			
임숙희 외(2019)	불법도박 행동	수집자료, 청소년 475명 (평균 17.5세)	회귀분석 조절효과	- 주변인의 도박행동이 청소년의 불법도박행동 빈도에 영향을 미침 - 사이버 범죄 행동을 많이 하는 경우 주변인의 도박 행동이 청소년의 불법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남			○			
박병신, 배성우 (2016)	비행	논문 216편	메타경로 분석	- 사회경제적 수준 → 스트레스, 우울 및 비행 - 학교폭력 피해 → 우울, 비행 - 부모 학대 → 스트레스, 우울, 비행 -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폭력 피해, 부모 학대 → 스트레스, 우울 → 비행				○		
양윤식 외(2019)	범죄 행동, 지위 비행	한국이동청소년패널조사 초4패널 6차년도(중3)	잠재프로 파일분석	- 청소년의 정서 유형을 5개 잠재 집단으로 분류 - 일부집단(건강, 보통, 정서문제집단)에서 긴장 요인(양육 요인, 학교 요인, 또래 요인)이 정서유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정적 정서 집단이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비행이 예상됨				○		
김주영, 장현석 (2016)	지위 비행, 폭력 비행	2011 범죄피해실태조사	로지스틱 회귀분석	폭력적인 부모싸움이 청소년의 지위 비행, 폭력 비행에 영향				○		
Moon & Morash (2017)	비행 (폭력, 재산, 지위)	2005년 당시 인천, 대구, 청주에 거주 중인 중학생 659명	음이항 회귀분석	부모의 차별, 시험 관련 긴장, 재정 관련 긴장, 범죄 피해는 남학생의 폭력 및 재산 비행에				○		

연구	범죄 유형	연구 자료	분석 방법	주요 결과	사회 통제	자기 통제	차별 접촉	사회 학습	인상 형성	누인	생애 과정
		(2005, 2006년)		영향 • 가족 갈등, 성차별은 여학생의 폭력 비행 및 지위 비행에 영향 • 긴장과 비행의 관계에서 부정적 감정의 매개효과 없음							
Eitle & Eitle (2016)	비행 (일반, 재산, 폭력)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Health (Add health) 1994-1995년 당시 중고등학생인 아메리카 원주민 670명(1, 2차)	음이향 회귀분석	• 범죄 피해와 최근의 부정적 생애 사건이 비행과 관련이 있음 • 부정적 감정(우울)이 비행에 영향을 미침 • 부정적 감정이 긴장과 비행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가설은 기각 • 여학생은 학교에 대한 애착 및 관여가 교육적 진학에 대한 기대는 낮은 상황)과 일반 비행의 관계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조절효과)				○			
조제성, 조윤오 (2019)	범죄 행동 (폭력, 협박, 절도, 성범죄, 갈취, 도박, 지위 비행)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1패널(중3-고3)	잠재성장 모형	• 음주/흡연 경험에 비행 친구의 수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범죄 행동을 증가시킴							○
Evans et al. (2016)	비행 (DISC-IV, 절도, 폭행, 방화 등)	Family and Community Health study (FACHS) 1997-1998년 기준 5학년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학생 354명(1-4차, 2-2.5년 간 격)	집단중심 추세모형,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 비행의 발달 유형을 조기 시작/만성형, 조기 시작/감소형, 후기 시작형, 경미한 비행형의 네 집단으로 분류 • 아동 초기 및 청소년기에 걸쳐서 인종차별을 경험하는 경우 비행을 일찍 시작하고 청소년기 동안 지속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 • 비행 친구가 많으면 비행을 일찍 시작하고 청소년기 동안 지속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							○

연구	범죄 유형	연구 자료	분석 방법	주요 결과	사회 통제	차별 접촉	사회 긴장	인상 불응	누인	생애 과정
조영오(2019)	비행(음주, 흡연, 사이버 비행, 폭력 비행, 성비행)	수집자료, 2018년 전국 19개 보호관찰소 소년 452명	구조 방정식 매개모형	- 자기통제가 비행을 직접 감소 - 자기통제가 애착을 매개로 하여 비행을 감소	○	○				
신소라, 이유나 (2016)	사이버불링	2013년 청소년 사이버 언어행동조사, 초5~고3	구조 방정식 매개모형	- 애착(친구, 교사, 부모), 참여(친구, 학업, 교육, 기타) 등 청소년의 사회유대가 자기통제력(충동 억제, 만족 지연)을 매개로 하여 사이버불링에 영향 - 참여는 사이버불링에 직접효과도 존재	○	○				
Brauer & De Coster (2015)	비행 (절도, 무기 소지, 폭행 등)	National Youth Survey, 1976년 당시 11~17세 청소년 1,411명(3, 4, 5차)	토탈분석 조절효과	- 예상되는 또래집단의 비난, 또래집단의 비행 수준이 비행에 영향 - 예상되는 또래집단의 비난, 또래의 비행 수준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또래에 대한 애착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조절효과) - 부모에 대한 애착은 비행을 감소시킴 -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은 집단의 경우 예상되는 부모의 비난이 증가할 때 비행을 증가시킴	○	○				
윤민영, 노성훈 (2023)	사이버폭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년 청소년 대상 사이버폭력 인식 조사, 2,486명(초5~고2)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 자기통제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가해 경험, 피해 경험, 중립 경험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무경험 집단에 비해 높음 - 범죄유혹적 정보와 차별적 접촉은 무경험집단 대비 가해집단 및 중립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임	○	○				
Janssen et al. (2016)	비행 (기물파손, 강도 등)	The Study of Peers, Activities and Neighborhoods(네덜란드), 2008, 2009년 기준 11~17세 청소년 603명(2008/09)	다층 구조 방정식 모형	- 부모의 모니터링이 자기통제를 통해 비행에 영향 - 부모의 모니터링이 또래비행을 통해 비행에 영향 - 청소년기 동인의 양육변화가 비행에 대한	○	○				

연구	범죄 유형	연구 자료	분석 방법	주요 결과	사회 통제	자기 통제	차별 접촉	사회 학습	강장 활동	인상	누인	생애 과정
		년, 2010/11년)		태도 및 또래 비행의 변화를 통해 비행의 변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이완희, 황성현 (2016)	비행 (흡연, 음주, 결석, 기출, 폭행 등)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1 패널(중2-고3)	잠재성장 모형	- 비행 친구의 수가 비행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 - 우울감, 부모 학대의 초기값은 비행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 변화율은 비행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				
임희연 외(2023)	비행 (지위 비행, 경비행, 중비행)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1패널 2,219명(중3)	구조 방정식 모형	- 청소년의 정서 장애, 부모학대, 학교생활이 비행에 영향 - 정서 장애가 학교생활에 영향 - 정서 장애가 학교생활을 매개로 비행에 영향				○ ○				
Huijsmans et al. (2021)	비행 (무단결석, 절도, 강도, 미약 거래 등)	Zurich Project on the Social Development from Childhood to Adulthood 자 료, 2004년 당시 1학년인 청 소년 1,197명(13, 15, 17세)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	- 또래 비행이 자기통제에 영향을 미침 - 자기통제가 미래 비행에 영향을 미침 - 또래 비행과 미래 비행은 상호 호혜적인 영향이 있었음 (누적적인 불이익의 가능성)		○ ○						○
Hoeben, E. M., & Weerman, F. M.(2016)	비행 (폭력, 절도, 기물파손)	Study of Peers, Activities and Neighborhoods(네덜 란드), 11~20세 청소년 610 명(2 waves: 08/09년, 10/11년)	다층 경로모형	- 비구조적 사회활동의 참여는 비행 친구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킴 - 비행 친구에 대한 노출은 청소년이 비행 기법에 대한 유혹을 느끼게 만들며, 악물 사용에 관대하게 만들				○ ○				
최재용 외(2014)	지위 비행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1패널 2,351명(중3)	로지스틱 회귀분석	- 비행경험 친구의 수와 정이감이 지위 비행에 영향 - 남학생은 친구 애착, 여학생은 친구에 의한 비행 피해 경험에 지위 비행에 영향 - 남학생은 부모 학대, 여학생은 부모 구성이				○ ○				

연구	범죄 유형	연구 자료	분석 방법	주요 결과	사회 통제	자기 통제	차별 접촉	사회 학습	강제	인상	불응	누인	생애 과정
민수홍, 이유미 (2015)	비행(출연, 음주, 절도, 도박 폭행 등)	수집자료, 2013년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776명,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220명	회귀분석	지위 비행에 영향									
김경숙, 남현우 (2014)	탈비행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2패널(고1~고2)	구조 방정식 모형	친구의 비행 성향과 자기통제력이 학업 중단 이후의 비행에 영향	○	○	○	○					
김소희, 황익갑 (2015)	비행(경비행, 중비행)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2패널(고1~고3)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타인 평가에서 선택한 자이로의 경로에서 탈비행 집단과 비행자속집단의 차이 발생								○	
이래혁(2021)	비행 (출연, 음주, 절도 등)	학업중단청소년패널 2차년도 453명	매개모형	학교의 공식 처벌이 자이 낙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행 행동에 영향								○	
조영오(2021)	폭력비행, 사이버비행	2018년 당시 보호관찰소년 455명	회귀분석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충동성을 매개하여 비행에 영향					○			○	
홍명기 외(2019)	비행 (음주, 흡연, 폭력 등)	2014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 조사, 중2~고2 7,109명	매개모형	가정에서의 긴장, 분노, 우울감, 문제해결 능력, 도덕적 신념, 비행 친구 관계가 폭력 비행에 영향					○				
황성현(2016)	경비행	한국이동청소년패널조사 중1패널 2차년도~5차년도(중2~고2) 2,280명	잠재성장 모형	자기통제력이 개인적 기회요인(바구조적 활동, 비행 친구)을 매개하여 비행에 영향		○					○		
이석영 외(2015)	사이버비행	한국이동청소년 패널조사 중1패널 2차년도(2011), 중2 청소년 2,054명	구조 방정식 모형	비행 친구 수의 초기치와 변화율이 경비행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	○			○					
				- 비행 피해 경향이 사이버비행에 영향 - 비행 피해 경향이 우울 및 공격성을 매개하여 사이버비행에 영향						○			

2. 청소년 범죄 및 비행 대응 관련 법령과 제도

이 절에서는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응하는 부처의 사무에 관한 현행법령 및 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는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에 등장하는 소년들과 개별심층면접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범죄 이력 및 처우이력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다.

법령 및 제도 검토에 앞서 청소년 범죄 및 비행 대응과 관련된 법령마다 사용하는 대상 지칭 용어와 연령 범위가 서로 다를 것을 우선 밝히고자 한다. 소년사법은 “소년의 비행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법적 처우를 부과하는 작용”(국가인권위원회, 2007)으로 「소년법」에서 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이다. 이처럼 각 부처 소관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아동, 청소년, 소년, 미성년자 등 연소자를 지칭하는 용어와 연령 범위가 서로 다르다. 우리 사회의 여러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소년의 비행과 범죄 또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부처별로 연소자를 지칭하는 용어와 연령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유념하여 부처 간 역할과 정책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1) 지방정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부터 제21조에 이르는 제6장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은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고 가정·학교·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것을 도와야 할 지자체장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표 II-2). 여기서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은 2018년 12월 18일 해당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교육적 선도”에서 그 명칭이 변경된 것이며, 교육적 선도는 2003년 법안 발의 당시 소년보호처분과 유기적 연관성을 갖추되 소년보호처분과는 별개로 비행청소년에 대한 개입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된 제도였다(김지연, 이유진, 정소연, 박선영, 2018). 당시 문화관광위원회(2003)는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선도지원청소년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감독을 받지 못하고 사후에 방치되어 왔으므로 이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입법취지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였다(김지연 외, 2018). 다만

실제로 개정된 법은 입법안의 내용 중 법원소년부의 선도지원명령 및 감독 권한이나 청소년복지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내용 등이 삭제되었다.

표 II-2. 「청소년복지 지원법」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관련 조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9761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19조(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의 비행·일탈을 예방하고 가정·학교·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보호지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18.>

1.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2.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② 보호지원은 해당 청소년이 정상적인 가정·학교·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상담·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개정 2018. 12. 18.>

③ 보호지원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지원의 결과를 검토하여 보호지원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④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제목개정 2018. 12. 18.]

제20조(시설의 설치·운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보호지원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보호지원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 교육 등 보호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제21조(보호지원후견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42조제2항에 따라 보호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보호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는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을 개인별로 전담하여 지도하는 보호지원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지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제목개정 2018. 12. 18.]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9761호, 2023. 10. 24.).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2024년 5월 21일 인출.

현재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의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관련 조문은 지자체가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는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를 띠고 있을 뿐, 예산이나 인력 및 운영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해당 제도가 적극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통해 관련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은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나 청소년쉼터 퇴소 후에도 여전히 가정·학교·사회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설로, 이때는 「소년법」상 소년이 아닌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 연령기준(24세 상한)이 적용되는데 19~24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한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청소년자립지원관 모두 국비 외에 지방비가 50% 이상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다.

2) 경찰

경찰청예규 제579호 「소년업무규칙」은 소년 비행 방지를 위한 경찰의 사전 예방 활동 및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선도에 관한 사무를 다루고 있다. 각 시도 경찰청은 유사한 내용을 갖춘 예규들을 각기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편의상 실효된 「소년업무규칙」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규칙에서 경찰 사무는 크게 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사전예방 활동(제2장), 비행소년의 처리(제3장)로 나뉜다.

(1) 사전예방활동

○ 학교전담경찰관

경찰의 「소년업무규칙」 제2장 제3절에서 다루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은 ‘학교폭력근절 범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배치되어 담당 학교를 지정받아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표 II-3와 같다. 경찰청 내부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정원은 1,127명, 현원은 1,114명으로 파악된다.

표 II -3. 「소년업무규칙」 학교전담경찰관 관련 조항

「소년업무규칙」 [경찰청예규 제579호, 2020. 12. 31.]

제12조(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제13조(학교전담경찰관 선발)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상담 관련 학위·자격증 소지자 및 소년업무 경력자 등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으로 선발한다.

제14조(학교전담경찰관의 임무)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사전 예방 활동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
3. 학교 내 일진 등 폭력씨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해체·선도·관리
4. 학교폭력 피해사례 접수 및 가·피해학생 상담을 통한 지원 및 선도
5. 학교와 경찰서간 연락체계 구축
6.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아동안전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과의 협력·연계를 통한 학교 내외에서의 학생 보호 활동
7. 학교 밖 청소년 탐색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등 지원
8. 아동학대·소년범죄 등 정보수집 및 가·피해 청소년 선도·지원

제15조(학교와의 협력) 학교전담경찰관은 담당 학교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업무규칙(경찰청예규 제579호, 2020. 12. 31.).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년업무규칙/\(579,20201231\)](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년업무규칙/(579,20201231))에서 2024년 5월 21일 인출.

○ 범죄예방교육

경찰의 「소년업무규칙」 제2장 제1절의 범죄예방교육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발생 학교 및 학급을 중심으로 최근 사건 및 사례 위주의 특별예방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예방교육은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등 학교를 통한 범죄예방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이 직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범죄예방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경찰청 내부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전국에서 실시된 범죄예방교육 실시 횟수는 15,670회로 집계된다.

○ 체험형 예방활동

경찰의 「소년업무규칙」 제2장 제2절에 명시된 체험형 예방활동 중 명예경찰소년소녀단

은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며 경찰서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다. 체험형 예방활동에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경찰학교도 포함된다. 2013년 6월 서울 강북경찰서의 시범 운영 이후 2014년부터 교육부(운영지원)와 경찰청(시설·장비지원)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경찰학교는 유희 치안센터를 리모델링하여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학교폭력 역할극, 경찰 체험, 심리상담 등을 실시하여 학교폭력 근절 공감대 형성 및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는 청소년경찰학교는 현재 전국에 5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경찰청 내부자료).

(2)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선도

비행소년에 관한 신고를 접수했거나 지원 대상을 발굴한 경찰은 소년이 우범소년 또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면 해당 사건(소년보호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 소년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소년일 경우에는 죄의 유무와 죄질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거나, 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 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소년형사사건으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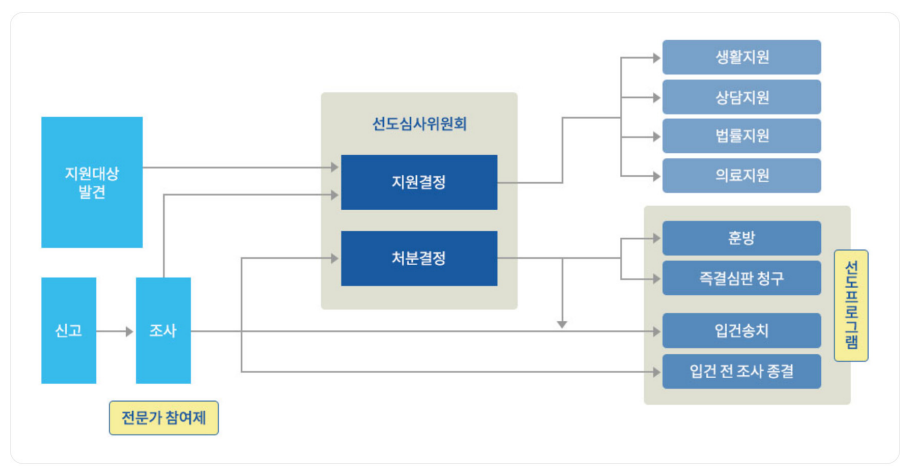


그림 II-1. 경찰단계 소년사건 처리절차

* 출처: 유스폴넷. 경찰단계 청소년 선도 제도. <https://theyouthacademy.police.go.kr/main/Content.do?cid=policy13>에서 2024년 5월 21일 인출.

○ 조사

경찰 「소년업무규칙」 제3장 제1절 일반 사건처리 절차에서는 소년사건에 대한 조사와 비행소년 사건의 송치를 다루고 있다. 경찰은 소년범이 최초로 접촉하게 되는 사법기관인 경우가 많다. 「소년업무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비행소년에 대한 출석요구와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조사를 위해 소환할 때는 소년의 학교 또는 직장에서 공공연하게 소환하는 일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 시에는 소년환경조사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 참여를 실시할 수 있다.

「소년업무규칙」 제3장 제2절에서 다루고 있는 전문가 참여제는 비행소년 조사 시에 범죄심리사가 참여하여 비행 환경 등 비행 요인을 파악하고 재비행 위험성을 분석하는 제도이다. 범죄심리사는 비행촉발요인검사, 인성검사(PAI-A: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Adolescent) 및 소년 면담을 실시하고 비행성예측자료표 등 검사 결과를 작성하게 된다. 해당 분석 결과는 수사서류에 첨부되어 경찰의 선도 방향 결정과 법원 및 검찰 처우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소년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한 경우는 2023년 기준 15,119건으로 집계되었다(경찰청 내부자료).

○ 송치

경찰 「소년업무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하여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 죄질이 중할 때에는 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여 수사하고,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범죄소년이 혐의가 없거나 사건이 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을 때는 내사종결로 처리된다. 한편, 경미한 사건은 선도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처분결정을 따르기도 한다.

○ 선도심사위원회

경찰 「소년업무규칙」 제3장 제3절은 죄질이 경미한 범죄소년의 처우 및 선도 방안을 결정하는 선도심사위원회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경찰은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선도를 통한 조기 교정을 시도하기 위해 경찰 선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감경처분 여부를 심사하고 선도 방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경찰선도제도의 중요한 요소이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형사사건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서면으로 즉결심판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반영된다. 소년법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제도에는 즉결심판 외에도 훈방이 있으며, 선도조건부 훈방을 하여 소년으로 하여금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할 수도 있다. 표 II-4는 경찰의 선도심사위원회 실시 현황이며, 표 II-5는 경찰의 「소년업무규칙」에 선도심사위원회 관련 조항을 발췌한 내용이다.

표 II-4. 경찰 선도심사위원회 실시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처분결정(명)	계	3,756	4,638	4,987
	훈방	163	174	88
	즉결심판	1,305	1,628	1,846
	입건	2,288	2,836	3,053
지원결정	지원인원(명)	계	1,699	1,711
		가해	945	1,008
		피해	754	703
	지원건수(건)	계	1,880	1,850
		생활	927	832
		상담	898	979
		의료	15	16
		법률	40	23

*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1) 즉결심판이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절차이다.

표 II-5. 「소년업무규칙」 선도심사위원회 관련 조항

「소년업무규칙」 [경찰청예규 제579호, 2020. 12. 31.]

제26조(선도심사위원회의 설치) 죄질이 경미한 범죄소년의 처우 및 선도 방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경찰서장 소속으로 선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죄질이 경미한 범죄소년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여부
2. 해당 소년에 대한 선도프로그램 연계 등 맞춤형 선도 방안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내용에 대해 심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비행의 내용, 동기, 원인, 방법 및 비행 후 정황
 2. 상습성, 재비행의 위험성
 3. 소년의 인성, 보호자 및 주거 환경
 4.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

제2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 중 외부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경찰서 여성청소년·생활안전·형사·수사과장 및 청문감사관 중에서 경찰서장이 지정하며, 외부위원은 의사, 변호사, 교사, 소년에 대한 조사·시찰·전문가, 청소년단체의 장 및 종사자 등 소년 선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경찰서장이 위촉한다.
-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경찰서 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계장을 간사로 둔다.
- ⑤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⑥ 위원이 제5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제2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의 양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한 내용을 기록한다.

제30조 (즉결심판 청구) 경찰서장은 죄질이 경미한 범죄소년에 대하여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업무규칙(경찰청예규 제579호, 2020. 12. 31.).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년업무규칙/\(579,20201231\)](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년업무규칙/(579,20201231))에서 2024년 5월 21일 인출.

○ 선도프로그램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비행소년의 재비행 방지를 위해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여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경찰 「소년업무규칙」 제3장 제4절은 경찰이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선도프로그램은 소년법에 한정되지 않고 비행청소년까지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2018년 12월 개정 이전의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15210호)상에 나와 있는 교육적 선도의 개념 및 용어와 가장 유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실무상에서 선도프로그램의 이수 결과보고서는 수사서류에 편철되어 처우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경찰의 선도프로그램은 ① 희망동행교실, ② 사랑의 교실, ③ 마음나눔교실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희망동행교실은 SPO가 전문가를 참여시켜 경찰 시스템 및 관련 매뉴얼을 활용하여 회복적 접근 방식으로 진행하는 자체 선도프로그램이다. 사랑의 교실은 청소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상담사 등 전문가가 집단상담이나 미술치료 등을 진행한다. 마음나눔교실은 치유 선도프로그램으로 신경정신과 의사 및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가가 진행하는 자기통제 및 인간관계 형성 프로그램이다. 선도프로그램의 실시 현황은 표 II-6과 같으며, 선도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은 표 II-7에 제시하였다.

표 II-6. 경찰 선도프로그램 실시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참여인원(명)		20,411	26,714	30,155
희망동행교실	운영관서(개소)	173	169	190
	이수인원(명)	6,216	10,157	12,089
사랑의교실	운영기관(개소)	244	243	244
	이수인원(명)	14,174	16,547	18,034
마음나눔교실	운영병원(개소)	43	35	36
	이수인원(명)	21	10	32

*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표 II-7. 경찰 선도프로그램 교육내용

구분		주제
표준모델 (마음나눔교실)	1회기	참여 동기 부여 및 라포 형성
	2회기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3회기	조망 수용/전환 및 공감 능력 향상
	4회기	분노조절 1
	5회기	분노조절 2
	6회기	자기 통제 및 문제해결
	7회기	의사소통 훈련
	8회기	긍정적 자아상, 희망 갖기
핵심모델 (희망동행교실, 사랑의교실)	폭력소년범 대상	1~2시간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조망 수용/전환 및 공감 능력 향상
		3~4시간 분노조절(화 다스리기)
		5~6시간 자기 통제 및 문제해결, 의사 소통 훈련
	일반소년범 대상	1~2시간 감정 인식 및 표현, 공감능력 증진
		3~4시간 긍정 및 칭찬 대화법 익히기
		5~6시간 자신의 변화모습 인식, 미래에 대한 계획 세우기

*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3) 검찰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소년의 사건은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형사사건으로 검찰로 송치된다. 「소년법」 제3장은 소년형사사건에 관해 다루고 있다. 검사는 범죄소년의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형사법원에 기소하거나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

(1) 결정 전 조사

소년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는 해당 피의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라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실무상으로는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규정」(법무부 훈령 제1393호)의 별표 1에 따라 검찰청에 대응하는 조사

담당 기관은 보호관찰소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이다. 소년법상으로는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이 검사가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이다.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서에는 인적사항(성명, 주소, 학력, 직업, 가족관계), 신체 및 정신상태(신체특징, 건강상태, 병력진단, 심리검사), 범죄관련 사항(범행개요 및 동기, 피해회복 여부, 범죄경력), 생활환경(가족사항, 생활정도, 성장과정, 학교, 직업, 교우관계), 보호자 상담(보호자 관심도, 보호능력 유무), 소년상담(진술태도, 향후 생활계획), 기타 결정 전 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한 내용이 포함된다.

소년 역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주거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의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다만 「소년법」 제55조에 따라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며, 구속할 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인 소년을 수감하는 별도의 소년구치소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2) 소년부 송치

앞서 서술하였듯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 14세 이상 범죄소년의 사건은 전건 검찰로 송치된다.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과 직접 인지한 사건을 수사하여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 법원 소년부는 검찰이 송치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여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다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를 실무상에서는 보통 역송이라고 부른다. 검찰에 역송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3) 공소의 제기(기소)

검사의 기소는 공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에 따라 구약식과 구공판으로 나뉜다. 구약식은 공판 없이 서면으로 심리하여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며, 구공판은 검사가 당사자로 참여한 가운데 법원이 원칙상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범죄소년의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에 따라 형사법원에 기소 또는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혐의의 불기소처분인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외에도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도 광의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한다. 기소유예는 단순 기소유예와 조건부 기소유예로 나누어볼 수 있다. 「소년법」 제49조의3은 소년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에 관해 다루고 있는데, 동조 제1항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선도, 제2항은 상담·교육·활동 등으로 조건부 기소유예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18년 보고서(이승현, 권해수, 2018)의 분류 기준을 따라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기타 조건부 기소유예로 나누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선도유예)는 재범가능성이 희박한 범죄소년의 선도를 법사랑위원에게 위탁하는 조건으로 내리는 기소유예 처분이다. 「소년선도보호지침」(법무부훈령 제1066호) 제6조에 따라 법사랑위원보다 더 효과적으로 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보호자, 학교 교사, 직장 상사 등에게 선도보호를 위탁할 수도 있다. 또는, 동 지침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로, 소년을 효과적으로 선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사랑위원이 아니더라도 소년의 선도보호책임을 자진하여 인수할 수 있다.

법사랑위원이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소년에 대해 상담, 지도 등을 통해 반사회성 교정과 정서의 순화,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선도보호는 크게 접촉선도와 원호선도로 나뉜다. 접촉선도는 거주지가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원호선도는 거주지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적당한 거주지인 경우에 범죄예방위원의 주거지나 복지시설에서 소년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며 이루어진다. 직접접촉이나 간접접촉을 포함하여 월 1회 이상 접촉선도를 해야 하고 필요하면 소년의 주변 인물 등과도 접촉할 수 있으며, 상담이나 지도 외에 학비보조, 취학 및 취업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효과를 거두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법사랑위원은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민간인으로 법무부훈령 제1358호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 제4조에 따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위원(소년보호위원), 법무보호위원으로 나뉜다. 각 법사랑위원의 직무는 중복될 수 있으나 동일 훈령 제3조 제1항의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에 대한 선도, 상담, 교육, 지원 등의 업무는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의 직무에만 해당한다.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법무부훈령 제1523호)에 따라 청소년선도 정책위원회의 상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위촉 후 6개월 이내에 신입교육과 매년 1회 이상의 전문화교육을 수행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선도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지청의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회장(임기 최장 8년)이 되며,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정책위원회 간사는 소년전담검사로 하되,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운영실장을 부간사로 할 수 있다. 정책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소년전담 부장검사 및 담당검사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관할 지역의 유관기관 공무원, 대학의 유관 학과 교수, 관련 단체 대표 등을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정책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회의 내용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처럼 별도의 훈령을 두어 위촉하는 청소년 범죄예방위원에게 소년을 위탁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와 지역협의회에 소속된 법사랑위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처분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표 II-8). 이는 도입 당시와 달리 법사랑위원의 전문성 부족, 대상자 욕구 미부합, 전문적인 프로그램 부재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이승현, 권해수, 2018).

표 II-8. 연도별 각 검찰청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건수

연도 청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4,548	3,473	3,413	3,409	3,495	3,031	3,000	1,315	1,037	1,824
서울중앙	179	80	42	21	11	15	19	4	13	2
서울동부	134	108	39	7	58	61	126	31	1	0

연도 청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서울남부	141	145	86	158	135	78	267	63	35	24
서울북부	204	160	113	80	99	51	48	13	36	70
서울서부	87	106	131	36	77	151	84	64	30	51
의정부	503	662	417	718	711	427	111	61	31	78
인천	243	165	119	171	69	153	52	45	73	61
수원	583	395	673	648	1,091	988	1,335	407	332	102
춘천	269	128	98	78	82	44	91	64	27	442
대전	332	270	602	295	232	117	147	36	159	235
청주	155	160	69	145	102	162	66	63	32	23
대구	344	261	127	126	64	161	162	112	46	121
부산	138	172	95	65	111	133	82	68	13	33
울산	484	157	306	261	188	247	144	25	18	129
창원	284	169	154	212	153	76	64	87	119	144
광주	387	179	140	258	260	101	127	130	56	207
전주	70	132	160	122	42	50	63	41	15	90
제주	11	24	42	8	10	16	12	1	1	12

* 출처: 대검찰청(2014~2023).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 주: 이 표는 이승현과 권해수(2018)의 보고서에 실린 표를 보충한 것임.

○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의 선도를 보호관찰관에게 위탁하는 것을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고 부른다. 보호관찰소 선도유예 대상자에 대한 선도 업무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근거한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이기도 하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법무부훈령 제1182호)은 보다 구체적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의 사무를 정하고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는 기소유예이므로 검사가 내리는 일종의 불기소처분이지만 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처분 4, 5호에 해당하는 보호관찰과 마찬가지로 선도위탁 1급 1년, 선도위탁 2급 6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20시간 이내의 상담·교육·봉사활동 등의 처분을 단독으로 부과하거나 선도위탁 1급 또는 2급과 병과할 수도 있다. 처분이 내려지면 7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

소에 출석하여 신고해야 하고 필요시 선도대상자의 주변인과 접촉 할 수 있는 것 또한 소년보호처분의 보호관찰과 유사하며, 준수사항 역시 대동소이하다. 최근 10년간 각 검찰청별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건수를 표 II-9에 제시하였다.

표 II-9. 연도별 각 검찰청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건수

연도 청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4,495	5,112	5,184	4,419	4,371	2,519	1,845	998	781	1,023
서울중앙	89	192	77	166	98	62	16	0	0	38
서울동부	73	71	59	35	26	0	0	0	0	7
서울남부	87	62	93	21	19	70	5	0	0	0
서울북부	367	198	311	36	72	79	46	9	6	11
서울서부	38	63	89	49	68	21	9	1	11	45
의정부	455	355	538	328	334	150	96	4	0	27
인천	217	511	1,021	444	700	92	152	19	34	18
수원	955	1,089	661	678	782	618	335	126	54	29
춘천	273	146	93	148	157	86	218	71	53	128
대전	179	323	306	452	357	249	306	194	228	119
청주	142	233	236	127	139	71	33	10	19	11
대구	329	442	292	518	332	223	127	75	71	39
부산	227	295	257	159	110	18	14	163	128	276
울산	141	232	105	140	185	28	25	9	0	17
창원	206	243	455	546	320	386	195	140	65	77
광주	330	427	371	379	409	177	189	87	38	158
전주	152	155	111	147	145	171	54	78	27	8
제주	235	75	109	46	118	18	25	12	47	15

* 출처: 대검찰청(2014~2023).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 주: 이 표는 이승현과 권해수(2018)의 보고서에 실린 표를 보충한 것임.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법」 제49조의3 제2항의 상담·교육·

활동 등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의 일환이다. 「비행예방교육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1369호)²⁾ 제25조는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라 검사가 의뢰한 상담·교육·활동 등의 대상자를 교육생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검사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소년은 상황에 따라 판사가 처분 전 조사로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과 함께 교육을 받게 될 수 있다(제32조 제2항). 다만, 다른 교육생은 교육 미수료 시 조치에 대해 해당 지침에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의 미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2007년 개정 이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위탁된 교육생 중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의 비율은 증감을 반복하다가 최근 3년간은 약 1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II-10). 2022년 기준 해당 건수는 3,034건으로 법사랑위원이나 보호관찰소에 위탁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건수를 훨씬 상회하였다.

표 II-10. 연도별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생 유형별 위탁 건수

연도	구분	계	학교 일반학생		검찰 기소유예자		법원 보호처분자	
			건	%	건	%	건	%
2013		23,013	19,739	85.8	2,767	12.0	507	2.2
2014		23,630	18,359	77.7	4,993	21.1	278	1.2
2015		36,638	31,298	85.4	5,123	14.0	217	0.6
2016		49,317	43,305	87.8	5,757	11.7	255	0.5
2017		54,019	48,410	89.6	5,416	10.0	193	0.4
2018		50,635	45,180	89.2	4,365	8.6	1,090	2.2
2019		48,698	41,557	85.3	4,608	9.5	2,533	5.2
2020		17,179	13,430	78.2	2,975	17.3	774	4.5
2021		19,820	15,854	80.0	2,504	12.6	1,462	7.4
2022		21,951	17,323	78.9	3,034	13.8	1,594	7.3
2023		22,386	17,702	79.1	2,896	12.9	1,788	8.0

* 출처: 법무부(2018, 2024). 법무연감. 경기: 법무부.

* 주: 이 표는 이승현과 권해수(2018)의 보고서에 실린 표를 보충한 것임.

2) 법무부훈령 제1369호는 법무부훈령 제1518호에 의해 2024년 2월 13일부로 폐지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취지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행 폐지된 해당 훈령을 살펴보았음.

○ 기타 조건부 기소유예

기타 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각 검찰청에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2023 검찰연감에서는 「소년법」 제49조의3 2항의 상담·교육·활동 등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의 일환으로 각 검찰청에서 멘토 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승현과 권해수(2018)는 대검찰청 형사2과의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검찰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기타 조건부 기소유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반에 공개된 검찰연감 등으로는 기타 조건부 기소유예의 자세한 운영 및 집행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표 II-11. 연도별 검찰 소년사건 처리 건수 중 기소유예 건수

(단위: 건(%))

연도	유형	기소유예 전체 ¹⁾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알 수 없음 ^{2,3)}
2013		34,866(100.0)	4,548(13.0)	4,495(12.9)	2,767(7.9)	23,056(66.1)
2014		28,759(100.0)	3,473(12.1)	5,112(17.8)	4,993(17.4)	15,181(52.8)
2015		28,333(100.0)	3,413(12.0)	5,184(18.3)	5,123(18.1)	14,613(51.6)
2016		26,558(100.0)	3,409(12.8)	4,419(16.6)	5,757(21.7)	12,973(48.8)
2017		25,416(100.0)	3,495(13.8)	4,371(17.2)	5,416(21.3)	12,134(47.7)
2018		20,237(100.0)	3,031(15.0)	2,519(12.4)	4,365(21.6)	10,322(51.0)
2019		19,157(100.0)	3,000(15.7)	1,845(9.6)	4,608(24.1)	9,704(50.7)
2020		15,952(100.0)	1,315(8.2)	998(6.3)	2,975(18.6)	10,664(66.9)
2021		13,420(100.0)	1,037(7.7)	781(5.8)	2,504(18.7)	9,098(67.8)
2022		15,439(100.0)	1,824(11.8)	1,023(6.6)	3,034(19.7)	9,558(61.9)

* 출처: 대검찰청(2014~2023).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 주: 1) 소년사건의 검찰청별 처리 인원의 불기소 건수 중 기소유예 건수

2) (알 수 없음) = (기소유예 전체)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 (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3) '알 수 없음'에는 단순 기소유예와 기타 조건부 기소유예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4) 법원

소년사건 중 소년보호사건은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형사사건은 법원 형사부에서 관할한다. 법원 소년부는 경찰서장·검사·법원 형사부가 송치한 소년보호사건,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직접 법원에 접수한 통고 사건 중 수리된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하고 처분 결정을 한다. 법원 형사부는 소년형사사건에 대하여 기소 전에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심사하여 발부하고 검사가 기소한 후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한다.

(1) 법원 소년부³⁾

○ 처분 전 조사

소년보호사건이 수리되면 필요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는 소년과 소년의 환경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의 조사는 조사관 조사, 전문가 진단 등이 있고, 법원 외의 조사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상담조사, 보호관찰소의 결정 전 조사,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로 나뉘 볼 수 있다.

○ 임시조치

처분 전 조사 중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개시하고 재판을 속행하여 임시조치를 통해 소년의 신병을 소년분류심사원 및 대행소년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에 위탁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및 대행소년원에 신병이 인수되어 임시위탁된 소년은 보통 1개월간 교육 및 상담과 함께 조사를 받게 된다. 임시조치를 통해 소년분류심사원 외에도 병원이나 요양소,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 또는 시설에 소년을 위탁할 수 있다. 소년이 재판에 불출석하여 심리를 개시할 수 없고 소년의 신병을 확보해야 할 때에도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하고 이를 집행하게 함으로써 임시조치를 통해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 및 대행소년원에 위탁할 수 있다.

3) 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재판에 관해서는 본 연구의 기초가 되는 박지수 외(2023)의 연구보고서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준에서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박지수 외(2023)의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13~18쪽을 참고할 것.

○ 심리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 또는 통고서와 처분 전 조사의 결과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에는 소년부 판사와 서기가 참석하여야 하고 직접 심리와 개별 심리 및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형사사건의 심리와 달리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가 없으며 보조인이 출석할 수 있다. 직접 심리의 원칙에 따라 소년이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보호자, 보조인, 조사관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리의 대상은 비행 사실과 보호의 필요성 모두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법원행정처, 2014).

○ 보조인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죄의 유무를 다투는 형사재판과 달리 검사와 변호인이 없고, 보조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보조인은 교사, 상담전문가, 보호자, 변호사 등이 될 수 있는데 보호자나 변호사가 아닌 보조인의 선임에는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법원행정처, 2014). 이는 보조인에게 심리기일 출석권, 심리기일 변경청구권, 의견 진술권, 기록 및 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권, 항고권 및 재항고권 등의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며, 비행사실과 보호의 필요성 모두를 심리하는 소년보호재판에서 보조인은 변호인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소년부의 협력자적 역할도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법원행정처, 2014).

임시조치를 통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된 소년의 심리를 위해서는 「소년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조인이 반드시 선임되어 있어야 한다. 소년 또는 보호자가 스스로 보조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년에게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고 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소년심판규칙」(대법원규칙 제2696호) 제19조의2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자격은 변호사,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 등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 결정

소년보호재판의 심리 결과로 이루어지는 결정은 중간결정, 종국결정, 종국후결정이

있다(법원행정처, 2014). 중간결정에는 다른 관할 소년부로의 사건 이송결정, 사건 병합결정,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임시위탁), 심리개시결정이 있다. 종국결정은 심리불개시결정, 검사에의 송치결정(역송치), 사건본인이 19세 이상일 경우에 형사법원으로의 이송 결정, 불처분 결정, 보호처분 결정이 있다. 종국후결정은 보호처분의 취소 및 변경 결정이 있다.

소년보호재판에서의 보호처분 결정은 형사재판에서의 형의 선고와 달리 처분 이후에도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내리는 처분 변경 결정이 가능하다(사건번호 ‘푸초’). 법무부 소속기관이 아닌 곳에 소년을 위탁하는 처분을 내릴 때는 소년의 비행에 관한 사건(사건번호 ‘푸’) 외에 보호처분의 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사건(사건번호 ‘푸집’)을 별도로 만들어 소년이 보호처분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감독할 수 있다.

(2) 법원 형사부

소년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의 예를 따르지만 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법」 제3장에 특별한 규정을 둬으로써 일반 형사사건의 법령에 대한 특별법 형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뤄진다. 여기서는 일반 형사사건의 예를 따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소년형사사건에 특별하게 적용되는 내용만을 기술하기로 하며, 법원행정처(2014)의 구분을 참고하여 심리절차와 처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심리절차상의 특징

법원 형사부는 소년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소년형사사건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한다. 검사의 결정 전 조사에 대한 설명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지만 형사처분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안이 복잡한 사건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본다(법원행정처, 2014). 소년형사사건에 관해서도 법원은 조사관에서 조사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심리에 필요할 때는 법원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판결 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이 개별 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과 유사하게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심리 역시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이 있더라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형사사건과 분리하여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심리를 할 때에는 소년보호사건에서 판사가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판결을 선고할 때를 제외하고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동법 제282조).

○ 처분상의 특칙

형을 선고할 때에도 소년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처분상의 특칙이 적용된다. 죄를 범할 당시에 18세 미만이었던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처분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소년법」 제59조),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소년법」 제60조)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다만 부정기형은 피고인이 소년인 경우에 선고하는 것이므로 범행 시뿐 아니라 선고 시에도 소년이어야 한다.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도 소년에게는 미납에 대비한 노역장 유치 기간을 선고하지 못한다(「소년법」 제62조).

5) 보호처분 및 형 집행기관

(1) 소년보호처분 집행기관⁴⁾

소년보호처분의 종류는 10가지가 있으며, 그중 몇 가지 보호처분을 동시에 내릴 수도 있다(예를 들어, 1·2호 처분, 1·2·3호 처분, 2·3·4호 처분, 5·8호 처분 등).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기관은 법무부 소속기관뿐 아니라 공공 및 민간기관 등으로 다양하며, 1호 처분의 경우는 개인이 소년의 감호를 위탁받기도 한다. 법무부 기관인 보호관찰소와 소년원을 제외하고는 각 법원이 소년을 위탁할 기관을 발굴하고 인가하여 보호처분 위탁집행을 명령하고 있다.

4) 소년보호처분에 관한 설명은 본 연구의 기초가 되는 박지수 외(2023)의 연구보고서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준에서 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박지수 외(2023)의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 18~39쪽을 참고할 것.

표 II-12.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구분	보호처분 종류	기간	연령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6호	아동복지시설 ¹⁾ ,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호	병원, 요양소, 의료재활소년원 ²⁾ 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 주: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

○ 1호 처분(보호자 등에 감호 위탁) 집행

1호 처분을 받은 소년의 감호를 법원이 위탁하는 대상은 보호자,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로 나뉜다. 보호자에게 보호 능력이 없을 때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소년의 감호를 위탁하며, 법원은 이들을 위탁보호위원으로 관리한다. 위탁보호위원은 소년과 함께 생활하지는 않으면서 정기적으로 만나 소년을 돕는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과 소년과 함께 생활하며 감호하는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나뉜다. 여성가족부 유관기관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전국 18개소, '24년 9월 기준)이 신병인수 위탁보호를 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지역사회 의견에 따라 청소년쉼터 등이 1호 처분 소년을 위탁하기도 한다.

○ 2호 처분(수강명령) 집행

2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가정 등에서 생활하면서 법원 지정한 기관에서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게 된다. 총 수강 시간과 집행 기한, 수강의 종료와 방법 및 집행기관을 법원이 지정하게 되며, 법무부의 보호관찰소가 가장 대표적인 수강명령 집행기관이다. 보호관찰소는 필요에 따라 법원에 통보한 위탁시설에 소년을 다시 위탁하기도 한다. 법원에서 직접 지정하여 수강명령을 위탁하는 기관으로는 여성가족부 유관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 보건복지부 유관기관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이 있다.

○ 3호 처분(사회봉사명령) 집행

3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가정 등에서 생활하면서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활동을 하게 된다. 법원은 총 사회봉사 시간과 집행 기간을 지정하며, 사회봉사의 종류나 방법 또는 시설을 지정할 수도 있다.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또한 법무부의 보호관찰소가 대표적인 집행기관이다. 보호관찰소는 법원의 명령을 직접 집행하기도 하고 법원에 통보한 위탁시설에 소년을 다시 위탁하여 집행하기도 한다. 사회봉사는 그 자체를 무보수 근로로 보기 때문에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고 있다.

○ 4, 5호 처분(보호관찰) 집행

4호 처분은 단기 보호관찰, 5호 처분은 장기 보호관찰로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는 처분이므로 집행기관은 법무부의 보호관찰소이다. 보호관찰관은 소년 및 보호자와의 초기 면담을 통해 분류 등급을 정하며, 이에 따라 소년과의 면담 횟수, 소년을 찾아가는 현장 방문의 횟수가 정해지게 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특별 준수사항이 별도로 정해지기도 하고, 보호관찰관의 판단과 요청에 따라 상담 및 교육, 치료 등의 부가처분이 특별 준수사항으로 추가될 수도 있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소년에게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고, 소년을 구인 및 유치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다.

○ 6호 처분(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집행

6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된다. 6호 처분은 소년을 시설 내에 수용한다는 점에서 8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 처분과 유사하지만

수용되는 시설이 법무부의 공적 시설이 아닌 사적 시설이라는 점에서 소년원 송치 처분과 구분된다. 6호 처분을 위탁집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치료시설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전국 8개소, '23년 12월 기준)이며, 그 밖에 지역사회의 여건에 따라 여성복지시설, 청소년쉼터 등에 6호 처분 소년을 위탁하기도 한다.

○ 7호 처분(병원, 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집행

보호소년 중 정신질환 등으로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소년에게는 7호 처분을 내려 의료재활소년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7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감호하는 대표적인 곳은 대전소년원 부속의원이다. 대전소년원은 의료재활소년원으로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관할 지역 소년에 대한 소년분류심사 대행소년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7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대전소년원 부속의원 외에도 병원 및 요양소에도 위탁될 수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국립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을 7호 처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소년을 위탁하는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배상균, 임정재, 김성규, 김혜경, 박찬결, 2022).

○ 8, 9, 10호 처분(소년원 송치) 집행

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1개월 이내, 9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6개월 이내,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소년원에 수용되어 생활하며 교육을 받는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10개 소년원은 모두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영소년원이며, 그중 대전소년원은 7호 처분자 수용시설로 운영된다. 나머지 9개 소년원 중 8호 처분자 수용시설은 3개(청주, 전주, 제주), 9호 처분자 수용시설은 8개(부산 제외), 10호 처분자를 수용하는 소년원은 9개 모두이다. 9개 중 여자 보호소년을 수용하는 소년원은 2개(안양, 청주)이고, 중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교과소년원은 4개이다(서울, 안양, 전주, 대구). 실무상으로 9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5개월,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은 12개월 전후로 임시퇴원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임시퇴원 후에는 남은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2) 형 집행기관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는 교정시설은 김천소년교도소와 서울남부교도소 만델

라 소년학교가 있다. 서울남부교도소 내에 설치된 만델라 소년학교는 소년수형자 대상 학과교육 중심 소년교정시설로 2023년 3월에 운영을 시작하였다. 만델라 학교가 문을 열기 전까지는 김천소년교도소가 형이 확정된 소년을 수용하는 전국 유일의 소년교정시설이었다. 김천소년교도소는 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뿐 아니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수형자가 소년교도소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까지 소년처우수용자로 계속 수용할 수 있다. 김천소년교도소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심 미결수들의 수용도 담당하고 있다.

6) 보호처분 종료 후 자립 지원 기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법률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와 동법 시행령 제6장 제2절에서 다루는 소년보호협회가 대표적이다. 앞서 지방정부 영역에서 언급하였던 청소년자립지원관도 소년보호처분 중 1호 처분 위탁집행기관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지원을 받았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호처분 종료 후 자립 지원 기관으로 포함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갱생보호의 제3절에서 다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도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의 갱생보호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여기서는 소년범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 한국소년보호협회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소년보호협회는 “보호소년등을 선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감독 하에 소년 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되는” 협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소년 등”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소년 등”으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소년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또는 유치된 소년을 말한다. 비영리 재단법인인 한국소년보호협회의 사회정착 지원사업 대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며(이승현, 권수진, 박선영, 고기원, 2022), 관련 시설로는 청소년자립생활관,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창업보육기업이 있다. 해당 사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출원자뿐 아니라 소년보호 관련 기관 추천 대상, 자립 지원이 필요한 무의탁 청소년, 저소득층 및 국민기초수급 대상 청소년을 포함한다.

○ 청소년자립생활관⁵⁾

법무부의 지원을 받는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는 현재 전국에 총 8개(강원,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안양, 의왕, 전북)의 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자립생활관은 한국소년보호협회뿐 아니라 복권기금, 포스코, 한국가스공사가 설립을 지원하였다. 입주 자격은 만 12세 이상 만 22세 이하의 청소년 중 소년보호 관련 기관 추천(의뢰) 청소년, 무의탁 청소년 중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저소득층 및 국민 기초수급대상 청소년이며, 상담 등을 거쳐 입주 판정을 받아야 정식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청소년에게는 무료로 숙식이 제공되고 후원으로 운영되는 여가 및 문화 활동, 상담 및 교육, 진학 등을 위한 학업 지원, 자립을 위한 취업 지원도 제공된다. 자립생활관마다 4명의 직원을 정원으로 두고 있으며, 8개 생활관 전체의 입주 정원은 130명이다. 그러나 2022년 12월 31일 기준 현원은 65명으로 정원의 50%에 그치며, 1일 평균 입주 인원과 신 입주 인원 모두 매년 감소하고 있어 지원 대상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13. 청소년자립생활관 입주 현황(2018~2022)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일 평균 입주 인원 ¹⁾	108	93	83	79.2	68.2
신 입주 인원 ²⁾	111	110	96	78	43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2023). 2023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p.352.

* 주: 1) 연인원을 해당연도 일수로 나눈 비율
2) 해당연도 새로 입주한 인원

○ 청소년창업비전센터⁶⁾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운영하는 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경기도 화성에 남자 청소년 대상 센터 1개소, 경기도 안산에 여자 청소년 대상 센터 1개소가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는 창업비전센터는 입주 자격 연령을 만 16세 이상 만 24세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자립생활관과 마찬가지로 소년원 출원생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 등 불우위기 청소년

5) 한국소년보호협회. 청소년 자립 생활관. <https://www.kjpa-e.or.kr/53>에서 2024년 10월 14일에 인출.

6) 한국소년보호협회 홈페이지(<https://www.kjpa-e.or.kr>) 및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홈페이지(<https://www.yesc-enter2014.co.kr>)에서 2024년 10월 14일 인출.

및 직업훈련을 통해 자립 의지가 있고 시설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다. 다만 입학 절차를 살펴보면 소년원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들이 주된 사업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교육과정은 산업기능사(온수온돌기능사/자동차정비/지게차/굴착기)와 베이커리카페과(제과제빵/바리스타), 웹툰과가 있으며,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미용 전문 기술 교육센터로 헤어미용반, 네일아트반, 피부미용반, 메이크업반을 운영한다.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화성센터의 직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12명이며, 방문형으로 운영하는 안산센터의 직원은 정원 3명에 현원 3명이 었다. 2022년 기준 1일 평균 입주 인원의 경우 정원이 40명인 화성센터는 12.3명, 정원이 20명인 안산센터는 16.5명으로 화성센터의 정원이 안산센터의 2배임에도 불구하고 1일 평균 입주 인원이나 신 교육인원 모두 안산센터가 더 많았다(표 II-14).

표 II-14.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입주 및 교육 현황(2018~2022)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화성	1일 평균 입주 인원 ¹⁾	27	16	14	10.5	12.3
	신 입주 인원 ²⁾	72	41	25	22	18
안산	1일 평균 교육 인원 ¹⁾	-	-	9	8.5	16.5
	신 교육 인원 ²⁾	-	-	27	23	22

*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2023). 2023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p.353.

* 주: 1) 연인원을 해당연도 일수로 나눈 비율
 2) 해당연도 새로 입주(교육)한 인원

3. 청소년 범죄 현황

본 절에서는 소년범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 검찰, 법원에서 집계하는 소년범죄 접수(검거)와 처리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경찰의 통계는 「경찰청범죄통계」(국가승인통계 제132004호)와 「경찰통계연보」, 검찰의 통계는 「검찰청범죄분석」(국가승인통계 제 135001호), 법원의 통계는 「사법연감」과 「법원통계월보」를 통해 살펴보았다. 경찰과 검찰의 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범죄예방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법원에서 발간하는 통계는 국가승인통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원행정처가 전국의 법원에서 입력한 전산값을 기반으로 사법연감을 편찬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소년법의 통계를 살펴보기 전에 유념해야 할 것은 사건 발생 당시 청소년의 나이에 따라 사건을 집계하는 기관이 다르다는 점이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찰이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함에 따라 검찰 통계에서는 촉법소년 수치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경찰과 검찰 통계에 2017년까지 만 14세 미만의 소년범죄자에 대한 수치가 집계되어 공표된 것은 경찰이 원칙적으로는 촉법소년에 대한 피의자원표를 작성하지 않으나 일부를 수기로 입력함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범죄에 대한 수치가 집계된 것이다. 이는 완전하지 않은 자료이므로 본 절에서는 해당 인원을 임의로 삭제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검사선의주의에 따라 소년사건이 처리되는 곳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검찰에 접수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소년의 사건은 검사가 소년형사사건으로 처리하면 검찰 통계에 집계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법원의 소년부로 송치하면 법원 통계에 집계된다. 이처럼 청소년의 나이,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관마다 소년범죄에 대한 통계 수집 절차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의 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 법원에서 각 기관별로 생산하는 정보들을 재구성하여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노력하였다.

1) 청소년 범죄 현황 및 구성비

최근 10년간 발생한 소년범 사건 인원과 성인범 대비 소년범 비율 변화는 표 II-15에 보고하였다. 이는 유죄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검거 인원 현황에 해당한다. 전체 소년범죄 검거인원은 '13년 99,001명에서 '22년 77,862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중 소년범의 나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16~17세가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최대 '15년 46.0%, 최소 '22년 31.9%). 그다음은 14~15세의 비중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13년에 18세 비중은 19.5%로 14세 미만 10.1%보다 비중이 높았지만, '22년에는 18세 인원의 비중이 16.3%로 감소하였고 14세 미만의 비중은 21.6%로 증가하였다. 전체 범죄자 중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율인 소년비를 산출한 결과, '13년 5.0%에서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다가 '22년에 5.8%로 나타났다.

표 II-15. 소년범죄 인원 및 소년비 추이(2013~2022년)

(단위: 명(%))

구분	소년범죄					성인범죄	소년비 ³⁾
	소계 ¹⁾	14세 미만 ²⁾	14~15세	16~17세	18세	검거인원	
2013	99,001 (100.0)	10,000 (10.1)	27,983 (28.3)	41,671 (42.1)	19,347 (19.5)	1,879,999	5.0
2014	84,793 (100.0)	7,236 (8.5)	23,753 (28.0)	34,457 (40.6)	19,347 (22.8)	1,773,556	4.6
2015	78,016 (100.0)	7,045 (9.0)	14,394 (18.5)	35,855 (46.0)	20,722 (26.6)	1,817,924	4.1
2016	82,946 (100.0)	7,030 (8.5)	21,319 (25.7)	35,196 (42.4)	19,401 (23.4)	1,897,655	4.2
2017	80,563 (100.0)	7,897 (9.8)	20,079 (24.9)	33,749 (41.9)	18,838 (23.4)	1,745,478	4.4
2018	75,193 (100.0)	9,051 (12.1)	19,916 (26.5)	28,819 (38.3)	17,407 (23.1)	1,637,944	4.4
2019	76,269 (100.0)	10,022 (13.1)	20,783 (27.2)	27,886 (36.6)	17,578 (23.0)	1,657,252	4.4
2020	75,064 (100.0)	10,584 (14.1)	21,080 (28.1)	27,303 (36.4)	16,097 (21.4)	1,532,005	4.7
2021	66,519 (100.0)	12,502 (18.8)	18,392 (27.6)	22,805 (34.3)	12,820 (19.3)	1,280,427	4.9
2022	77,862 (100.0)	16,836 (21.6)	23,480 (30.2)	24,818 (31.9)	12,728 (16.3)	1,271,132	5.8

* 출처: 1) 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13~2022). 범죄자 연령 통계표에서 추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DT_13501N_A029&conn_path=I3에서 2024년 10월 10일 인출 및 연구진 재가공

2) 대한민국 법원. 사법통계 법원통계월보 소년보호(2014~2022).

https://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CodeAction.work?gubun_code=G01에서 2024년 10월 11일 인출 및 연구진 재가공.

* 주: 1) 검찰청 범죄분석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 집계되었지만 일부 경찰통계에서 누락되어 수집된 통계로 정확한 수치가 아니므로 해당 인원은 보고하지 않음(2013년 471명, 2014년 37명, 2015년 64명, 2016년 84명, 2017년 93명에 해당함).

2) 법원행정처 법원통계월보 소년보호 접수사건 중 촉법소년의 접수 건수를 14세 미만 소년범죄 인원으로 활용함.

3) 소년비는 소년범/(소년범 + 성인범)×100.

4) 전체 범죄자 중 연령미상인 인원수는 식에서 제외함.

2) 경찰의 사건 처리 동향

경찰의 소년범 검거 및 조치 현황은 「경찰청범죄통계」와 「경찰통계연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서 특기할 점은 촉법소년이 포함된 학교폭력 검거 및 조치 현황이 「경찰통계연보」에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사건은 접수 당시 사건의 피해자가 ‘학생’에 해당하고, 학교폭력 죄종(예: 폭행상해,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등)에 해당할 때 학교폭력 사건으로 분류된다. 단, 가해자가 19세 이상일 때는 학교폭력 사건으로 집계되지 않는다. 「경찰통계연보」를 살펴보는 작업은 「경찰청범죄통계」의 19세 미만 소년범 통계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학교 안팎의 폭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

(1) 경찰의 소년범 주요 죄명별 검거 현황

경찰의 소년범 검거 현황은 「경찰청범죄통계」에서 제공하고 있다. 주요 죄명별 검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범죄, 강력범죄, 폭력범죄, 성폭속범죄, 교통범죄, 기타범죄로 분류하였다. 이중 강력범죄, 성폭속범죄, 교통범죄는 「경찰청범죄통계」의 죄명 분류표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재산범죄는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로 재구성하였고, 폭력범죄는 기존 분류체계에서 손괴를 제외한 수치로 보고하였으며, 기타범죄는 앞의 재산범죄, 강력범죄, 폭력범죄, 성폭속범죄, 교통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범죄의 수치를 합산하였다. 주요 죄명별 검거 현황을 산출할 때는 각 유형별로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인원은 제외하고 보고하였다.

경찰단계에 검거된 소년범죄자의 주요 죄명별 분포는 재산범죄, 폭력범죄, 기타범죄, 교통범죄, 성폭속범죄, 강력범죄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추이를 살펴보면 재산범죄는 '13년 47.7%에서 '22년 39.9%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폭력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는 소폭의 증감을 보이지만 유지하는 추세를 보였다. 눈에 띄는 변화는 성폭속범죄에서 관찰된다. '13년 0.9%에 불과하였던 성폭속범죄는 '22년 6.3%로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 분류하는 성폭속범죄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성범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II -16. 경찰단계: 소년법 주요 죄명별 검거 현황(2013~2022년)

(단위: 명(%))

구분	계	재산	강력	폭력	성폭속	교통	기타
2013	88,268 (100.0)	42,110 (47.7)	3,033 (3.4)	21,735 (24.6)	814 (0.9)	9,720 (11.0)	10,856 (12.3)
2014	77,226 (100.0)	35,339 (45.8)	2,610 (3.4)	19,287 (25.0)	800 (1.0)	9,241 (12.0)	9,949 (12.9)
2015	79,262 (100.0)	36,567 (46.1)	2,374 (3.0)	19,141 (24.1)	891 (1.1)	9,009 (11.4)	11,280 (14.2)
2016	75,679 (100.0)	32,392 (42.8)	2,407 (3.2)	19,417 (25.7)	1,258 (1.7)	9,297 (12.3)	10,908 (14.4)
2017	72,337 (100.0)	28,490 (39.4)	2,310 (3.2)	20,987 (29.0)	1,397 (1.9)	9,315 (12.9)	9,838 (13.6)
2018	65,784 (100.0)	26,119 (39.7)	2,267 (3.4)	19,680 (29.9)	1,521 (2.3)	7,391 (11.2)	8,806 (13.4)
2019	65,907 (100.0)	27,547 (41.8)	2,358 (3.6)	18,524 (28.1)	1,572 (2.4)	7,081 (10.7)	8,825 (13.4)
2020	64,152 (100.0)	28,560 (44.5)	1,898 (3.0)	14,659 (22.9)	2,162 (3.4)	7,779 (12.1)	9,094 (14.2)
2021	53,760 (100.0)	21,613 (40.2)	1,648 (3.1)	13,531 (25.2)	2,603 (4.8)	6,684 (12.4)	7,681 (14.3)
2022	60,691 (100.0)	24,230 (39.9)	1,808 (3.0)	15,296 (25.2)	3,798 (6.3)	6,611 (10.9)	8,948 (14.7)

* 출처: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2013~2022), 범죄자 범행시 연령 통계표에서 추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4101&conn_path=I3에서 2024년 10월 14일 인출 및 연구진 재가공

- * 주: 1) 경찰청범죄통계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박소년이 일부 집계되었으나 완전한 수치가 아니므로 범죄유형별 해당 인원은 제외하여 산출함(2013년 281명, 2014년 54명, 2015년 80명, 2016년 78명, 2017년 88명에 해당함)
- 2) 재산범죄는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에 해당함.
- 3) 강력범죄는 경찰청범죄통계의 분류를 활용하였음. 살인, 강도, 방화, 강간, 강제추행을 포함함.
- 4) 폭력범죄는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유인, 체포와감금, 폭력행위등에 해당함.
- 5) 성폭속범죄는 경찰청범죄통계의 분류를 활용하였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통신매체이용음란,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등,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을 포함하고 있음. 단, 경찰청범죄통계에서 2014년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을 기타범죄로 분류하였고 2015년부터 성폭속범죄로 편입되었으므로 시계열 해석 시 주의해야 함.
- 6) 교통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교통방해의죄, 특가법(도주차량), 기타교통범죄 등으로 구성함.
- 7) 기타범죄는 재산범죄, 강력범죄, 폭력범죄, 성폭속범죄, 교통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범죄유형을 합산하였음.

(2) 경찰의 소년범 조치 현황

최근 10년간 경찰의 14세 이상 소년범 조치 현황은 표 II-17에 제시하였다. 2020년까지 경찰에 입건된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의 사건은 사건이 경미한 경우 일부 내사 종결하거나, 경찰의 기소/불기소 의견과 함께 소년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2020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16924호)으로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소년사건에 대해서도 일부 독자적인 수사 종결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실무상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경미사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제도 운용 자체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는 차이가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인 '13년부터 '20년까지 소년사건은 대부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처리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인 '13년부터 '20년까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했던 비중과 조정 이후 '21년 ~ '22년에 검찰 불송치 처리 비중은 대체로 12.3%에서 17.1% 사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 소년부 송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비중은 낮은 편으로 최근 10년간 소년부 송치 의견 비중의 최댓값은 '19년 기준 2.1%에 불과하다. 이를 정리하면, 경찰은 14세 이상의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소년사건 처리에 관한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II-17. 경찰단계: 소년범 조치 현황(2013~2022년)

(단위: 명(%))

구분	계	검찰총처(기소외전)			검찰총처(불기소외전) / 불송치(2021년 이후)				검찰총처 (소년부송치외전)		이송 등 기타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취가 안됨	공소권 없음	(소년부송치외전)	
2013	88,549 (100.0)	76,586 (86.5)	1,501 (1.7)	75,085 (84.8)	10,931 (12.3)	17 (0.0)	5,341 (6.0)	223 (0.3)	5,350 (6.0)	126 (0.1)	906 (1.0)
2014	77,280 (100.0)	65,975 (85.4)	1,074 (1.4)	64,901 (84.0)	10,839 (14.0)	-	5,071 (6.6)	155 (0.2)	5,613 (7.3)	67 (0.1)	399 (0.5)
2015	79,342 (100.0)	65,641 (82.7)	1,141 (1.4)	64,500 (81.3)	12,870 (16.2)	-	6,159 (7.8)	187 (0.2)	6,524 (8.2)	367 (0.5)	464 (0.6)
2016	75,757 (100.0)	61,925 (81.7)	936 (1.2)	60,989 (80.5)	12,768 (16.9)	109 (0.1)	5,980 (7.9)	200 (0.3)	6,479 (8.6)	613 (0.8)	451 (0.6)
2017	72,425 (100.0)	58,713 (81.1)	717 (1.0)	57,996 (80.1)	12,389 (17.1)	21 (0.0)	5,687 (7.9)	190 (0.3)	6,491 (9.0)	846 (1.2)	477 (0.7)
2018	65,784 (100.0)	53,310 (81.0)	767 (1.2)	52,543 (79.9)	11,040 (16.8)	6 (0.0)	5,380 (8.2)	179 (0.3)	5,475 (8.3)	912 (1.4)	522 (0.8)
2019	65,907 (100.0)	52,974 (80.4)	687 (1.0)	52,287 (79.3)	10,878 (16.5)	11 (0.0)	5,627 (8.5)	154 (0.2)	5,086 (7.7)	1,362 (2.1)	693 (1.1)
2020	64,152 (100.0)	52,127 (81.3)	589 (0.9)	51,538 (80.3)	9,947 (15.5)	10 (0.0)	5,420 (8.4)	124 (0.2)	4,393 (6.8)	1,158 (1.8)	920 (1.4)
2021	53,760 (100.0)	44,501 (82.8)	412 (0.8)	44,089 (82.0)	8,150 (15.2)	-	4,579 (8.5)	102 (0.2)	3,469 (6.5)	-	1,109 (2.1)
2022	60,691 (100.0)	50,928 (83.9)	445 (0.7)	50,483 (83.2)	8,593 (14.2)	-	5,664 (9.3)	89 (0.1)	2,840 (4.7)	-	1,170 (1.9)

* 출처: 경찰청, 경찰범죄통계(2013~2022), 미성년범조사, 송치연, 통계표 / 미성년범조사 사법경찰관 결정 통계표, 각각 https://kosis.kr/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6214&conn_path=3 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_N603&conn_path=13에서 2024년 10월 14일 인출 및 연구진 재가공.

* 주: '21년과 '22년 소년부 송치 수치는 제공된 통계표에서 확인 불가하여 입력하지 않음. 다만, 경찰통계연보에서는 '21년 117명, '22년 0명으로 보고하고 있음(경찰청, 2023: 95).

(3)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 및 조치 현황

경찰은 소년사건에 대해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학생’이며, 사건 유형이 폭행, 상해,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학교폭력’ 사건으로 집계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학교폭력 사건 접수와 조치 현황을 표 II-18에 제시하였다. 학교폭력 접수 건수는 ’13년 17,385명에서 ’15년 12,495명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원활하던 ’20년과 ’21년에 각각 11,331명, 11,968명으로 가장 낮은 인원수를 기록하였으며,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해당 인원수는 ’22년 14,436명으로 증가하였다.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는 직접적인 폭력이나 신체접촉이 이뤄지는 폭행·상해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15년 73.5%에서 ’22년 51.4%로 감소하였다. 금품갈취도 ’13년 15.0%에서 ’22년 7.5%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성폭력은 ’13년 6.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2년에는 25.2%로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년범죄 검거 유형과 유사하게 학교 안팎에서도 성과 관련된 범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검찰송치가 ’16년 7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2년에는 40.6%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와 달리, 즉심·훈방 등의 조치는 ’16년 14.0%에 불과하였으나 ’22년에는 43.0%로 대폭 증가하였고, 소년부송치 의견도 ’22년 16.4%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즉심·훈방 등의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까지 형사사법체계에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혹은 학교폭력으로 분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다이버전을 통한 교육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표 II-18. 경찰단계: 학교폭력 유형 및 조치 현황(2013년~2022년)

(단위: 명(%))

연도	계	유형				조치 현황			
		폭행·상해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구속	불구속	소년부송치	즉심·훈방 등
2013	17,385 (100.0)	11,048 (63.5)	2,603 (15.0)	1,067 (6.1)	2,667 (15.3)	294 (1.7)	11,016 (63.4)	1,824 (10.5)	4,251 (24.5)
2014	13,268 (100.0)	8,974 (67.6)	1,582 (11.9)	1,295 (9.8)	1,417 (10.7)	167 (1.3)	8,586 (64.7)	1,191 (9.0)	3,324 (25.1)
2015	12,495 (100.0)	9,188 (73.5)	1,153 (9.2)	1,253 (10.0)	901 (7.2)	93 (0.7)	9,157 (73.3)	1,059 (8.5)	2,186 (17.5)
2016	12,805 (100.0)	9,396 (73.4)	1,161 (9.1)	1,364 (10.7)	884 (6.9)	62 (0.5)	9,852 (76.9)	1,097 (8.6)	1,794 (14.0)
2017	14,000 (100.0)	10,038 (71.7)	1,191 (8.5)	1,695 (12.1)	1,076 (7.7)	61 (0.4)	10,556 (75.4)	1,296 (9.3)	2,087 (14.9)
2018	13,367 (100.0)	7,935 (59.4)	1,377 (10.3)	2,529 (18.9)	1,526 (11.4)	86 (0.6)	9,546 (71.4)	1,319 (9.9)	2,416 (18.1)
2019	13,584 (100.0)	7,485 (55.1)	1,328 (9.8)	3,060 (22.5)	1,711 (12.6)	84 (0.6)	9,233 (68.0)	1,587 (11.7)	2,680 (19.7)
2020	11,331 (100.0)	5,863 (51.7)	1,184 (10.4)	2,462 (21.7)	1,822 (16.1)	79 (0.7)	7,710 (68.0)	1,332 (11.8)	2,210 (19.5)
2021	11,968 (100.0)	6,000 (50.1)	935 (7.8)	2,872 (24.0)	2,147 (18.0)	66 (0.6)	5,194 (43.4)	1,459 (12.2)	5,249 (43.9)
2022	14,436 (100.0)	7,413 (51.4)	1,085 (7.5)	3,631 (25.2)	2,307 (16.0)	65 (0.5)	5,791 (40.1)	2,368 (16.4)	6,212 (43.0)

* 출처: 경찰청(2023). 2022 경찰통계연보. 서울: 경찰청. p.82. 연구진 재가공.

3) 검찰단계 사건 처리 동향

(1) 검찰의 소년사건 검거 현황

검찰의 소년사건 검거 현황은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자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년사건의 주요 범죄유형별 검거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범죄분석의 재산범죄, 강력(흉악)범죄, 강력(폭력)범죄 분류를 활용하였으며, 이외에 연구진이 교통범죄와 성범죄를 추가로 구성하였다. 교통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위반 건에 해당하고,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성매수, 성착취물, 음란물등과 성매매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건으로 구성하였다. 기타범죄는 앞서 재산범죄, 강력(흉악)범죄, 강력(폭력)범죄, 교통범죄, 성범죄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범죄유형을 합산한 결과이다. 각 범죄 통계를 산출할 때 14세 미만의 인원은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검찰에 집계된 소년범의 주요 범죄유형별 검거현황은 표 II-19에 제시하였다. 최근 10년간 검찰에서 검거된 소년사건 중 전체 범죄에서 주요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재산범죄, 강력(폭력)범죄, 교통범죄, 강력(흉악)범죄, 성범죄의 순이다. 가장 비중이 큰 재산범죄는 '13년에 전체 범죄 중 50.0%를 차지하였고, 증감을 반복하다가 '22년에는 40.0%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비중이 큰 강력(폭력)범죄는 '13년부터 24.2%에서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다 '22년에는 25.3%를 차지하였다. 교통범죄는 '13년 이후 10% 초반대의 비중을 꾸준히 차지하였다. 강력(흉악)범죄는 '13년 2.7%에서 '22년 8.0%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성범죄는 1% 내외의 비중을 차지해왔다.

검찰의 소년사건 검거 현황에서 특기할 점은 강력(흉악)범죄의 증가이다(표 II-20 참고). 강력(흉악)범죄를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살인, 방화, 강도의 수치는 감소했지만('13년 783명→'22년 279명), 성폭력의 수치는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13년 1,720명→'22년 4,614명). 여기서 성폭력에는 강간, 강제추행 등과 함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허위영상물편집·배포등,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등의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성범죄가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각 세부 유형에 따른 검거 현황이 제시되지 않아 성폭력의 세부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기는 어렵다. 즉, 강력(흉악)범죄로 분류되는 성폭력이 증가하는 것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강간과 강제추행과 같은 직접적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사건의 증가세로 인함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해당 자료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19. 검찰단계: 소년사건 주요 범죄별 검거 현황(2013~2022년)

(단위: 명(%))

구분	계	재산	강력(흉악)	강력(폭력)	교통	성	기타
2013	91,216 (100.0)	45,637 (50.0)	2,503 (2.7)	22,030 (24.2)	9,814 (10.8)	1,550 (1.7)	9,682 (10.6)
2014	77,557 (100.0)	36,265 (46.8)	3,157 (4.1)	19,343 (24.9)	9,212 (11.9)	399 (0.5)	9,181 (11.8)
2015	70,971 (100.0)	32,047 (45.2)	2,712 (3.8)	17,461 (24.6)	8,559 (12.1)	440 (0.6)	9,752 (13.7)
2016	75,916 (100.0)	33,067 (43.6)	3,340 (4.4)	19,469 (25.6)	9,251 (12.2)	721 (0.9)	10,068 (13.3)
2017	72,666 (100.0)	29,039 (40.0)	3,457 (4.8)	21,033 (28.9)	9,219 (12.7)	629 (0.9)	9,289 (12.8)
2018	66,142 (100.0)	26,497 (40.1)	3,509 (5.3)	19,742 (29.8)	7,276 (11.0)	519 (0.8)	8,599 (13.0)
2019	66,247 (100.0)	27,809 (42.0)	3,665 (5.5)	18,622 (28.1)	6,940 (10.5)	415 (0.6)	8,796 (13.3)
2020	64,480 (100.0)	28,855 (44.8)	3,134 (4.9)	14,744 (22.9)	7,765 (12.0)	1,039 (1.6)	8,943 (13.9)
2021	54,017 (100.0)	21,785 (40.3)	3,606 (6.7)	13,614 (25.2)	6,675 (12.4)	665 (1.2)	7,672 (14.2)
2022	61,026 (100.0)	24,414 (40.0)	4,893 (8.0)	15,429 (25.3)	6,610 (10.8)	752 (1.2)	8,928 (14.6)

*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13~2022). 범죄자 연령 통계표에서 추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DT_13501N_A029&conn_path=I3에서 2024년 10월 10일 인출 및 연구진 재가공.

- * 주: 1) 검찰청 범죄분석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 집계되었지만 일부 경찰통계에서 누락되어 수집된 통계로 정확한 수치가 아니므로 범죄유형별 해당 인원은 제외하여 산출함.
2)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는 검찰청 범죄분석의 분류와 같음. 즉, 재산범죄는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를 포함하고, 강력범죄(흉악)은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을 포함함. 강력범죄(폭력)는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유인, 체포와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손괴, 강요, 주거침입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단체등의구성·활동)에 해당함.
3) 교통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가법(도주차량)으로 구성함.
4)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성매수, 성착취물, 음란물등과 성매매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을 포함함.
5) 기타범죄는 재산, 강력(흉악), 강력(폭력), 교통, 성범죄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범죄유형을 합산하였음.

표 II-20. 검찰단계: 소년사건 강력(흉악)범죄 세부 유형(2013~2022년)

(단위: 명(%))

구분	강력(흉악)				
	계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2013	2,503(100.0)	23(0.9)	622(24.9)	138(5.5)	1,720(68.7)
2014	3,157(100.0)	33(1.0)	405(12.8)	156(4.9)	2,563(81.2)
2015	2,712(100.0)	16(0.6)	432(15.9)	58(2.1)	2,206(81.3)
2016	3,340(100.0)	19(0.6)	317(9.5)	147(4.4)	2,857(85.5)
2017	3,457(100.0)	17(0.5)	244(7.1)	118(3.4)	3,078(89.0)
2018	3,509(100.0)	11(0.3)	215(6.1)	110(3.1)	3,173(90.4)
2019	3,665(100.0)	20(0.5)	366(10.0)	99(2.7)	3,180(86.8)
2020	3,134(100.0)	9(0.3)	324(10.3)	99(3.2)	2,702(86.2)
2021	3,606(100.0)	11(0.3)	178(4.9)	76(2.1)	3,341(92.7)
2022	4,893(100.0)	15(0.3)	169(3.5)	95(1.9)	4,614(94.3)

*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13~2022). 범죄자 연령 통계표에서 추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DT_13501N_A029&conn_path=I3에서 2024년 10월 14일 인출 및 연구진 재가공.

* 주: 검찰청 범죄분석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의 사건도 일부 집계되었으나 경찰통계에서 누락되어 수집된 통계로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인원은 제외하여 산출함 (제외건수는 2013년 강도 1명, 방화 2명 강간 15명, 2014년 성폭력 1명, 2015년 성폭력 1명, 2016년 성폭력 3명, 2017년 살인 1명, 성폭력 5명).

(2) 검찰의 소년사건 처분 현황

다음으로 검찰의 소년사건 처분 현황을 표 II-21에 제시하였다. 검찰은 소년사건에 대해 성인사건과 같이 기소와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고,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할 수 있다. 기소 결정 시에 약식기소할 사건은 ‘구약식’, 정식재판이 필요한 사건은 ‘구공판’으로 처리된다. 불기소 결정에는 유죄이지만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결정과 사건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충분한 증거가 없을 경우 내려지는 ‘혐의없음’ 결정, 사건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는 ‘죄가안됨’ 결정이 있다. 또한, 동일 사건에 대해 이미 기소가 제기되었거나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하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공소권없음’ 결정이 있다.

범죄소년의 접수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처분 인원의 수도 '13년 88,062명에서 '22년 58,896명으로 감소하였다. 검찰의 처분 중 불기소 결정은 '20년까지 전체 처분의 4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1년부터는 30%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21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1년부터 집계된 사법경찰관 결정 중 불송치 결정은 '21년 15.3%, '22년 14.6%이고 이를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합산하면 각각 44.6%, 44.4%이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소년사건의 불기소·불송치 결정은 감소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포함한 소년사건의 불기소·불송치 결정은 여전히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다이버전을 통해 해당 소년들의 재비행 예방을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검찰의 소년보호 송치(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은 '15년 31.4%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1년부터는 전체 처분 유형의 38.7%, '22년에는 40.5%로 불기소 결정 비중을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기소 결정은 전체의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검찰은 소년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기소하기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한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우선 시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표 II -21. 검찰단계: 범죄소년에 대한 처분 현황(2013~2022년)

(단위: 명(%))

연도	처분 인원	기소			불기소			소년 보호송치	가정·성매매 아동보호송치	참고인/ 기소중지	보안수사 요구(결정)	사법경찰관의 결정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기소유예	형의없음	죄기안됨	공소권없음			불송치	수사중지
2013	88,062 (100.0)	8,758 (9.9)	5,293 (6.0)	3,465 (3.9)	47,486 (53.9)	34,914 (39.6)	5,925 (6.7)	202 (0.2)	6,445 (7.3)	2,140 (2.4)	-	-	-
2014	72,947 (100.0)	7,037 (9.6)	4,191 (5.7)	2,846 (3.9)	39,548 (54.2)	27,599 (37.8)	5,371 (7.4)	182 (0.2)	6,396 (8.8)	2,568 (3.5)	-	-	-
2015	65,924 (100.0)	6,842 (10.4)	4,316 (6.5)	2,526 (3.8)	36,558 (55.5)	23,563 (35.7)	5,886 (8.9)	132 (0.2)	6,977 (10.6)	1,634 (2.5)	-	-	-
2016	72,354 (100.0)	6,688 (9.2)	4,024 (5.6)	2,664 (3.7)	39,612 (54.7)	25,752 (35.6)	6,141 (8.5)	173 (0.2)	7,546 (10.4)	1,948 (2.7)	-	-	-
2017	70,713 (100.0)	6,439 (9.1)	3,735 (5.3)	2,704 (3.8)	39,179 (55.4)	25,054 (35.4)	5,902 (8.3)	163 (0.2)	8,060 (11.4)	403 (0.6)	-	-	-
2018	64,065 (100.0)	6,902 (10.8)	4,304 (6.7)	2,598 (4.1)	33,045 (51.6)	20,405 (31.9)	5,475 (8.5)	179 (0.3)	6,981 (10.9)	445 (0.7)	-	-	-
2019	64,410 (100.0)	7,228 (11.2)	4,676 (7.3)	2,552 (4.0)	31,890 (49.5)	19,166 (29.8)	6,025 (9.4)	151 (0.2)	6,548 (10.2)	377 (0.6)	-	-	-
2020	62,546 (100.0)	8,068 (12.9)	5,559 (8.9)	2,509 (4.0)	27,462 (43.9)	16,240 (26.0)	5,830 (9.3)	119 (0.2)	5,273 (8.4)	306 (0.5)	551 (0.9)	-	-
2021	53,008 (100.0)	6,054 (11.4)	3,905 (7.4)	2,149 (4.1)	15,515 (29.3)	13,788 (26.0)	455 (0.9)	28 (0.1)	1,244 (2.3)	50 (0.1)	1,967 (3.7)	8,150 (15.3)	328 (0.6)
2022	58,896 (100.0)	6,740 (11.4)	4,372 (7.4)	2,368 (4.0)	17,562 (29.8)	15,591 (26.5)	561 (1.0)	24 (0.04)	1,386 (2.4)	46 (0.1)	1,363 (2.3)	8,592 (14.6)	448 (0.8)

*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2013~2022), 소년범죄자/소년범죄자 처분결과에서 추출. 각각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DT_135011N_A089&conn_path=12 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DT_135011N_A090&conn_path=120에서 2024년 9월 29일 인출 및 연구진 재가공.

* 주: 2014년부터 소년과 소녀의 처분결과가 별도로 제시되고 있으며, 본 표에서는 소년과 소녀의 처분결과를 합산하여 전체 소년범죄자 처분결과로 제시함.

4) 법원의 사건 처리 동향

(1)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접수 현황

법원 소년부로 접수되는 소년보호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22와 같다. 앞서 살펴본 경찰과 검찰단계의 소년사건 접수 건수가 점점 감소했던 것에 비해 '13년 43,035명이었던 법원의 소년사건 접수 건수는 '14년부터 '21년까지 약 34,000~39,000건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2년에는 43,042명으로 '13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경찰로부터 송치되는 사건과 보호자 등의 통고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경찰로부터의 송치는 '13년 9,500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의 22.1%를 차지하였으나 점점 증가하여 '22년에는 17,076건으로 39.7%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검찰단계를 거치지 않고 경찰에서 법원 소년부로 바로 송치되는 촉법소년과 우범소년 사건의 접수 증가를 의미한다.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사건을 직접 법원에 접수시키는 통고사건은 '13년 188건에서 '22년 502건으로 약 2.7배 증가하였다. 검사로부터의 송치는 법원 소년부 보호사건 접수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로이다. 전체 접수 사건에서 검사 송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13년 68.0%에 비해 '22년 54.4%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10년간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접수는 검찰의 소년부 송치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경찰에 의한 촉법소년과 우범소년 사건 송치 또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통고제를 통해 소년사건을 접수시키는 보호자와 시설장 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I-22. 법원단계: 소년보호사건 접수 동향(2013~2022년)

(단위: 명(%))

구분	계	경찰서장 송치	검사 송치	법원 송치	타 소년부 이송	보호자 등 통고
2013	43,035 (100.0)	9,500 (22.1)	29,284 (68.0)	2,695 (6.3)	1,368 (3.2)	188 (0.4)
2014	34,165 (100.0)	7,104 (20.8)	24,110 (70.6)	1,610 (4.7)	1,146 (3.4)	195 (0.6)
2015	34,075 (100.0)	6,756 (19.8)	24,527 (72.0)	1,494 (4.4)	989 (2.9)	309 (0.9)
2016	33,738 (100.0)	6,788 (20.1)	24,319 (72.1)	1,357 (4.0)	915 (2.7)	359 (1.1)
2017	34,110 (100.0)	7,743 (22.7)	24,014 (70.4)	1,124 (3.3)	876 (2.6)	353 (1.0)
2018	33,301 (100.0)	8,335 (25.0)	22,578 (67.8)	954 (2.9)	1,027 (3.1)	407 (1.2)
2019	36,576 (100.0)	10,460 (28.6)	23,511 (64.3)	876 (2.4)	1,285 (3.5)	444 (1.2)
2020	38,590 (100.0)	11,063 (28.7)	24,872 (64.5)	1,023 (2.7)	1,362 (3.5)	270 (0.7)
2021	35,438 (100.0)	12,680 (35.8)	20,260 (57.2)	733 (2.1)	1,307 (3.7)	458 (1.3)
2022	43,042 (100.0)	17,076 (39.7)	23,408 (54.4)	863 (2.0)	1,193 (2.8)	502 (1.2)

*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통계. 2013년~2022년 사법연감(통계) 소년보호사건에 해당하는 통계 추출.
<https://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ListAction.work?gubun=10>에서 2024년 10월 10일 인출.

(2) 법원 접수 소년보호사건의 주요 범죄유형별 현황

법원의 「사법연감」에서 제시하는 형법과 특별법 유형을 재산범죄, 강력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기타범죄로 재구성하여 주요 범죄유형별 접수 동향을 살펴보았다. 재산범죄는 절도, 사기, 점유이탈물등횡령, 장물의취득·알선등으로 구성하였고, 강력범죄는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구성하였다. 폭력범죄는 상해, 폭행, 존속상해·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 교통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건으로 구성하였다. 성범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성하였으며 기타범죄는 재산, 강력, 폭력, 교통, 성범죄, 우범 외 모든 유형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우범은 범죄사건은 아니지만 기타 범죄의 산출을 위해 사법통계에서 분류한 우범 수치를 활용하여 표에 제시하였다.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의 주요 범죄유형의 추이를 살펴보면, 재산범죄, 폭력범죄, 기타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는 '13년 54.3%에서 '22년 46.1%로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계속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폭력범죄가 20% 내외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기타범죄는 11%에서 15% 내외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교통범죄는 '13년 7.3%에서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다가 '22년에는 7.5%로 나타났다. 성범죄는 다른 유형의 범죄 양상과는 다르게 비중이 증가하였다. '13년에 4.0%(1,722명)였던 성범죄 비중은 '22년 7.4%(3,170명)로 교통범죄의 비중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강력범죄는 '13년 1.5%에서 '22년 1.2%로 전체 접수 건수의 1%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범의 경우,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접수 경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3년 107명에 불과하였으나 경찰에서의 송치와 통고 사건의 증가로 '22년 96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표 II-23. 법원단계: 주요 범죄유형별 접수 동향(2013~2022년)

(단위: 명(%))

구분	계	재산	강력	폭력	교통	성	우범	기타
2013	43,035 (100.0)	23,384 (54.3)	646 (1.5)	9,116 (21.2)	3,122 (7.3)	1,722 (4.0)	107 (0.2)	4,938 (11.5)
2014	34,165 (100.0)	17,923 (52.5)	619 (1.8)	7,075 (20.7)	2,717 (8.0)	1,764 (5.2)	131 (0.4)	3,936 (11.5)
2015	34,075 (100.0)	18,278 (53.6)	488 (1.4)	6,752 (19.8)	2,568 (7.5)	1,538 (4.5)	266 (0.8)	4,185 (12.3)
2016	33,738 (100.0)	16,973 (50.3)	528 (1.6)	6,512 (19.3)	2,766 (8.2)	1,876 (5.6)	367 (1.1)	4,716 (14.0)
2017	34,110 (100.0)	15,751 (46.2)	700 (2.1)	7,520 (22.0)	3,021 (8.9)	1,854 (5.4)	526 (1.5)	4,738 (13.9)
2018	33,301 (100.0)	15,548 (46.7)	494 (1.5)	7,383 (22.2)	2,513 (7.5)	2,011 (6.0)	664 (2.0)	4,688 (14.1)
2019	36,576 (100.0)	17,414 (47.6)	474 (1.3)	7,528 (20.6)	2,676 (7.3)	2,120 (5.8)	1,114 (3.0)	5,250 (14.4)
2020	38,590 (100.0)	18,960 (49.1)	511 (1.3)	6,343 (16.4)	3,246 (8.4)	2,328 (6.0)	1,446 (3.7)	5,756 (14.9)
2021	35,438 (100.0)	16,282 (45.9)	505 (1.4)	6,277 (17.7)	2,828 (8.0)	2,787 (7.9)	1,202 (3.4)	5,557 (15.7)
2022	43,042 (100.0)	19,826 (46.1)	530 (1.2)	8,567 (19.9)	3,233 (7.5)	3,170 (7.4)	960 (2.2)	6,756 (15.7)

*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통계. 2013년~2022년 사법연감(통계) 소년보호사건에 해당하는 통계 추출.
<https://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ListAction.work?gubun=10>에서 2024년 10월 10일 인출.

- * 주: 1) 재산범죄는 절도, 사기, 점유이탈물등횡령, 장물의취득 알선등에 해당함.
 2) 강력범죄는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에 해당함.
 3) 폭력범죄는 상해, 폭행, 존속상해·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에 해당함.
 4) 교통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함.
 5) 성범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함.
 6) 우범은 법원행정처 사법통계에서 분류한 우범 수치와 동일함.
 7) 기타범죄는 재산, 강력, 폭력, 교통, 성범죄, 우범 외 모든 유형을 합산하였음.

(3)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현황

법원 소년부는 접수된 보호사건에 대해 처분을 바로 내리지 않고 임시조치 결정을 통해 소년분류심사원에 보호소년을 위탁하여 조사하고 교육할 수도 있다. 임시조치 후 처분결정이 내려진 인원을 살펴보면 '13년 5,038명에서 '22년 2,845명으로 감소하였다. 법원은 소년보호사건에 대해 소년법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거나 처분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심리를 개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다시 송치하는 역송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임시조치 인원의 대부분은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으며(96% 이상), 심리불개시(1% 미만)나 불처분 결정 비중(1~2% 내외)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조치 후 보호처분 결정을 사회 내 처우, 중간 처우, 시설 내 처우로 분류하여 다시 살펴보았다. 이때, 1호~5호 처분은 사회 내 처우, 6호 처분은 중간 처우, 7호부터 10호 처분까지는 시설 내 처우로 재구성하였다. 병합처분의 경우 중간 처우와 사회 내 처우가 병과되면 중간 처우로,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가 병과되면 시설 내 처우로 분류하였으며, 병과된 처분이 모두 사회 내 처우이면 사회 내 처우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에 따라 처분 비중을 살펴보았을 때, 사회 내 처우, 시설 내 처우, 중간 처우 순이었으나 중간 처우는 '13년 7.2%에서 '22년 14.5%로 처분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반면에 시설 내 처우는 '13년 28.0%에서 '22년 22.4%로 감소하였다. 사회 내 처우 역시 '13년 61.3%에서 '22년 58.8%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4)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처분 현황

최근 10년간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법원 소년부의 처리 동향은 표 II-25와 같다.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호처분 결정은 '13년 70.4%에서 '22년 61.8%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달리, 심리불개시 결정은 '18년 16.3%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2년에는 27.0%를 차지하였다. 불처분 결정은 '14년 이후 7~8%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앞서 살펴본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의 증가와 종합하여 살펴보면, 심리가 개시되지 않아도 될 만큼 경미한 사건조차 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박지수 외, 2023).

표 II -24. 법원단계: 소년보호 임시조치(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결정) 및 처리인원(2013~2022년)

(단위: 명(%))

구분	계 ¹⁾	보호처분 ²⁾					심리불개시	불처분결정	타법원에 이송	검사에게 송치	기타
		소계	사회 내 처우	중간 처우	시설 내 처우	병과처분 기타					
2013	5,038(100.0)	4,894(97.1)	3,088(61.3)	364(7.2)	1,413(28.0)	29(0.6)	16(0.3)	100(2.0)	19(0.4)	9(0.2)	-
2014	4,154(100.0)	3,992(96.1)	2,610(62.8)	300(7.2)	1,074(25.9)	8(0.2)	31(0.7)	110(2.6)	15(0.4)	6(0.1)	-
2015	4,452(100.0)	4,273(96.0)	2,890(64.9)	312(7.0)	1,067(24.0)	4(0.1)	37(0.8)	124(2.8)	11(0.2)	7(0.2)	-
2016	3,769(100.0)	3,649(96.8)	3,036(80.6)	0(0.0)	613(16.3)	0(0.0)	24(0.6)	84(2.2)	10(0.3)	2(0.1)	-
2017	4,159(100.0)	4,059(97.6)	2,533(60.9)	353(8.5)	1,075(25.8)	98(2.4)	16(0.4)	67(1.6)	14(0.3)	3(0.1)	-
2018	4,304(100.0)	4,214(97.9)	2,682(62.3)	423(9.8)	979(22.7)	130(3.0)	12(0.3)	57(1.3)	16(0.4)	5(0.1)	-
2019	3,664(100.0)	3,569(97.4)	2,175(59.4)	437(11.9)	853(23.3)	104(2.8)	4(0.1)	57(1.6)	30(0.8)	2(0.1)	2(0.1)
2020	3,239(100.0)	3,158(97.5)	1,818(56.1)	389(12.0)	847(26.2)	104(3.2)	5(0.2)	45(1.4)	28(0.9)	3(0.1)	-
2021	2,655(100.0)	2,594(97.7)	1,547(58.3)	444(16.7)	559(21.1)	44(1.7)	3(0.1)	42(1.6)	15(0.6)	1(0.0)	-
2022	2,845(100.0)	2,783(97.8)	1,672(58.8)	413(14.5)	637(22.4)	61(2.1)	0(0.0)	49(1.7)	12(0.4)	1(0.0)	-

*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통계. 2013년~2022년 사법연감(통계) 소년보호사건에 해당하는 통계 추출.
<https://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ListAction.work?gubun=10>에서 2024년 10월 10일 인출 및 연구진 재가공.

* 주: 1)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조치(임시위탁결정) 이후 처리된 인원내 해당함.

2) 1호~5호 처분은 사회 내 처우, 6호 처분은 중간 처우, 7호부터 10호까지는 시설 내 처우로 재구성함. 병합처분의 경우 중간 처우와 사회 내 처우가 병과되면 중간 처우로,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가 병과되면 시설 내 처우로 분류하였으며, 병과된 처분이 모두 사회 내 처우이면 사회 내 처우로 분류함. 표 II-26의 구분을 참조할 것.

표 II-25. 법원단계: 소년보호사건 처리 동향(2013~2022년)

(단위: 명(%))

구분	계	보호처분	불처분	심리불개시	타법원이송	검사송치	기타
2013	45,393 (100.0)	31,952 (70.4)	2,663 (5.9)	8,065 (17.8)	2,179 (4.8)	534 (1.2)	-
2014	34,600 (100.0)	24,529 (70.9)	2,543 (7.3)	5,669 (16.4)	1,403 (4.1)	456 (1.3)	-
2015	35,920 (100.0)	25,911 (72.1)	2,763 (7.7)	5,703 (15.9)	1,093 (3.0)	450 (1.3)	-
2016	33,142 (100.0)	23,526 (71.0)	2,650 (8.0)	5,547 (16.7)	1,106 (3.3)	313 (0.9)	-
2017	34,474 (100.0)	24,383 (70.7)	2,986 (8.7)	5,676 (16.5)	1,059 (3.1)	370 (1.1)	-
2018	34,276 (100.0)	24,494 (71.5)	2,805 (8.2)	5,590 (16.3)	1,079 (3.1)	305 (0.9)	3 (0.01)
2019	34,890 (100.0)	24,131 (69.2)	2,557 (7.3)	6,556 (18.8)	1,292 (3.7)	351 (1.0)	3 (0.01)
2020	38,293 (100.0)	25,579 (66.8)	2,886 (7.5)	7,948 (20.8)	1,510 (3.9)	364 (1.0)	6 (0.02)
2021	35,064 (100.0)	22,144 (63.2)	2,728 (7.8)	8,586 (24.5)	1,401 (4.0)	191 (0.5)	14 (0.04)
2022	40,319 (100.0)	24,933 (61.8)	2,923 (7.2)	10,874 (27.0)	1,354 (3.4)	235 (0.6)	-

*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통계. 2013~2022년 사법연감(통계) 소년보호사건에 해당하는 통계 추출.

<https://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ListAction.work?gubun=10>에서 2024년 10월 10일 인출.

(5) 법원의 보호처분 현황

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사건 처리 유형 중 보호처분의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1호부터 5호까지 단독처분과 병합처분을 사회 내 처우로 분류하고, 6호 단독 처분과 병합처분을 중간 처우로 분류하였다. 또한, 7호부터 10호까지의 단독 또는 병합처분을 시설 내 처우로 구분하여 표 II-26에 제시하였다. 보호처분의 세 가지 유형 중 사회 내 처우는 80% 내외로 꾸준히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시설 내 처우는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간 처우는 '13년 3.7%에서 소폭 증가하여 '22년에는 6.1%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 보호처분의 비중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처분은 사회 내 처우의 보호자 위탁과 수강명령, 단기보호관찰 처분이 병합된 1·2·4호 처분으로 나타났다('22년 기준 전체의 15.6%). 중간 처우 중에서는 장기보호관찰과 병합된 5·6호 처분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보호처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년 3.6%에서 '22년 5.9%로 증가하였다. 시설 내 처우 중에서는 쇼크(shock) 구금의 효과를 기대했던 8호 처분과 장기보호관찰 처분이 병합된 5·8호 처분이 '13년 5.9%에서 '22년 3.0%로 감소하였다.

표 II-26. 법원단계: 보호처분 현황(2013~2022년)

(단위: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보호처분 총계	31,952 (100.0)	24,529 (100.0)	25,911 (100.0)	23,526 (100.0)	24,383 (100.0)	24,494 (100.0)	24,131 (100.0)	25,579 (100.0)	22,144 (100.0)	24,933 (100.0)
사회 내 처우 소계	25,982 (81.3)	20,429 (83.3)	21,775 (84.0)	18,910 (80.4)	18,600 (76.3)	18,416 (75.2)	18,211 (75.5)	20,012 (78.2)	17,569 (79.3)	19,721 (79.1)
1	3,822 (12.0)	2,960 (12.1)	3,771 (14.6)	3,142 (13.4)	3,135 (12.9)	3,104 (12.7)	3,103 (12.9)	3,054 (11.9)	3,079 (13.9)	3,618 (14.5)
1·2	3,522 (11.0)	2,420 (9.9)	2,609 (10.1)	2,554 (10.9)	2,504 (10.3)	2,963 (12.1)	3,143 (13.0)	3,531 (13.8)	3,606 (16.3)	3,640 (14.6)
1·2·3	646 (2.0)	445 (1.8)	581 (2.2)	557 (2.4)	727 (3.0)	776 (3.2)	574 (2.4)	776 (3.0)	676 (3.1)	522 (2.1)
1·2·4	4,020 (12.6)	3,163 (12.9)	3,696 (14.3)	3,255 (13.8)	3,025 (12.4)	3,022 (12.3)	2,844 (11.8)	3,361 (13.1)	2,990 (13.5)	3,888 (15.6)
1·2·5	1,496 (4.7)	1,026 (4.2)	803 (3.1)	1,009 (4.3)	969 (4.0)	886 (3.6)	1,048 (4.3)	1,293 (5.1)	1,403 (6.3)	1,731 (6.9)
1·2·3·4	1,557 (4.9)	1,160 (4.7)	1,627 (6.3)	1,272 (5.4)	1,393 (5.7)	1,262 (5.2)	838 (3.5)	940 (3.7)	662 (3.0)	709 (2.8)
1·2·3·5	1,901 (5.9)	1,541 (6.3)	1,571 (6.1)	1,413 (6.0)	1,519 (6.2)	1,238 (5.1)	1,269 (5.3)	1,432 (5.6)	960 (4.3)	1,171 (4.7)
1·3	1,297 (4.1)	982 (4.0)	1,133 (4.4)	851 (3.6)	851 (3.5)	754 (3.1)	759 (3.1)	743 (2.9)	468 (2.1)	426 (1.7)
1·3·4	1,868	1,844	1,832	1,194	1,086	958	915	940	591	493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5.8)	(7.5)	(7.1)	(5.1)	(4.5)	(3.9)	(3.8)	(3.7)	(2.7)	(2.0)
1·3·5	1,843 (5.8)	1,535 (6.3)	1,082 (4.2)	891 (3.8)	802 (3.3)	754 (3.1)	847 (3.5)	859 (3.4)	611 (2.8)	656 (2.6)
1·4	2,746 (8.6)	2,354 (9.6)	2,299 (8.9)	1,923 (8.2)	1,508 (6.2)	1,447 (5.9)	1,517 (6.3)	1,769 (6.9)	1,318 (6.0)	1,430 (5.7)
1·5	900 (2.8)	742 (3.0)	647 (2.5)	522 (2.2)	505 (2.1)	443 (1.8)	627 (2.6)	467 (1.8)	463 (2.1)	513 (2.1)
2	107 (0.3)	70 (0.3)	16 (0.1)	59 (0.3)	159 (0.7)	274 (1.1)	187 (0.8)	294 (1.1)	312 (1.4)	516 (2.1)
3	125 (0.4)	92 (0.4)	49 (0.2)	87 (0.4)	67 (0.3)	175 (0.7)	200 (0.8)	208 (0.8)	137 (0.6)	143 (0.6)
4	91 (0.3)	63 (0.3)	40 (0.2)	154 (0.7)	270 (1.1)	279 (1.1)	231 (1.0)	264 (1.0)	213 (1.0)	189 (0.8)
5	41 (0.1)	32 (0.1)	19 (0.1)	27 (0.1)	80 (0.3)	81 (0.3)	109 (0.5)	81 (0.3)	80 (0.4)	76 (0.3)
중간 처우 소계	1,185 (3.7)	882 (3.6)	931 (3.6)	1,101 (4.7)	1,034 (4.2)	1,266 (5.2)	1,497 (6.2)	1,614 (6.3)	1,436 (6.5)	1,519 (6.1)
6	13 (0.04)	9 (0.04)	2 (0.01)	5 (0.02)	7 (0.03)	5 (0.02)	5 (0.02)	4 (0.02)	3 (0.01)	3 (0.01)
4·6	22 (0.1)	39 (0.2)	46 (0.2)	33 (0.1)	41 (0.2)	32 (0.1)	52 (0.2)	102 (0.4)	21 (0.1)	49 (0.2)
5·6	1,150 (3.6)	834 (3.4)	883 (3.4)	1,063 (4.5)	986 (4.0)	1,229 (5.0)	1,440 (6.0)	1,508 (5.9)	1,412 (6.4)	1,467 (5.9)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설 내 차유 소계	4,436 (13.9)	3,065 (12.5)	3,122 (12.0)	2,660 (11.3)	3,025 (12.4)	3,054 (12.5)	2,931 (12.1)	2,773 (10.8)	1,822 (8.2)	2,368 (9.5)
7	149 (0.5)	183 (0.7)	141 (0.5)	105 (0.4)	198 (0.8)	230 (0.9)	269 (1.1)	189 (0.7)	193 (0.9)	170 (0.7)
8	3 (0.01)	-	5 (0.02)	3 (0.01)	-	9 (0.04)	25 (0.1)	6 (0.02)	13 (0.1)	3 (0.01)
5·8	1,879 (5.9)	1,257 (5.1)	1,316 (5.1)	1,012 (4.3)	1,099 (4.5)	1,194 (4.9)	1,036 (4.3)	1,005 (3.9)	566 (2.6)	746 (3.0)
9	1,153 (3.6)	812 (3.3)	794 (3.1)	770 (3.3)	972 (4.0)	842 (3.4)	821 (3.4)	750 (2.9)	608 (2.7)	853 (3.4)
10	1,252 (3.9)	813 (3.3)	866 (3.3)	770 (3.3)	756 (3.1)	779 (3.2)	780 (3.2)	823 (3.2)	442 (2.0)	596 (2.4)
기타 소계	349 (1.1)	153 (0.6)	83 (0.3)	855 (3.6)	1,724 (7.1)	1,758 (7.2)	1,492 (6.2)	1,180 (4.6)	1,317 (5.9)	1,325 (5.3)

*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통계, 2013년~2022년 사법연감(통계) 소년보호사건에 해당하는 통계 추출.
<https://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IstAction.work?gubun=10>에서 2024년 10월 인출 및 연구진 재가공.

(6) 법원의 소년형사사건 사건 처리 동향

소년형사사건은 법원 형사부에서 다뤄지는 사건으로 검찰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여 법원 형사부에서 다뤄지는 경우와 법원 소년부가 보호사건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법원 형사부에 이송한 경우에 해당한다. 최근 10년간 법원 형사부의 소년형사사건의 처리 동향은 표 II-27에 제시하였다. 소년형사사건의 처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을 다시 보호사건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로, '13년 전체의 63.0%에서 '22년 42.9%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부정기형이 '13년 15.8%에서 '22년 2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정기형은 계속해서 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집행유예는 소년부송치와 부정기형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여 '22년에는 전체의 17.7%가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 - 27. 법원단계: 제1심 소년형사사건 처리 동향(2013~2022년)

(단위: 명(%))

구분	계	생명형	징역·금고				집행유예 재산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소년부송치	기타
			무기	징기 2년 미만	징기 2년 이상	징기 3년 이상	부장기형					
2013	4,268(100.0)	-	-	1(0.02)	-	2(0.1)	676(15.8)	407(9.5)	145(3.4)	12(0.3)	2,689(63.0)	321(7.5)
2014	3,574(100.0)	-	-	11(0.3)	2(0.1)	1(0.03)	634(17.7)	405(11.3)	110(3.1)	7(0.2)	2,082(58.3)	307(8.6)
2015	3,516(100.0)	-	-	4(0.1)	2(0.1)	1(0.03)	630(17.9)	440(12.5)	102(2.9)	18(0.5)	1,981(56.3)	320(9.1)
2016	3,242(100.0)	-	-	1(0.03)	1(0.03)	1(0.03)	697(21.5)	395(12.2)	94(2.9)	8(0.2)	1,721(53.1)	311(9.6)
2017	2,716(100.0)	-	1(0.03)	2(0.1)	-	2(0.1)	502(18.5)	386(14.2)	109(4.0)	19(0.7)	1,428(52.6)	247(9.1)
2018	2,841(100.0)	-	-	-	-	-	626(22.0)	367(12.9)	77(2.7)	15(0.5)	1,419(49.9)	319(11.2)
2019	3,036(100.0)	-	-	4(0.1)	-	-	712(23.5)	546(18.0)	78(2.6)	10(0.3)	1,386(45.7)	294(9.7)
2020	3,278(100.0)	-	-	2(0.1)	-	-	908(27.7)	570(17.4)	72(2.2)	10(0.3)	1,325(40.4)	374(11.4)
2021	2,483(100.0)	-	-	-	-	-	779(31.4)	458(18.4)	76(3.1)	10(0.4)	884(35.6)	262(10.6)
2022	2,540(100.0)	-	-	-	-	1(0.04)	621(24.4)	449(17.7)	81(3.2)	11(0.4)	1,089(42.9)	271(10.7)

* 출처: 법원행정처(2013~2022). 사법통계. 사법연감(통계) 형사 중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19세 미만자 중요 죄명별 재판 인원수표 추출.
<https://www.scourt.go.kr/portal/justicestat/justicestatListAction.do?gubun=10>에서 2024년 10월 10일 인출.

4. 요약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 범죄를 설명하는 이론 및 관련 요인들을 살펴보고, 청소년 비행에 다루는 각 부처의 사무에 관한 현행법령 및 제도를 검토하였으며, 청소년 범죄 사건의 접수와 처리 동향을 분석하여 청소년 범죄 현황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실증연구 설계와 연구결과 해석에 필요한 논의의 배경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장의 주요 내용을 시사점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범죄는 환경 등을 포함한 구조적 요인이 중요

청소년 범죄에 관한 최근 10년간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개인의 특성이나 문제에 집중하여 범죄의 원인을 살피보기보다는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증연구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범죄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 역시 청소년 범죄를 설명함에 있어서 애착과 상호작용의 대상, 사회구조의 문제 등을 특히 강조한다. 개인의 자기통제력을 강조하는 자기통제이론에서조차 충동성이나 낮은 미래 조망 능력과 같은 자기통제력 관련 특성들이 생애 초기 양육을 통해 충분히 다뤄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생애과정 관점은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이 생애과정을 거쳐 누적되며, 결정적 시기마다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생애 사건들에 따라 범죄의 길에 깊이 빠져들거나 탈비행의 계기를 만나게 될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는 청소년 범죄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범죄의 원인과 경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 개인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가정과 또래, 학교를 포함한 주변 환경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누적적 연속성을 고려할 때, 탈비행을 위한 적절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의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2) 소년형사사법체계에서 재범예방을 위한 단계별 개입 개선 검토 필요

청소년 비행에 대응하고 있는 부처들의 사무를 다루는 현행법령과 제도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고 처분을 받기까지 거치게 되는 단계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경찰, 검찰, 법원에서 사건이 접수되고 처리되는 일련의 과정, 보호처분이나 형 집행 과정과 그 이후까지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에 대응하여 적시에 개입하기 위한 여러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각 절차의 내용이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환경을 조정한다는 소년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경찰의 선도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곳이 어디이며 그 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지만 경찰의 우범 및 촉법소년 송치 건수와 선도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역시 위탁집행하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력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인데 검찰의 전체 소년형사사건 처분 현황은 '22년 기준으로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 및 불송치 결정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검찰의 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40%를 넘어서는데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과 검찰을 거쳐 소년부에 송치될 때까지 일어나는 개입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 법원 소년부의 사건 처리 현황에서는 보호처분이 6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회 내 처우와 중간 처우를 합한 비중은 전체 보호처분의 약 86%에 달한다. 해당 처분 중에는 법무부 소속기관이 아닌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처분이 상당함에도 위탁집행의 실제 운영 상황이나 효과성을 알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처분이 종료된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법무부 지원으로 설립된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운영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과 청소년창업비전센터의 지원 대상 규모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종합할 때, 소년들이 경찰과 검찰, 법원, 처분 기관 사이를 오가는 동안 소년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해당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개별 위탁기관이 자체적인 노력으로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소년법의 재범 예방 관련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각 사례를 참고하여 소년형사사법체제로 유입된 소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개입하는 각 단계별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청소년 범죄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제한된 통계 자료

앞서 청소년 범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 집계하는 소년범죄 접수와 처리 현황을 범죄유형, 연령 등에 따라 살펴보기 위해 자료를 가공하고 재구성하였다. 현재 청소년 범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부재하고, 파편적인 자료의 종합적 재구성 작업은 진입장벽이 상당하다. 또한, 경찰의 「경찰청범죄통계」와 검찰의 「검찰청범죄분석」은 국가승인통계로 관리되고 있지만 법원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 자료는 국가승인통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기관의 자료를 조합하여 청소년 범죄 동향 파악을 시도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그중 하나는 사건 발생 당시 청소년의 나이에 따라 사건을 집계하는 기관이 다르다는 점이다. 나이가 같은 소년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검사선의주의에 따라 소년형사 사건이 되면 검찰 통계에, 소년보호사건이 되면 법원 통계에 집계된다. 또한, 경찰, 검찰, 법원의 범죄 분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의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성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경찰 통계에서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성범죄를 포함하는 성폭속범죄를 별도 집계하고 있으나 검찰 통계는 성과 관련된 범죄를 모두 강력범죄의 성폭력으로 집계한다. 법원 통계는 형법의 강간, 강제추행과 특별법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라는 4개의 법률명으로 각각 묶어 두어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소년범죄는 품행의 교정뿐 아니라 환경의 조정 또한 매우 중요하며 소년법 또한 이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계자료는 법원의 「사법연감」에 매우 한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국가기관의 공식 통계자료에 재범 예방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빠져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청소년 범죄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근거에 기반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료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실증연구 설계에 대한 합의

본 장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증연구 설계에 참고할 만한 발견을 조사 및 분석계획에 반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3장에 서술한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재판 준비 메모에 등장하는 소년 정보를 개인, 가정, 또래 및 학교 요인으로 분류하고 위기요인을 코딩하였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제도 검토와 국가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해 얻은 소년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판 준비 메모에 등장하는 소년들의 범죄 이력을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4장에 서술한 개별심층면접 조사 설계에서는 범죄 관련 요인의 누적적 연속성 개념을 고려하여 다양한 처우이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면접 대상으로 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들의 생애과정과 재비행 및 탈비행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 생애사건들의 축적을 살펴보고 이들의 경험을 개인, 가정, 또래, 학교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소년형사사법절차의 각 단계별로 소년들의 경험을 살펴보기 위한 질문지를 구성하고, 청소년 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 검토 과정에서 발견한 개입 및 재범 예방 프로그램 운영 현황 정보의 부재를 면접을 통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자료를 통해서 알기 어려운 소년범들의 재범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을 적극 고려하여 현장방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경찰, 검찰, 법원의 위탁을 받아 청소년들의 재범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한 다음, 현장의 필요에 따라 우수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의 대표 사례를 5장에 정리하였다.

○ — 제3장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 1. 자료 소개
- 2. 자료 설계
- 3. 자료 분석 결과
- 4. 요약 및 시사점

1. 자료 소개

본 장에서는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다룬다. 소년보호 재판 준비 메모란 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가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소년을 재판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들을 직접 기록한 비정형 형태의 자료이다. 메모를 작성한 소년부 판사는 경찰, 소년조사관, 보호관찰관, 소년분류심사관 등이 작성한 여러 조사서의 정보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들을 축약하여 기록하였으며, 소년에 대한 처분결과 등을 재판 당일에 수기하였다.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의 물리적 구성은 대략 기일 정보, 소년에 대한 정보, 사건 정보, 가족구성원에 대한 정보, 판결 정보가 적혀있는 영역으로 나뉘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재판마다, 그리고 모든 소년마다 동일한 항목의 정보가 작성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비정형 형태의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 분석한 자료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록된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이며, 자료에 등장한 보호소년은 3,348명, 재판은 7,393건이다⁸⁾.

현재 소년의 비행에 대한 법원의 재판 결과와 소년 및 소년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정보를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는 공개 자료가 전무하여 소년범죄에 대한 연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본 자료는 지방의 한 가정법원에서 소년부 판사가 임의로 작성한 자료이며, 준비 메모가 작성된 소년보호재판 기간은 2013년 3월부터 2018년 2월에 한정된다. 본 장의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재판 준비 메모 자료의 이와 같은 지역적, 시간적 한계를 반드시 유념해야 함을 밝힌다.

7) 이 장은 한운선 교수(서울대학교)가 공동집필 하였으며, 4절의 일부는 노법래 교수(국립부경대학교)가 집필하였음.

8) 박자수 외(2023)는 본 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 자료에 포함된 소년 중 첫 번째 사건 당시 촉법소년이었던 소년 728명의 재판 메모 자료를 분석한 바 있음.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을 확장하여 자료 내에 등장하는 모든 소년에 대한 재판 준비 메모 자료 일체를 정형화하여 분석하였음. 또한, 소년의 범죄사실을 연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와 차별점이 있음을 밝힘.

2. 자료 설계

1) 분석 대상

분석 대상은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이하 재판 준비 메모)의 작성 기간(재판 기간)인 2013년 3월부터 2018년 2월에 재판 준비 메모에 등장한 모든 재판이다. 분석 대상 소년보호재판은 총 7,393건으로 보호소년은 총 3,348명에 대한 재판에 해당한다.

2) 조사표 항목

재판 준비 메모 자료의 구성을 참고하여 표 III-1과 같이 조사표를 설계하고, 종이로 된 원자료의 내용을 조사표에 따라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하여 전산화하였다. 재판 준비 메모의 내용은 자료, 결정, 소년, 가정환경, 재범 이력, 사건 특성으로 크게 나뉘볼 수 있다. 자료 특성은 재판의 개요에 해당하는 재판 개시 날짜, 시간 등의 정보와 소년의 당일 재판 순서, 재판 당시 소년의 상태(가위탁, 합의, 유치 등)에 대한 정보, 처분 전 조사 여부 등과 같은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결정 특성은 해당 재판에서 내려진 처분 결정을 의미한다. 처분 결정 정보는 판사가 재판 준비 메모 원본에 처분 내용을 수기로 직접 표시한 경우에만 해당 재판에 대한 결정으로 보았으며, 별도의 수기가 없으면 소년이 해당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코딩하였다.

소년 특성에는 소년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적혀있고 현재 소속 및 학년과 학업 상태(유예, 퇴학, 자퇴, 재학 등), 소속 변경 사항이 적혀있다. 소속의 변경은 A중학교에서 B중학교로 전학, C고등학교 자퇴 후 검정고시 합격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또한, 학교에서 받은 징계 여부 및 징계의 내용, 소년의 행동 특성(음주, 흡연, 가출 등의 정보), 신체질환, 심리정서 특성, 학업 성취 관련 내용을 담은 기타 특이사항도 소년 특성에 포함된다. 또 다른 소년 특성으로는 소년에 대한 조사관 의견이 있는데 이는 조사관을 포함한 교사, 분류심사관 등으로부터 수집된 소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건 특성 부분에 소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 역시 소년 특성으로 정보를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가출 중 비행’,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비행’과 같이 사건 특성에서 소년에 대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소년 특성에 코딩하였다. 소년 특성의 모든 정보는 텍스트 그대로 입력한 뒤 가공하였다.

가정환경 특성은 재판 준비 메모가 갖는 가장 큰 장점으로 소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년에 대한 보호력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 소년의 가족구성원 정보는 가족구성원 개별로 작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부, 모, 형제, 자매, 외조모, 외조부 등 소년의 가족구성원 유형이 적혀있고, 개별 구성원별로 결혼/이혼/별거 등의 혼인상태 관련 정보, 신체질병이나 정신질환 등의 정보, 소년과의 관계 등이 적혀있다. 이러한 가족구성원 정보는 텍스트 그대로 입력한 뒤 가공하였다.

재범 이력 특성은 본 재판 이전에 소년이 받은 기소유예, 집행유예, 보호처분, 불처분 등의 결정 정보 및 재범 날짜, 재범 사건명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사건 특성은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 날짜, 사건 발생 시간, 공범 수, 피해규모 등으로 구성된다.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 날짜, 사건 발생 시간은 재판 준비 메모에 적힌 값을 그대로 입력하였으며, 공범 수는 검거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건 내용에 나타난 공범의 수를 입력하였다. 사건 내용과 피해 규모 등은 텍스트 그대로를 입력한 뒤 분석에 적합한 방식으로 가공하였다.

표 III-1. 조사표의 구성

구분	내용
자료 특성	재판 날짜, 재판 시간, 소년 순번, 사건번호, 사건명, 가위탁/합의/유치 등 관련 정보, 처분전조사 관련 정보
결정 특성	보호처분, 임시위탁(연장), 불처분, 부가처분(보호자특별교육 등), 화해권고, 검찰송치, 이전 전과 취소 내용 등 처분결정 관련 정보
소년 특성	소년 생년월일, 현재 소속 및 학년, 현재 학업 상태, 소속 변경 사항, 학교징계 여부 및 내용, 소년 행동특성, 기타 특이사항, 소년에 대한 조사관 기타의견, 사건에서 소년의 특성이 드러난 정보 등
가정환경 특성	가족구성원 정보, 가족 특이사항, 재판과 관련된 가족 정보(소년 처분에 대한 보호자 의견 등)
재범 이력 특성	재판 날짜, 사건명, 처분 결정 정보
사건 특성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 내용, 사건날짜, 사건 발생시간, 공범 수, 피해규모 등

3) 연구변인 설계

(1) 범죄유형 사전 구축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의 범죄 사실과 보호자의 보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며,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가 없으므로 모든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에 따른 죄명이 적시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에도 대표 사건명만 기재되어 있다. 하나의 재판에서 2개 이상의 사건이 다뤄지는 경우, 1개의 사건만을 다루지만 해당 사건에 2개 이상의 범죄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등은 접수된 사건명만으로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한 각각의 범죄명을 파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를 절도하고, 절도한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이 한 건의 사건 내용이고 사건명에는 “절도 등”으로 표기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개별 사건의 범죄 사실에 대한 범죄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조사표의 사건 특성 중 사건 내용에 전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유형 사전을 구축하였다.

범죄유형 사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 및 보완을 거쳐 구축되었다. 첫째, 조사표에 따른 1차 코딩 자료를 기반으로 수집된 사건이 1개이고 사건명에 “등”이 적혀있지 않은 사건명(예를 들어, 사건명 “절도 등”은 제외, 사건명 “절도”는 포함) 176개를 도출하였다. 둘째, 법학 및 범죄학 전문가 2인에게 176개 사건명에 대하여 사전 분류 작업을 요청하고, 2024년 7월 3일 전문가 2인 및 연구진 4인(원내 3인, 원외 1인)이 참여하는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건명 분류작업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합의된 범죄유형은 대분류 10개, 소분류는 20개이며 구체적으로는,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성관련 범죄(성매매, 물리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손괴, 장물), 폭력범죄, 교통범죄, 문서범죄, 도박범죄, 약물범죄, 기타범죄, 소년법 관련 사건(우범, 통고)이다. 셋째, 범죄유형 사전을 통해 나타난 소분류 20개 범죄유형을 기반으로 사건명에 “등”이 적혀있지 않은 사건명 176개의 범죄유형을 우선 분류한 다음, 해당 사건 내용에 등장한 키워드를 활용하여 범죄유형 키워드 사전을 구축하였다. 넷째, 사건이 2개 이상이며, 사건명에 “등”이 적혀있는 경우에는 앞서 구축한 키워드 사전에 따라 범죄유형을 분류하였다. 다섯째, 사건명이 2개 이상의 범죄유형으로 분류된 경우, 연구진 간 교차검증을 실시하여 사건 내용에 중복된 키워드가 사용되어 오분류가 된 것은 아닌지 검수하였다. 예를 들어, “수리비”라는 키워드가 사건 내용에 나타난 경우에는 손괴범죄로 인한 수리비 발생인지, 교통범죄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 발생인지 검수하였다. 마지막으로, 재판에 접수

된 사건명이 사건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불완전하여 분류가 어려운 경우를 별도로 선별하여 형법 및 소년법 전문가 2인의 자문을 통해 교차검증하여 사건을 분류하였다. 범죄유형 사전에 따라 분류된 데이터에서 해당 범죄유형의 빈도수가 너무 낮은 경우가 확인되면 해당 범죄를 기타범죄로 재분류하여 분류 체계를 조정하였다(문서, 도박, 약물범죄가 이에 해당함).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친 결과로 본 연구에서 확정된 범죄유형 사전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 -2. 사건명 분류 체계

구분	사건명 키워드		사건 내용 키워드(예시)
	강도	강도미수, 강도상해, 특수강도	강취, 폭치기, 날치기
강력범죄	방화	일반물건방화,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실패	① 불을 피우, 불을 피운 ② 태워, 태움, 쪄, 라이터 ③ 불 - ②, ③의 조합
	성	강간, 준강간, 강간미수, 강간치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미성년자강간, 13세미미성년자강간추행, 13세미미성년자위계등강간, 13세미미성년자위계등추행, 13세미미성년자위계등상해, 정애인강간추행, 정애인위계등강간, 정애인위계등추행, 주거침입강간등, 친족관계에의한강간추행, 친족관계에의한강간추행, 특수강간, 특수강간추행, 특수준강간, 특수준강간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강간추행, 강간등상해, 강간등치상, 위계등강간, 준강간, 준강간등, 준강간추행, 준유사성행위)	① 강간, 강간, 윤간, 성폭행 ② "추행" 관련 키워드 + "피해자 연령 19세 미만" OR "정애인" OR "공범있음" OR "홍기소리" ③ "성관계" 관련 키워드 + "피해자 연령 13세 미만" ④ "강간추행" + 폭력(치상, 상해)
성범죄	물리적성범죄	준강간추행, 강간추행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추행, 성적목적공중장소침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① 엉덩이, 가슴, 키스, 음부, 치마, 일복, 성기 등 ② "만질, 강제, 벗기, 벗긴, 움켜잡음, 끌어안아 등 - ①, ②의 조합
	디지털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7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① 화장실, 용변, 성기, 허벅지, 엉덩이, 나체, 성기 등 ② 촬영, 전송, 스마트폰, 동영상, 영상, 게시, 온라인 등 - ①, ②의 조합
	성매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일선영업행위등, 매매, 강요행위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아동청소년)	① 성매매, 성매수 ② "만원을받고"

구분	사건명 키워드	사건 내용 키워드(예시)
		- ①, ②의 조합
	절도, 절도미수, 특수절도, 특수절도교사, 특수절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아간조물침입절도, 아간조물침입절도미수, 아간조물침입절도, 아간조물침입절도미수	① 절취, 오절, 훔치던, 훔쳐, 절도 등 ② 금품, 빼앗, 들고, 빌린, 빌려, 자물쇠 ③ “침입, 도주, 처분, 나옴, 가져감” - ②, ③의 조합
	사기, 사기범조, 준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① 편취, 사기, 속여, “재산상 손해”, “피해금액” 등 ② 택시비, 판매, 절취한 도주, 원을, 대금, 카드, 소액결제 ③ 미지급, 송금반응, 원어처충전, 결제, 지불하지않고 등 - ②, ③의 조합
재산범죄	형령 점유이탈물형령	① 주민등록증, 스마트폰, 지동차운전면허, 카드, 지갑 등 ② 인근, 노상, 해수욕장, 골목길, 세면대, 계단, 버려진 등 ③ 습득, 가져옴, 보관, 흘린 - ①, ②, ③의 조합
	손괴 공용건물손상,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① 손괴, “수리비가 들게”, 훼손, 찌그러지게, “긁힌 자국” ② 대문, 유리창, 차량, 담배락, 책상, 승용차, 차량 등 ③ “발로차, 뺨고, 소책, 금이가게, 칼로긋어, 파손, 부숨” 등 - ②, ③의 조합
	장물 장물보관, 장물알선, 장물양도, 장물언반, 장물취득	① 취득, 장물, “건네 받음”, 건네받음, “주민증 양도” 등 ② 오토바이, 판매, 주민증, 승금, 절취해온, 절취한, 장물인 ③ “알선, 도와줌, 팔려, 팔기, 매수, 보관, 취득” 등 - ②, ③의 조합
교통범죄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기차교통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①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음주 운전” ② 오토바이, 횡단보도, 보행자, 승용차, 신호위반 등 ③ 미기입, 무면허,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폭주 등

구분	사건명 키워드	사건 내용 키워드(예시)
폭력범죄	강요, 공갈, 공갈미수,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공동공갈,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협박, 상습공갈, 우범자, 집단흉기등상해, 집단흉기등존속상해, 집단흉기등폭행), 폭행, 폭행치상, 협박	- ②, ③의 조합 ① 갈취, 폭행, 때리고, 때려, 때림, 찰과상, 위협, 협박 등 ② 목, 이마, 머리채, 얼굴, 귀, 입술, 손바닥 등 ③ 때리고, 내리침, 잡고, 조름, 넘어뜨린, 내리찍어 등 - ②, ③의 조합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경오염), 자동차관리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공정중서원본불실기재,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부정행사, 무고, 범인도피, 업무방해, 업무상과실치상, 위증, 청소년보호법위반,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모욕, 과실치상, 방실침입, 전지금융거래법위반, 보호처분집행감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기타범죄	
소년법 관련 사건	우범	기타위반
	통고	기타(통고사건), 통고, 통고사건

(2) 위기요인 사전 구축

보호소년 개인의 위기와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서의 위기 특성을 살펴보고자 재판 준비 메모에 나타난 텍스트를 활용하여 위기요인 사전을 구축하였다. 위기요인 사전은 아동가족학, 아동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박사로 이루어진 연구진 4인과 범죄심리전문가 1인 및 임상심리사 1인, 사회복지학 박사수료생 및 박사과정생 2인까지 총 8인이 참여하여 다음의 과정을 거쳐 구축하였다. 첫째, 2장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영역별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텍스트를 1차 분류하였다. 둘째, 1차 분류한 요인별 텍스트에서 세분화가 필요한 요인은 연구진 회의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추가 분류하였다. 셋째, 주요 요인의 분류에 활용된 키워드 외에 사용되지 않은 텍스트를 모두 모아 추가 분류가 가능한 키워드가 있는지 살펴보고 최종 분류에 대한 전문가 검수를 진행하였다.

최종 확정된 개인 위기요인은 심리정서 및 인지행동 특성 등을 포함하여 총 20개, 가정 위기요인은 가족구성원의 신체/정신건강, 보호력 등을 포함하여 총 14개,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은 학교폭력 가해/피해 경험, 학업중단 등을 포함하여 총 9개이다. 영역별 세부 위기요인과 요인 분류에 활용된 키워드는 표 III-3, III-4, III-5에 제시하였다.

① 개인 위기요인

표 Ⅲ-3. 개인 위기요인 세부 요인 및 키워드

연번	위기요인	키워드(예시)
1	신체질병(질환)	간질, 복강염수술, 뇌전증, 백혈병, 신장 장애, 심장수술, 요도협착증, 천식, 팔 골절, 골반염, 난청, 소아당뇨, 결핵, 시각장애1급 등
2	신체적 어려움	치통, 흉터, 어지럼증 호소, 화상, 꼬리뼈를 다침, 시력이 좋지 못함, 무릎이 좋지 않다고 함, 손가락부상, 왼쪽 다리 통증 등
3	정신과 진단 및 치료	ADHD, 공황장애, 과잉행동장애, 망우병, 분노조절장애, 불면증, 우울성 행실장애, 자폐증, 폐쇄공포증, 정신과치료 등
4	심리정서적 어려움 (내면화 문제)	가정폭력과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 무기력증, 억압감정, 자신감결여, 자존감 낮다, 정신적 쇼크, 불안증세를 보임, 수면이 잘 안됨, 자기효능감이 낮음 등
5	심리정서적 어려움 (외면화 문제)	공격적, 우발적, 충동적, 폭력적, 공격성, 분노조절, 감정조절부족, 충동조절에 문제가 있어 보임, 대소함, 입이 거칠다고 함, 다혈질 등
6	인지적 어려움	지능발달이 느려, 지적 수준이 낮아, 주의력결핍, 말이 어눌함, 경계선 지능, 지능이 낮음, 언어 이해력이 낮음, 인지기능이 떨어짐 등
7	기타 성격 특성	소심한 성격, 허영심, 허풍, 자존심이 센, 게으르고 나태함, 나태한 생활, 불성실, 내성적, 영악하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 바꾸기를 함 등
8	미디어 과의존	게임 심취, 게임중독, 인터넷과다사용, 인터넷중독, 휴대폰과다사용, 스마트폰중독, 페이스북 과다사용, 종일 SNS를 함 등
9	자살 및 자해 관련	자살, 자살 시도, 자살충동, 자해, 자해 미수, 죽고 싶다고 일기장에 씀, 자살을 하겠다는 메모 등
10	음주	음주, 알콜 의존, 폭음, 폭주, 금주, 만취상태의 비행, 술에 만취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함, 취중 비행, 술을 마심 등
11	흡연	금연, 전자 담배, 교내흡연, 금연중, 흡연, 담배 등
12	약물	본드, 환각제, 마약, 니스 등
13	재범이력	처분이력 코딩 자료 활용
14	행동특성(품행 문제 및 반사회적 행동)	규범의식 미약, 절도의 습벽, 상습적 거짓말, 무단승차, 학교에 무단 침입, 교통법규 위반, 반성 부족, 반항, 심사원 생활태도 매우 불량 등
15	기타 행동특성 (부정적 행동/활동)	상담 거부, 늦게 기상, 늦잠, 피어싱, 명품중독, 밤새도록 노는 성향, 정리정돈하지 않음, 과소비, 낭비, 밤과 낮이 바뀌어 생활 등
16	가출	가출, 외박, 상습가출, 가출시도, 무단외박, 집을 나가 생활 중 등
17	늦은 귀가 및 길거리 배회	거리 배회, 늦게 귀가, 새벽 귀가, 시내배회, 야간배회, 야간외출, 밤 12시에 귀가, 새벽 3-4시경 귀가 등
18	성 관련 욕구 및 행동	음란물, 야동, 음란사이트, 선정적, 성욕, 성행위, 문란한, 성관계 등
19	임신/낙태/출산	임신, 낙태수술, 출산, 아이는 출산한 뒤 입양됨 등
20	성폭력 피해	성폭행을 당함, 성폭력, 성추행 당함, 계부의 성추행, 조부모부터 성추행 등

② 가정 위키요인

표 Ⅲ-4. 가정 위키요인 세부 요인 및 키워드

연번	위키요인	키워드(예시)
1	가족구성원 정신적 어려움	조증, 분노조절 어려움, 정신지체, 정신과 입원, 언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 치매, 조현병, 수면제 복용, 지적 능력 부족 등
2	가족구성원 신체적 어려움	간질, 간암, 당뇨, 시각장애, 심근경색, 장애2급, 지체장애, 암, 신장질환, 허리와 다리가 아픔, 허리디스크, 건강문제, 결핵, 백내장 등
3	가족구성원의 중독	게임중독, 알코올 의존, 거의 매일 음주, 도박중독, 마약, 폭음, 알코올 의존, 마약상습투약, 경마도박 등
4	가족구성원 형 집행 유무	복역, 구치소, 마약사범, 교도소 수감 중, 가석방, 구금, 선고, 항소, 실형, 벌금형, 출소 등
5	형제자매 비행	보호관찰, 기소유예, 보호처분, 소년원, 청주소녀원, 재판 받음, 소년보호재판 중 등
6	가정 내 폭력 유무	가정폭력, 주사, 폭언, 주사폭력, 아동학대신고, 심한 체벌, 친딸 성폭행, 형에 맞아 기절, 몸싸움 등
7	보호자 사망	사망, 돌연사, 자살, 실족사, 사별, 살해 등
8	부모 이혼	이혼, 재혼, 재결합, 계부, 계모, 면접교섭, 세 번째 부인으로, 주부 두 번 혼인, 면접 단절 등
9	부모 별거/분거/가출/ 연락두절	가출, 사실혼, 결별, 연락두절, 별거, 행방, 가끔 들름, 월 2회 귀가, 절에서 생활, 소년 4세경부터 양육, 타지 거주 등
10	부모 보호력 미약	내연녀, 미혼모, 불륜, 방임, 외도, 가정의 보호력 미약, 통제력이 미약, 부가 소년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음 등
11	부모 외 양육자	고모할머니와 살고 있음, 조부모에게 맡겨, 실질적 보호자, 외조부모가 보호, 4년만 부모가 양육, 외삼촌 댁에서 생활 등
12	경제적 취약성	신용불량자, 파산신청, 빚 문제, 기초생활수급자, 극빈, 파지수거, 막노동, 부채, 개인회생, 사업 부도 등
13	가정의 보호경험	그룹홈, 위탁보호, 쉼터에서 생활, 보육원, 고아원에서 자라다 입양, 입양,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위탁모 등
14	부정적 관계(폭력 제외)	소년에 대해 무관심, 부에 대한 상처가 큼, 부와의 소통이 부족함, 부모의 강압적인 교육, 형과의 사이가 아주 나빠 등

③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

표 III-5.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 세부 요인 및 키워드

연번	위기요인	키워드(예시)
1	징계 유무	사회봉사 징계, 교내 징계, 반 교체, 징계위 회부됨, 징계처분, 학폭 징계 받은 적 有, 강제전학, 퇴학 등
2	학폭폭력 가해경험	학폭 징계 받은 적 有, 학폭법상의 징계, 학폭위 징계, 학폭법위반, 후배 폭행, 교내폭력, 친구를 왕따시키고, 학급 내 또래들을 괴롭혀 등
3	학폭폭력 피해경험	왕따를 당, 선배들에게 피해를 당,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 괴롭힘을 당, 집단폭행을 당, 학폭으로 우울증 등
4	비행친구 유무	불량친구, 의리상 저지른 비행, 불량교우관계, 불량 친구 등
5	결석(무단결석)	무단결석, 무단조퇴, 결석 과다, 조퇴, 출석일수 미달, 결석 등
6	학업중단 이력	자퇴, 등교 거부, 유예, 휴학, 중퇴, 고교 진학하지 않음, 중도 포기 등
7	재판당시 학업중단자	자퇴, 중퇴, 휴학, 유예, 퇴학
8	부정적 학교생활 및 태도	문제로 낙인, 학업스트레스, 수업분위기 저해, 교사에게 반항, 복장불량, 지도 불응, 전교 싸움 1등, 학교 가기가 두려움 등
9	낮은 학업 성취	상적은 하위권, 기초학력부족, 성적 최하위원, 고교진학 포기, 글쓰기 능력이 매우 낮음 등

(3) 피해물품 사전 구축

소년 범죄의 피해 규모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건의 피해물품 사전을 구축하였다. 사건 내용 중 피해물품에 해당하는 모든 키워드를 모아 아래와 같이 11개의 피해물품 유형으로 유목화하여 사전을 작성하였다.

표 III-6. 피해물품 분류 및 키워드

연번	피해물품	키워드(예시)
1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열쇠, 오토바이 키, 오토바이 헬멧, 전동 바이크 등
2	자전거	자전거, 산악용 자전거, 자전거 앞바퀴, 자전거 중 일부 등
3	승용차	렌터카, 승용차, 화물차, 차량, 자동차 열쇠, 택시, 차량 본넷, 승합차 등
4	전자기기	휴대폰, 노트북, 네비게이션, 모니터, 충전기, 블루투스 스피커, 외장하드 등
5	의류	원피스, 운동화, 패션모자, 가방, 반지갑, 신발, 야구유니폼, 후드티 등
6	귀금속	금목걸이, 금반지, 보석함, 손목시계, 은반지, 시계, 반지 두돈짜리 등
7	식료품	계란, 과자, 오징어, 컵라면, 도시락, 수육, 빵, 우유, 생수, 과일 등

연번	피해물품	키워드(예시)
8	술,담배	소주, 담배, 캔맥주, 보드카, 주류, 포도주, 전자담배, 맥주 등
9	신분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증, 신분증,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10	현금 및 카드	돈, 동전, 현금, 신용카드, 통장, 은행계좌, 상품권, 저금통, 금고 등
11	기타	스피드렌치, 유리창, 미용가위, 장난감, 고데기, 커터칼, 화장품 등

4) 데이터 구축 과정

재판 준비 메모 자료는 비정형 기록자료이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 양적 데이터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재판 준비 메모 자료를 코딩, 검수, 클리닝하여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로 구축하였다. 첫째, 조사표의 자료 입력 및 처리 기준에 따라 2024년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10일간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연구진 4인이 총 14명의 조사원과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둘째, 텍스트로 입력된 비정형 자료를 앞서 구축한 사전에 따라 프로그램 명령어를 사용하여 정형하는 2차 코딩 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전산화된 자료 기반으로 2개 이상의 재판 정보가 있는 소년을 식별하여 종국결정, 사건내용, 재판 당시 학업중단 상태 등 재판과 재판 사이에 변화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검수를 별도로 실시하였다. 넷째, 최종 데이터클리닝 과정을 거쳐 개인식별정보를 모두 삭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형화된 최종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5) 분석방법

(1) 재판, 사건, 소년 기준 기술통계 분석

재판 준비 메모 자료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데이터를 재판, 사건, 소년 기준으로 각각 재구성하였다. 표 III-7은 재판, 사건, 소년 기준에 따라 분석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먼저, 재판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고 재판 유형(소년보호사건, 보호처분변경신청사건, 보호처분집행감독사건 등), 종국결정 유형(불처분, 보호처분, 기타 처분), 재판일 기준 소년의 연령 정보, 종국결정까지 진행된 재판의 빈도 및 소요 기간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사건 기준 분석에서는 연도별 범죄유형 빈도, 사건 발생 시간, 공범 수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년 기준 분석에서는 최초 사건 당시 소년의 연령, 소년

1인당 재판 수 및 종국결정 수, 보호처분 이력, 위기요인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종국 결정 횟수에 따른 보호처분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표 Ⅲ-7. 재판, 사건, 소년 기준에 따른 분석 내용

구분	분석 내용
재판 기준	재판 유형, 종국결정 유형, 소년 연령별 종국결정 빈도, 종국결정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재판 수, 종국결정 소요 기간, 보호처분 유형별 빈도 등
사건 기준	재판 당 사건 수, 연도별 범죄유형 빈도, 범죄유형별 사건 발생 시간, 공범 수 등
소년 기준	최초 사건 당시 연령, 소년 1인당 재판 수, 소년 1인당 종국결정 수, 보호처분 이력, 위기요인 특성 등

(2) 소년 범죄 경로 분석

소년 범죄 경로를 파악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개입 지점과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범죄유형, 피해규모, 위기요인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는 자료 내에 등장한 소년의 사건 이력을 분석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만 5년간 축적된 재판 준비 메모 자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의 양상이 변하는지 살펴보고, 범죄 피해 규모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건의 양상에 따라 소년의 개인, 가정,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보았다.

① 사건 발달 특성

종국결정이 있는 재판만을 추출하여 소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고 해당 소년의 사건을 발생 순서에 따라 나열하였다. 우선, 사건의 발달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사건 빈도, 범죄유형 등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다음, 재판 준비 메모에서 사건이 1개만 있는 소년을 “초비행 소년”, 사건이 2개 이상인 소년을 “재비행 소년”이라 명명하고 재비행 여부에 따른 사건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첫 번째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지속해서 저지르는지 혹은 다른 범죄로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 사건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② 피해규모 특성

재산범죄와 폭력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피해금액, 피해 물품, 상해진단 일수 정보를 분석하였다. 재산범죄에서 피해금액 정보는 절도사건에서 현금 절도의 경우 재판 메모에 적혀있는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고, 물품 절도의 경우 시세가 적혀있으면 해당 정보를 피해금액으로 활용하였다(예: '1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가 피해 물품인 경우, '10만 원'의 정보를 활용함). 피해물품 정보는 물품에 해당하는 모든 키워드를 표 Ⅲ-6의 피해물품 사전에 따라 분류하였다. 폭력범죄의 피해규모는 피해자의 상해진단 정보를 활용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진단받은 정보만을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 정보는 분석에 활용하지 않고, '2주 상해' 등 구체적인 진단 일수가 기록된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규모를 산출한 다음에는 소년을 기준으로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각각 추출하여 사건 발생한 순서대로 정렬하고 피해 규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③ 위기요인 특성

앞서 사건 발달 특성에 따라 분류한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 집단 정보를 활용하여 각 집단별 개인, 가정, 학교 영역에서의 위기요인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다음, 7개의 범죄사건 유형별(강력, 성, 재산, 폭력, 교통, 기타, 소년법 관련)로 '무비행 소년', '초비행 소년', '재비행 소년'을 재분류하고 각 집단의 세부 위기요인 분석을 통해 범죄유형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④ 소년 범죄 이행 궤적 특성

소년이 경험하는 위기 요인에 따라서 범죄 이행 궤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소년을 기준으로 범죄의 연쇄 구조를 범죄유형을 중심으로 포착하고 각 유형의 전이가 어떻게 달라지는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재판 준비 메모 자료를 가공하여 사건의 순서에 따라 범죄유형을 중심으로 시퀀스(sequence) 자료를 생성하고, 생성된 자료에 대해서 은닉마르코프모형(Hidden Markov Model, HMM)을 활용하여 상태의 전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위기요인 여부에 따라서 궤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집단 비교를 실시하였다.

6) 연구윤리 심의 및 승인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는 연구진이 직접 수집하지 않은 2차 자료이지만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취급과 보안에 각별히 주의하였다. 먼저, 자료 사용 이전에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세우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승인 번호 NYPI-202401-HR-고유-001). 개인정보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기록자료 전산화를 위한 1차 코딩 작업에 참여하는 조사원 수를 최소화하였으며, 모든 조사원은 연구윤리교육이수증, 생명윤리준수서약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조사원 교육을 받은 뒤 작업에 투입되었다. 코딩 작업을 위해 조사원이 재판 준비 메모 사본을 열람할 때는 연구진의 관리 감독 아래 반출 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진이 제공한 기기에서 제한된 시간에만 코딩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1차 코딩 작업을 마친 이후에는 연구진이 직접 자료 검수와 데이터클리닝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때 익명화를 위해 소년 ID를 생성한 다음, 소년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등)와 사건 내용에 나타난 인명 등을 모두 삭제하였다. 모든 분석은 개인식별정보가 삭제된 익명화 자료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 모든 재판 준비 메모 사본은 보안파쇄 처리하였다.

3. 자료 분석 결과

1) 재판 기준 분석 결과

(1) 재판 유형에 따른 처리결과

재판의 유형과 처리에 따른 빈도를 살펴보면 표 III-8과 같다. 재판 유형은 소년보호사건 재판과 보호처분변경신청사건 및 보호처분집행감독사건 재판으로 나누었다. 소년보호사건 재판은 경찰, 검찰, 형사법원에서 송치되거나 통고제도를 통해 직접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여 시작된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재판에 해당한다. 보호처분변경신청사건 재판은 소년보호사건 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위탁받은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소년의 처분 변경을 결정하는 재판이다. 보호처분집행감독사건 재판은 1호, 6호, 7호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 법원이 집행감독사건을 직권으로 개시해 보호처분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하는 재판을 의미한다. 소년보호사건 재판은 전체 재판 7,393건의 89.8%(6,638건)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10.2%(755건)은 보호처분변경신청사건과 보호처분집행감독사건에 대한 재판이었다.

재판의 처리는 종국결정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다. 종국결정은 법원에서 소년사건을 종결하는 최종적인 결정으로, ‘보호처분’, ‘불처분’, ‘기타(검찰송치, 형사법원으로 이송, 등)’ 결정이 있다. 종국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재판은 소년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불출석’)와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내려진 경우(‘임시위탁’)에 해당하며, 그 외에 종국결정이 아닌 기타 임시조치(전문가진단, 장기시험관찰 등)를 결정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재판이 연기된 상황(속행, 연기, 구치소 구금, 교도소 수감 중인 상태 등에 해당)에 해당하는 기타 조치가 있다. 종국결정이 내려진 재판은 4,419건(59.8%)이고, 이중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진 재판이 3,879건, 불처분 결정 462건, 기타 처분 결정이 78건이었다. 종국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재판은 2,974건으로 이중 불출석은 1,637건, 임시위탁은 1,176건, 기타 조치는 161건에 해당하였다.

본 장에서 중심이 되는 분석 자료는 종국결정이 있는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재판(3,872건)이다. 보호처분변경신청사건과 보호처분집행감독사건에 대한 재판은 이전 재판에서 받은 처분을 소년이 적절히 이행하는지에 관한 재판이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종국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재판은 결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가 미완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재판 준비 메모 자료의 소년 및 가족 특성과 사건 특성 정보는 사용하지 않았다.

표 III-8. 재판 구분에 따른 처리결과

(단위: 건(%))

재판 구분 처리 구분		소년보호사건 재판		보호처분변경신청사건/ 보호처분집행감독사건 재판		소계	
중국 결정	보호처분	3,431(51.7)	3,872 (58.3)	448(59.3)	547 (72.5)	3,879(52.5)	4,419 (59.8)
	불처분	374(5.6)		88(11.7)		462(6.2)	
	기타 ^a	67(1.0)		11(1.5)		78(1.1)	
중국 결정 아님	불출석	1,509(22.7)	2,766 (41.7)	128(17.0)	208 (27.5)	1,637(22.1)	2,974 (40.2)
	임시위탁	1,109(16.7)		67(8.9)		1,176(15.9)	
	기타 ^b	148(2.2)		13(1.7)		161(2.2)	
계		6,638(100.0)		755(100.0)		7,393(100.0)	

* 주: ^a검송, 이송, 역송, 종료 등에 해당함. ^b전문가진단, 장기(시험)관찰, 속행, 연기, 구치소, 교도소에 구금되거나 수감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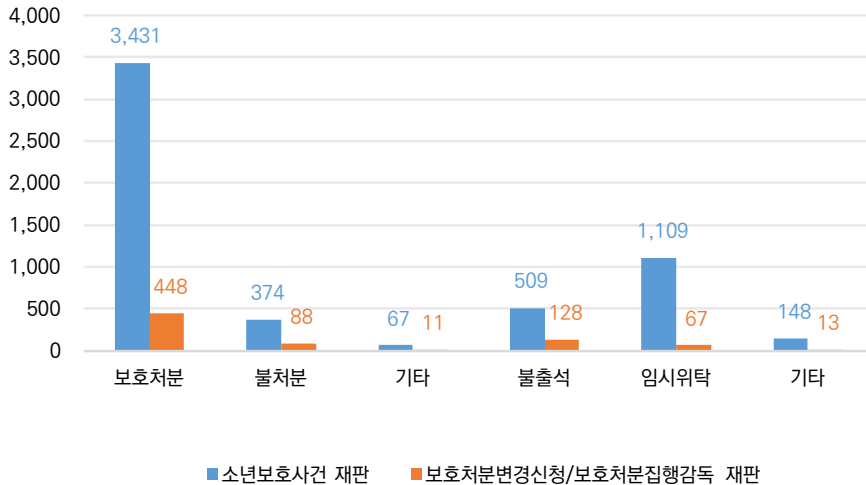


그림 III-1. 재판 구분에 따른 처리결과

(2) 중국결정 기준 연령별 재판 수

중국결정 재판일 기준 소년의 연령은 표 Ⅲ-9에 제시하였다. 자료 내에 중국결정이 있는 소년의 중국결정 당시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10세는 0.3%, 11세는 1.0%, 12세 3.0%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3세 9.5%부터 17세 22.6%까지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년의 비중도 증가하였다가 18세는 18.6%로 감소하였다.

표 Ⅲ-9. 소년 연령별(중국결정 기준) 재판 수

(단위: 명(%))

연령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소계
10세	2 (0.3)	5 (0.5)	2 (0.3)	1 (0.1)	2 (0.3)	1 (0.8)	13 (0.3)
11세	8 (1.1)	6 (0.6)	10 (1.5)	3 (0.4)	9 (1.5)	1 (0.8)	37 (1.0)
12세	22 (3.1)	33 (3.3)	12 (1.8)	29 (3.9)	18 (3.0)	4 (3.1)	118 (3.0)
13세	78 (11.0)	83 (8.2)	49 (7.2)	75 (10.1)	65 (11.0)	17 (13.0)	367 (9.5)
14세	78 (11.0)	132 (13.0)	80 (11.8)	67 (9.0)	76 (12.8)	14 (10.7)	447 (11.5)
15세	101 (14.3)	134 (13.2)	104 (15.3)	99 (13.3)	57 (9.6)	23 (17.6)	518 (13.4)
16세	138 (19.5)	168 (16.6)	148 (21.8)	158 (21.2)	130 (22.0)	24 (18.3)	766 (19.8)
17세	150 (21.2)	226 (22.3)	161 (23.7)	191 (25.6)	124 (20.9)	24 (18.3)	876 (22.6)
18세	128 (18.1)	223 (22.0)	113 (16.6)	123 (16.5)	110 (18.6)	23 (17.6)	720 (18.6)
19세	3 (0.4)	5 (0.5)	1 (0.1)	0 (0.0)	1 (0.2)	0 (0.0)	10 (0.3)
계	708 (100.0)	1,015 (100.0)	680 (100.0)	746 (100.0)	592 (100.0)	131 (100.0)	3,872 (100.0)

* 주: 1)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19세인 소년의 사건은 재판 당시 연령 기준에 따라 사건이 형사법원으로 이송되었거나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한 중국결정은 “기타”로 분류됨.

2) 2013년은 3월부터 12월, 2018년은 1월과 2월의 재판 준비 메모 자료만을 포함하고 있음에 유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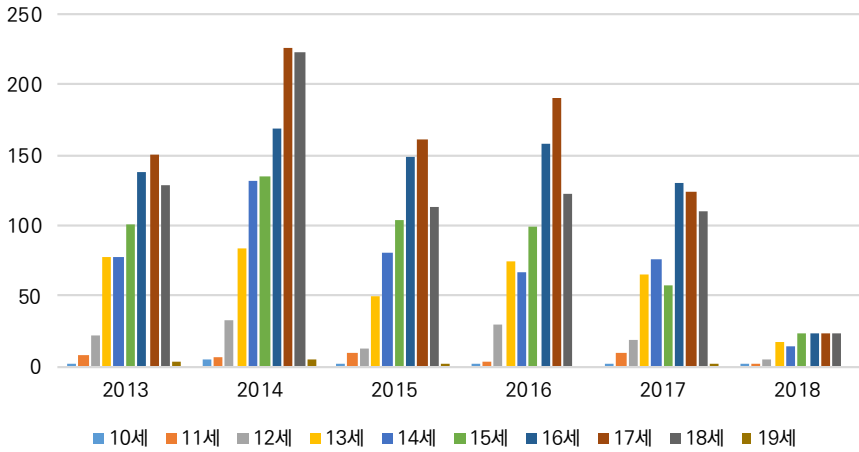


그림 III-2. 소년 연령별(종국결정 기준) 재판 수

(3) 종국결정 유형

종국결정 유형을 보호처분, 불처분, 기타로 구분하고 빈도와 비율을 표 III-10에 제시하였다. 보호처분은 사회 내 처우, 중간 처우, 시설 내 처우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병합처분의 경우에는 중간 처우와 사회 내 처우가 병과되면 중간 처우로,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가 병과되면 시설 내 처우로 분류하였으며, 사회 내 처우로만 병과된 경우에는 사회 내 처우로 분류하였다. 종국결정이 있는 재판 3,872건 중 보호처분 결정은 88.6%이며, 그중 사회 내 처우가 73.4%, 중간 처우가 5.7%, 시설 내 처우가 9.5%로 나타났다. 불처분 결정은 9.7%, 기타 처분 결정은 1.7%이었다.

표 Ⅲ-10. 소년보호사건 재판 종국결정 유형 분포

처우		소년보호사건	
		사례수(건)	비율(%)
보호처분	사회 내 처우	2,842	73.4
	중간 처우	220	5.7
	시설 내 처우	369	9.5
불처분		374	9.7
기타		67	1.7
계		3,872	100.0

- * 주: 1) 사회 내 처우는 중간 처우와 시설 내 처우가 포함되지 않은 1호에서 5호까지의 처분에 해당함.
 2) 중간 처우는 1호 처분 중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쉼터 등의 시설에 위탁한 경우와 6호 처분에 해당함.
 3) 시설 내 처우는 7호부터 10호 처분에 해당함.
 4) 기타는 검찰송치, 화해권고 등 보호처분과 불처분 결정 이외의 판결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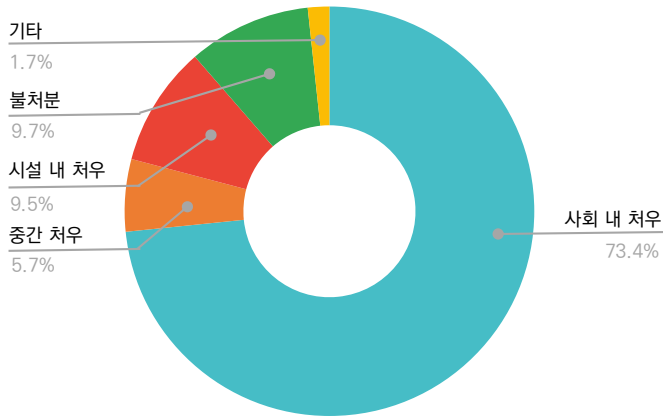


그림 Ⅲ-3. 소년보호사건 재판 종국결정 처우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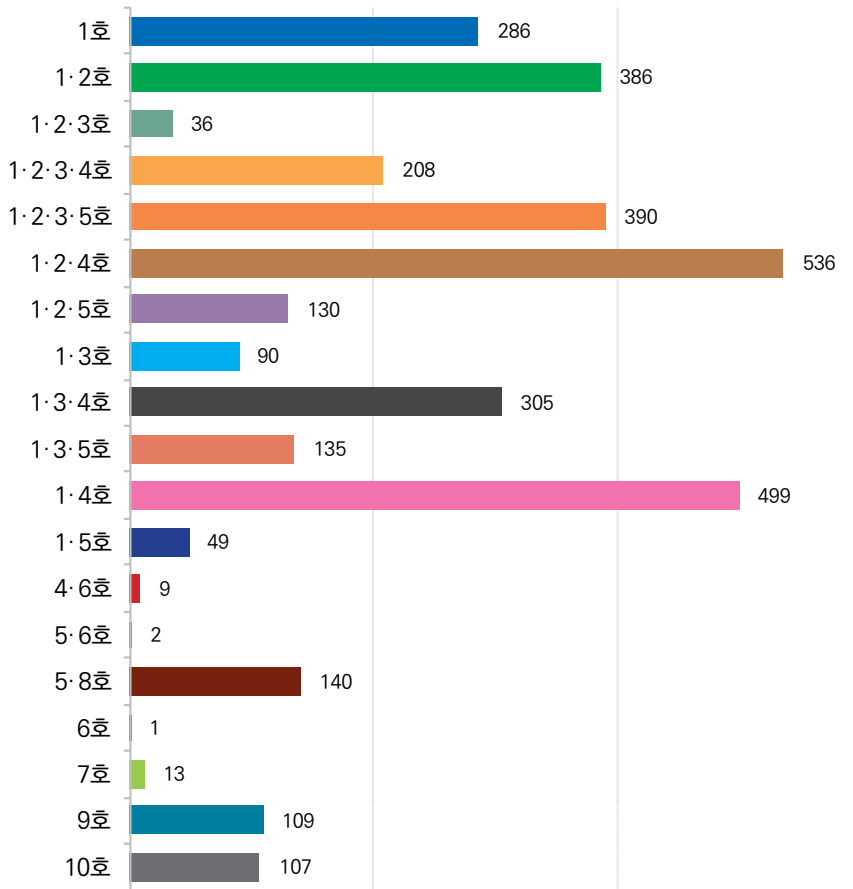
(4) 재판 기준 보호처분별 빈도

종국결정이 내려진 재판의 보호처분의 빈도를 살펴보면 표 Ⅲ-11과 같다. 병합처분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처분은 1·2·4호 15.6%, 1·4호 14.5%, 1·2·3·5호 11.4% 순이었다. 이처럼 보호처분 결정 중 대부분은 보호자 위탁 처분인 1호와 보호관찰 처분(4, 5호)이 병합되는 비중이 가장 크고, 수강명령에 해당하는 2호 처분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III-11. 보호처분별 빈도: 병합처분

구분	빈도(건)	비율(%)
1호	286	8.3
1·2호	386	11.3
1·2·3호	36	1.0
1·2·3·4호	208	6.1
1·2·3·5호	390	11.4
1·2·4호	536	15.6
1·2·5호	130	3.8
1·3호	90	2.6
1·3·4호	305	8.9
1·3·5호	135	3.9
1·4호	499	14.5
1·5호	49	1.4
4·6호	9	0.3
5·6호	2	0.1
5·8호	140	4.1
6호	1	0.0
7호	13	0.4
9호	109	3.2
10호	107	3.1
계	3,431	100.0

* 주: 종국결정이 내려진 재판 3,872건 중 종국결정이 보호처분 결정인 3,431건에 대한 분석결과임.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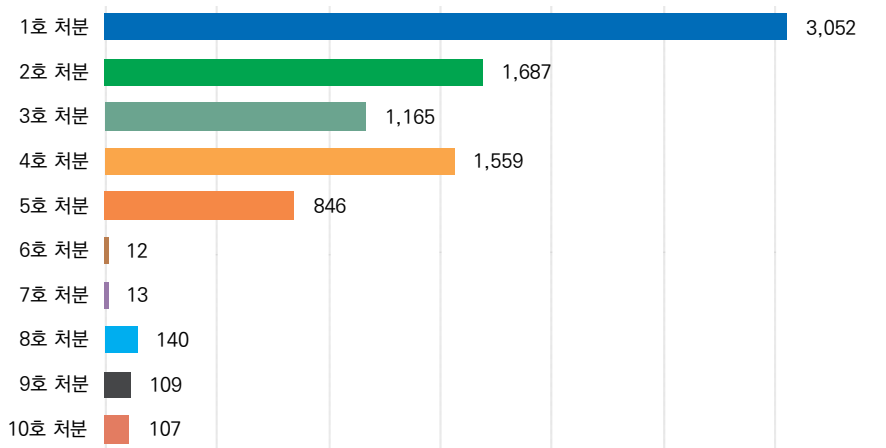
그림 III-4. 보호처분별 빈도: 병합처분

다음으로,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 처분을 독립적으로 집계한 결과를 표 III-12에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1·4호 병합처분의 경우 각각 1호와 4호로 집계하였다. 보호자 위탁인 1호 처분이 35.1%로 가장 많았고, 수감명령인 2호 처분 19.4%, 단기 보호관찰 처분인 4호가 17.9%로 순으로 나타났다. 비중이 가장 적은 처분은 중간 처우에 해당하는 6호 처분과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처분인 7호로 각각 0.1%였다.

표 III-12. 보호처분별 빈도: 개별처분

보호처분	빈도(건)	비율(%)
1호 처분	3,052	35.1
2호 처분	1,687	19.4
3호 처분	1,165	13.4
4호 처분	1,559	17.9
5호 처분	846	9.7
6호 처분	12	0.1
7호 처분	13	0.1
8호 처분	140	1.6
9호 처분	109	1.3
10호 처분	107	1.2
계	8,690	100.0

* 주: 종국결정이 있는 소년보호사건 재판 3,872건 중 보호처분이 종국결정인 3,431건에 대한 결과에 해당하며, 개별처분은 보호처분 1호에서 10호까지 독립적으로 집계한 결과임.



(단위: 건)

그림 III-5. 보호처분별 빈도: 개별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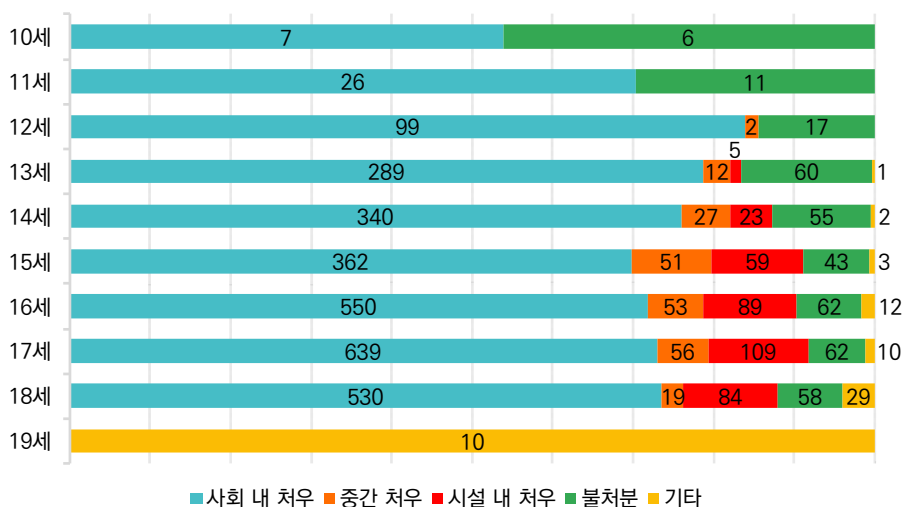
(5) 소년 연령별 종국결정 유형

소년의 연령별 종국결정 처우를 분류하여 표 III-13에 제시하였다. 종국결정 재판일 기준 10세와 11세는 사회 내 처우와 불처분 결정만을 받았고, 그중 사회 내 처우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세부터는 중간 처우 결정이 내려지기 시작하였고(1.7%), 시설 내 처우 결정은 13세부터 등장하였다(1.4%). 14세는 불처분 비중이 12.3%로 중간 처우 결정 6.0%와 시설 내 처우 결정 5.1%보다 비중이 높았지만, 15세부터는 시설 내 처우의 비중이 중간 처우 결정과 불처분 결정보다 더 높았다.

표 III-13. 소년 연령별 종국결정 유형

(단위: 명(%))

연령 \ 결정	사회 내 처우	중간 처우	시설 내 처우	불처분	기타	계
10세	7(53.8)	-	-	6(46.2)	-	13(100.0)
11세	26(70.3)	-	-	11(29.7)	-	37(100.0)
12세	99(83.9)	2(1.7)	-	17(14.4)	-	118(100.0)
13세	289(78.7)	12(3.3)	5(1.4)	60(16.3)	1(0.3)	367(100.0)
14세	340(76.1)	27(6.0)	23(5.1)	55(12.3)	2(0.4)	447(100.0)
15세	362(69.9)	51(9.8)	59(11.4)	43(8.3)	3(0.6)	518(100.0)
16세	550(71.8)	53(6.9)	89(11.6)	62(8.1)	12(1.6)	766(100.0)
17세	639(72.9)	56(6.4)	109(12.4)	62(7.1)	10(1.1)	876(100.0)
18세	530(73.6)	19(2.6)	84(11.7)	58(8.1)	29(4.0)	720(100.0)
19세	-	-	-	-	10(100.0)	10(100.0)
계	2,842(73.4)	220(5.7)	369(9.5)	374(9.7)	67(1.7)	3,872(100.0)



(단위: 명)

그림 III-6. 소년 연령별 종국결정 유형 분포

(6) 종국결정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재판 수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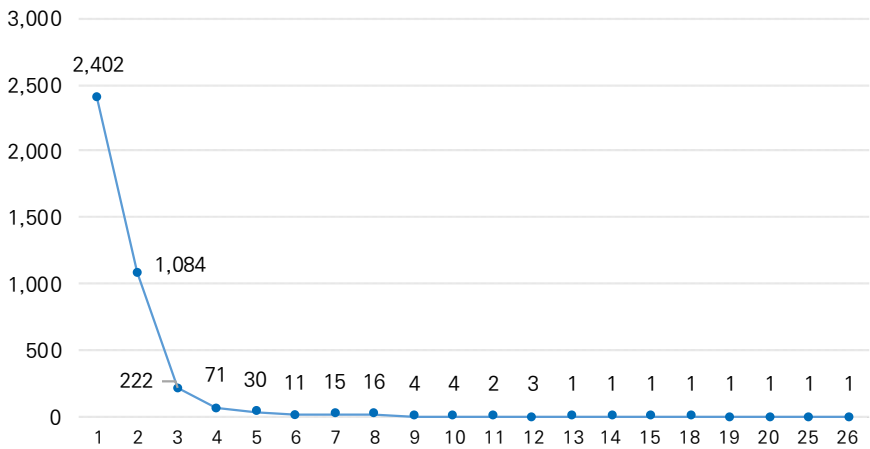
종국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최소 1번에서 최대 26번의 재판이 있었고, 평균적으로는 1.6번의 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4). 종국결정이 내려진 재판이 첫 번째 재판이었던 경우는 62.0%였다. 이외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임시조치 결정 등으로 두 번째 재판에서 종국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28.0%에 해당하였다. 종국결정이 있는 재판까지 재판 기일이 3번 잡힌 경우는 5.7%, 4번은 1.8%로 재판 수가 늘어날수록 빈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9) 여기서 재판 수란 불출석 등으로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기일이 잡힌 횟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한 소년에 대한 재판이 3번은 불출석, 1번은 임시위탁, 1번은 종국결정이 이루어진 재판일 경우 종국결정에 이르기까지 재판 수는 5건이다.

표 III-14. 종국결정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재판 수별 빈도

재판 수(건)	빈도(건)	비율(%)
1	2,402	62.0
2	1,084	28.0
3	222	5.7
4	71	1.8
5	30	0.8
6	11	0.3
7	15	0.4
8	16	0.4
9	4	0.1
10	4	0.1
11	2	0.1
12	3	0.1
13 이상	8	0.2
계	3,872	100.0
전체	평균=1.61, 표준편차=1.35	

* 주: 종국결정이 있는 소년보호사건 재판 3,872건에 대한 결과임.



(단위: 건)

그림 III-7. 종국결정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재판 수별 빈도

(7) 종국결정에 이르기까지 소요 기간

사건 발생일부터 종국결정 재판까지 소요 기간을 구한 결과를 표 III-15에 제시하였다. 종국결정 소요 기간은 평균 6.8개월이었다. 처우별 소요 기간을 살펴보면, 기타 처분이 평균 9.0개월, 시설 내 처우 결정이 8.5개월, 불처분 결정이 6.8개월, 사회 내 처우 6.5개월, 중간 처우 6.3개월 순으로 소요되었다.

표 III-15. 처우별 종국결정 소요 기간

(단위: 건(%))

구분	사회 내 처우	중간처우	시설 내 처우	불처분	기타	계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23 (56.1)	1 (2.4)	4 (9.8)	11 (26.8)	2 (4.9)	41 (100.0)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32 (72.3)	17 (5.3)	20 (6.2)	49 (15.3)	3 (0.9)	321 (100.0)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451 (78.4)	30 (5.2)	24 (4.2)	63 (11.0)	7 (1.2)	575 (100.0)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489 (80.2)	27 (4.4)	42 (6.9)	48 (7.9)	4 (0.7)	610 (100.0)
5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75 (76.2)	31 (6.3)	32 (6.5)	45 (9.1)	9 (1.8)	492 (100.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934 (71.7)	72 (5.5)	165 (12.7)	109 (8.4)	23 (1.8)	1,303 (100.0)
1년 이상 2년 미만	238 (67.4)	14 (4.0)	60 (17.0)	32 (9.1)	9 (2.5)	353 (100.0)
2년 이상	45 (59.2)	3 (3.9)	9 (11.8)	15 (19.7)	4 (5.3)	76 (100.0)
정보 없음	55 (54.5)	25 (24.8)	13 (12.9)	2 (2.0)	6 (5.9)	101 (100.0)
계	2,842 (73.4)	220 (5.7)	369 (9.5)	374 (9.7)	67 (1.7)	3,872 (100.0)
평균(개월) (표준편차)	6.50 (4.97)	6.31 (4.45)	8.52 (6.25)	6.83 (6.40)	9.02 (8.15)	6.75 (5.34)

* 주: 종국결정이 있는 소년보호사건 재판 3,872건에 대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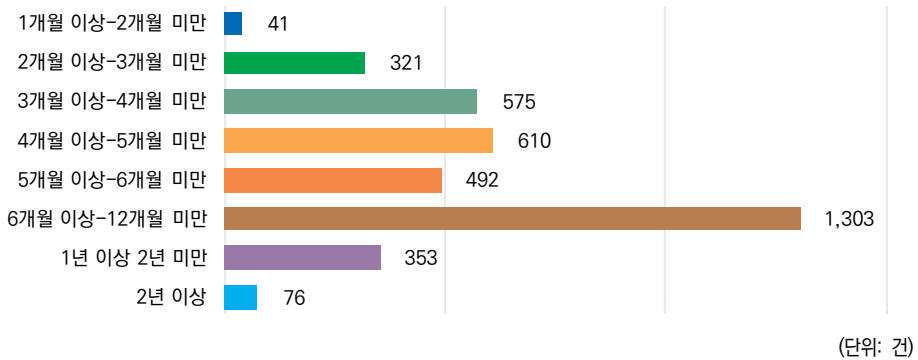


그림 Ⅲ-8. 종국결정 소요 기간

2) 사건 기준 분석 결과

사건 기준 분석은 종국결정이 내려진 재판 3,872건에 나타난 사건 8,494건에 대해 이루어졌다.

(1) 사건 수에 따른 재판 빈도

사건 수에 따른 재판 빈도는 표 Ⅲ-16과 같다. 종국결정이 내려진 재판에서 다른 사건은 재판당 최소 1건부터 최대 33건이며, 평균 2.19건이었다. 사건을 1건만 다룬 재판은 2,347개(60.6%), 2건을 다룬 재판은 610개(15.8%), 3건을 다룬 재판은 344개(8.9%)였다.

표 Ⅲ-16. 사건 수에 따른 재판 빈도

(단위: 건)

재판당 사건 수	재판 수	총 사건 수
1	2,347(60.6)	2,347(27.6)
2	610(15.8)	1,220(14.4)
3	344(8.9)	1,032(12.1)
4	176(4.5)	704(8.3)
5	111(2.9)	555(6.5)
6	77(2.0)	462(5.4)

재판당 사건 수	재판 수	총 사건 수
7	53(1.4)	371(4.4)
8	35(0.9)	280(3.3)
9	28(0.7)	252(3.0)
10	27(0.7)	270(3.2)
11	14(0.4)	154(1.8)
12	8(0.2)	96(1.1)
13	5(0.1)	65(0.8)
14	7(0.2)	98(1.2)
15	6(0.2)	90(1.1)
16	4(0.1)	64(0.8)
17	4(0.1)	68(0.8)
18	3(0.1)	54(0.6)
20	2(0.1)	40(0.5)
21	5(0.1)	105(1.2)
23	2(0.1)	46(0.5)
28	1(0.0)	28(0.3)
30	2(0.1)	60(0.7)
33	1(0.0)	33(0.4)
계	3,872(100.0)	8,494(100.0)
평균(표준편차)	2.19(2.53)	

(2) 사건 기준 연도별 범죄유형 빈도

사건을 기준으로 범죄유형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17에 제시하였다. 총 7개의 범죄유형(재산, 폭력, 강력, 성, 교통, 기타, 소년법 관련 사건)과 유형별 세부범죄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재판 준비 메모에 등장한 사건 중 가장 빈도가 높은 범죄유형은 재산범죄로 52.8%였다. 그다음은 폭력범죄 22.3%, 강력범죄 8.9%, 성범죄 5.5%, 교통범죄 12.5%, 기타범죄 6.9%, 소년법 관련 사건 2.2% 순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범죄는 강력 성범죄에 해당하였다.

사건 발생 날짜 기준으로 연도별 범죄유형의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재산범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중 절도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사기범죄가 그 뒤를 이었다. 폭력범죄는 매년 약 20% 이상, 교통범죄는 11%에서 15% 사이를 차지하였다. 강력범죄는 매년 약 7~8% 내외로 발생하였으며, 대부분은 성범죄에 해당하였고 강도와 방화 범죄는 극히 드물게 발생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물리적 성범죄, 성매매로 구성된 일반 성범죄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5% 내외로 발생하다가 2017년에 9.7%로 증가하였는데 그중 대부분은 디지털 성범죄였다. 디지털 성범죄는 2017년 기준 전체 사건의 7.2%를 차지하였다. 소년법 관련 사건 유형은 전체 186건 중 사건 발생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98건으로 연도별 범죄 발생 빈도를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표 III-17. 사건 기준 연도별 범죄유형별 빈도

(단위: 건(%))

연도 유형	재산						강력			
	소계	사기	손괴	장물	절도	횡령	소계	강도	방화	성
계	4,484(52.8)	947(11.1)	151(1.8)	164(1.9)	3,275(38.6)	103(1.2)	758(8.9)	52(0.6)	13(0.2)	693(8.2)
2010년	6(42.9)	1(7.1)	0(0.0)	0(0.0)	6(42.9)	0(0.0)	4(28.6)	0(0.0)	0(0.0)	4(28.6)
2011년	15(23.8)	3(4.8)	0(0.0)	0(0.0)	13(20.6)	0(0.0)	16(25.4)	0(0.0)	0(0.0)	16(25.4)
2012년	200(35.4)	20(3.5)	10(1.8)	14(2.5)	153(27.1)	7(1.2)	108(19.1)	15(2.7)	0(0.0)	93(16.5)
2013년	1,012(51.2)	153(7.7)	37(1.9)	45(2.3)	792(40.0)	20(1.0)	192(9.7)	11(0.6)	6(0.3)	175(8.8)
2014년	1,033(58.2)	190(10.7)	27(1.5)	35(2.0)	786(44.3)	28(1.6)	139(7.8)	12(0.7)	2(0.1)	125(7.0)
2015년	924(57.7)	204(12.7)	24(1.5)	39(2.4)	665(41.5)	20(1.2)	110(6.9)	5(0.3)	0(0.0)	105(6.6)
2016년	687(54.1)	183(14.4)	16(1.3)	17(1.3)	488(38.4)	12(0.9)	108(8.5)	9(0.7)	5(0.4)	94(7.4)
2017년	489(52.1)	114(12.2)	35(3.7)	13(1.4)	334(35.6)	13(1.4)	74(7.9)	0(0.0)	0(0.0)	74(7.9)
날짜 없음	118(40.8)	79(27.3)	2(0.7)	1(0.3)	38(13.1)	3(1.0)	7(2.4)	0(0.0)	0(0.0)	7(2.4)

표 III-17. 사건 기준 연도별 범죄유형별 빈도(계속)

(단위: 건(%))

연도 유형	폭력	성				교통	기타	소년사건처리			계
		소계	디지털	물리적	성매매			소계	우범	통고	
계	1,890(22.3)	467(5.5)	267(3.1)	110(1.3)	95(1.1)	1,063(12.5)	590(6.9)	186(2.2)	163(1.9)	38(0.4)	8,494(100.0)
2010년	3(21.4)	1(7.1)	1(7.1)	0(0.0)	0(0.0)	0(0.0)	-	0(0.0)	0(0.0)	0(0.0)	14(100.0)
2011년	26(41.3)	2(3.2)	1(1.6)	0(0.0)	1(1.6)	1(1.6)	4(6.3)	0(0.0)	0(0.0)	0(0.0)	63(100.0)
2012년	174(30.8)	50(8.8)	23(4.1)	10(1.8)	17(3.0)	48(8.5)	34(6.0)	8(1.4)	8(1.4)	0(0.0)	565(100.0)
2013년	537(27.1)	81(4.1)	44(2.2)	24(1.2)	13(0.7)	218(11.0)	125(6.3)	14(0.7)	11(0.6)	3(0.2)	1,978(100.0)
2014년	347(19.5)	73(4.1)	43(2.4)	24(1.4)	6(0.3)	219(12.3)	149(8.4)	14(0.8)	14(0.8)	0(0.0)	1,775(100.0)
2015년	325(20.3)	79(4.9)	44(2.7)	15(0.9)	22(1.4)	229(14.3)	105(6.6)	24(1.5)	23(1.4)	1(0.1)	1,602(100.0)
2016년	254(20.0)	67(5.3)	28(2.2)	17(1.3)	23(1.8)	184(14.5)	108(8.5)	17(1.3)	17(1.3)	0(0.0)	1,270(100.0)
2017년	201(21.4)	91(9.7)	68(7.2)	18(1.9)	7(0.7)	120(12.8)	39(4.2)	11(1.2)	11(1.2)	0(0.0)	938(100.0)
날짜 없음	23(8.0)	23(8.0)	15(5.2)	2(0.7)	6(2.1)	44(15.2)	26(9.0)	98(33.9)	79(27.3)	34(11.8)	289(100.0)

* 주: 1) 한 사건은 2개 이상의 범죄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범죄유형별 빈도의 합은 전체 사건 수(8,494건)를 초과할 수 있음. 범죄유형별 발생 비율은 해당 연도에 발생한 전체 사건 수를 기준으로 산출함.

2) 사건 발생 날짜를 기준으로 연도별 집계하였으므로 재판 준비 메모가 작성되기 전인 2013년 이전 사건이 존재할 수 있음.

(3) 사건 기준 연령별 범죄유형 빈도

사건 기준 연령별 범죄유형 빈도는 표 III-18에 제시하였다. 사건 발생 당시 소년이 10세 미만이었던 사건은 1건이었는데 이 사건은 소년이 재판에 회부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해당 사건의 내용이 밝혀져 단순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행위 시 10세 미만이었던 소년의 사건은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 발생 당시 10세였던 소년의 사건은 총 46건으로 범죄유형별 빈도에서 전체 집단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들의 주된 범죄는 폭력범죄로 10세 사건 중 43.5%가 폭력범죄였으며, 재산범죄는 30.4%, 기타범죄 13.0%, 강력범죄 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10세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연령별 범죄유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산범죄로 11세 소년 사건의 33.3%부터 18세 소년 사건의 45.6%에 해당하였다. 재산범죄 중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절도범죄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재산범죄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사건은 폭력범죄로 11세부터 18세까지 연령별 전체 사건의 약 20~30%를 차지하였다. 사건 발생 당시 11세와 12세였던 소년의 사건 중 강력범죄는 각각 27.2%, 17.3%였는데 강력범죄 유형에 속하는 거의 모든 사건이 강력 성범죄에 해당하였다. 다른 연령대에서도 강력범죄 중 강력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물리적 성범죄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18세는 물리적 성범죄가 디지털 성범죄보다 약 1.3%p 높았다. 교통범죄는 12세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13세 사건의 6.6%, 14세 10.1%, 17세 14.8%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통범죄 비중이 증가하였다.

표 III-18. 사건 기준 연령별 범죄유형별 빈도

(단위: 건(%))

연령 유형	재산					강력			
	소계	사기	손괴	장물	절도	횡령	소계	강도	방화
계	4,484(52.8)	947(11.1)	151(1.8)	164(1.9)	3,275(38.6)	103(1.2)	758(8.9)	52(0.6)	13(0.2)
10세 미만	-	-	-	-	-	-	-	-	-
10세	14(30.4)	-	3(6.5)	-	11(23.9)	-	5(10.9)	-	1(2.2)
11세	38(33.3)	1(0.9)	1(0.9)	-	35(30.7)	1(0.9)	31(27.2)	-	-
12세	109(39.2)	8(2.9)	10(3.6)	-	90(32.4)	1(0.4)	48(17.3)	-	3(1.1)
13세	532(56.7)	53(5.7)	27(2.9)	10(1.1)	443(47.2)	5(0.5)	115(12.3)	1(0.1)	3(0.3)
14세	609(50.6)	73(6.1)	19(1.6)	8(0.7)	525(43.6)	7(0.6)	116(9.6)	5(0.4)	-
15세	1,006(59.2)	209(12.3)	18(1.1)	25(1.5)	774(45.6)	25(1.5)	136(8.0)	14(0.8)	3(0.2)
16세	1,055(56.8)	262(14.1)	31(1.7)	48(2.6)	720(38.8)	26(1.4)	132(7.1)	22(1.2)	2(0.1)
17세	756(50.7)	183(12.3)	24(1.6)	56(3.8)	498(33.4)	27(1.8)	96(6.4)	7(0.5)	1(0.1)
18세	242(45.6)	78(14.7)	16(3.0)	16(3.0)	138(26.0)	7(1.3)	43(8.1)	3(0.6)	-
정보 없음	123(36.7)	80(23.9)	2(0.6)	1(0.3)	41(12.2)	4(1.2)	36(10.7)	-	-

표 III-18. 사건 기준 연령별 범죄유형별 빈도(계속)

(단위: 건(%))

연령 유형	폭력	성				교통	기타	소년사건처리			계
		소계	디지털	물리적	성매매			소계	우범	통고	
계	1,890(22.3)	467(5.5)	267(3.1)	110(1.3)	95(1.1)	1,063(12.5)	461(5.4)	186(2.2)	163(1.9)	38(0.4)	8,494(100.0)
10세 미만	1(100.0)	-	-	-	-	-	-	-	-	-	1(100.0)
10세	20(43.5)	1(2.2)	1(2.2)	-	-	-	6(13.0)	-	-	-	46(100.0)
11세	33(28.9)	12(10.5)	11(9.6)	1(0.9)	-	-	2(1.8)	-	-	-	114(100.0)
12세	78(28.1)	30(10.8)	25(9.0)	6(2.2)	-	7(2.5)	14(5.0)	2(0.7)	2(0.7)	-	278(100.0)
13세	190(20.3)	63(6.7)	42(4.5)	18(1.9)	3(0.3)	62(6.6)	34(3.6)	3(0.3)	3(0.3)	-	938(100.0)
14세	398(33.1)	53(4.4)	34(2.8)	12(1.0)	7(0.6)	122(10.1)	27(2.2)	8(0.7)	5(0.4)	3(0.2)	1,204(100.0)
15세	348(20.5)	69(4.1)	32(1.9)	16(0.9)	22(1.3)	255(15.0)	67(3.9)	10(0.6)	9(0.5)	1(0.1)	1,699(100.0)
16세	358(19.3)	88(4.7)	44(2.4)	21(1.1)	23(1.2)	268(14.4)	106(5.7)	17(0.9)	17(0.9)	-	1,857(100.0)
17세	317(21.3)	86(5.8)	46(3.1)	17(1.1)	26(1.7)	220(14.8)	131(8.8)	33(2.2)	33(2.2)	-	1,491(100.0)
18세	119(22.4)	34(6.4)	10(1.9)	17(3.2)	7(1.3)	85(16.0)	53(10.0)	15(2.8)	15(2.8)	-	531(100.0)
정보 없음	28(8.4)	31(9.3)	22(6.6)	2(0.6)	7(2.1)	44(13.1)	21(6.3)	98(29.3)	79(23.6)	34(10.1)	335(100.0)

*주: 1) 한 사건은 2개 이상의 범죄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범죄유형별 빈도의 합은 전체 사건 수(8,494건)를 초과할 수 있음. 범죄유형별 발생 비율은 해당 연령에서 발생한 전체 사건 수를 기준으로 산출함.

2) 사건 발생 날짜 기준 10세 미만이었다던 소년의 사건은 다른 사건 조사 시에 해당 사건이 밝혀져 단순 기록된 것으로 추측되며, 행위 시 10세 미만인 소년의 사건은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아님을 밝힘.

(4) 사건 발생 시간

① 시간대별 사건 발생 빈도

사건별 발생 시각을 살펴보면, 자정에서 새벽 3시까지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하여 전체 사건의 15.7%가 이 시간대에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다음은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와 저녁 9시부터 자정 사이에 각각 전체 사건의 12.5%가 발생하였다.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다른 시간대에 비해 사건 발생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III-19. 시간대별 사건 발생 빈도

사건 발생 시간	사건 빈도(건)	비율(%)
00-03시	1,337	15.7
03-06시	961	11.3
06-09시	324	3.8
09-12시	362	4.3
12-15시	692	8.2
15-18시	1,061	12.5
18-21시	954	11.2
21-24시	1,062	12.5
정보 없음	1,741	20.5
계	8,49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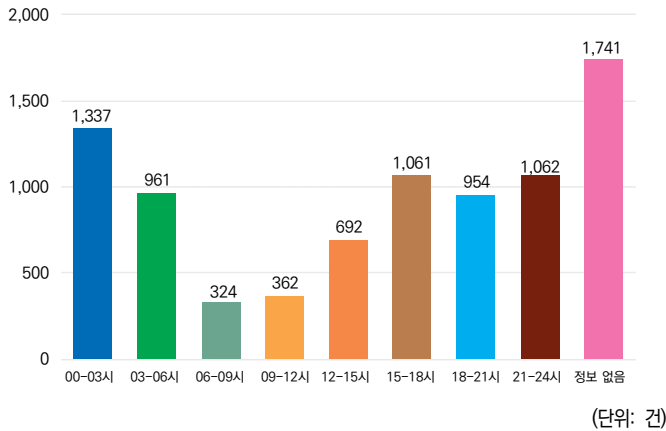


그림 III-9. 시간대별 사건 발생 빈도

② 범죄유형별 사건 발생 시간

범죄유형에 따라 사건 발생 기준 시간대별 발생 빈도를 표 Ⅲ-20에 제시하였다. 표 Ⅲ-20을 살펴보면 범죄유형에 따라 사건이 주로 발생한 시간대가 다를 수 있다. 재산범죄는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20.3%) 재산범죄의 세부유형에서는 장물범죄만이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발생 건수가 가장 높았다(19.5%). 강력범죄는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18.1%) 강력범죄의 세부유형 중 강도사건은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에 46.2%가 발생하였다. 폭력범죄는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18.2%의 사건이 발생하였고, 성범죄는 오후 9시에서 자정 사이에 16.3%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성범죄 세부유형 중 디지털 성범죄만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20.2%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해당 시간대에 물리적 성범죄의 7.3%, 성매매의 3.2%가 발생한 것과 다른 양상이다. 교통범죄는 자정에서 새벽 3시 사이에 21.4%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표 III -20. 범죄유형별 사건 발생 시간 빈도

(단위: 건(%))

유형	재산						강력				
	시간	소계	사기	손괴	장물	절도	횡령	소계	강도	방화	성
00-03시		912(20.3)	51(5.4)	27(17.9)	19(11.6)	832(25.4)	9(8.7)	89(11.7)	24(46.2)	0(0.0)	65(9.4)
03-06시		623(13.9)	39(4.1)	34(22.5)	6(3.7)	565(17.3)	8(7.8)	68(9.0)	7(13.5)	4(30.8)	57(8.2)
06-09시		166(3.7)	33(3.5)	9(6.0)	9(5.5)	124(3.8)	4(3.9)	24(3.2)	2(3.8)	0(0.0)	22(3.2)
09-12시		188(4.2)	28(3.0)	7(4.6)	8(4.9)	155(4.7)	1(1.0)	34(4.5)	3(5.8)	0(0.0)	31(4.5)
12-15시		298(6.6)	28(3.0)	18(11.9)	13(7.9)	247(7.5)	5(4.9)	73(9.6)	1(1.9)	2(15.4)	70(10.1)
15-18시		428(9.5)	36(3.8)	23(15.2)	24(14.6)	355(10.8)	11(10.7)	137(18.1)	3(5.8)	4(30.8)	130(18.8)
18-21시		419(9.3)	29(3.1)	11(7.3)	32(19.5)	341(10.4)	18(17.5)	92(12.1)	5(9.6)	3(23.1)	84(12.1)
21-24시		552(12.3)	42(4.4)	13(8.6)	28(17.1)	455(13.9)	27(26.2)	90(11.9)	3(5.8)	0(0.0)	87(12.6)
정보 없음		898(20.0)	661(69.8)	9(6.0)	25(15.2)	201(6.1)	20(19.4)	151(19.9)	4(7.7)	0(0.0)	147(21.2)
계		4,484(100.0)	947(100.0)	151(100.0)	164(100.0)	3,275(100.0)	103(100.0)	758(100.0)	52(100.0)	13(100.0)	693(100.0)

표 III-20. 범죄유형별 사건 발생 시간 빈도(계속)

(단위: 건(%))

유형 시간	폭력	성				교통	기타	소년법 관련 사건		
		소계	디지털	물리적	성매매			소계	우범	통고
00-03시	205(10.8)	28(6.0)	9(3.4)	12(10.9)	7(7.4)	227(21.4)	57(12.4)	18(9.7)	18(11.0)	-
03-06시	178(9.4)	29(6.2)	4(1.5)	14(12.7)	11(11.6)	139(13.1)	21(4.6)	24(12.9)	24(14.7)	-
06-09시	82(4.3)	19(4.1)	11(4.1)	7(6.4)	1(1.1)	48(4.5)	16(3.5)	11(5.9)	11(6.7)	-
09-12시	90(4.8)	11(2.4)	7(2.6)	4(3.6)	1(1.1)	45(4.2)	21(4.6)	3(1.6)	3(1.8)	-
12-15시	216(11.4)	34(7.3)	17(6.4)	16(14.5)	1(1.1)	83(7.8)	28(6.1)	1(0.5)	1(0.6)	-
15-18시	344(18.2)	63(13.5)	54(20.2)	8(7.3)	3(3.2)	108(10.2)	40(8.7)	8(4.3)	8(4.9)	-
18-21시	263(13.9)	69(14.8)	42(15.7)	18(16.4)	9(9.5)	141(13.3)	44(9.5)	1(0.5)	1(0.6)	-
21-24시	230(12.2)	76(16.3)	42(15.7)	22(20.0)	13(13.7)	165(15.5)	54(11.7)	9(4.8)	9(5.5)	-
정보 없음	282(14.9)	138(29.6)	81(30.3)	9(8.2)	49(51.6)	107(10.1)	180(39.0)	111(59.7)	88(54.0)	38(100.0)
계	1,890(100.0)	467(100.0)	267(100.0)	110(100.0)	95(100.0)	1,063(100.0)	332(100.0)	186(100.0)	163(100.0)	38(100.0)

(5) 사건 당시 공범 수

① 공범 수에 따른 사건 빈도

사건 당시 공범 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Ⅲ-21에 제시하였다. 사건 당시 공범 수는 평균 1.1명이었고, 공범이 없는 사건이 전체 사건의 53.1%였다. 공범이 1명인 경우는 18.4%, 2명인 경우가 13.1%, 3명은 7.4%, 4명은 4.3%, 5명 이상은 3.9%였다.

표 Ⅲ-21. 공범 수에 따른 사건 빈도

공범(명)	사건 빈도(건)	비율(%)
0	4,507	53.1
1	1,561	18.4
2	1,109	13.1
3	627	7.4
4	361	4.3
5	160	1.9
6	66	0.8
7	41	0.5
8	17	0.2
9	13	0.2
11	12	0.1
13	1	0.01
정보 없음	19	0.2
계	8,494	100.0
전체(명)	평균=1.1, 표준편차=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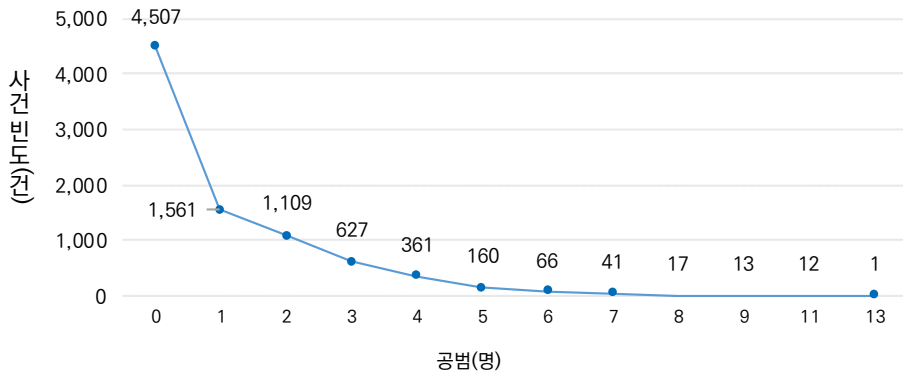


그림 Ⅲ-10. 공범 수에 따른 사건 빈도

② 공범 수에 따른 범죄유형별 사건 빈도

강력범죄 중에 강도사건의 평균 공범 수가 2.3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폭력범죄는 1.45명, 재산범죄는 1.24명이었다. 평균 공범 수가 적은 범죄유형은 소년법 관련 사건과 성범죄로 각각 0.30명, 0.38명이었다. 재산범죄는 전체 사건 중 공범이 없는 비중이 39.7%로 다른 범죄유형보다는 비교적 낮았으며, 공범이 1명인 경우가 25.7%, 2명인 경우가 17.8%로 나타났다. 다만, 재산범죄 중에서도 횡령은 공범이 없는 경우가 전체 사건의 8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강력범죄 중 강도사건은 공범이 3명인 경우가 30.8%로 다른 범죄보다 공범 수가 많았다. 폭력범죄도 공범이 없는 경우는 49.0%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며, 공범이 1명 있는 경우가 15.2%, 2명이 12.3%를 차지하였고, 특히 5명 이상의 비율이 7.7%로 다른 범죄유형과 비교해서 높은 편이었다.

표 III -22. 공범 수에 따른 범죄유형별 사건 빈도

(단위: 건(%))

유형		재산					강력				
		소계	사기	손괴	장물	절도	횡령	소계	강도	방화	성
공범 수	0	1,780(39.7)	563(59.5)	98(64.9)	135(82.3)	970(29.6)	92(89.3)	574(75.7)	9(17.3)	12(92.3)	553(79.8)
	1	1,154(25.7)	184(19.4)	11(7.3)	19(11.6)	963(29.4)	7(6.8)	54(7.1)	5(9.6)	-	49(7.1)
	2	798(17.8)	116(12.2)	14(9.3)	6(3.7)	683(20.9)	2(1.9)	51(6.7)	10(19.2)	1(7.7)	40(5.8)
	3	416(9.3)	54(5.7)	8(5.3)	-	367(11.2)	-	47(6.2)	16(30.8)	-	31(4.5)
	4	182(4.1)	20(2.1)	1(0.7)	1(0.6)	165(5.0)	2(1.9)	25(3.3)	9(17.3)	-	16(2.3)
	5명 이상	149(3.3)	10(1.1)	19(12.6)	3(1.8)	122(3.7)	-	6(0.8)	3(5.8)	-	3(0.4)
	정보 없음	6(0.8)	-	-	-	5(26.3)	-	1(5.3)	-	-	1(5.3)
	계	4,484(100.0)	947(100.0)	151(100.0)	164(100.0)	3,275(100.0)	103(100.0)	758(100.0)	52(100.0)	13(100.0)	693(100.0)
	평균(명) (표준편차)	1.24 (1.42)	0.76 (1.17)	1.16 (1.96)	0.32 (0.96)	1.46 (1.43)	0.18 (0.65)	0.56 (1.14)	2.38 (1.48)	0.15 (0.55)	0.43 (1.00)

표 III -22. 범죄유형별 공범 수에 따른 사건 빈도(계속)

(단위: 건(%))

연도	유형	폭력	성					교통	기타	소년법 관련 사건		
			소계	디지털	물리적	성매매	소계			우범	통고	
0		927(49.0)	375(80.3)	235(88.0)	108(98.2)	37(38.9)	745(70.1)	344(74.6)	152(81.7)	133(81.6)	34(0.8)	
1		288(15.2)	31(6.6)	16(6.0)	1(0.9)	14(14.7)	160(15.1)	51(11.1)	13(7.0)	13(8.0)	-	
2		233(12.3)	41(8.8)	11(4.1)	0(0.0)	30(31.6)	86(8.1)	27(5.9)	1(0.5)	1(0.6)	-	
3		148(7.8)	18(3.9)	4(1.5)	1(0.9)	13(13.7)	44(4.1)	10(2.2)	3(1.6)	3(1.8)	-	
4		145(7.7)	1(0.2)	0(0.0)	0(0.0)	1(1.1)	15(1.4)	7(1.5)	7(3.8)	7(4.3)	-	
5명 이상		146(7.7)	1(0.2)	1(0.4)	-	-	13(1.2)	22(4.8)	-	-	-	
정보 없음		3(15.8)	-	-	-	-	-	-	10(5.4)	6(3.7)	4(10.5)	
계		1,890(100.0)	467(100.0)	267(100.0)	110(100.0)	95(100.0)	1,063(100.0)	332(100.0)	186(100.0)	163(100.0)	38(100.0)	
평균(명)		1.45	0.38	0.21	0.04	1.23	0.56	0.72	0.30	0.33	-	
(표준편차)		(2.02)	(0.84)	(0.64)	(0.30)	(1.14)	(1.06)	(1.44)	(0.90)	(0.94)	-	

* 주: 공범 정보가 있는 사건을 기준으로 범죄유형별 공범 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함

3) 소년 기준 분석 결과

소년 기준 분석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3,348명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분석 대상 소년이 받은 소년보호사건 재판 수는 총 6,638건이다. 또한, 종국결정으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소년 3,250명을 대상으로도 별도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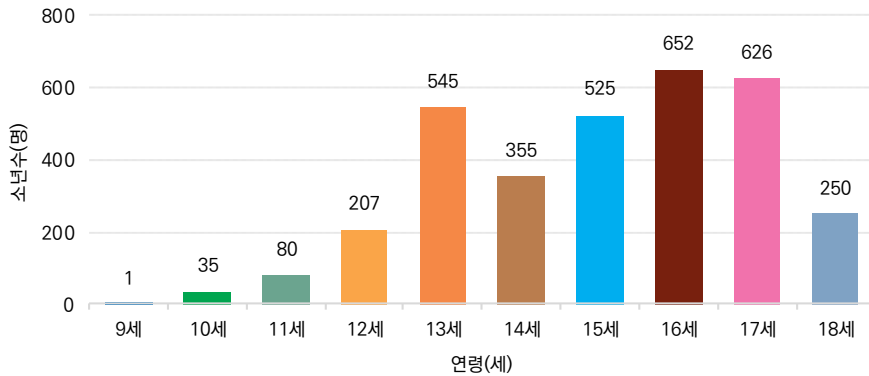
(1) 최초 사건 당시 연령

재판에 등장하는 사건 중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소년의 연령을 구한 결과를 표 III-23에 제시하였다.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소년의 연령은 16세가 19.5%로 가장 많았고, 17세 18.7%, 13세 16.3%, 15세 15.7% 순이었다.

표 III-23. 최초 사건 당시 보호소년 연령

구 분	보호소년 수(명)	비율(%)
9세	1	0.0
10세	35	1.1
11세	80	2.4
12세	207	6.2
13세	545	16.3
14세	355	10.6
15세	525	15.7
16세	652	19.5
17세	626	18.7
18세	250	7.5
정보없음	72	2.2
계	3,348	100.0
평균(표준편차)	15.0(1.91)	

- * 주: 1) 이 표의 내용은 종국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소년보호사건에 해당하는 모든 재판 6,638건에 나타난 소년 총 3,348명의 연령 정보에 해당함.
2) 연령 정보가 없는 경우는 최초 사건 날짜 정보가 불충분하여 사건 당시 소년의 연령 계산이 불가능했던 경우임.
3) 소년 연령이 9세인 경우는 다른 사건 조사 시에 해당 사건이 밝혀져 단순 기록된 것으로 추측됨.



- * 주: 1) 연령 정보가 없는 경우(72명)는 그래프에서 제외하였음. 이는 최초 사건 날짜 정보가 불충분하여 사건 당시 소년의 연령 계산이 불가능했던 경우임.
 2) 소년 연령이 9세인 경우는 다른 사건 조사 시에 해당 사건이 밝혀져 단순 기록된 것으로 추측됨.
 3) 이 그래프의 정보는 종국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소년보호사건에 해당하는 모든 재판 6,638건에 나타난 소년 총 3,348명의 연령 정보에 해당함.

그림 Ⅲ-11. 최초 사건 당시 보호소년 연령

(2) 소년 1인당 재판 수(중복재판 포함)

중복재판이란 불출석이나 임시위탁 결정 등으로 사건번호가 같은 동일 사건에 대하여 재판기일이 여러 번 잡힌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중복재판을 포함하여 소년 1인당 평균 재판 수를 계산하면 소년 1인당 재판 수의 평균은 2.0회이다. 1회의 단일재판을 받은 소년은 전체의 55.0%에 해당하였고, 2번은 24.5%, 3번은 9.9%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6번 이상의 재판부터는 소년의 비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나 소수의 소년만이 6번부터 최대 26번까지 재판기일이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4. 소년 1인당 재판 수(중복재판 포함)

구분		소년 수(명, %)	
		빈도(명)	비율(%)
소년 1인당 총 재판 수 (중복재판 포함)	1	1,841	55.0
	2	820	24.5
	3	332	9.9
	4	144	4.3
	5	79	2.4
	6	31	0.9
	7	29	0.9
	8	20	0.6
	9	12	0.4
	10	14	0.4
	11	5	0.1
	12	5	0.1
	13	3	0.1
	14	2	0.1
	15	1	0.0
	16	2	0.1
	17	1	0.0
	18	1	0.0
	19	2	0.1
	20	2	0.1
	25	1	0.0
	26	1	0.0
	소계	3,348	100.0
전체(건)		평균 = 2.0, 표준편차 =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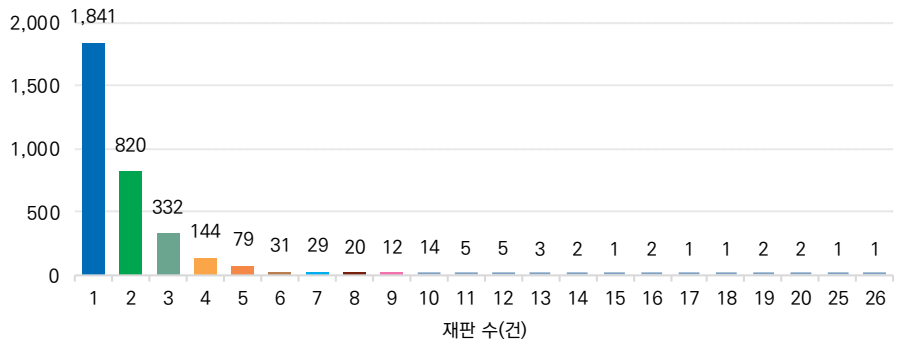


그림 Ⅲ-12. 소년 1인당 재판 수(중복재판 포함)

(3) 소년 1인당 재판 수(중복재판 제외)

중복재판을 제외한 소년 1인당 재판 수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불출석, 임시위탁, 기타 임시조치(전문가 진단 등), 속행 등의 사유로 여러 번 기일이 잡힌 경우에 그 횟수에 상관없이 1회로 처리하여 집계한 재판 수를 말한다.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3번의 재판에 불출석하고 그다음 재판에 출석하여 중국결정이 내려졌다면 중복재판 포함 시 재판 수는 4개이지만 중복재판을 제외한 본 분석에서의 재판 수는 1개이다. 소년 1인당 중복재판을 제외한 재판 수를 표 III-25에 제시하였다. 소년은 1인당 평균 1.19개의 재판을 경험하였고, 소년의 85.1%가 재판을 1번 받은 경우에 해당하였다. 재판을 2번 받은 소년은 11.5%, 재판을 3번 받은 소년은 2.8%, 4번은 0.6%, 5번은 0.1%였다.

표 III-25. 소년 1인당 재판 수(중복재판 제외)

구분		보호소년 수(명)	비율(%)
소년 1인당 총 재판 수 (중복재판 제외)	1	2,848	85.1
	2	385	11.5
	3	93	2.8
	4	19	0.6
	5	2	0.1
	6	1	0.0
	소계	3,348	100.0
전체(건)		평균=1.19, 표준편차=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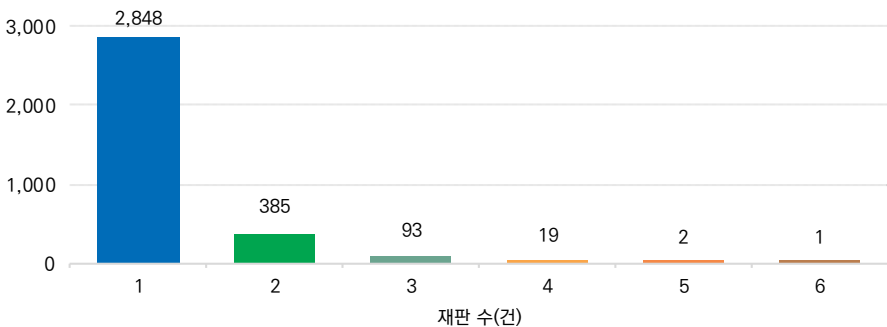


그림 III-13. 소년 1인당 재판 수(중복재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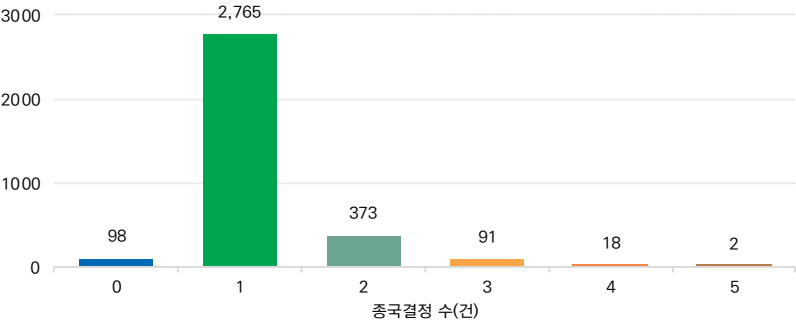
(4) 소년 1인당 종국결정 수

종국결정은 보호처분(1호~10호), 불처분, 기타 처분(역송, 이송 등) 결정을 가리킨다. 종국결정은 소년 1인당 평균 1.2번 내려졌으며, 1개의 종국결정만 있는 소년이 전체의 82.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개의 종국결정이 있는 소년은 11.1%, 3개는 2.7%였다. 소년 중 4개 이상의 종국결정을 가지는 경우는 0.6%에 불과하였다. 종국결정 수가 0개인 소년(2.9%)은 불출석, 임시위탁, 기타 임시조치 등의 사유로 재판 준비 메모가 작성된 기간 안에 종국결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표 III-26. 소년 1인당 종국결정 수

구분		소년 수(명)	비율(%)
소년 1인당 종국결정 수	0	98	2.9
	1	2,765	82.6
	2	373	11.1
	3	91	2.7
	4	18	0.5
	5	2	0.1
	6	1	0.0
	소계	3,348	100.0
전체(건)		평균=1.2, 표준편차=0.5	

* 주: 종국결정 수가 0건인 소년(98명)은 불출석, 임시위탁, 기타 임시조치 등의 사유로 재판 준비 메모가 작성된 기간 안에 종국결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단위: 명)

그림 III-14. 소년 1인당 종국결정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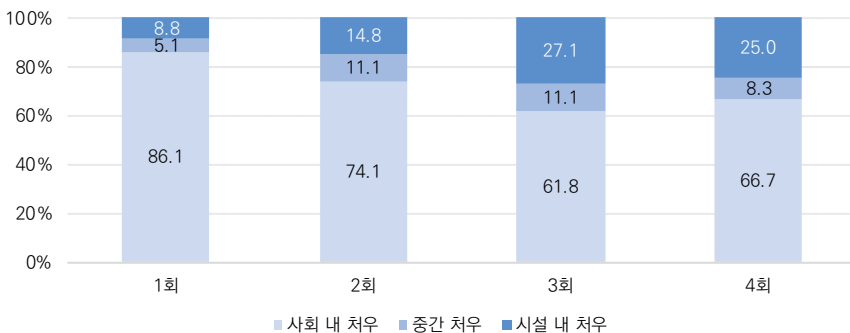
(5) 보호소년 보호처분 이력

소년이 재판 메모가 작성된 기간에 받은 보호처분 횟수와 처분 유형별 빈도를 표 Ⅲ-27에 정리하였다. 처분을 1번 받은 소년이 81.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중 사회 내 처우 결정이 86.1%, 중간 처우는 5.1%, 시설 내 처우는 8.8%로 나타났다. 처분이력이 2회인 소년은 9.1%를 차지하였고, 해당 소년이 받은 처분 중 시설 내 처우의 비중은 14.8%로 처분 이력이 1회인 소년에 비해 그 비중이 높았다. 보호처분을 3회 받은 소년은 전체의 1.5%, 4회는 0.3%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들의 시설 내 처우 비중은 각각 27.1%, 25.0%로 높았다.

표 Ⅲ-27. 보호소년 보호처분 이력(종국결정 기준)

처분이력	보호소년 수 (명, %)	보호처분(건, %)			
		소계	사회 내 처우	중간 처우	시설 내 처우
없음	239(7.4)	-	-	-	-
1회	2,657(81.8)	2,657(100.0)	2,289(86.1)	135(5.1)	233(8.8)
2회	297(9.1)	594(100.0)	440(74.1)	66(11.1)	88(14.8)
3회	48(1.5)	144(100.0)	89(61.8)	16(11.1)	39(27.1)
4회	9(0.3)	36(100.0)	24(66.7)	3(8.3)	9(25.0)
계	3,250(100.0)	3,431(100.0)	2,842(82.8)	220(6.4)	369(10.8)

* 주: 처분이력이 없는 소년은 보호처분 외의 판결을 받거나 불출석하여 처분이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단위: %)

그림 Ⅲ-15. 보호소년 보호처분 이력(종국결정 기준)

(6) 보호소년 위기로인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설계에서 구축한 위기로인 사건을 활용하여 중국결정으로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진 소년 3,250명의 개인, 가정, 학교 및 또래 위기로인을 살펴본 결과를 각각 표 III-28, 표 III-29, 표 III-30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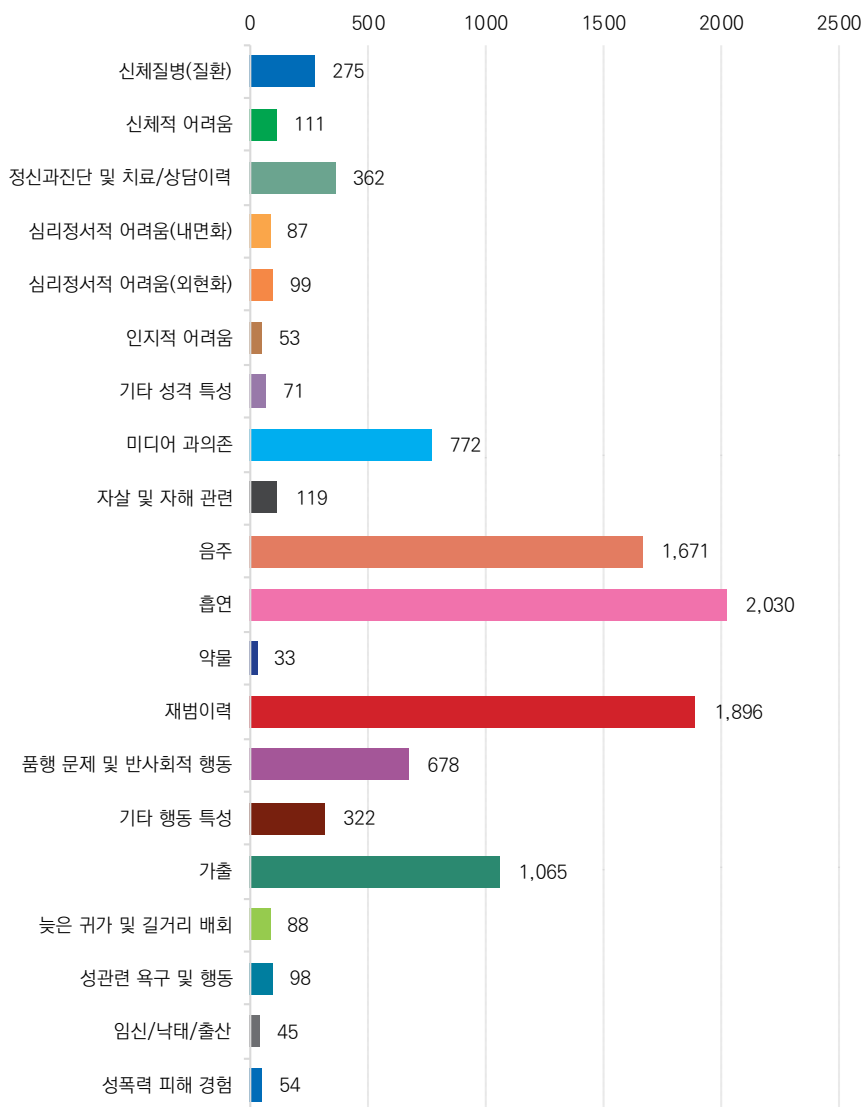
① 개인 위기로인

개인 위기로인을 1개라도 가지고 있는 소년은 2,704명으로 전체의 83.2%에 해당하였으며, 소년 1인당 평균 3.1개의 개인 위기로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위기 세부요인 중에는 흡연 경험이 62.5%로 가장 높았고, 재범 이력이 있는 소년이 58.3%, 음주 경험이 51.4%로 나타났다. 심리 관련 요인으로는 미디어 과의존이 23.8%, 정신과 진단 및 치료 경험이 11.1%로 나타났다. 행동 관련 특성으로는 가출이 32.8%,品行 문제 및 반사회적 행동 경험이 20.9%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28. 보호소년 개인 위기요인(3,250명 기준)

연번	구분	보호소년 수(명)	비율(%)
1	신체질병(질환)	275	8.5
2	신체적 어려움	111	3.4
3	정신과진단 및 치료/상담이력	362	11.1
4	심리정서적 어려움(내면화)	87	2.7
5	심리정서적 어려움(외현화)	99	3.0
6	인지적 어려움	53	1.6
7	기타 성격 특성	71	2.2
8	미디어 과의존	772	23.8
9	자살 및 자해 관련	119	3.7
10	음주	1,671	51.4
11	흡연	2,030	62.5
12	약물	33	1.0
13	재범이력	1,896	58.3
14	품행 문제 및 반사회적 행동	678	20.9
15	기타 행동 특성	322	9.9
16	가출	1,065	32.8
17	낮은 귀가 및 길거리徘徊	88	2.7
18	성관련 욕구 및 행동	98	3.0
19	임신/낙태/출산	45	1.4
20	성폭력 피해 경험	54	1.7
개인 위기요인 통합*		2,704	83.2
1인당 위기요인 수(개)		평균=3.1, 표준편차=2.2 최소=0, 최대=10	

*주: 개인 위기 세부요인 20개 중 1개라도 경험한 소년 수에 해당함.



(단위: 명)

그림 III-16. 보호소년 개인 위기 세부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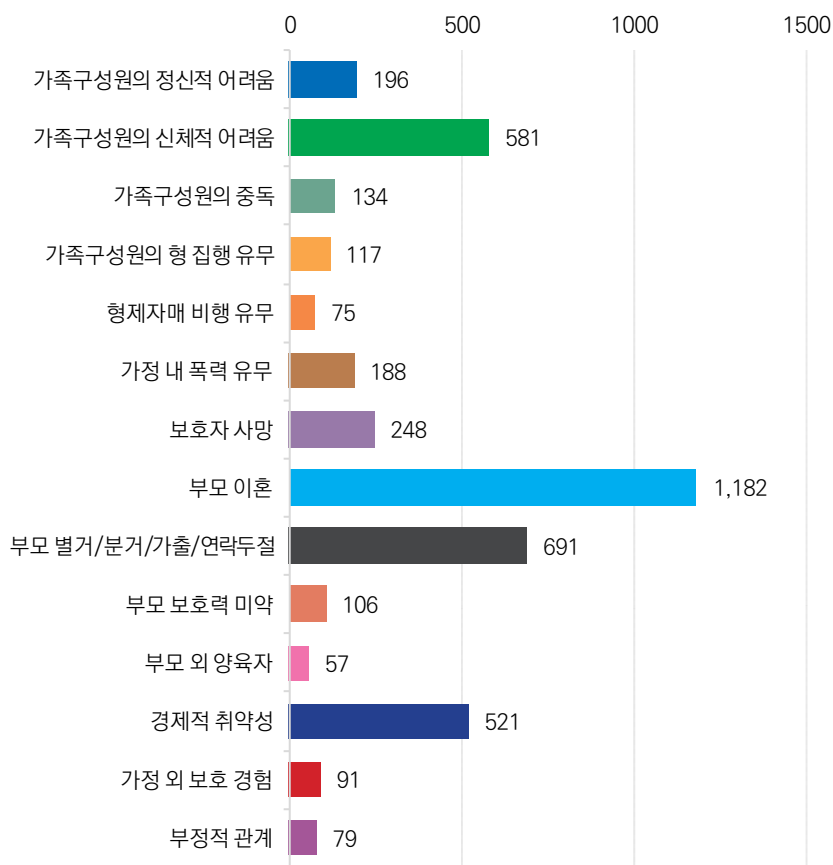
② 가정 위기요인

소년 1인당 가정 위기요인은 평균 1.2개이고, 소년 1인이 갖는 가정 위기요인의 수는 최대 8개였다. 14개의 가정 위기 세부요인 중 1개라도 경험한 소년은 전체의 61.8%에 해당하였다.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인 가정 위기요인은 부모의 이혼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36.4%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별거나 직장으로 인한 분거, 가출 및 연락두절과 같은 경험은 소년의 21.3%가 가지고 있었다. 가족구성원 중 신체적 질병이나 질환이 있는 소년은 전체의 17.9%였으며, 가정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는 16.0%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9. 보호소년 가정 위기요인(3,250명 기준)

연번	구분	보호소년 수(명)	비율(%)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 어려움	196	6.0
2	가족구성원의 신체적 어려움	581	17.9
3	가족구성원의 중독	134	4.1
4	가족구성원의 형 집행 유무	117	3.6
5	형제자매 비행 유무	75	2.3
6	가정 내 폭력 유무	188	5.8
7	보호자 사망	248	7.6
8	부모 이혼	1,182	36.4
9	부모 별거/분거/가출/연락두절	691	21.3
10	부모 보호력 미약	106	3.3
11	부모 외 양육자	57	1.8
12	경제적 취약성	521	16.0
13	가정 외 보호 경험	91	2.8
14	부정적 관계	79	2.4
가정 위기요인 통합*		2,007	61.8
1인당 위기요인 수(개)		평균=1.2, 표준편차=1.3 최소=0, 최대=8	

*주: 가정 위기 세부요인 14개 중 1개라도 경험한 소년 수에 해당함.



(단위: 명)

그림 III-17. 보호소년 가정 위기 세부요인

③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은 소년 1인당 평균 1.2개를 경험하였고, 소년 한 사람이 최대 5개의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및 또래 위기 세부요인 9개 중 1개라도 경험한 소년은 전체의 72.8%에 해당하였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위기요인은 비행친구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54.6%가 비행친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당시 학업이 중단된 상태인 소년이 24.6%였고, 학교징계를 경험한 소년이 13.3%였다.

표 III-30. 보호소년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3,250명 기준)

연번	구분	보호소년 수(명)	비율(%)
1	징계 경험 유무	431	13.3
2	학교폭력 가해경험	74	2.3
3	학교폭력 피해경험	47	1.4
4	비행친구 유무	1,775	54.6
5	결석(무단결석)	197	6.1
6	학업중단 이력	370	11.4
7	재판당시 학업중단자	800	24.6
8	부정적 학교생활 및 태도	65	2.0
9	낮은 학업 성취	24	0.7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 통합*		2,365	72.8
1인당 위기요인 수(개)		평균= 1.2, 표준편차=1.0 최소=0, 최대=5	

*주: 학교 및 또래 위기 세부요인 9개 중 1개라도 경험한 소년 수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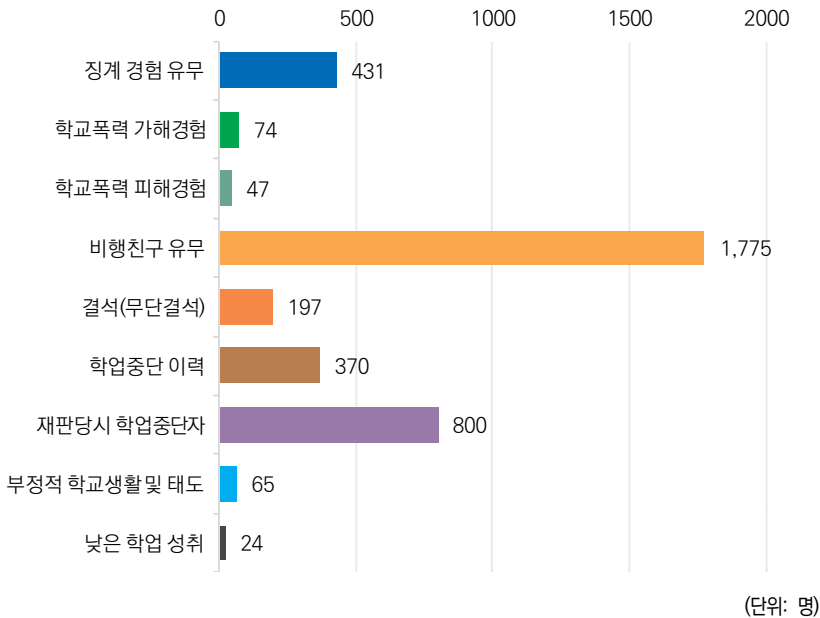


그림 III-18. 보호소년 학교 및 또래 위기 세부요인

4) 소년 범죄 경로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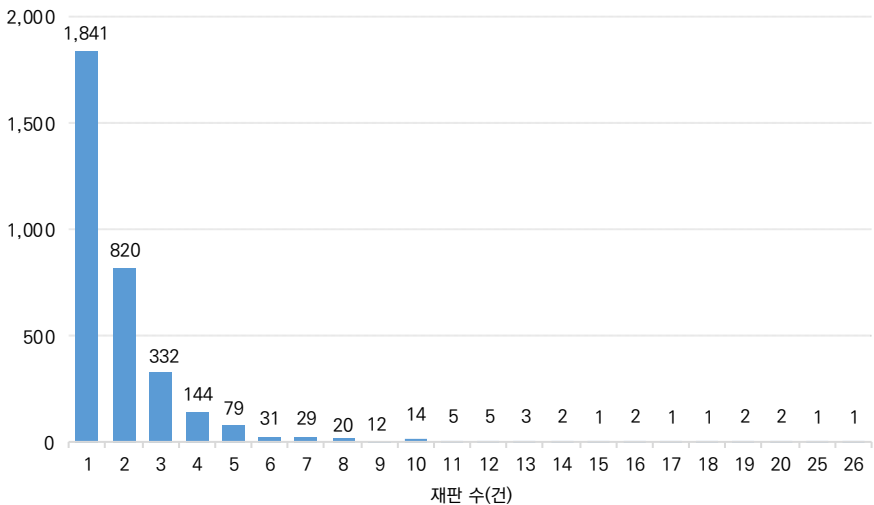
(1) 소년별 사건의 발달 특성

소년별 사건의 발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소년 기준 분석에서 종국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3,250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사건 단위 자료는 총 8,494건이다. 먼저, 소년의 모든 사건에 대해 사건 날짜 정보를 토대로 발생 순서대로 사건을 나열하였다. 소년 1인당 최소 1건에서 최대 33건의 사건이 있었으며, 평균 건수는 2.6건이다. 사건이 1건뿐인 소년은 전체의 54.6%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건이 2건인 소년은 전체의 16.7%에 해당하였고, 3건인 소년은 9.1%, 4건인 소년은 4.9%, 5건은 3.6%로, 사건의 수가 증가할수록 소년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사건이 5건 이하인 소년은 전체의 88.9%, 10건 이상인 소년은 전체의 4.1%였다.

사건의 발달 양상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집단을 구분하였다. 첫째, 사건이 단 1건만 있는 소년을 ‘초(初)비행 소년’이라 명명하였다. 이는 재판 준비 메모에 등장한 해당 사건이 소년의 첫 사건이라고 가정한 결과이다. 초비행 소년은 전체 소년의 54.6%에 해당하는 1,773명이었다. 둘째, 재판 준비 메모 상에 2개 이상의 사건이 등장하는 소년은 연구 대상 기간에 독립된 사건을 2건 이상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재비행 소년’이라 명명하였다. 사건이 2건 이상인 재비행 소년은 1,477명으로 전체의 45.4%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집단을 구분하는 데 사용한 기준은 재판에 따른 종국결정의 수가 아닌 사건 수임에 유의하여 분석결과를 살펴보아야 함을 밝힌다.

표 Ⅲ-31. 사건 발생 빈도 기준 소년 수

구분	사건 수(건)	소년 수(%)
초비행 소년	1	1,773(54.6)
재비행 소년	2	542(16.7)
	3	297(9.1)
	4	160(4.9)
	5	118(3.6)
	6	95(2.9)
	7	60(1.8)
	8	36(1.1)
	9	35(1.1)
	10건 이상	134(4.1)
	소계	1,477(45.4)
계		3,250(100.0)
평균(건) (표준편차)		2.6 (3.2)



(단위: 명)

그림 Ⅲ-19. 사건 발생 빈도 기준 소년 수

① 범죄유형별 소년의 사건 빈도

본 연구에서는 개별 사건이 현행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분류하는 과정에서 한 개의 사건이어도 2개 이상의 범죄사실이 존재한다면 중복으로 집계하였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를 훔치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건이라면, 해당 사건의 범죄유형을 ‘재산범죄’와 ‘교통범죄’로 각각 분류하여 1개의 사건을 2개의 범죄유형에 중복으로 집계하였다. 이를 소년 기준으로 변환하면, 사건이 1개 있는 초비행 소년이라도 ‘재산범죄’와 ‘교통범죄’를 저지른 소년으로 집계된다.

범죄유형별 사건 빈도를 재비행 여부에 따라 살펴볼 때는 해당 유형의 범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소년이 존재할 수 있어 별도의 분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구 대상 기간에 교통범죄를 1회만 저지른 소년은 교통범죄에 대해서는 초비행이지만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비행경험이 전혀 없다. 이 경우 강력범죄에 대해 해당 소년을 ‘무경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즉, 범죄유형별 사건 빈도를 해당 범죄에 대한 소년의 재비행 여부에 따라 살펴볼 때는 소년을 무경험, 초비행, 재비행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표 III-32). 각 범죄유형의 비중을 계산할 때는 전체 인원수(3,250명)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해당 분류를 기준으로 표 III-32의 강력범죄에서 무경험 소년의 결과를 보면, 소년법 관련 사건을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소년은 95.0%, 성범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소년은 90.0%였으나, 재산범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소년은 47.2%에 그쳤다.

전체 소년 중 재산범죄로 분류된 사건을 1번 경험한 초비행 소년은 29.6%(962명), 2번 이상 경험한 재비행 소년은 23.2%(755명)이었다. 재산범죄 사건은 평균 2.6건 발생하였고, 재산범죄로 분류된 사건은 최대 27건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죄 사건은 전체의 33.1%(1,074명) 소년이 경험하였으며, 폭력범죄 초비행 소년은 전체의 22.2%(721명), 재비행 소년은 10.9%(353명)였다. 교통범죄를 경험한 소년은 전체의 21.1%(685명)로 교통범죄가 1건인 초비행 소년은 전체 소년의 15.3%(496명), 2건 이상인 재비행 소년은 5.8%(189명)로 나타났다. 강력범죄 사건을 경험한 소년은 전체의 14.6%(474명)였으며, 강력범죄 사건을 1회 경험한 초비행 소년은 전체 소년의 10.5%(341명), 강력범죄를 2건 이상 경험한 재비행 소년은 4.1%(133명)로 나타났다. 성범죄 사건을 경험한 소년은 전체 소년의 10.1%(326명)로 성범죄 사건이 1건인 초비행 소년은 전체의 7.4%(239명), 2건 이상인 재비행 소년은 2.7%(87명)으로 초비행 소년이 더 많았다.

표 III-32. 범죄유형별 소년의 사건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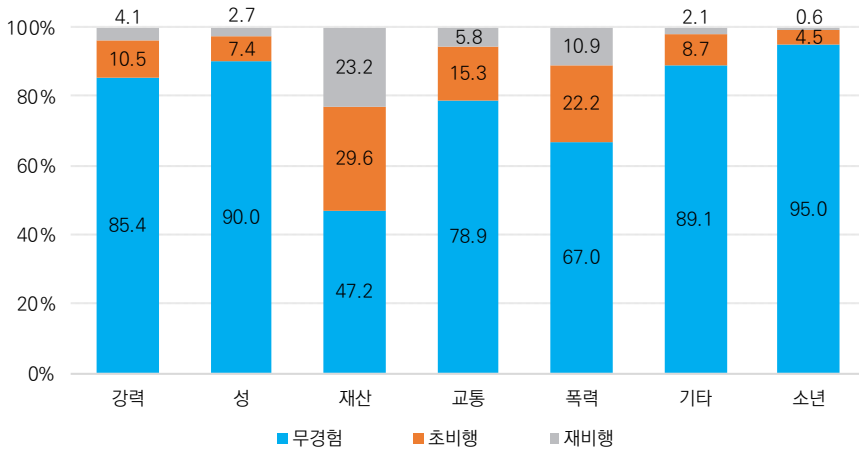
(단위: 명(%), 건)

구분		사건 수 (건)	강력	성	재산	교통	폭력	기타	소년
무경험		0	2,776 (85.4)	2,924 (90.0)	1,533 (47.2)	2,565 (78.9)	2,176 (67.0)	2,897 (89.1)	3,087 (95.0)
재비행 여부	초비행	1	341 (10.5)	239 (7.4)	962 (29.6)	496 (15.3)	721 (22.2)	284 (8.7)	145 (4.5)
	재비행	2	73 (0.7)	52 (1.6)	269 (8.3)	109 (3.4)	174 (5.4)	48 (1.5)	15 (0.5)
		3	24 (0.5)	23 (0.7)	129 (4.0)	38 (1.2)	80 (2.5)	12 (0.4)	2 (0.1)
		4	16 (0.2)	7 (0.2)	92 (2.8)	15 (0.5)	30 (0.9)	5 (0.2)	-
		5	6 (0.2)	3 (0.1)	68 (2.1)	12 (0.4)	24 (0.7)	-	1 (0.0)
		6건 이상	14 (0.4)	2 (0.1)	197 (6.1)	15 (0.5)	45 (1.4)	4 (0.1)	-
		소계	133 (4.1)	87 (2.7)	755 (23.2)	189 (5.8)	353 (10.9)	69 (2.1)	18 (0.6)
	계		474 (14.6)	326 (10.1)	1,717 (52.8)	685 (21.1)	1,074 (33.1)	353 (10.8)	163 (5.1)
	최댓값(건)		13	6	27	14	7	7	5
평균(건)		1.60	1.43	2.61	1.56	1.76	1.31	1.14	
표준편차(건)		1.37	0.87	3.08	1.28	1.58	0.79	0.47	

* 주: 1) 소년 3,250명을 기준으로 경험률을 산출함.

2) 한 소년이 1개의 사건에서 각기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각 범죄유형별 소계를 합산하면 소년의 인원수를 초과할 수 있음.

3) 평균과 표준편차는 해당 범죄유형 유경험자(초비행 및 재비행 소년)의 사건 수로 구하였음.



(단위: %)

그림 III-20. 범죄유형별 소년의 사건 빈도

② 재비행 소년의 사건 발생 간격

선행 사건이 발생한 후에 그다음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소요 기간을 알아보기 위해 재비행 소년(1,477명)의 사건 발생 간격을 분석하였다. 재비행 소년의 사건은 총 6,721건 이고, 사건 간격은 최소 0일에서 최대 1,409일로 나타났다. 사건 발생 간격의 분포를 살펴보면, 재비행 사건 간격이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소년은 전체의 11.3%에 해당하였다. 1-30일 사이에 추가 사건이 발생한 소년은 41.2%로 가장 많았다. 전체 재비행 소년 중, 사건 일자 정보가 있는 재비행 소년(1,248명)의 사건(3,983건) 발생 간격은 평균 61.9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봐도 사건 발생 간격이 1일~30일 이내인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소년법 관련 사건의 경우만 31~60일 사이가 가장 높은 빈도(3명, 30%)를 보였으나 전체 인원수가 10명인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건 발생의 평균 간격이 1~30일 이내인 경우는 성범죄 재비행 소년의 58.8%(40명), 강력범죄 재비행 소년의 51.1%(45명), 기타범죄 재비행 소년의 48.3%(29명), 재산범죄 재비행 소년의 44.9%(312명), 폭력범죄 재비행 소년의 38.4%(116명)에 해당하였다. 범죄유형별로 사건 발생의 평균 간격을 살펴보면 성범죄가 44.1일로 가장 짧게 나타났고, 그다음 강력범죄가 49.9일, 기타범죄 55.6일, 폭력범죄 70.3일, 재산범죄 71.9일, 소년법 관련 사건은 81.1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교통범죄는 사건 평균 발생 간격이 94.7일로 가장 길었다.

표 III-33. 재비행 소년의 범죄유형별 사건 발생 간격

(단위: 명(%))								
구분	계	강력	성	재산	교통	폭력	기타	소년
0일	141 (11.3)	11 (12.5)	10 (14.7)	42 (6.0)	4 (2.2)	58 (19.2)	5 (8.3)	1 (10.0)
1~30일	514 (41.2)	45 (51.1)	40 (58.8)	312 (44.9)	61 (33.0)	116 (38.4)	29 (48.3)	2 (20.0)
31~60일	165 (13.2)	8 (9.1)	4 (5.9)	122 (17.6)	40 (21.6)	45 (14.9)	13 (21.7)	3 (30.0)
61~180일	235 (18.8)	17 (19.3)	8 (11.8)	138 (19.9)	53 (28.6)	47 (15.6)	7 (11.7)	2 (20.0)
181~365일	128 (10.2)	5 (5.7)	5 (7.4)	65 (9.4)	18 (9.7)	24 (7.9)	5 (8.3)	2 (20.0)
366~1,409일	66 (5.3)	2 (2.3)	1 (1.5)	16 (2.3)	9 (4.9)	12 (4.0)	1 (1.7)	0 (0.0)
소계	1,248 (100.0)	88 (100.0)	68 (100.0)	695 (100.0)	185 (100.0)	302 (100.0)	60 (100.0)	10 (100.0)
정보없음	229	45	19	60	4	51	9	8
계	1,477	133	87	755	189	353	69	18
평균(일)	61.9	49.9	44.1	71.9	94.7	70.3	55.6	81.1
표준편차(일)	145.9	90.3	86.4	122.1	140.0	133.6	104.0	95.1

③ 사건 발생일로부터 재판까지의 소요 기간

재판 준비 메모가 작성된 만 5년의 기간에 1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초비행 소년은 총 1,773명이다. 이중 사건 날짜 정보가 없는 58명을 제외한 1,715명의 사건 발생일로부터 재판까지 소요 기간은 평균 5.8개월로 나타났다. 재비행 소년은 초비행 소년과 달리 2개 이상의 사건으로 1번 이상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비행 소년의 수(1,477명)와 총 사건의 수(2,056개)는 일치하지 않는다. 재비행 소년의 모든 사건에 대하여 사건 발생일로부터 중국결정이 있는 재판까지 소요 기간은 평균 7.6개월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비행 소년의 소요 기간보다 약 2개월 정도 더 길었다.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의 사건을 사건 발생일부터 재판까지의 소요 기간에 따라 나누어 그 빈도를 살펴보았다. 소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초비행 소년의 사건 비중이 더 높았으며, 소요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재비행 소년의 사건 비중이 더 높았다. 한편, 사건이 1개 있는 초비행 소년임에도 사건 발생일로부터 종국결정이 있는 재판까지 1년 이상 소요된 경우가 7.3%였으며, 재비행 소년의 경우에도 소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14.8%였다.

표 III-34. 사건 발생일부터 재판까지의 소요 기간

구분	초비행소년(1,773명)		재비행소년(1,477명)	
	빈도(건)	비율(%)	빈도(건)	비율(%)
1개월 이상~2개월 미만	17	1.0	24	1.2
2개월 이상~3개월 미만	196	11.4	125	6.1
3개월 이상~4개월 미만	335	19.5	240	11.7
4개월 이상~5개월 미만	332	19.4	278	13.5
5개월 이상~6개월 미만	224	13.1	268	13.0
6개월 이상~7개월 미만	130	7.6	200	9.7
7개월 이상~8개월 미만	109	6.4	193	9.4
8개월 이상~9개월 미만	81	4.7	138	6.7
9개월 이상~10개월 미만	65	3.8	133	6.5
10개월 이상~11개월 미만	62	3.6	81	3.9
11개월 이상~12개월 미만	39	2.3	72	3.5
1년 이상~2년 미만	104	6.1	249	12.1
2년 이상	21	1.2	55	2.7
계	1,715	100.0	2,056	100.0
정보없음	58	-	43	-
평균(개월)	5.8		7.6	
표준편차(개월)	4.4		5.9	

* 주: 1) 사건 날짜가 없는 경우 정보없음으로 처리함.

2) 재비행 소년은 2개 이상의 사건으로 1년 이상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비행 소년의 수(1,477명)와 총 사건의 수(2,056개)는 일치하지 않음.

④ 범죄유형별 재비행 소년의 개별 사건 특성

사건이 2개 이상인 재비행 소년들은 특정 범죄에 대해 재비행 소년으로 분류된더라도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초비행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건이 3개 있는 재비행 소년의 사건 중 2개는 강력범죄에 해당하고 1개는 재산범죄에 해당할 때, 이 소년은 강력 재비행 소년으로 분류되지만, 재산 초비행 소년이기도 하다. 재비행 소년의 범죄유형별 분포를 보면 표 III-35와 같다.

강력 재비행 소년 133명의 강력범죄 사건은 총 417건이며, 해당 소년들은 강력범죄 사건뿐 아니라 성범죄 44건, 재산범죄 84건, 교통범죄 25건 등 다른 유형의 범죄도 함께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 재비행 소년이 경험하는 모든 범죄유형의 사건(656건)을 기준으로 범죄 분포를 살펴보면 강력범죄가 6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재산(12.8%), 폭력(11.4%), 성(6.7%)범죄로 나타났다. 성 재비행 소년은 성범죄 사건이 전체의 5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폭력범죄(20.2%)와 강력범죄(10.0%) 등도 함께 경험하였다. 폭력 재비행 소년은 폭력범죄(53.3%)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재산범죄(28.5%)와 교통범죄(6.7%) 등도 함께 경험하였다. 재산 재비행 소년은 재산범죄 경험률이 69.9%로 가장 높으며, 교통범죄(11.9%)와 폭력범죄(10.3%) 등을 함께 경험하였다.

앞선 다른 범죄유형과 달리 교통범죄, 기타범죄, 소년법 관련 사건 유형은 해당 범죄유형의 경험률보다 재산범죄의 경험률이 더 높았다. 교통 재비행 소년의 사건 중 교통범죄의 비중(32.4%)보다 재산범죄 사건의 비중이 52.0%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타 재비행 소년의 범죄사건 중 재산범죄는 46.6%로 기타범죄 33.0%보다 높았고, 소년사건 재비행 소년도 재산범죄 사건 비중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리하면, 교통범죄, 기타범죄, 소년범죄 재비행 소년의 주된 사건은 재산범죄라고 할 수 있다.

표 III-35. 범죄유형별 재비행 소년의 개별 사건 분포

(단위: 건(%))

구분	강력	성	재산	교통	폭력	기타	소년	전체
강력 재비행 (133명)	417 (63.6)	44 (6.7)	84 (12.8)	25 (3.8)	75 (11.4)	5 (0.8)	6 (0.9)	656 (100.0)
성 재비행 (87명)	40 (10.0)	228 (56.9)	33 (8.2)	5 (1.2)	81 (20.2)	7 (1.7)	7 (1.7)	401 (100.0)
재산 재비행 (755명)	95 (1.9)	52 (1)	3,522 (69.9)	601 (11.9)	519 (10.3)	182 (3.6)	67 (1.3)	5,038 (100.0)
교통 재비행 (189명)	26 (1.5)	9 (0.5)	910 (52.0)	567 (32.4)	158 (9.0)	50 (2.9)	30 (1.7)	1,750 (100.0)
폭력 재비행 (353명)	93 (4.2)	84 (3.8)	624 (28.5)	148 (6.7)	1,169 (53.3)	51 (2.3)	24 (1.1)	2,193 (100.0)
기타 재비행 (69명)	3 (0.6)	8 (1.5)	250 (46.6)	49 (9.1)	45 (8.4)	177 (33.0)	5 (0.9)	537 (100.0)
소년사건 재비행 (18명)	1 (0.5)	8 (4.3)	82 (44.1)	26 (14)	21 (11.3)	7 (3.8)	41 (22.0)	186 (100.0)

* 주: 1) 소년 기준 3,250명의 사건 8,494건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한 사건이 2개 이상의 범죄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강력, 성, 재산, 교통, 폭력, 기타, 소년법 관련 사건의 소계의 합이 전체 사건 수보다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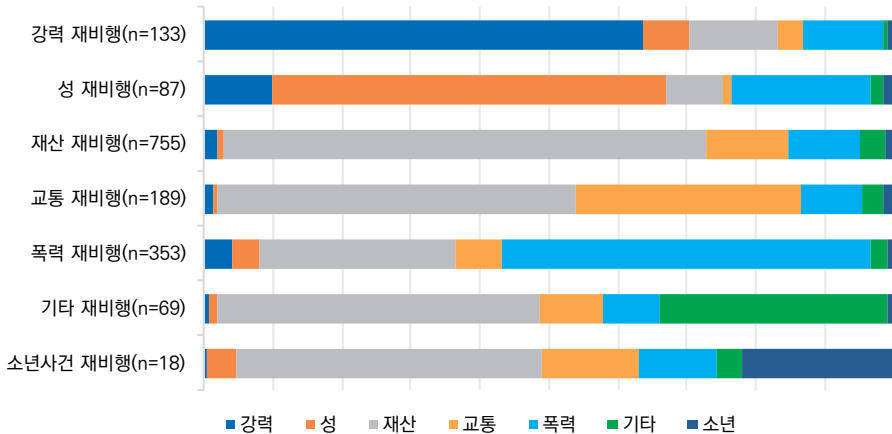


그림 III-21. 범죄유형별 재비행 소년의 개별 사건 분포

⑤ 재비행 소년의 범죄유형별 재비행 사건 분포

사건이 2개 이상인 소년들은 2가지 이상의 범죄에 재비행소년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재비행 소년의 사건이 2개이고 사건 2개가 모두 재산범죄와 교통범죄에 중복으로 해당할 때, 이 소년은 재산 재비행 소년이면서 동시에 교통 재비행 소년이기도 하다. 이처럼 하나의 범죄유형에 대하여 재비행 경험이 있는 소년이 다른 범죄유형에 대해서도 재비행 양상을 보이는지 알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표 III-36에 보고하였다. 강력 재비행 소년 133명 중 다른 범죄에서도 재비행을 경험하는 소년은 42명이었으며, 이중 폭력 재비행이 42.9%(18명), 재산 재비행이 33.3%(14명)였다. 성 재비행 소년 87명 중 다른 범죄에서도 재비행을 경험하는 소년은 34명이었으며, 이 중 50.0%(17명)는 폭력 재비행 소년에 해당하였고 20.6%(7명)는 강력 재비행 소년이었다. 재산 재비행 소년 755명 중 다른 범죄에서도 재비행을 경험하는 소년은 300명이었고, 이들은 주로 교통 재비행(45.7%)과 폭력 재비행(34.7%)에 해당하였다. 교통, 폭력, 기타, 소년법 관련 사건 유형은 모두 재산 재비행에 해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III-36. 재비행 소년의 범죄유형별 재비행 사건 분포

(단위: 명(%))

구분	강력 재비행	성 재비행	재산 재비행	교통 재비행	폭력 재비행	기타 재비행	소년 재비행	전체
강력 재비행 (133명)	-	7 (16.7)	14 (33.3)	3 (7.1)	18 (42.9)	0 (0.0)	0 (0.0)	42 (100.0)
성 재비행 (87명)	7 (20.6)	-	6 (17.6)	1 (2.9)	17 (50.0)	1 (2.9)	2 (5.9)	34 (100.0)
재산 재비행 (755명)	14 (4.7)	6 (2.0)	-	137 (45.7)	104 (34.7)	33 (11.0)	6 (2.0)	300 (100.0)
교통 재비행 (189명)	3 (1.6)	1 (0.5)	137 (72.9)	-	33 (17.6)	8 (4.3)	6 (3.2)	188 (100.0)
폭력 재비행 (353명)	18 (9.7)	17 (9.1)	104 (55.9)	33 (17.7)	-	9 (4.8)	5 (2.7)	186 (100.0)
기타 재비행 (69명)	0 (0.0)	1 (1.9)	33 (63.5)	8 (15.4)	9 (17.3)	-	1 (1.9)	52 (100.0)
소년사건 재비행 (18명)	0 (0.0)	2 (11.1)	6 (33.3)	6 (33.3)	3 (16.7)	1 (5.6)	-	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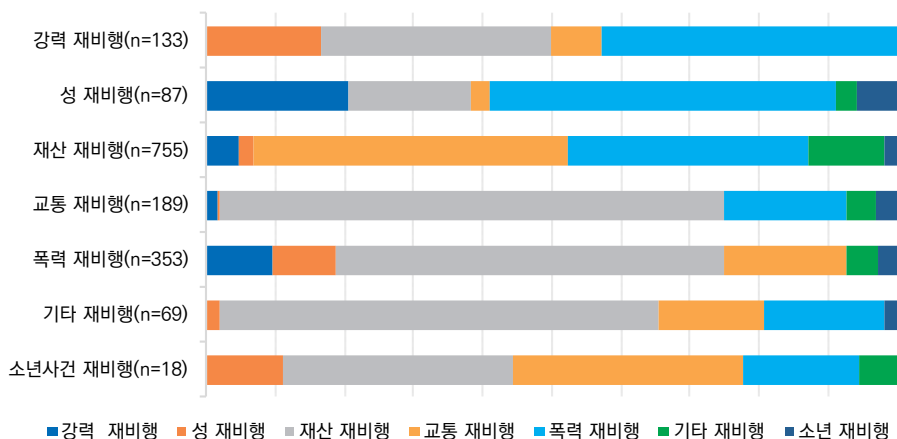


그림 III-22. 재비행 소년의 범죄유형별 재비행 사건 분포

(2) 피해 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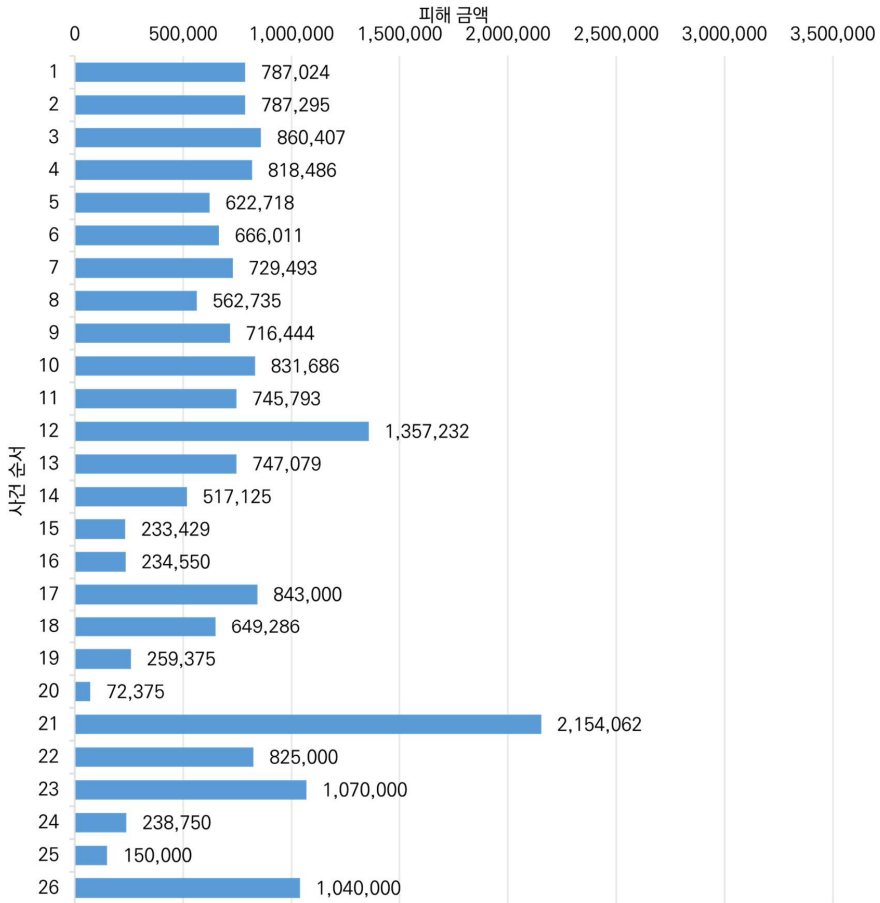
① 재산범죄 피해 금액

재산범죄의 사건 발생 순서에 따라 피해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재산범죄에 기입된 피해 금액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재산범죄 총 4,484건 중에 분석에 활용한 사건은 2,025건으로, 이는 소년 972명의 사건에 해당한다. 피해 금액 분석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이 기입되어 있지 않은 사건(예를 들어, “금 10돈”이나 “오토바이”처럼 물품으로 적혀있는 경우)과 피해 금액이 이상치에 해당하는 경우(평균에서 2 표준편차 이상인 값에 해당하는 사건 19건)를 포함하여 피해 금액 정보가 없는 2,077건을 제외하였다. 재산범죄 2,025건에 대한 평균 피해 금액은 약 772,003원(표준편차 1,536,354원)으로 나타났다. 사건 순서별 평균 피해 금액을 표 III-37에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해금액 정보가 있는 첫 번째 사건은 759건으로 평균 피해 금액은 787,024원, 피해금액 정보가 있는 두 번째 사건은 331건으로 평균 피해 금액은 787,295원이었다. 피해금액 정보가 있는 사건은 소년당 최대 26건까지 존재하였고, 사건 순서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피해 금액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그림 III-23 참고).

표 III -37. 재산범죄 사건순서별 평균 피해금액(평균)

사건 수	평균 피해금액(원)	빈도(건)	비율(%)
1	787,024	759	37.1
2	787,295	331	16.3
3	860,407	220	10.7
4	818,486	168	8.6
5	622,718	129	6.2
6	666,011	81	4.1
7	729,493	67	3.4
8	562,735	54	2.8
9	716,444	48	2.3
10	831,686	35	1.7
11	745,793	27	1.2
12	1,357,232	24	1.3
13	747,079	19	1.1
14	517,125	12	0.6
15	233,429	7	0.4
16	234,550	10	0.4
17	843,000	5	0.3
18	649,286	7	0.3
19	259,375	6	0.3
20	72,375	4	0.2
21	2,154,062	4	0.2
22	825,000	3	0.2
23	1,070,000	1	0.1
24	238,750	2	0.1
25	150,000	1	0.1
26	1,040,000	1	0.1
전체	772,003 (표준편차=1,536,354)	2,0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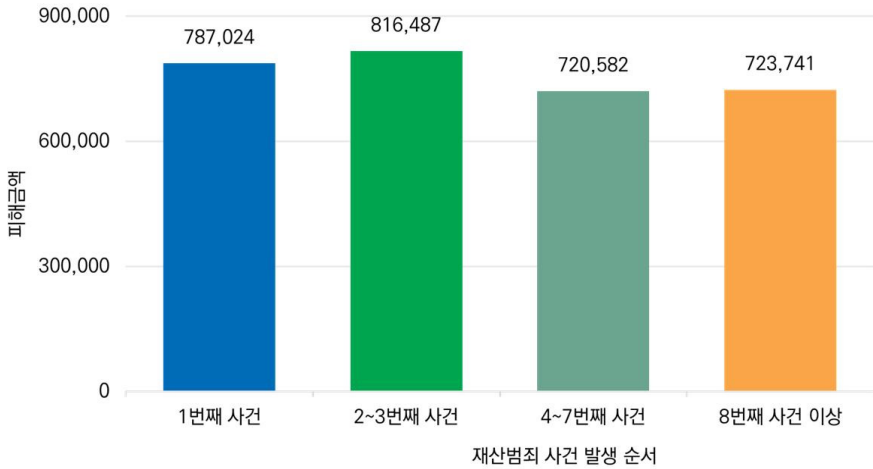
* 주: 원자료는 Skewness = 19.2, Kurtosis = 451.5로 나타나 이상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본 분석은 평균 2SD 범위 밖 사건 총 19건(소년 13명의 정보에 해당)을 포함하여 피해 금액 정보가 없는 총 2,077건을 제외하여 분석함.



(단위: 원)

그림 Ⅲ-23. 재산범죄 사건 순서별 평균 피해 금액

사건 순서가 스무 번째인 경우는 4건도 채 되지 않아 평균 피해 금액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에 분석 집단 간 비율이 유사하도록, 첫 번째 사건(759건, 37.1%), 두 번째~세 번째 사건(551건, 27.0%), 네 번째~일곱 번째 사건(445건, 22.3%), 여덟 번째 사건 이상(270건, 13.7%)으로 집단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림 Ⅲ-24를 보면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건 순서가 증가에 따른 평균 피해액의 증가세는 발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원)

그림 Ⅲ-24. 재산범죄 사건 집단별 평균 피해 금액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의 재산범죄 사건에서 피해 금액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재산범죄 사건 중 피해 금액이 있는 사건은 총 2,025건이고, 이중 초비행 소년의 사건이 306건, 재비행 소년의 사건이 1,719건이었다. 초비행 소년의 재산범죄 사건에서 나타난 평균 피해 금액은 약 68만 원이고 재비행 소년의 재산범죄 사건에서 나타난 평균 피해 금액은 약 78만 원으로 재비행 소년의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초비행 소년보다 10만 원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p = 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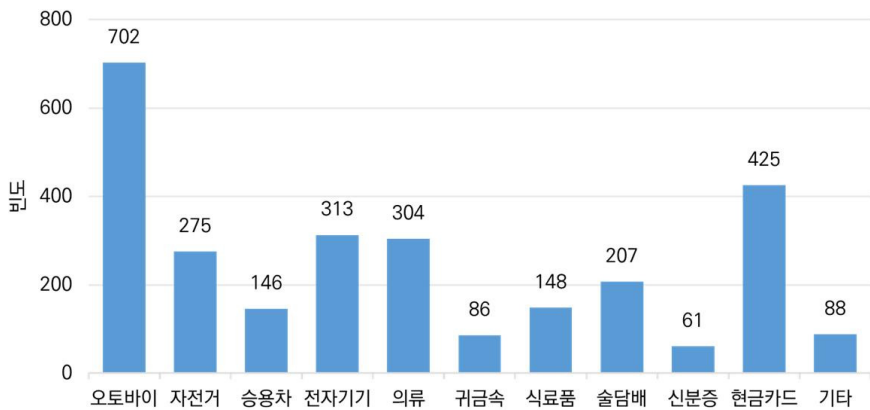
표 Ⅲ-38.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의 재산범죄 사건 피해 금액 비교

구분	빈도(건)	평균 피해 금액(원)	표준편차
초비행 소년	306	684,316	1,492,142
재비행 소년	1,719	787,612	1,543,993
전체	2,025	772,003	1,536,354

* 주: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p = 0.28$)

② 재산범죄 피해 물품

다음으로는 피해 물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은 피해 물품 정보가 있는 사건 2,386건을 활용하였으며, 이는 소년 1,195명의 사건에 해당한다. 전체 사건 2,386건 중 피해 물품은 오토바이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현금 및 카드, 전자기기(예시: 아이패드, 아이폰, 충전기, 태블릿, 외장하드 등), 의류(예시: 명품가방, 선글라스, 운동화, 패딩 등), 자전거, 술담배, 식료품(예시: 과자, 우유, 삼각김밥, 캔커피 등), 승용차, 기타(예: 피시방 이용료, 택시비, 화장품 등), 귀금속, 신분증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건)

그림 III-25. 재산범죄 피해 물품 빈도

표 III-39. 피해 물품 수별 빈도

피해 물품 수(개)	빈도(건)	비율(%)
1	2,082	87.3
2	246	10.3
3	51	2.1
4	7	0.3
계	2,386	100.0
평균(표준편차)	1.2(0.4)	

* 주: 피해 금액 정보가 없는 1,764건은 분석에서 제외함.

피해 물품 정보가 있는 사건 중에서 피해 물품이 1개인 사건은 2,082건(87.3%), 2개인 사건은 246건(10.3%), 3개인 사건은 51건(2.1%)이었다. 피해 물품은 최대 4개 등장하였으며, 평균 피해 물품의 수는 1.2개(표준편차 0.4)로 나타났다.

사건 발생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물품의 구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오토바이, 현금 및 카드, 전자기기, 의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건 순서가 높아질수록 사건빈도가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 순서의 구간을 나누어 피해 물품의 구성비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사건(1,031건, 43.2%), 두 번째~세 번째 사건(667건, 28.0%), 네 번째~여섯 번째 사건(387건, 16.2%), 일곱 번째 사건 이상(301건, 12.6%)의 총 4개의 집단을 만들고 집단 간 피해 물품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집단 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Ⅲ-27 참조). 이는 재산범죄가 거듭된다고 하더라도 피해 물품이 크게 변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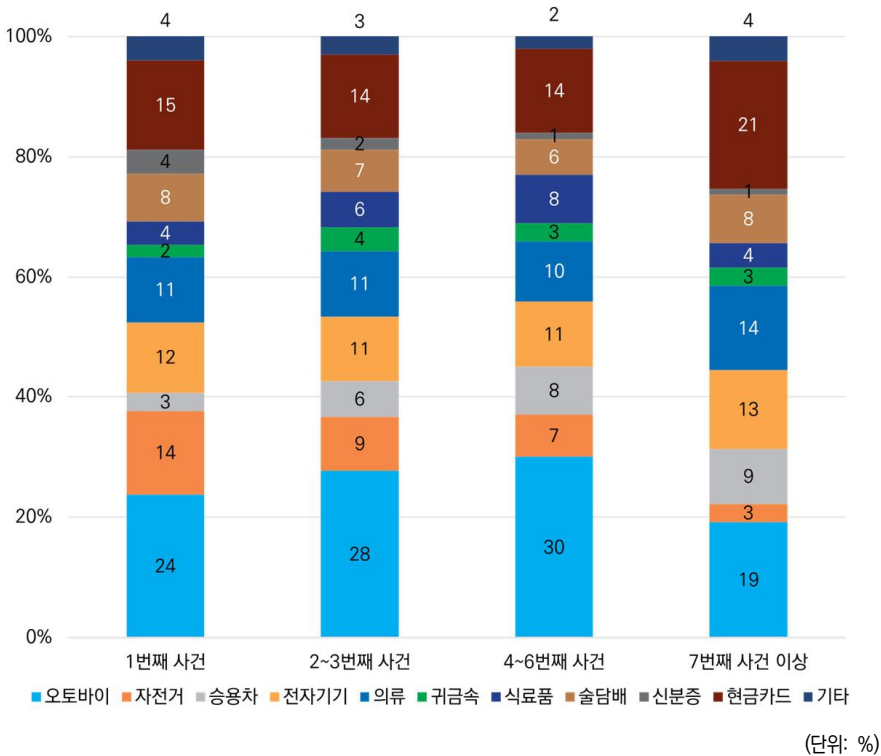


그림 Ⅲ-26. 사건 발생 순서 구간별 피해 물품 분포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의 재산범죄 피해 물품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표 III-40). 초비행 소년의 재산범죄 피해물품은 자전거(22.6%), 오토바이(20.1%), 현금 및 카드(15.5%) 순으로 나타났다. 재비행 소년의 재산범죄에서 빈번하게 나타난 피해물품은 오토바이(31.5%), 현금 및 카드(18.3%), 전자기기(13.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0.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의 피해물품 비교

(단위: 건(%))

피해물품	초비행 소년	재비행 소년	계
오토바이	87(20.1)	615(31.5)	702(29.4)
자전거	98(22.6)	177(9.1)	275(11.5)
승용차	11(2.5)	135(6.9)	146(6.1)
전자기기	54(12.5)	259(13.3)	313(13.1)
의류	53(12.2)	251(12.9)	304(12.7)
귀금속	7(1.6)	79(4)	86(3.6)
식료품	24(5.5)	124(6.3)	148(6.2)
술담배	41(9.5)	166(8.5)	207(8.7)
신분증	19(4.4)	42(2.2)	61(2.6)
현금 및 카드	67(15.5)	358(18.3)	425(17.8)
기타	24(5.5)	64(3.3)	88(3.7)
전체 사건 수*	433(100)	1953(100)	2386(100)
정보없음	259	1,505	1,764

* 주: 전체 사건 수는 피해 물품 정보가 나타난 사건의 총합이기 때문에 피해 물품이 나타난 개별 사건의 합과 일치하지 않음. 피해 물품별 사건의 발생 빈도는 전체 사건 수 기준으로 비율을 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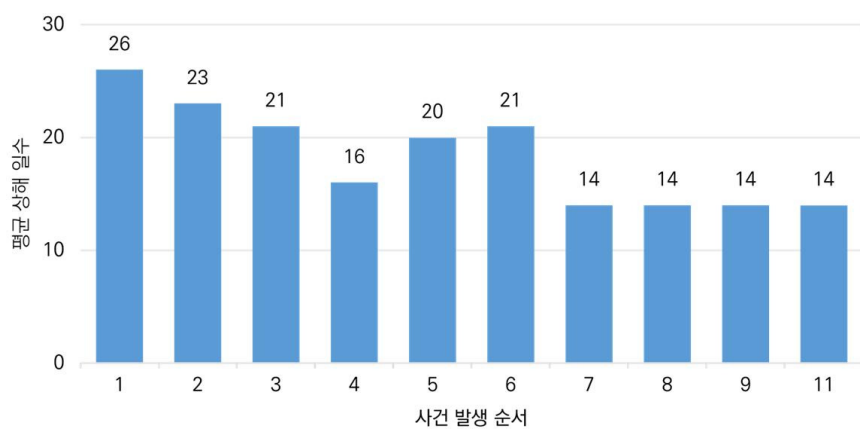
③ 폭력범죄 상해진단 일수

폭력범죄의 피해 규모는 상해진단 일수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상해진단 일수는 ‘2주 상해, 4주 상해 등’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난 정보를 일 단위로 변환하여 활용하였다. 폭력범죄 중 상해진단 일수가 기록된 사건은 총 455건으로, 이는 소년 411명의 자료에 해당한다. 상해진단 일수는 최소 7일부터 최대 105일이었으며 평균은 24.6일(표준편차 17.1)이었다. 폭력범죄를 사건의 발생 순서대로 나열하여 사건 순서별 평균 상해 일수를 분석한 결과, 첫 번째 사건의 평균 상해 일수는 26일이고, 두 번째 사건의 평균 상해

일수는 23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건 순서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상해 일수는 오히려 감소 경향을 보였으나 5번째 순번의 사건부터는 사건의 빈도가 10개 미만으로 낮아져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Ⅲ-41. 사건 순서별 평균 상해진단 일수 및 사건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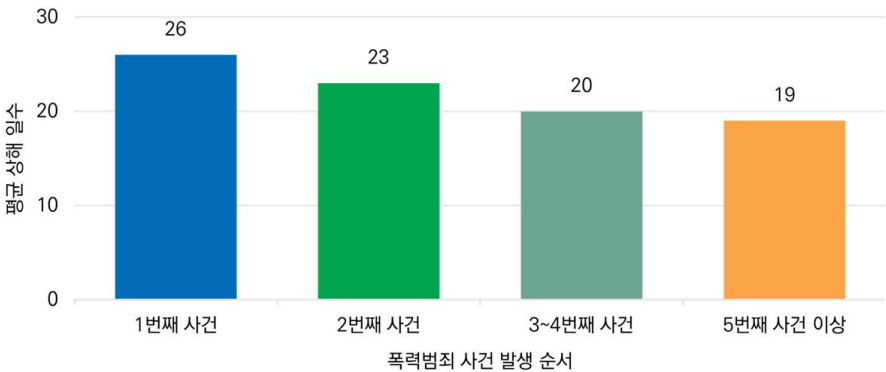
사건 순서	평균 상해(일)	사건 수(%)
1	26	318(69.9)
2	23	76(16.7)
3	21	31(6.8)
4	16	13(2.9)
5	20	9(2)
6	21	3(0.7)
7	14	1(0.2)
8	14	2(0.4)
9	14	1(0.2)
11	14	1(0.2)
계		455(100.0)
평균(일)		24.6
표준편차(일)		17.1



(단위: 일)

그림 Ⅲ-27. 사건 순서에 따른 평균 상해진단 일수

사건 발생 순서가 높아질수록 빈도가 매우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 발생 순서를 첫 번째 사건(318건, 70.0%), 두 번째 사건(76건, 16.0%), 세 번째~네 번째 사건(44건, 9.7%), 다섯 번째 사건 이상(17건, 3.7%)의 네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 평균 상해진단 일수를 구하였다. 그림 III-28을 살펴보면, 이전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건 순서의 증가와 함께 평균 상해 일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폭력사건이 반복된다고 해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지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단위: 일)

그림 III-28. 사건 발생 순서 구간별 평균 상해진단 일수

(3)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의 위기로인 특성¹⁰⁾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의 위기로인 경험률을 비교한 결과, 개인, 가족, 학교 및 또래 영역에서 재비행 소년의 경험률이 모두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III-42). 개인 위기로인의 경험률은 초비행 소년 76.9%, 재비행 소년 90.8%로 나타났고, 가정 위기로인은 초비행 소년은 54.8%, 재비행 소년은 70.1%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및 또래 위기로인은 초비행 소년은 62.9%, 재비행 소년은 84.6%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위기로인은 재판 단위로 정보가 존재하고, 개별 사건 단위의 위기로인 정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재판 단위 자료에 나타난 위기로인을 소년 중심으로 통합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즉, 재판 준비 메모 자료에서 소년의 위기 세부요인이 한 번이라도 등장했다면 위기로인이 있는 것으로 코딩함.

표 III-42.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의 영역별 위기 경험을 비교

(단위: 명(%))

구분	개인 위기로인		가정 위기로인		학교 및 또래 위기로인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초비행 소년(1,773명)	410 (23.1)	1,363 (76.9)	801 (45.2)	972 (54.8)	657 (37.1)	1,116 (62.9)
재비행 소년(1,477명)	136 (9.2)	1,341 (90.8)	442 (29.9)	1,035 (70.1)	228 (15.4)	1,249 (84.6)
χ^2	111.6***		79.4***		190.1***	
계	546 (16.8)	2,704 (83.2)	1,243 (38.3)	2,007 (61.8)	885 (27.2)	2,365 (72.8)

* 주: 위기로인은 소년 별로 영역마다 1개라도 위기로인이 있으면 해당 영역의 위기로인을 “있음”으로, 해당 영역에서 단 1개의 위기로인도 없었다면 “없음”으로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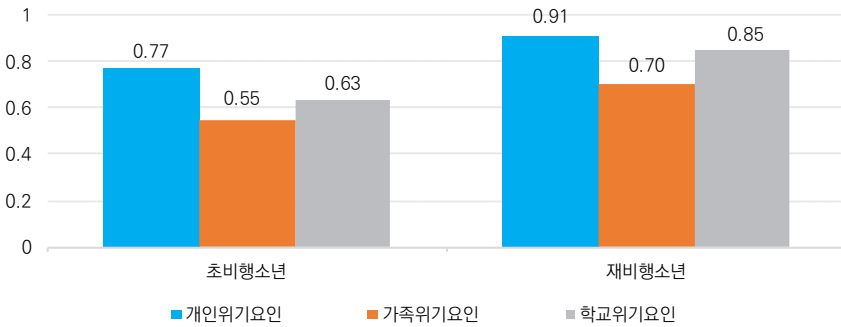


그림 III-29. 초비행/재비행 소년의 위기로인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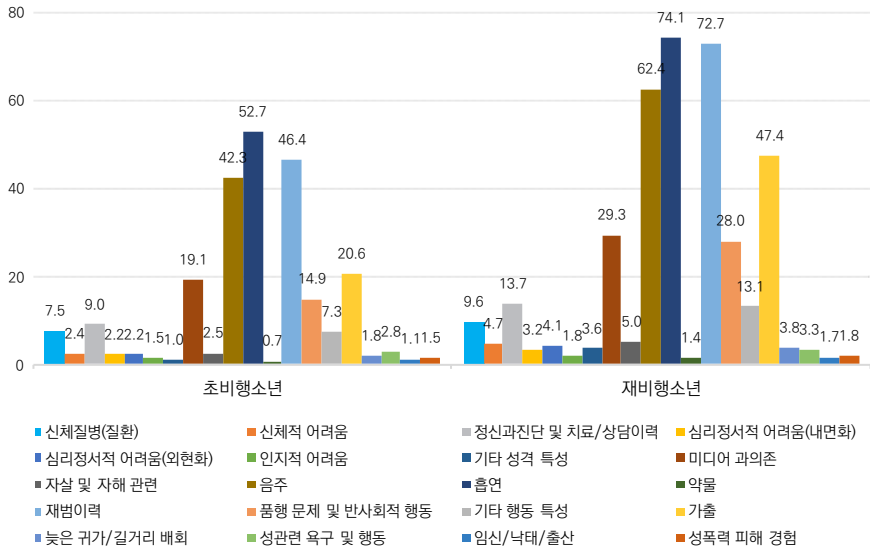
①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의 개인 위기 세부요인 비교

재비행 소년의 개인 위기 세부요인을 살펴본 결과, 흡연(74.1%), 재범이력(72.7%), 음주 경험(62.4%)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비행 소년도 흡연(52.7%), 재범이력(46.4%), 음주(42.3%)가 다른 위기로인보다 높게 보고되지만 재비행 소년의 경험률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재비행 소년의 가출, 미디어 과의존(게임과다, 스마트폰 의존 등), 품행 문제 및 반사회적 행동 등의 경험률은 각각 47.4%, 29.3%, 28.0%로 나타나 흡연, 재범이력, 음주 경험보다는 낮았지만, 초비행 소년의 경험률과는 10%p 이상 차이가 나므로 재비행 소년의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II-43.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의 개인 위기 세부요인

구분	초비행 소년		재비행 소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신체질병(질환)	133	7.5	142	9.6
신체적 어려움	42	2.4	69	4.7
정신과진단 및 치료/상담이력	159	9.0	203	13.7
심리정서적 어려움(내면화)	39	2.2	48	3.2
심리정서적 어려움(외면화)	39	2.2	60	4.1
인지적 어려움	26	1.5	27	1.8
기타 성격 특성	18	1.0	53	3.6
미디어 과의존	339	19.1	433	29.3
자살 및 자해 관련	45	2.5	74	5.0
음주	750	42.3	921	62.4
흡연	935	52.7	1,095	74.1
약물	12	0.7	21	1.4
재범이력	822	46.4	1,074	72.7
품행 문제 및 반사회적 행동	264	14.9	414	28.0
기타 행동 특성	129	7.3	193	13.1
가출	365	20.6	700	47.4
늦은 귀가/길거리徘徊	32	1.8	56	3.8
성관련 욕구 및 행동	49	2.8	49	3.3
임신/낙태/출산	20	1.1	25	1.7
성폭력 피해 경험	27	1.5	27	1.8
계	1,773	100.0	1,477	100.0
위기요인 수 평균(표준편차)	2.4개 (2.0)		3.8개 (2.2)	

* 주: “평균”은 소년 별로 개인 위기 세부요인의 수를 집계한 개인 위기요인 수의 평균값임. 개인 위기요인 수의 평균에 대한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p < .001$).



(단위: %)

그림 III-30. 초비행/재비행 소년의 개인 위기 세부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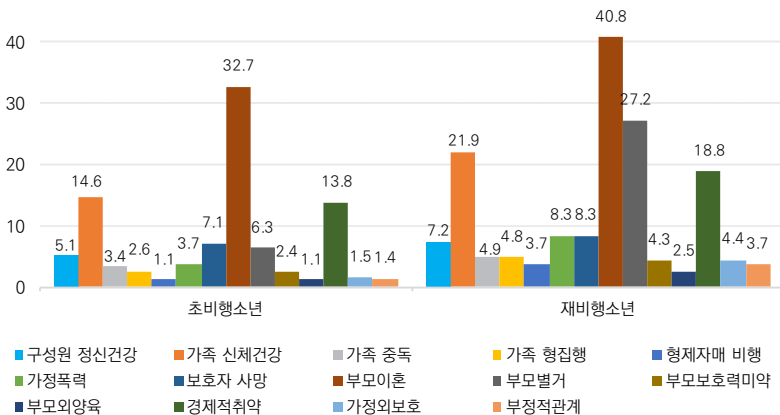
②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의 가정 위기 세부요인 비교

가정 위기 영역의 세부요인을 살펴본 결과, 재비행 소년의 경험률이 초비행 소년의 경험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재비행 소년이 경험한 가정 위기요인은 부모의 이혼 및 별거와 같은 구조적 요인, 가족구성원의 신체적 어려움, 경제적 취약성과 같은 경제적 요인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재비행 소년의 40.8%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고, 27.2%는 부모 별거/분거/가출/연락두절 등을 경험하였으며, 18.8%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21.9%는 간경화, 뇌경색, 위암 등 신체 질병/질환/장애를 포함한 신체 건강상에 어려움을 지닌 가족구성원과 함께 생활하였다. 위 요인들보다는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부모의 보호력 미약, 부모 외 양육 경험, 가정 외 보호 경험 영역에서도 초비행 소년보다 재비행 소년이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초비행 소년은 이와 같은 가족 구조, 경제적 상황, 가족구성원의 건강과 관련된 위기요인에 대해 재비행 소년보다 5-10%p 낮은 경험률을 보였다.

표 III-44.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의 가정 위기 세부요인

구분	초비행 소년		재비행 소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가족구성원의 정신적 어려움	90	5.1	106	7.2
가족구성원의 신체적 어려움	258	14.6	323	21.9
가족구성원의 중독	61	3.4	73	4.9
가족구성원의 형 집행 유무	46	2.6	71	4.8
형제자매 비행 유무	20	1.1	55	3.7
가정 내 폭력 유무	66	3.7	122	8.3
보호자 사망	125	7.1	123	8.3
부모 이혼	580	32.7	602	40.8
부모 별거/분거/가출/연락두절	289	16.3	402	27.2
부모 보호력 미약	42	2.4	64	4.3
부모 외 양육자	20	1.1	37	2.5
경제적 취약성	244	13.8	277	18.8
가정 외 보호 경험	26	1.5	65	4.4
부정적 관계	25	1.4	54	3.7
계	1,773	100.0	1,477	100.0
위기요인 수 평균(표준편차)	1.0개 (1.2)		1.5개 (1.4)	

* 주: “평균”은 소년 별로 가정 위기 세부요인의 수를 집계한 가정 위기요인 수의 평균 값임. 가정 위기요인 수의 평균에 대한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p < .001$).



(단위: %)

그림 III-31. 초비행/재비행 소년의 가정 위기 세부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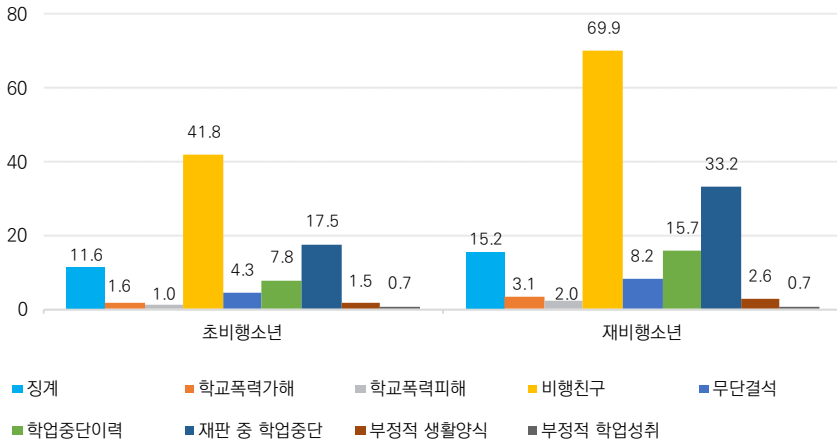
③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의 학교 및 또래 위기 세부요인 비교

학교 및 또래 영역의 위기 세부요인을 살펴본 결과, 재비행 소년의 경험률이 초비행 소년의 경험률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행 또래와의 접촉 경험은 재비행 소년 69.9%, 초비행 소년 41.8%로 차이가 가장 컸다. 자퇴, 유예, 퇴학 등 과거 학업중단 이력과 재판 당시 재학 중이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도 재비행 소년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중단 이력과 재판 당시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재비행 소년의 경우 각각 15.7%와 33.2%, 초비행 소년의 경우 각각 7.8%와 17.5%였다. 무단결석 경험률과 부정적인 학교생활 및 태도 역시 초비행 소년보다 재비행 소년의 경험률이 각각 3.9%p, 1.1%p 높게 나타났다.

표 Ⅲ-45.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의 학교 및 또래 위기 세부요인

구분	초비행 소년		재비행 소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징계 경험 유무	206	11.6	225	15.2
학교폭력 가해경험	28	1.6	46	3.1
학교폭력 피해경험	18	1.0	29	2.0
비행친구 유무	742	41.8	1,033	69.9
결석(무단결석)	76	4.3	121	8.2
학업중단 이력	138	7.8	232	15.7
재판당시 학업중단자	310	17.5	490	33.2
부정적 학교생활 및 태도	26	1.5	39	2.6
낮은 학업 성취	13	0.7	11	0.7
계	1,773	100.0	1,477	100.0
위agy요인 수 평균(표준편차)	0.8개 (0.8)		1.5개 (1.0)	

* 주: “평균”은 소년별 세부 학교 및 또래위agy요인 값을 합산한 것의 평균임. 학교 및 또래 위agy요인 합산 값에 대한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p < .001$).



(단위: %)

그림 III-32. 초비행/재비행 소년의 학교 및 또래 위기 세부요인

④ 범죄유형별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의 위기요인 비교

범죄유형별로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의 위기요인 경험률을 비교하였다(표 III-46). 비교 집단에는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범죄 무경험 집단도 포함하였다. 재산유형, 교통유형, 폭력유형은 무경험(해당 사건 0개) - 초비행(해당 사건 1개) - 재비행(해당 사건 2개 이상) 집단 순으로 위기요인 경험률이 모두 증가하였다. 다만 통고나 우범 등을 포함하는 소년법 관련 사건 유형은 개인 위기요인과 가정 위기요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에, 강력범죄와 성범죄의 경우는 재비행-초비행-무경험 집단 순으로 위기요인 경험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이나 학교 위기 경험률보다는 개인 위기요인 경험률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 강력범죄와 성범죄 사건을 저지른 소년은 다른 범죄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III-46. 범죄유형별 비행집단에 따른 위기요인 경험률

(단위: 명(%))

범죄유형	비행집단	전체(명)	개인	가정	학교 및 또래
강력	무경험	2,776	2,331(84.0)	1,730(62.3)	2,067(74.5)
	초비행	341	269(78.9)	200(58.7)	217(63.6)
	재비행	133	104(78.2)	77(57.9)	81(60.9)
	χ^2		8.1*	2.6	27.8***
성	무경험	2,924	2,468(84.4)	1,817(62.1)	2,190(74.9)
	초비행	239	181(75.7)	147(61.5)	130(54.4)
	재비행	87	55(63.2)	43(49.4)	45(51.7)
	χ^2		37.4***	5.8	66.9***
재산	무경험	1,533	1,192(77.8)	866(56.5)	933(60.9)
	초비행	962	783(81.4)	574(59.7)	728(75.7)
	재비행	755	729(96.6)	567(75.1)	704(93.2)
	χ^2		131.1***	76.7***	273.5***
교통	무경험	2,565	2,037(79.4)	1,513(59.0)	1,820(71.0)
	초비행	496	478(96.4)	345(69.6)	366(73.8)
	재비행	189	189(100.0)	149(78.8)	179(94.7)
	χ^2		126.0***	44.5***	50.4***
폭력	무경험	2,176	1,773(81.5)	1,306(60.0)	1,468(67.5)
	초비행	721	614(85.2)	441(61.2)	579(80.3)
	재비행	353	317(89.8)	260(73.7)	318(90.1)
	χ^2		17.6***	24.0***	105.0***
기타	무경험	2,897	2,398(82.8)	1,776(61.3)	2,107(72.7)
	초비행	284	246(86.6)	183(64.4)	203(71.5)
	재비행	69	60(87.0)	48(69.6)	55(79.7)
	χ^2		3.4	2.9	1.9
소년	무경험	3,087	2,546(82.5)	1,887(61.1)	2,249(72.9)
	초비행	145	141(97.2)	107(73.8)	104(71.7)
	재비행	18	17(94.4)	13(72.2)	12(66.7)
	χ^2		23.2***	10.2**	0.4

* 주: * $p < .05$; ** $p < .01$; *** $p < .001$

⑤ 개인 위기 세부요인 비교

범죄유형별로 무경험, 초비행, 재비행 소년의 개인 위기 세부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III-47, 표 III-48, 표 III-49와 같다. 다른 범죄유형과 비교했을 때, 강력범죄 재비행 소년의 개인 위기 세부요인 중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열등감, 자신감 결여, 낮은 자존감, 불안 증세 등과 같은 내면화 문제로 7.5%의 경험률을 보였다. 또한, 강력범죄 재비행 소년의 음란물, 음란사이트, 성욕과 같은 성관련 욕구 및 행동 경험률은 11.3%, 임신이나 출산 등과 관련된 위기 경험률도 3.0%로 다른 범죄유형의 재비행 소년 경험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범죄는 정신과 진단 및 치료, 인지적 어려움, 성폭력 피해, 가출, 재범이력과 같은 위기 경험률이 초비행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정신과 진단 및 치료 경험률은 초비행 집단이 15.9%, 재비행 집단이 9.2%로 나타났고, 인지적 어려움도 초비행 집단이 5.4%, 재비행 소년이 1.1%로 나타났다. 가출 경험의 경우에는 초비행 집단이 27.6%, 재비행 집단이 17.2%로 약 10.4%p 차이가 났고 집단 간 빈도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어려움, 기타 성격특성, 자살 자해 관련, 성욕구 행동 경험률에서도 성범죄 초비행 집단의 위기 경험률은 다른 범죄의 초비행 집단의 경험률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범죄 재비행 집단에서는 신체질병(질환)의 경험률이 12.6%로 다른 범죄의 재비행 집단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았다.

재산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개인 위기 특징으로는 늦게 귀가하고 새벽에 길거리를 배회하는 경험률이 재비행 집단 기준 5.0%로 다른 범죄유형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재산 초비행 소년의 해당 경험률은 2.6%, 무경험 소년은 1.6%로 세 집단 간 분포의 차이가 유의하여, 재산사건의 반복과 늦은 귀가 및 길거리 배회 경험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범죄의 개인 위기요인의 특징으로는 재비행 소년뿐만 아니라 초비행 소년의 경험률 또한 모든 범죄유형 중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인 개인 위기요인들이 많다는 점이다. 우선, 교통 재비행 소년의 음주(83.6%), 흡연(94.2%), 재범이력(93.1%), 품행문제(48.7%), 기타 행동특성(21.2%), 신체적 어려움(5.8%) 모두 다른 범죄유형 재비행 소년의 경험률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통 초비행 소년의 흡연(83.9%), 품행문제(33.5%), 기타행동(15.7%), 늦은 귀가 및 길거리 배회(4.2%), 미디어 과의존(29.0%), 신체적 어려움(6.0%) 또한 다른 범죄유형 초비행 집단에 비해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폭력범죄 재비행 집단의 자살 및 자해관련 위기 경험률은 7.7%, 약물 경험은 2.0%로 다른 범죄유형의 재비행 집단의 경험률과 비교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살 및 자해 관련 위기는 폭력범죄 무경험 소년의 2.8%, 초비행 소년의 4.4%가 경험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약물 경험률은 기타범죄 초비행 집단이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타범죄의 유형에 약물범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타범죄 초비행 집단은 임신, 낙태, 출산 등의 경험률이 3.5%로 다른 범죄유형 초비행 집단의 경험률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우범이나 통고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소년법 관련 사건은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 모두 다양한 개인 위기를 경험하였다. 특히, 초비행 소년 57.9%, 재비행 소년 66.7%가 가출경험이 있었는데 이는 잦은 외박, 가출 등으로 인해 보호자나 시설장으로부터 통고되거나, 우범으로 소년사법 체계에 유입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정신과 진단 및 치료 경험률도 초비행 소년 20.7%, 재비행 소년 38.9%로 다른 범죄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현화 문제 또한 초비행 소년 9.0%, 재비행 소년 5.6%로 나타났고, 성폭력 피해경험도 초비행 소년 4.8%, 재비행 소년 5.6%로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인다. 소년법 관련 사건 초비행 소년은 신체질병(질환) 경험률이 15.9%, 내면화 문제 5.5%, 음주 7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비행 소년은 미디어 과의존 38.9%, 인지적 어려움 11.1%, 기타 성격 특성 11.1%, 외현화 문제 5.6%로 다른 범죄유형의 소년들보다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47. 범죄유형 및 비행집단별 개인 위기 세부요인(심리 및 성폭행 피해 관련) 경험률

(단위: %)

유형	구분	전체 (명)	정신과 진단치료	심리정서 -내면화	심리정서 -외현화	인지적 어려움	자살 및 자해	기타 성격특성	성폭력 피해
강력	무경험	2,776	10.2	2.4	2.9	1.4	3.5	2.2	1.6
	초비행	341	15.2	3.2	3.2	2.6	4.7	1.2	2.1
	재비행	133	20.3	7.5	5.3	3.0	3.8	5.3	2.3
	χ^2		19.6***	13.3**	2.4	10.2**	1.2	7.5*	0.7
성	무경험	2,924	10.8	2.5	2.9	1.3	3.3	2.1	1.5
	초비행	239	15.9	4.6	4.6	5.4	7.1	4.2	4.2
	재비행	87	9.2	2.3	3.4	1.1	5.7	1.1	1.1
	χ^2		6.1*	3.7	2.2	23.3***	10.1**	5.1	10.1**
재산	무경험	1,533	11.0	2.8	2.7	1.6	3.0	1.6	2.0
	초비행	962	8.6	2.2	2.5	1.1	3.3	2.0	1.5
	재비행	755	14.6	3.0	4.4	2.3	5.4	3.6	1.3
	χ^2		15.1**	1.4	6.0	3.2	8.9*	9.2*	1.6
교통	무경험	2,565	11.1	2.8	3.2	1.8	3.8	1.9	1.9
	초비행	496	10.7	1.8	2.4	0.4	2.8	2.4	0.6
	재비행	189	12.7	3.7	3.2	2.1	3.7	4.8	0.5
	χ^2		0.6	2.3	0.8	5.6	1.2	6.7*	6.2*
폭력	무경험	2,176	10.3	2.5	2.3	2.1	2.8	1.9	1.5
	초비행	721	12.3	2.8	4.3	0.4	4.4	2.1	1.4
	재비행	353	13.6	3.7	4.8	1.1	7.7	4.0	3.1
	χ^2		4.6	1.7	11.2**	10.3**	22.2***	5.9	5.2
기타	무경험	2,897	11.0	2.7	3.0	1.7	3.5	2.2	1.7
	초비행	284	12.7	2.5	3.5	1.8	5.6	2.5	1.4
	재비행	69	11.6	4.3	1.4	0.0	1.4	0.0	0.0
	χ^2		0.8	0.8	0.8	1.2	4.3	1.7	1.4
소년	무경험	3,087	10.5	2.5	2.8	1.5	3.6	2.1	1.5
	초비행	145	20.7	5.5	9.0	3.5	4.8	2.1	4.8
	재비행	18	38.9	5.6	5.6	11.1	0.0	11.1	5.6
	χ^2		28.5***	5.3	18.5***	13.5**	1.3	6.8*	11.1**

* 주: χ^2 값은 빈도에 대한 교차분석 실시 결과이며, 지면 한계로 빈도 정보는 생략하고 비율(경험률)만을 표기함.* $p < .05$; ** $p < .01$; *** $p < .001$

표 Ⅲ-48. 범죄유형 및 비행집단별 개인 위기 세부요인(비행성 관련) 경험률

(단위: %)

유형	구분	전체(명)	가출	음주	흡연	약물	처분이력	낮은 귀가 길거리 배회
강력	무경험	2,776	33.9	52.6	64.3	1.1	61.0	2.8
	초비행	341	27.0	44.9	52.2	0.6	41.9	2.3
	재비행	133	23.3	43.6	51.1	0.8	44.4	1.5
	χ^2		12.3**	10.6**	26.5***	0.8	56.7***	1.0
성	무경험	2,924	33.7	53.5	65.0	1.1	60.6	2.8
	초비행	239	27.6	34.7	38.9	0.4	39.3	1.7
	재비행	87	17.2	28.7	41.4	0.0	34.5	2.3
	χ^2		13.4**	49.4***	81.1***	1.9	62.1***	1.1
재산	무경험	1,533	21.3	45.5	53.3	0.8	46.7	1.6
	초비행	962	28.3	47.2	62.0	0.9	57.2	2.6
	재비행	755	61.9	68.7	81.7	1.6	83.4	5.0
	χ^2		390.8***	118.8***	174.5***	3.4	281.7***	22.3***
교통	무경험	2,565	28.8	45.9	56.0	0.9	51.0	2.4
	초비행	496	41.5	67.5	83.9	2.0	83.3	4.2
	재비행	189	63.0	83.6	94.2	0.5	93.1	3.2
	χ^2		113.4***	160.9***	224.0***	6.0*	278.4***	5.6
폭력	무경험	2,176	29.6	47.8	59.2	1.0	55.7	2.3
	초비행	721	34.5	55.9	66.3	0.7	61.6	3.2
	재비행	353	49.0	64.9	75.1	2.0	67.7	4.0
	χ^2		53.5***	43.1***	38.7***	4.1	21.9***	3.9
기타	무경험	2,897	31.8	50.1	61.3	0.8	56.6	2.6
	초비행	284	41.2	64.1	71.5	2.8	71.5	3.9
	재비행	69	40.6	56.5	73.9	1.4	75.4	1.4
	χ^2		12.4**	21.1***	15.4***	10.3**	31.8***	2.0
소년	무경험	3,087	31.4	50.2	61.3	0.9	57.2	2.7
	초비행	145	57.9	74.5	83.5	2.8	79.3	2.8
	재비행	18	66.7	77.8	88.9	0.0	77.8	0.0
	χ^2		53.7***	37.8***	34.3***	4.7	30.6***	0.5

* 주: χ^2 값은 빈도에 대한 교차분석 실시 결과이며, 지면 한계로 빈도 정보는 생략하고 비율(경험률)만을 표기함.

* $p < .05$; ** $p < .01$; *** $p < .001$

표 III-49. 범죄유형 및 비행집단별 개인 위기 세부요인(신체 및 행동 특성) 경험률

(단위: %)

유형	구분	전체(명)	신체질병	신체적 어려움	미디어 과의존	품행문제 반사회적 행동	기타 행동특성	성관련 욕구 및 행동	임신· 낙태· 출산
강력	무경험	2,776	8.2	3.5	23.6	21.8	10.1	1.8	1.3
	초비행	341	9.7	2.6	24.6	15.0	7.6	10.0	1.2
	재비행	133	9.8	4.5	24.1	16.5	11.3	11.3	3.0
	χ^2		1.1	1.1	0.2	10.2**	2.4	102.3***	2.7
성	무경험	2,924	8.2	3.4	24.0	21.3	10.4	2.2	1.4
	초비행	239	10.5	2.9	23.0	17.6	6.3	10.9	1.7
	재비행	87	12.6	5.7	17.2	13.8	4.6	10.3	0.0
	χ^2		3.5	1.6	2.2	4.6	7.0*	73.9***	1.4
재산	무경험	1,533	8.2	3.1	19.7	16.6	6.7	4.8	1.0
	초비행	962	8.6	3.2	22.2	17.6	10.4	1.0	1.7
	재비행	755	8.9	4.4	33.9	33.8	15.8	1.9	1.9
	χ^2		0.4	2.8	58.1***	99.7***	46.7***	33.5***	3.6
교통	무경험	2,565	8.2	2.7	21.8	16.4	8.0	3.5	1.5
	초비행	496	8.7	6.0	29.0	33.5	15.7	0.6	0.4
	재비행	189	11.1	5.8	36.5	48.7	21.2	3.2	2.1
	χ^2		1.9	17.4***	30.0***	167.6***	56.6***	11.7**	4.6
폭력	무경험	2,176	7.8	3.1	23.6	18.7	9.3	3.1	1.4
	초비행	721	9.9	3.3	21.2	21.9	10.4	2.4	1.1
	재비행	353	9.6	5.7	29.8	32.3	12.5	3.7	2.0
	χ^2		3.6	6.2*	9.6**	34.8***	3.6	1.7	1.3
기타	무경험	2,897	8.4	3.4	23.6	20.2	9.6	3.3	1.2
	초비행	284	8.8	3.9	24.6	25.4	12.7	0.4	3.5
	재비행	69	8.7	1.4	27.5	31.9	10.1	0.0	1.4
	χ^2		0.1	1.0	0.7	9.4**	2.7	10.1**	10.4**
소년	무경험	3,087	8.1	3.4	23.9	20.3	9.9	3.1	1.4
	초비행	145	15.9	4.8	19.3	31.7	10.3	2.8	0.7
	재비행	18	11.1	0.0	38.9	33.3	5.6	0.0	0.0
	χ^2		10.9**	1.5	3.9	12.7**	0.4	0.6	0.8

* 주: χ^2 값은 빈도에 대한 교차분석 실시 결과이며, 지면 한계로 빈도 정보는 생략하고 비율(경험률)만을 표기함.* $p < .05$; ** $p < .01$; *** $p < .001$

⑥ 가정 위기 세부요인 비교

표 III-50에 제시한 범죄유형과 가정 위기 세부요인을 살펴보면, 강력범죄와 성범죄 유형은 무경험, 초비행, 재비행 집단 간에 가정 위기 세부요인 경험률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없다. 이는 강력범죄와 성범죄의 원인을 본 분석에서 사용한 가정 위기요인 사전에서 찾기 어렵다는 뜻일 수 있다.

재산범죄 재비행 집단의 44.8%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였고, 33.4%는 별거하거나 직장 등의 이유로 부모가 타지에서 생활하거나 가출로 인한 연락두절을 경험하였으며, 해당 경험률은 다른 범죄유형 재비행 집단의 경험률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산범죄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 초비행 소년보다 재비행 소년의 위기 경험률이 다수의 세부요인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가족구성원의 신체적 어려움, 가족 구성원의 중독, 형 집행 유무, 형제자매 비행, 부모 이혼, 부모 별거 및 가출 등, 부모 외 양육자 여부, 경제적 취약성, 가정 외 보호경험, 가족구성원과의 부정적 관계 등에서 나타났고, 이는 14개의 가정 위기요인 중 10개에 해당한다. 이는 재산범죄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보호력을 높이고 취약성을 보완하는 접근을 취해야 함을 시사한다.

교통범죄 역시 재산범죄만큼이나 재비행 예방을 위해 가정의 보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구성원 중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비중이 교통범죄 재비행 소년의 11.6%로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3%가 가족구성원의 폭음, 알콜중독, 마약중독, 게임중독 등을 경험하였고, 22.8%가 가정의 경제적 취약성을 경험하였으며, 7.4%가 가족구성원과의 부정적 관계를 경험하였다.

기타범죄 유형에서는 가족구성원 중 전과이력이 있는 경우가 초비행 소년의 4.9%, 재비행 소년의 8.7%에 해당하였다. 또한, 기타범죄 초비행 소년 중에 부모의 보호력이 미약한 경우가 5.3%, 가족구성원과 부정적인 관계를 보인 경우가 3.5%로 높게 나타났다.

우범, 통고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소년들은 대부분의 가정 위기요인을 경험하였다. 전체 가정 위기 세부요인 14개에 대한 범죄유형별 초비행 집단의 경험률을 비교해보면 가족구성원의 정신적 어려움, 신체적 어려움, 중독, 형제자매 비행, 가정 내 폭력 유무, 보호자 사망, 부모 이혼, 부모의 별거나 가출 등, 부모 외 양육자, 가정 외 보호경험의 경험률이 소년법 관련 사건 초비행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재비행 집단도 가족구성원의 신체적 어려움, 형제자매의 비행 유무, 부모의 보호력 미약, 부모 외 양육자, 가정 외 보호에 대한 경험률이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50. 범죄유형 및 비행집단별 가정 위기 세부요인 경험률

(단위: %)

유형	구분	계(명)	정신적 어려움	신체적 어려움	중독	형 집행 유무	형제자매 비행	가정 내 폭력 유무	보호자 사망
강력	무경험	2,776	5.9	17.6	4.2	3.7	2.4	5.8	7.9
	초비행	341	6.5	19.6	4.1	2.6	1.2	6.2	6.2
	재비행	133	7.5	18.8	2.3	4.5	3.8	4.5	5.3
	χ^2		0.7	0.9	1.2	1.3	3.3	0.5	2.4
성	무경험	2,924	6.0	17.8	4.2	3.7	2.4	5.9	7.6
	초비행	239	7.1	18.0	4.6	2.5	1.7	4.2	8.8
	재비행	87	3.4	20.7	1.1	3.4	0.0	5.7	5.7
	χ^2		1.5	0.4	2.1	0.9	2.7	1.2	0.9
재산	무경험	1,533	5.5	16.2	3.7	2.9	1.8	4.7	6.7
	초비행	962	5.4	16.7	3.3	2.6	1.7	4.8	8.5
	재비행	755	7.8	22.6	6.0	6.4	4.1	9.3	8.5
	χ^2		5.5	15.4***	8.6*	21.7***	14.2**	21.9***	3.9
교통	무경험	2,565	5.7	17.0	4.0	3.2	1.9	5.4	7.3
	초비행	496	5.6	19.0	4.0	3.8	2.0	6.3	8.9
	재비행	189	11.6	26.5	6.3	7.9	7.9	10.1	8.5
	χ^2		11.1**	11.1**	2.5	11.3**	28.2***	7.3*	1.6
폭력	무경험	2,176	6.2	16.4	3.9	3.5	1.6	4.9	8.1
	초비행	721	5.4	18.5	4.6	3.7	2.8	6.2	5.4
	재비행	353	6.2	25.8	4.8	3.7	5.7	10.2	9.4
	χ^2		0.6	18.4***	1.2	0.1	23.1***	15.9***	7.2*
기타	무경험	2,897	6.1	17.8	3.9	3.3	2.2	5.8	7.5
	초비행	284	3.9	19.0	6.7	4.9	3.2	6.0	8.5
	재비행	69	11.6	15.9	2.9	8.7	1.4	4.3	8.7
	χ^2		6.1*	0.4	5.4	7.1*	1.2	0.3	0.4
소년	무경험	3,087	5.8	17.5	3.9	3.5	2.1	5.6	7.4
	초비행	145	9.7	25.5	9.7	4.8	4.8	9.0	12.4
	재비행	18	11.1	27.8	5.6	5.6	11.1	5.6	5.6
	χ^2		4.4	7.3*	11.9**	0.9	10.7**	2.8	5.0

* 주: χ^2 값은 빈도에 대한 교차분석 실시 결과이며, 지면 한계로 빈도 정보는 생략하고 비율(경험률)만을 표기함.

* $p < .05$; ** $p < .01$; *** $p < .001$

표 III-50. 범죄유형 및 비행집단별 가정 위기 세부요인 경험률(계속)

(단위: %)

유형	구분	계(명)	부모 이혼	부모 별거· 가출 등	부모 보호력 미약	부모 외 양육자	경제적 취약성	가정 외 보호 경험	부정적 관계
강력	무경험	2,776	36.8	21.9	3.4	1.8	16.6	2.8	2.5
	초비행	341	32.8	17.6	1.8	1.2	13.2	2.3	2.1
	재비행	133	36.1	18.0	5.3	2.3	11.3	3.0	1.5
	χ^2		2.1	4.2	4.2	0.9	4.9	0.3	0.8
성	무경험	2,924	36.6	21.4	3.2	1.9	16.1	2.7	2.5
	초비행	239	37.7	20.9	3.8	0.4	17.2	4.2	2.1
	재비행	87	25.3	17.2	4.6	0.0	11.5	3.4	2.3
	χ^2		4.9	9.0	0.7	4.5	1.6	2.0	0.1
재산	무경험	1,533	33.1	16.6	2.5	1.2	14.2	1.9	1.4
	초비행	962	34.9	19.2	3.5	1.6	15.8	1.9	2.1
	재비행	755	44.8	33.4	4.4	3.2	20.1	5.8	5.0
	χ^2		30.8***	88.7***	5.7	12.1**	13.5**	33.1***	29.3***
교통	무경험	2,565	35.0	20.2	3.1	1.6	14.2	2.5	2.2
	초비행	496	40.1	23.2	4.0	2.0	22.8	4.2	1.6
	재비행	189	44.4	30.2	3.2	3.2	22.8	3.2	7.4
	χ^2		10.3**	11.7**	1.1	2.8	29.3***	4.7	21.6***
폭력	무경험	2,176	35.5	20.3	3.3	1.8	14.8	2.7	2.4
	초비행	721	36.2	20.1	2.2	1.1	17.1	3.1	2.2
	재비행	353	42.2	29.5	5.4	3.1	21.5	2.8	2.8
	χ^2		6.0	15.9***	7.5*	5.5	11.0**	0.2	0.4
기타	무경험	2,897	36.3	20.8	3.0	1.8	15.8	2.7	2.3
	초비행	284	37.3	24.6	5.3	0.7	18.0	3.9	3.5
	재비행	69	36.2	26.1	4.3	2.9	17.4	4.3	1.4
	χ^2		0.1	3.3	4.4	2.4	1.0	2.0	1.8
소년	무경험	3,087	35.7	21.0	3.2	1.6	15.9	2.5	2.4
	초비행	145	53.1	27.6	4.8	3.5	18.6	6.2	2.1
	재비행	18	22.2	16.7	5.6	11.1	22.2	27.8	5.6
	χ^2		19.8***	3.8	1.5	11.9**	1.3	48.5***	0.8

* 주: χ^2 값은 빈도에 대한 교차분석 실시 결과이며, 지면 한계로 빈도 정보는 생략하고 비율(경험률)만을 표기함.

* $p < .05$; ** $p < .01$; *** $p < .001$

⑦ 학교 및 또래 위기 세부요인 비교

범죄유형에 따른 학교 및 또래 위기 세부요인 분포는 표 III-51에 제시하였다. 강력범죄는 재비행 소년의 낮은 학업 성취 경험률이 3.0%로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범죄는 초비행 집단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이 4.6%로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재비행 집단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2.3%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였다. 비행친구 유무도 초비행 소년이 36.4%, 재비행 소년이 27.6%로 초비행 소년의 경험률이 더 높았다.

재산범죄의 학교 위기로인 중 다른 범죄소년의 경험률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난 요인은 비행친구 유무로 재산 재비행 소년의 84%가 비행친구 위기로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산범죄 사건 중 공범이 있는 경우가 다른 범죄에 비해 많다는 점과 연관지어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표 III-18 참고).

교통범죄 재비행 집단의 학업중단 경험(23.3%), 재판 당시 학교 밖 청소년 여부(46.0%), 부정적인 학교생활 및 태도(4.8%)가 모든 범죄의 재비행 집단의 경험률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통범죄 유형에서 무비행-초비행-재비행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한 요인은 징계 경험, 학교폭력 가해 경험, 비행친구 유무, 학업중단 이력, 재판당시 학업 중단 여부, 부정적 학교생활 및 태도로 나타났다.

폭력범죄는 재비행 소년의 징계 경험(21.8%), 학교폭력 가해 경험(5.7%), 학교폭력 피해 경험(2.8%), 결석(9.9%) 경험률이 모든 범죄유형의 재비행 집단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폭력 초비행 집단 역시 징계 경험(18.6%), 학교폭력 가해경험(2.8%), 비행친구(64.5%), 낮은 학업성취(1.0%) 경험률이 다른 범죄유형의 초비행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I-51. 범죄유형 및 비행집단별 학교 및 또래 위기 세부요인 경험률

(단위: %)

유형	구분	계 (명)	징계 유무	학교 폭력 가해 경험	학교 폭력 피해 경험	비행 친구 유무	결석 (무단 결석)	학업 중단 이력	재판 당시 학업 중단	부정적 학교 생활 및 태도	낮은 학업 성취
강력	무	2,776	12.3	2.4	1.3	56.9	6.4	11.5	25.8	1.9	0.6
	초	341	17.6	1.8	2.3	41.3	3.8	12.0	17.0	2.6	0.9
	재	133	21.8	0.8	2.3	40.6	4.5	6.8	18.8	2.3	3.0
	χ^2		16.1***	2.0	2.9	40.7***	4.2	3.0	15.3***	0.8	10.0**
성	무	2,924	13.2	2.3	1.2	56.9	6.3	11.5	25.1	2.0	0.8
	초	239	13.0	1.3	4.6	36.4	4.2	10.0	21.3	2.5	0.8
	재	87	17.2	3.4	2.3	27.6	4.6	12.6	17.2	1.1	0.0
	χ^2		1.2	1.7	18.8***	63.8***	2.0	0.6	4.3	0.6	0.7
재산	무	1,533	16.5	2.3	1.8	37.2	4.4	9.1	18.3	1.6	1.0
	초	962	9.6	2.6	0.8	59.4	6.3	10.9	21.9	1.9	0.5
	재	755	11.4	1.9	1.6	84.0	9.0	16.6	40.9	2.9	0.5
	χ^2		27.7***	1.1	3.7	459.2***	18.7***	27.9***	145.3***	4.4	2.3
교통	무	2,565	13.8	2.1	1.5	53.1	5.5	10.3	22.1	1.8	0.8
	초	496	9.9	1.8	1.0	51.8	7.9	12.3	29.6	1.8	0.6
	재	189	15.3	5.3	2.1	83.1	8.5	23.3	46.0	4.8	0.5
	χ^2		6.2*	8.4*	1.3	65.8***	6.0	29.7***	62.4***	7.8*	0.3
폭력	무	2,176	10.1	1.6	1.2	47.2	4.8	9.9	24.2	1.8	0.7
	초	721	18.6	2.8	1.4	64.5	8.0	13.6	22.6	1.9	1.0
	재	353	21.8	5.7	2.8	80.5	9.9	15.9	31.4	3.4	0.3
	χ^2		59.0***	24.0***	5.4	172.4***	20.5***	15.1**	10.7**	4.0	1.5
기타	무	2,897	13.3	2.3	1.5	55.1	5.8	10.4	23.6	1.9	0.8
	초	284	13.4	1.4	1.1	48.6	7.7	19.4	31.7	3.2	0.0
	재	69	13.0	5.8	0.0	59.4	8.7	20.3	39.1	0.0	0.0
	χ^2		0.0	4.8	1.4	5.1	2.5	26.2***	17.2***	3.5	2.9
소년	무	3,087	13.4	2.3	1.5	55.0	5.9	11.1	24.3	1.9	0.8
	초	145	9.0	2.7	1.4	48.3	10.3	17.9	29.0	3.5	0.7
	재	18	16.7	0.0	0.0	44.4	5.6	16.7	39.0	0.0	0.0
	χ^2		2.6	0.6	0.3	3.3	4.9	7.0*	3.6	2.0	0.1

* 주: χ^2 값은 빈도에 대한 교차분석 실시 결과이며, 지면 한계로 빈도 정보는 생략하고 비율(경험률)만을 표기함
 * $p < .05$; ** $p < .01$; *** $p < .001$

(4) 소년 범죄 이행 궤적 분석 결과¹¹⁾

소년 범죄 이행 궤적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개인별로 사건 발생의 순서에 따라 범죄 이력 시퀀스(sequence) 자료를 생성하였다. 시퀀스를 구성하는 개별 범죄유형은 자료에 포함된 범죄유형 대분류(7개)를 활용하였다. 모든 복합 조합을 고려하여 유형을 세분화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유형을 묶었다. 우선 7가지 범죄유형에 대해서 단일한 사건만 있는 경우는 해당 범죄유형의 명칭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두 개의 범죄유형이 함께 있는 경우는 범죄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중한 유형의 이름을 따르되, “복합”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범죄의 성격은 “강력” > “성” > “폭력” > “재산” > “교통” > “소년” > “기타” 순으로 중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본 분석에서 사건과 사건 사이의 시간 요소(공백)는 시퀀스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 발생만을 축약한 형태로 시퀀스를 생성했다. 분석 자료에는 범죄와 관련한 맥락 정보로서 세 가지(개인, 가족, 학교) 영역의 위기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는 경험 여부에 대한 이분 변수를 활용하고, 이에 기반해서 집단 구분을 통해 범죄 이행 궤적의 특징을 탐색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본 분석에서 다루는 범죄 이력 자료는 시퀀스 구조로 변환함에 있어 두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범죄 이력의 “길이”가 개인마다 편차가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범죄 이력의 특성상 시퀀스를 구성하는 각 요소(element)는 어떤 지속적 상태를 의미하기 보다는 단발적 사건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자료의 이와 같은 성격은 연쇄 구조를 다루는 통상적인 시퀀스 분석(sequence analysis)을 활용함에 있어 제약으로 작용하게 된다. 생애사를 다루는 일반적인 시퀀스 분석의 경우 특정 연령 기간을 다루기 때문에 개인별로 관측점이 동일한 경우가 많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은닉 마르코프 모형(Hidden Markov Model; HMM)을 활용하여 관측된 사건(observed states)을 바탕으로 잠재 상태(latent states)를 추정하고 이전의 잠재 상태가 발생했을 때, 후행하는 다른 잠재 상태로의 이행 확률을 추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를 통해 사건의 시퀀스 구조에 대한 관측값에 근거하여, 각 사건의 구성 확률(emission probabilities)에 기반한 잠재 상태를 추정하고, 해당 잠재 상태가 다른 잠재 상태로 이행하는 이전 확률(transition probabilities)을 구하였다. 그리고 잠재 이행에 앞서 각 잠재

11) 소년 범죄 이행 궤적 분석 결과는 노법래 교수(국립부경대학교) 집필하였음.

상태의 초기 발현 확률(initial probabilities)을 추정하였다. 이는 사건의 수가 소년마다 다르다는 본 데이터의 특성에 적합하며, 상태의 지속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이벤트(범죄사건)가 어떻게 연속적으로 발생하는가에 관심이 있는 본 분석의 목적에도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분석 결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행 확률과 관련해서는 그래프(네트워크) 구조를 활용하였다. 원자료에 대한 초기 검토와 시퀀스 정보 추출은 Python 3.12.0을 사용하였으며, HMM 관련 분석은 R 패키지 seqHMM(Helske & Helske, 2019)의 관련 함수를 활용하였고, 기본적인 시각화와 추가적인 자료 처리는 R 4.4.1.을 사용하였다.

① 전체 이행 궤적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잠재 상태의 적정 수준에 대한 모형 검토를 수행하였다. 그림 III-33은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잠재 상태 수준을 10개부터 17개까지 늘려감에 따라 변화를 비교한 결과이다. 가운데 위치한 원은 잠재 상태를 의미하고, 잠재 상태를 구성하는 범죄유형의 비율을 색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주변의 선은 상태 이행 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행 확률이 1에 가까울수록 더 굵게 표현하였다. 모형에 대한 검토 결과 전체 데이터 기준으로 13개의 잠재 상태를 선택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¹²⁾

그림 III-34는 전체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사건 궤적을 유방향(directed) 그래프 구조로 표현한 것이다. 노드의 번호는 임시로 부여된 상태 번호이며, 노드의 크기는 초기 발현 확률에 따라서 조정된 것이다. 연결선(edge) 상의 수치는 이행 확률을 의미하며, 이행 확률이 높을수록 굵게 표현하였다. 초기 발현 확률이 큰 세 개의 상태를 예시로 제시하고, 사건의 구성 확률(비율)을 막대그래프로 함께 나타냈다. 먼저, 4번 노드의 경우는 “재산”이 주요한 상태이며, 1번 노드는 “폭력”이 주요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12번은 “강력”이 주요하면서 “성”이 일정 수준의 확률로 포함된 잠재 상태임을 알 수 있다.

12) 잠재 상태의 수가 적정 수준보다 적으면 단일 상태 내에 혼합이 많아져 해석이 어려워지고, 적정 수준보다 많으면 유사한 상태가 늘어나서 중복이 심해지는 패턴이 발생할 수 있다. 적정 모형 선택의 과정은 시뮬레이션이나 모형 적합도(AIC, BIC 등) 등을 활용할 수 있겠으나, 본 분석에서는 상태 수 변화에 따른 상태의 내적 동질성의 확보와 유사 상태의 발생 방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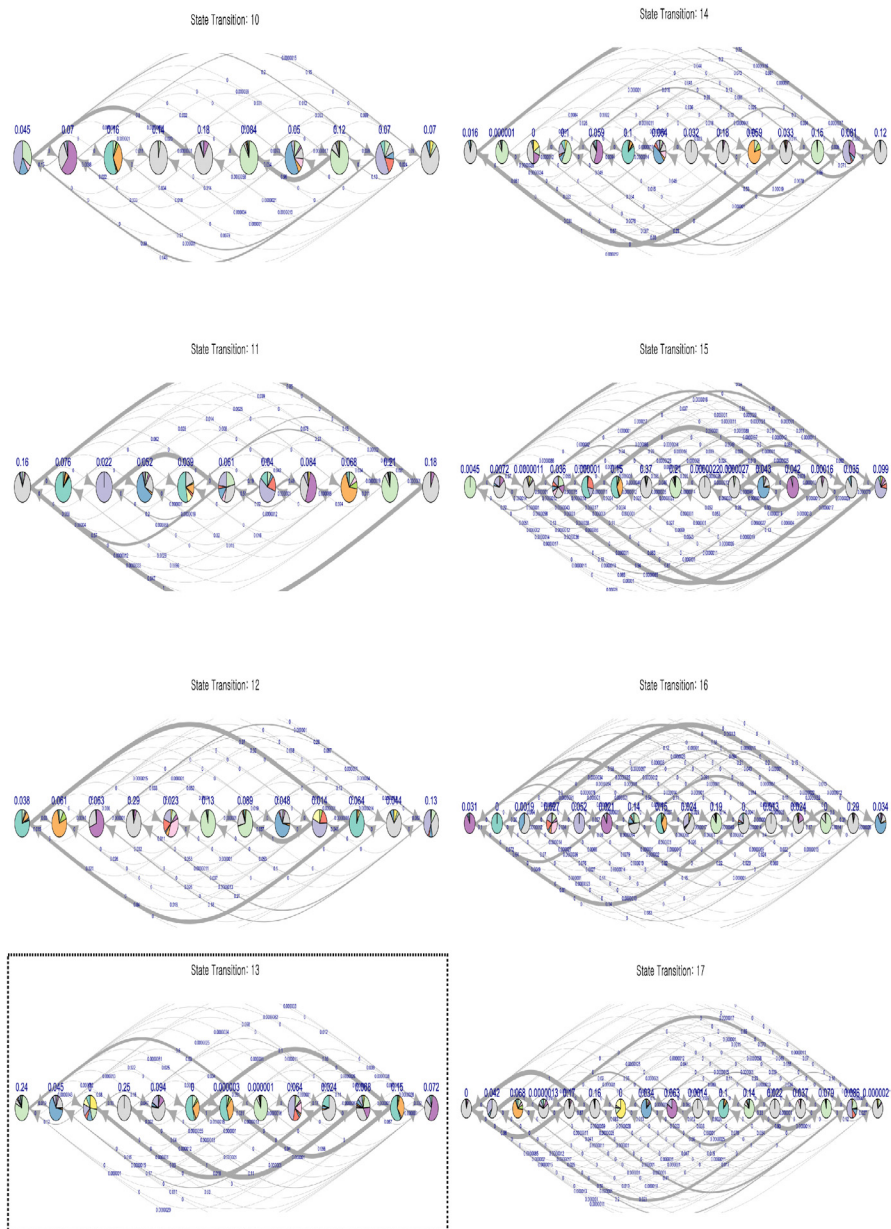


그림 III-33. 모형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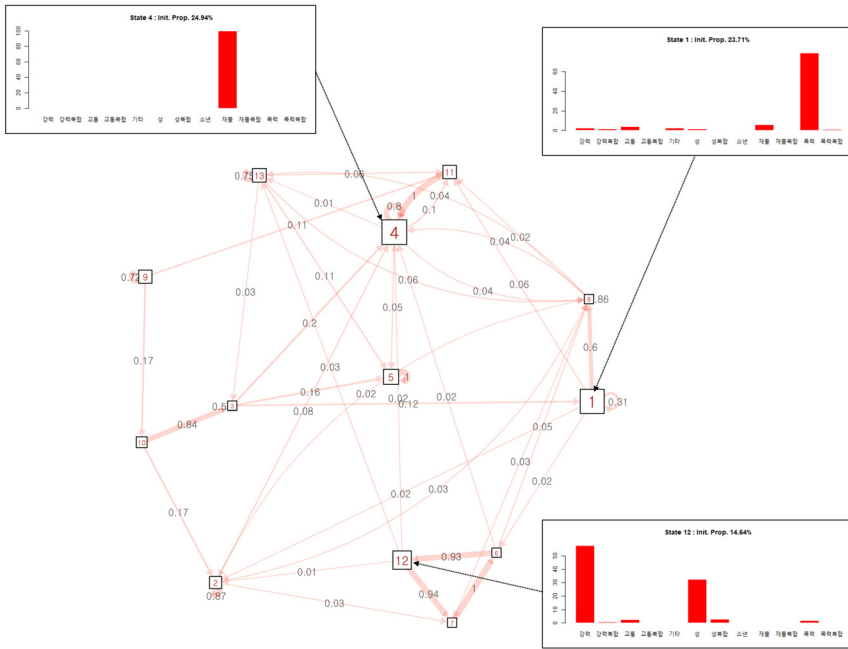


그림 III-34. 사건 이행의 그래프 구조(전체)

그림 III-35는 13개 잠재 상태의 이행 사건 구성 확률을 막대그래프로 표시한 것으로, 그림의 상단에 초기 발현 확률을 제시하였다. 그림 III-34에서 강력범죄와 성범죄가 조합된 상태인 12번이 높은 이전 확률로 6번과 7번 노드로 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림 III-35를 보면 이 두 노드는 모두 강력범죄와 성범죄가 주요한 구성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강력범죄, 성범죄는 타 범죄로의 이행보다는 동일 형태의 범죄로의 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폭력이 주요한 상태인 1번의 경우도 약 30%의 확률로 동일한 상태로 이행하거나, 유사하게 폭력이 주요한 8번 상태로 이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폭력범죄 또한 반복적 이행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재산범죄를 포함한 여타 범죄들은 다양한 확률에 따른 이행 경로를 통해서 상태 사이의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범죄들이 한두 번의 반복을 보이는 것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만, 재산범죄가 주요한 5번 노드에서의 순환과 같이 상당한 반복을 암시하는 경로 또한 존재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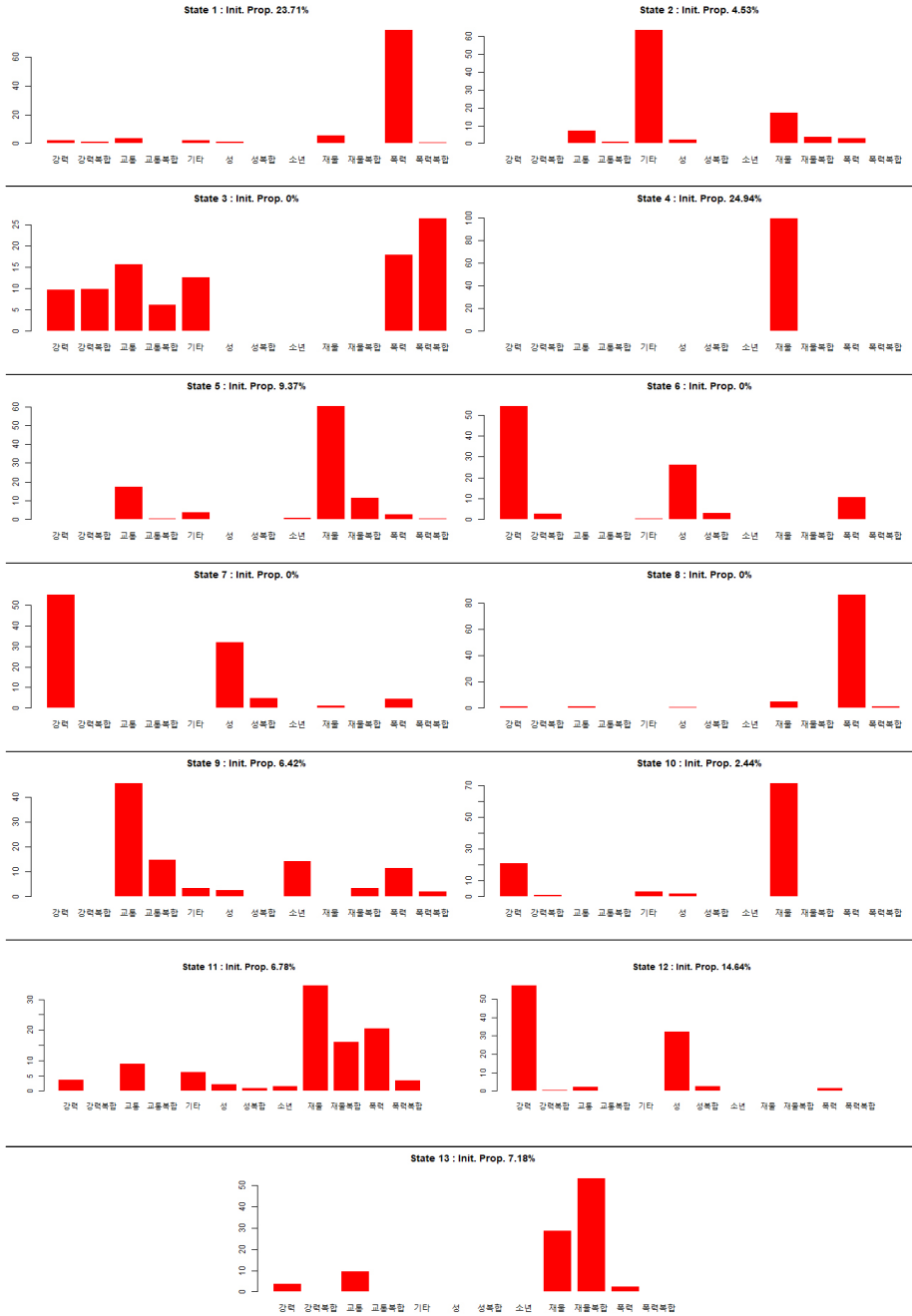


그림 III-35. 상태(State)별 범죄 구성(전체)과 초기 비중

② 위기요인 수에 따른 이행 궤적의 차이

위기요인 수에 따른 잠재 상태와 사건의 구성 확률을 기준으로, 잠재 상태의 명칭을 정하였다. 특정 범죄유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즉, 여타의 범죄에서 20% 확률에 미치는 경우가 없는 경우)는 해당 범죄명만을 부여하되, 그 비중을 뒤에 첨가하였다. 범죄 유형 가운데 단일 유형(사건 1개)인 경우는 a를 뒤에 달았으며, 2개 이상의 복합 유형인 경우는 b를 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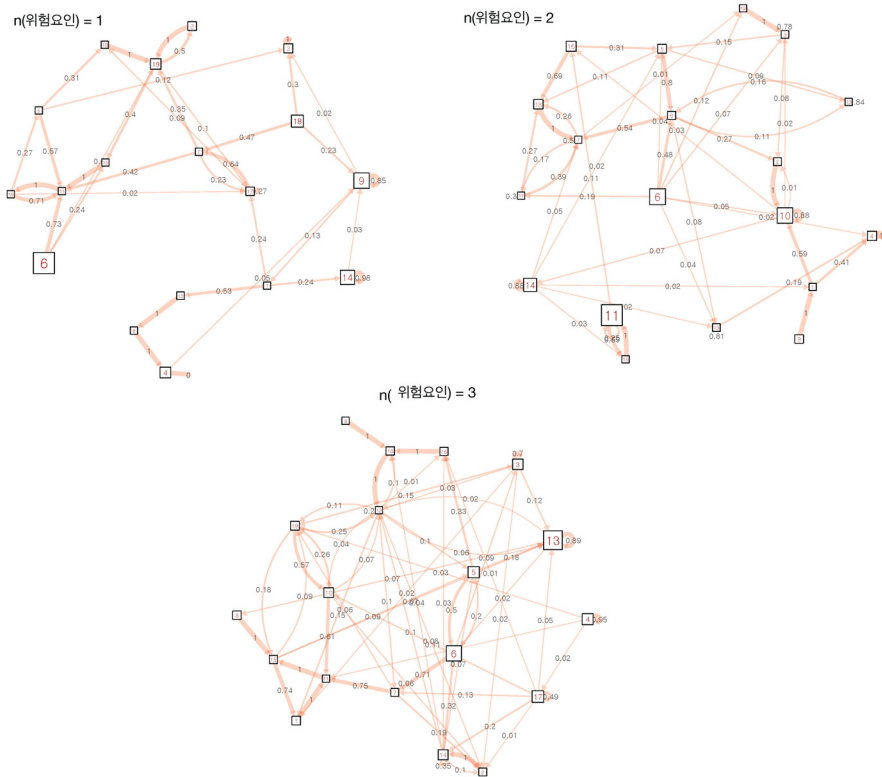


그림 III-36. 위기요인 수에 따른 범죄 이행의 그래프 구조

그림 III-36은 위기요인의 수에 따른 세 집단의 잠재 상태 이행 궤적을 비교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위기요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범죄 이행 궤적이 복잡해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가능성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하나는 위기요인이 늘어남에 따라서 범죄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행 궤적 또한 다양하게 포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위기요인이 많은 집단일수록 복합적인 범죄 경험을 가질 가능성이 클 수 있다. 동시에 여러 개의 범죄가 동반되는 복합 형태의 비행 이력을 가지는 경우 이행 궤적이 보다 활발하게 포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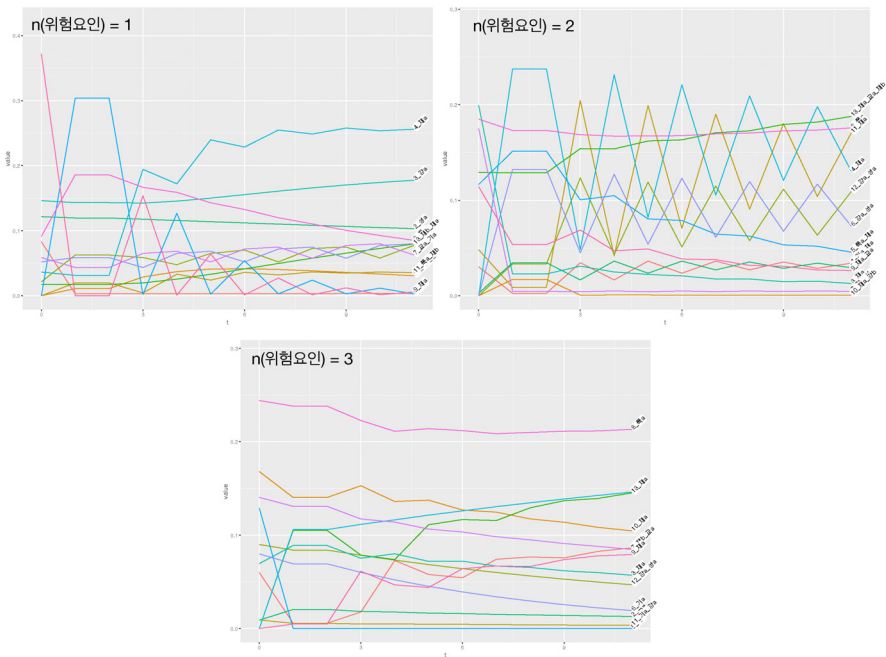


그림 III-37. 상태 비율 변화(전체)

그림 III-37은 13개의 상태가 궤적 이행 과정에서 상대적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여기서는 11회까지 이행이 이뤄졌을 때까지의 상황을 다루었다. 실제 11회의 이행 궤적을 경험하는 경우도 드물고, 각 이행이 동시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지만 해당 그림을 통해서 그림 III-36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전환의 메커니즘이 전체

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살펴봄으로써 전환 확률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11회 이후에는 비율 변화가 크지 않은 일종의 평행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길게 할 필요가 없었음을 밝힌다. 그림 III-37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위기요인이 1개인 집단의 경우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 재산범죄가 주요한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위험 요인 2개인 집단의 경우는 재산범죄, 교통범죄, 복합적인 형태의 재산범죄 등이 혼합된 유형과 폭력범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기요인 3개인 경우는 초반부터 폭력 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후 이를 지속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52. 시기별 주요 상태 변화(위기 심도별)

n(위기요인) = 1								
t	주요상태	%	t	주요상태	%	t	주요상태	%
0	9_재a	37.2	6	4_재a	22.9	11	4_재a	25.6
0	3_강a	14.6	6	3_강a	15.6	11	3_강a	17.8
0	2_성a	12.2	6	8_폭a	13.3	11	2_성a	10.3
0	8_폭a	9.1	6	2_성a	11.2	11	8_폭a	8.5
0	1_폭a	8.3	6	7_교a_기a	7.2	11	6_기a	8.0
n(위기요인) = 2								
t	주요상태	%	t	주요상태	%	t	주요상태	%
0	3_재a	19.9	6	4_재a	22.1	11	13_재a_교a_재b	18.8
0	8_폭a	18.5	6	8_폭a	16.8	11	8_폭a	17.6
0	7_강a_성a	17.5	6	13_재a_교a_재b	16.3	11	11_재a	17.1
0	13_재a_교a_재b	12.9	6	6_강a_성a	12.3	11	4_재a	13.1
0	5_폭a_재a	11.7	6	5_폭a_재a	7.9	11	12_강a_성a	10.9
n(위기요인) = 3								
t	주요상태	%	t	주요상태	%	t	주요상태	%
0	8_폭a	24.4	6	8_폭a	21.2	11	8_폭a	21.3
0	10_재a	16.8	6	10_재a	12.7	11	4_재a	14.6
0	7_재b_교a	14.1	6	4_재a	12.6	11	13_재a	14.5
0	5_재a	12.9	6	13_재a	11.7	11	10_재a	10.5
0	12_강a_성a	9.0	6	7_재b_교a	10.4	11	1_재a	8.7

표 III-52는 그림 III-37에서 살펴본 시기별 상태 비중 변화를 축약한 내용이다. 여기서는 시뮬레이션 상에서 초기상태(t=0), 중간 단계(t=6), 최종 단계(t=11)로 나누어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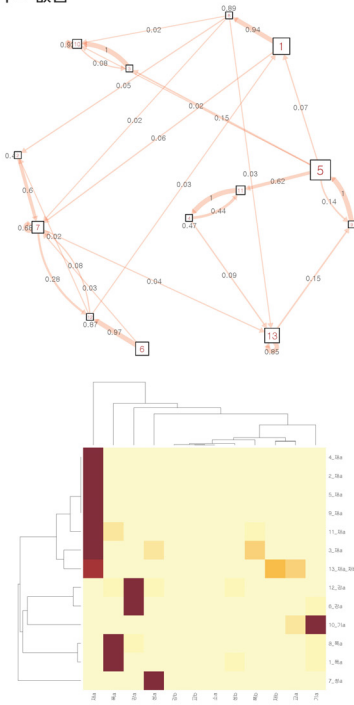
상위 5개의 상태를 제시한 결과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기요인이 늘어날수록 폭력범죄가 초기 확률 및 이행 후반기에 아울러 그 비중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위기요인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구분하여 이행 궤적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분석의 전체 구성은 앞서 검토한 위기요인의 수에 대한 분석과 동일하므로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표 III-53은 개인 위기요인 유무에 따른 잠재 상태의 범죄 구성 비중을 보여준다. 그림 III-38은 두 집단의 이행 궤적에 대한 그래프와 상태 내 범죄 구성에 대한 히트맵을 함께 표시한 것이다. 히트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주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개인 위기요인이 있는 집단의 경우 성범죄를 포함하는 상태가 좀 더 빈번하게 포착된다는 점이다. 개인 위기요인이 없는 집단의 경우 성범죄와 관련된 상태는 단일 형태인 13번이며, 개인 위기요인이 있는 집단의 경우는 6, 7, 12인데 이 세 유형은 높은 수준의 전이 확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사실상 하나의 군집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림 III-39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표 III-54의 요약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개인 위기요인이 있는 집단에서 성범죄와 관련된 궤적의 비중과 이행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포착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 -53. 상태(State)별 범죄 구성(개인 위기 요인)

개인 위기로인 = 없음												
	강력	강력 복합	교통	교통 복합	기타	성	성 복합	소년	재산	재산 복합	폭력	폭력 복합
S1	0	0	0	0	0	0	0	0	0	0	100	0
S2	1.14	0.25	34.44	5.41	20.66	2.61	0	6.56	18.87	6.81	0	3.24
S3	92.83	0.83	0	0	0	5.63	0	0.71	0	0	0	0
S4	0	0	0	0	0	0	0	0	94.67	2.78	2.54	0
S5	0	0	0	0	0	0	0	36.07	63.93	0	0	0
S6	81.95	0	0	0	0	6.44	0	0	0	0	11.61	0
S7	10.79	0	0	0	0	0	0	0	0	0	89.21	0
S8	0	0	0	0	0	0	0	0	0	0	100	0
S9	0	0	0	0	0	100	0	0	0	0	0	0
S10	0	0	0	0	0	0	0	0	0	0	100	0
S11	0	1.48	0	2.81	9.76	0	0	0	19.03	0	66.92	0
S12	70.75	0	0	0	0	0	0	0	0	7.33	0	21.92
S13	3.96	1.04	0	0	0	79.21	9.36	1.02	0	0	5.40	0
개인 위기로인 = 있음												
	강력	강력 복합	교통	교통 복합	기타	성	성 복합	소년	재산	재산 복합	폭력	폭력 복합
S1	0	0	0	0	0	0	5.55	0	94.38	0.06	0	0
S2	0	0	0	0	0	0	0	0	0	100	0	0
S3	0	45.96	0	0	0	0	15.27	0	38.78	0	0	0
S4	0	8.29	6.36	0	0	0	0.55	0	83.39	0	0	1.42
S5	5.04	0	32.74	5.37	9.14	0	0	0	43.71	0	4	0
S6	57.94	2.38	0	0	0.94	24.91	2.97	2.67	0	0.49	6.44	1.28
S7	52.96	0	3.75	0.8	0	26.62	1.83	2.07	2.36	0	9.61	0
S8	2.09	0.10	2.30	0	0.55	1.68	0.98	0	3.93	0.10	87.29	0.99
S9	0.12	0	24.22	0	0	0	0	2.97	41.76	18.46	11.34	1.13
S10	0	0	0	0	0	0	0	0	100	0	0	0
S11	0	0	0	0	4.25	0.40	0	0	83.58	0	4.19	7.58
S12	0	0	0	0	74.42	1.84	0	0	19.46	0	4.28	0
S13	0.21	0	1.25	0	0.87	0.18	0.20	0.45	89.94	4.17	2.40	0.31

개인위기 = 없음



개인위기 =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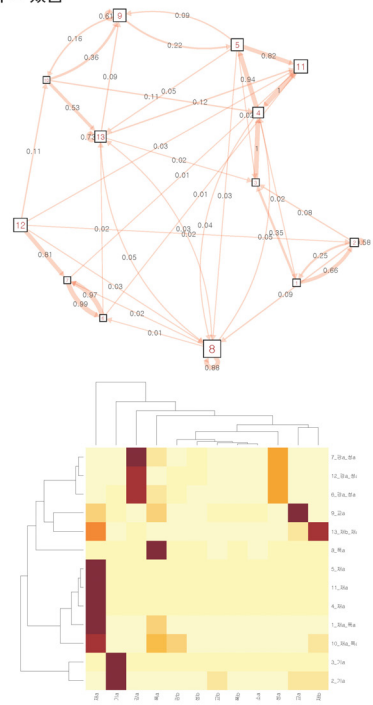


그림 III-38. 범죄 이행의 그래프 구조 및 상태(state) 특성(개인 위기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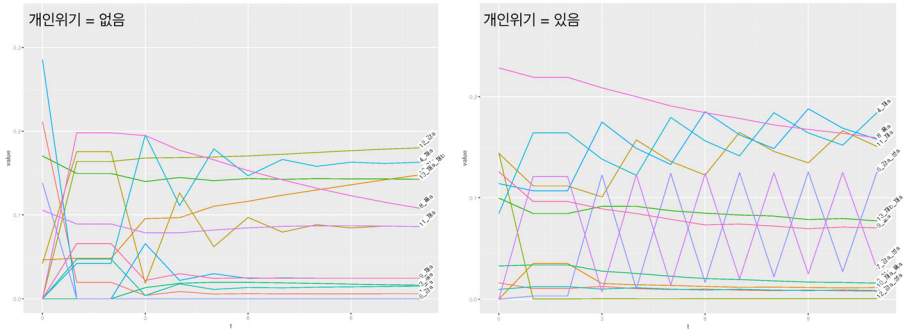


그림 III-39. 상태 비율 변화(개인 위기로인)

표 III-54. 시기별 주요 상태 변화(개인 위기로인)

개인 위기요인 = 없음								
t	주요상태	%	t	주요상태	%	t	주요상태	%
0	5_재a	28.6	6	12_강a	17.1	11	12_강a	18.0
0	1_폭a	21.2	6	8_폭a	15.3	11	4_재a	16.3
0	13_재a_재b	17.0	6	4_재a	14.7	11	10_가a	14.8
0	6_강a	13.8	6	13_재a_재b	14.3	11	13_재a_재b	14.3
0	7_성a	10.6	6	10_가a	11.6	11	8_폭a	10.8
개인 위기요인 = 있음								
t	주요상태	%	t	주요상태	%	t	주요상태	%
0	8_폭a	22.9	6	5_재a	18.5	11	4_재a	18.4
0	12_강a_성a	14.5	6	8_폭a	18.4	11	8_폭a	15.9
0	11_재a	14.4	6	4_재a	15.6	11	5_재a	15.8
0	9_교a	12.6	6	7_강a_성a	12.4	11	11_재a	15.1
0	5_재a	11.4	6	11_재a	12.3	11	6_강a_성a	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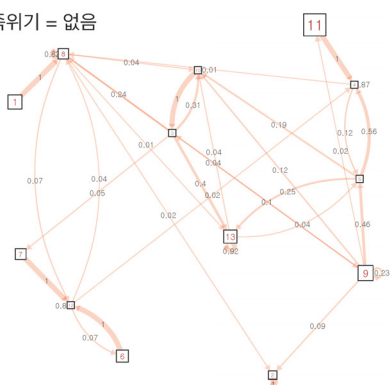
다음으로 가족 위기요인 유무에 따른 범죄 이행 궤적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표 III-55에 가족 위기요인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잠재 상태 특성을 제시하였으며, 그림 III-40을 통해 그래프와 히트맵을 통해서 두 집단의 이행 궤적과 범죄 구성을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가족 위기요인이 있는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폭력과 관련된 상태가 두드러진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 위기요인이 없는 집단은 폭력이 주요하게 포착되는 상태가 1번과 9번이며, 가족 위기요인이 있는 집단에서는 1, 2, 6, 8번이 폭력이 주요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상태의 가짓수로 특정 범죄가 더 주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전반적인 비중의 변화를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표 III-56과 그림 III-41은 상태 이행 궤적의 전반적인 흐름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궤적의 이행 과정 가운데 가족 위기요인이 없는 집단은 재산범죄를 중심으로 그 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고, 가족 위기요인이 있는 집단의 경우는 폭력범죄가 가장 두드러진 상태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족 위기요인을 경험하는 집단에서도 재산범죄는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인 수준에서 볼 때 폭력범죄로의 이행 궤적이 더 명확히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III-55. 상태(State)별 범죄 구성(가족 위기로인)

가족 위기로인 = 없음												
	강력	강력 복합	교통	교통 복합	기타	성	성 복합	소년	재산	재산 복합	폭력	폭력 복합
S1	0	0.90	5.41	0	3.71	0	0.84	0	14.86	3.31	70.13	0.84
S2	0	0	12.33	3.31	72.10	2.94	0	0	3.73	2.22	3.37	0
S3	0	0	0	0	0	0	0	0	100	0	0	0
S4	0	0	0	0	0	0.18	0	0	99.82	0	0	0
S5	3.58	3.90	27.86	0	0	0	0	0	0	25.61	27.33	11.71
S6	91.75	0	0	0	0	0	0	8.25	0	0	0	0
S7	0	1.71	0	0	5.46	86.76	3.92	0	0	2.14	0	0
S8	0	0	1.41	0	1.26	0	0.92	0	0	0	95.17	1.25
S9	12.05	0	13.38	6.82	2.75	0	0.72	0	36.65	0.94	26.70	0
S10	0	0	0	0	49.13	0	0	0	50.87	0	0	0
S11	0.55	0	0	0	4.83	1.15	0	0	84.62	4.37	2.89	1.60
S12	52.28	1.07	0	0	0	34.77	6.19	0	0.66	0	5.02	0
S13	0.58	0	25.64	1.42	0	0	0	2.86	38.95	29.62	0	0.93
가족 위기로인 = 있음												
	강력	강력 복합	교통	교통 복합	기타	성	성 복합	소년	재산	재산 복합	폭력	폭력 복합
S1	8.41	3.92	11.85	0	0	0	0	0	13.63	0	51.44	10.74
S2	0	0	0	1.61	0	0	0	0	0	18.39	67.34	12.65
S3	0	0	0	0	8.02	0	0	0	83.99	0	0	7.99
S4	0	0	0	0	0	0	0	0	100	0	0	0
S5	4	0	10.37	2.66	0	0	1.26	0	74.69	0	7.03	0
S6	0	3.43	4.27	3.51	8.56	0	2.54	0	0	0	77.69	0
S7	3.24	0	41.86	3.54	2.81	0.79	0.47	0	0	47.27	0	0
S8	2.37	0	0.82	0	0	3.42	0	0	5.60	0	86.58	1.22
S9	0	0	0	0	8.23	0	0	2.86	64.04	18.25	6.62	0
S10	0	0	0	0	32.17	4.51	0	0	61	0	2.31	0
S11	0	0	0	0	0	0	0	0	100	0	0	0
S12	55.35	1.48	2.19	0	0	25.45	3.39	4.14	0.87	0	6.29	0.84
S13	0.17	0	1.46	0.16	0	0	0.13	1.25	91.15	3.38	2.30	0

가족위기 = 없음



가족위기 =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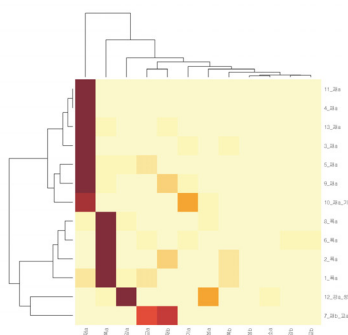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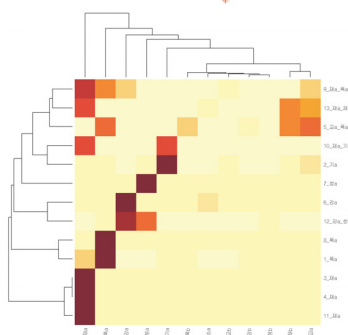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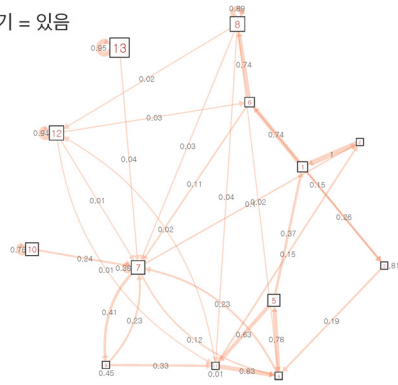


그림 III-40. 범죄 이행의 그래프 구조 및 상태(state) 특성(가족 위기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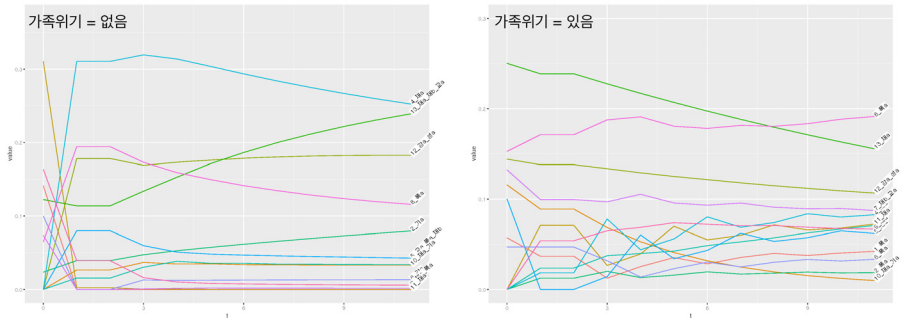


그림 Ⅲ-41. 상태 비율 변화(가족 위구요인)

표 Ⅲ-56. 시기별 주요 상태 변화(가족 위구요인)

가족 위기요인 = 없음								
t	주요상태	%	t	주요상태	%	t	주요상태	%
0	11_재a	31.1	6	4_재a	29.4	11	4_재a	25.2
0	9_재a_폭a	16.4	6	13_재a_재b_교a	18.6	11	13_재a_재b_교a	23.9
0	1_폭a	14.1	6	12_강a_성a	17.9	11	12_강a_성a	18.3
0	13_재a_재b_교a	12.2	6	8_폭a	14.1	11	8_폭a	11.6
0	6_강a	10.0	6	2_기a	6.2	11	2_기a	8.0
가족 위기요인 = 있음								
t	주요상태	%	t	주요상태	%	t	주요상태	%
0	13_재a	25.0	6	13_재a	19.7	11	8_폭a	19.1
0	8_폭a	15.3	6	8_폭a	17.8	11	13_재a	15.6
0	12_강a_성a	14.4	6	12_강a_성a	12.2	11	12_강a_성a	10.7
0	7_재b_교a	13.2	6	7_재b_교a	9.3	11	7_재b_교a	8.7
0	10_재a_기a	11.6	6	4_재a	8.0	11	4_재a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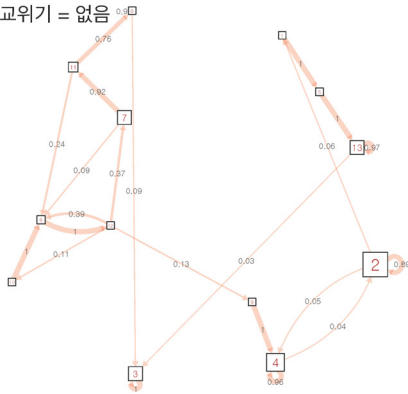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학교 및 또래 위기로인 유무에 따른 범죄 이행 궤적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표 III-57은 학교 및 또래 위기로인 경험 여부에 따른 집단 구분과 각각의 상태 특성을 정리한 결과이다. 그림 III-42는 학교 및 또래 위기로인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이행 궤적과 범죄유형의 구성을 각각 요약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학교 및 또래 위기로인이 있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이행 궤적이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행 궤적에 대한 그래프를 고려할 때, 학교 및 또래 위기로인이 없는 집단에서 관찰되는 이행 궤적이 단순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비교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행의 단순성은 학교 및 또래 위기로인이 있는 집단의 수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는 점과 반복적이지 않은 1회, 혹은 2회 수준의 단순 범죄 이력을 지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 및 또래 위기로인이 없는 집단에서 초기 발현 확률이 가장 큰 상태(2번)는 교통 관련 범죄나 기타 유형, 재산범죄가 결합된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특성은 해당 사건의 특성이 단순 범죄일 가능성을 함의한다.

다만 학교 및 또래 위기로인이 없는 집단에서 성범죄의 비중이 일정 수준을 차지하는 점은 특기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I-43과 표 III-58의 정보를 종합하면 학교 및 또래 위기로인이 없는 집단에서 성범죄가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학교 및 또래 위기로인이 없는 집단에서는 폭력과 같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범죄유형보다 개인적인 형태의 불법촬영과 같은 형태의 성범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포착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57. 상태(State)별 범죄 구성(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 = 없음												
	강력	강력 복합	교통	교통 복합	기타	성	성 복합	소년	재산	재산 복합	폭력	폭력 복합
S1	0	0.90	5.41	0	3.71	0	0.84	0	14.86	3.31	70.13	0.84
S2	0	0	12.33	3.31	72.10	2.94	0	0	3.73	2.22	3.37	0
S3	0	0	0	0	0	0	0	0	100	0	0	0
S4	0	0	0	0	0	0.18	0	0	99.82	0	0	0
S5	3.58	3.90	27.86	0	0	0	0	0	0	25.61	27.33	11.71
S6	91.75	0	0	0	0	0	0	8.25	0	0	0	0
S7	0	1.71	0	0	5.46	86.76	3.92	0	0	2.14	0	0
S8	0	0	1.41	0	1.26	0	0.92	0	0	0	95.17	1.25
S9	12.05	0	13.38	6.82	2.75	0	0.72	0	36.65	0.94	26.70	0
S10	0	0	0	0	49.13	0	0	0	50.87	0	0	0
S11	0.55	0	0	0	4.83	1.15	0	0	84.62	4.37	2.89	1.60
S12	52.28	1.07	0	0	0	34.77	6.19	0	0.66	0	5.02	0
S13	0.58	0	25.64	1.42	0	0	0	2.86	38.95	29.62	0	0.93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 = 있음												
	강력	강력 복합	교통	교통 복합	기타	성	성 복합	소년	재산	재산 복합	폭력	폭력 복합
S1	8.41	3.92	11.85	0	0	0	0	0	13.63	0	51.44	10.74
S2	0	0	0	1.61	0	0	0	0	0	18.39	67.34	12.65
S3	0	0	0	0	8.02	0	0	0	83.99	0	0	7.99
S4	0	0	0	0	0	0	0	0	100	0	0	0
S5	4	0	10.37	2.66	0	0	1.26	0	74.69	0	7.03	0
S6	0	3.43	4.27	3.51	8.56	0	2.54	0	0	0	77.69	0
S7	3.24	0	41.86	3.54	2.81	0.79	0.47	0	0	47.27	0	0
S8	2.37	0	0.82	0	0	3.42	0	0	5.60	0	86.58	1.22
S9	0	0	0	0	8.23	0	0	2.86	64.04	18.25	6.62	0
S10	0	0	0	0	32.17	4.51	0	0	61	0	2.31	0
S11	0	0	0	0	0	0	0	0	100	0	0	0
S12	55.35	1.48	2.19	0	0	25.45	3.39	4.14	0.87	0	6.29	0.84
S13	0.17	0	1.46	0.16	0	0	0.13	1.25	91.15	3.38	2.30	0

학교위기 = 없음



학교위기 =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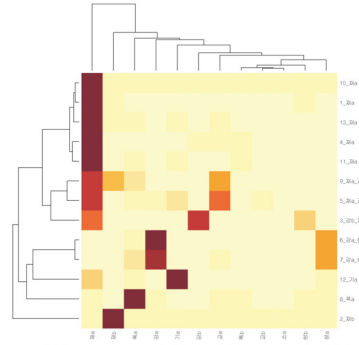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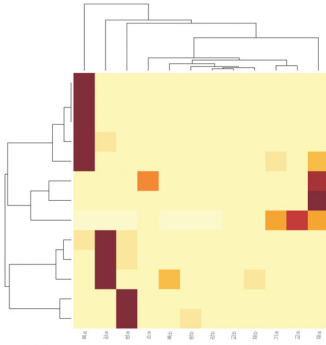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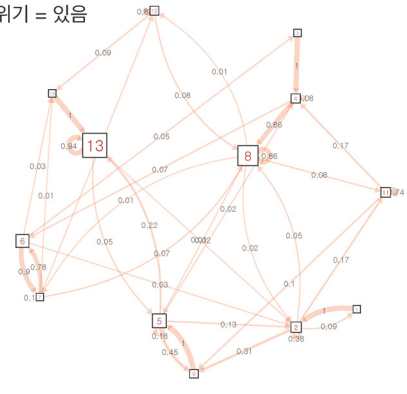


그림 III-42. 범죄 이행의 그래프 구조 및 상태(state) 특성(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

4. 요약 및 시사점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는 지방법원의 소년부 판사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결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를 메모한 기록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소년의 개인 특성, 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특성, 사건 정보, 처분 결정 등 보호소년과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자료이다. 본 장에서는 2장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 범죄의 특성과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비정형 자료인 재판 준비 메모를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여 소년 3,348명에 대한 재판 준비 메모 7,393건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분석은 중국결정이 있는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재판 3,872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소년 3,250명의 총 8,494건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재판을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 재판일 기준 소년의 연령은 14세 미만이 13.8%, 14세~15세는 24.9%, 16세~17세는 42.4%, 18세는 18.6%를 차지하였다. 중국결정 중 보호처분이 88.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불처분 결정은 9.7%, 기타 처분 결정은 1.7%로 나타났다. 보호소년은 중국결정에 이르기까지 최소 1번에서 최대 26번까지 평균 1.6번의 재판을 받았다. 사건 발생일부터 중국결정까지 소요 기간은 평균 6.8개월이었다.

사건을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유형별 사건 비중을 살펴본 결과, 재산범죄 52.8%, 폭력범죄 22.3%, 강력범죄 8.9%, 성범죄 5.5%, 교통범죄 12.5%, 기타범죄 6.9%, 소년사건처리 2.2% 순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범죄는 강력 성범죄에 해당하였다. 이는 2장에서 살펴본 경찰청과 법원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상응하는 결과이며, 소년사건에 나타난 성과 관련된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관되고 세분화된 기준을 가지고 통계자료가 집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발생 시간의 빈도를 살펴보면, 자정에서 새벽 3시에 발생한 사건이 전체의 15.7%로 높게 나타났으며, 범죄유형에 따라 사건이 발생하는 주요 시간대가 달랐다. 재산과 교통범죄는 0-3시, 폭력과 강력범죄는 15-18시, 성범죄는 18-24시, 기타범죄는 9-12시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셋째, 사건 당시 공범은 평균 1.1명이었고, 범죄유형별로 공범 수가 달랐다. 강력범죄 중 강도사건의 평균 공범 수가 2.3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폭력범죄 1.45명, 재산범죄 1.24명 순으로 나타났다.

소년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렬하여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초 사건 당시 소년의 연령은 16~17세가 3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14~15세가 26.3%,

14세 미만 26.0%, 18세 7.5% 순으로 분포하였다. 소년이 받은 종국결정은 평균 1.2회였으며, 종국결정을 1회만 받은 소년이 전체의 82.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보호처분 이력을 살펴보면 보호처분을 1회 받은 소년이 81.8%이며 이중 사회 내 처우 결정이 86.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간 처우는 5.1%, 시설 내 처우는 8.8%로 비중이 낮았다. 처분이력이 2회, 3회인 소년의 경우, 시설 내 처우는 각각 14.8%, 27.1%로 보호처분을 1회만 받은 소년에 비해 그 비중이 높았다. 보호소년의 위기로인을 살펴본 결과, 개인 위기로인을 1개라도 갖는 소년은 전체의 83.2%에 해당하였고, 가정 위기로인은 61.8%, 학교 및 또래 위기로인은 72.8%의 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의 범죄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소년 3,250명의 사건 8,494건을 소년별로 발생 시간의 순서에 따라 나열하였다. 소년 1명당 최소 1개부터 최대 33건의 사건이 있었으며, 평균 사건 수는 2.6건이었다. 사건의 발달 양상을 참고하여, 분석 자료에 사건이 단 1개만 있는 소년을 '초비행 소년(54.6%)', 사건이 2개 이상인 소년을 '재비행 소년(45.4%)'으로 명명하고 집단 간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초비행 소년은 재판 준비 메모가 작성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하나의 사건에 대해 하나의 재판을 경험하고 이후 자료에 등장하지 않은 소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가능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원 소년부 판사가 중간 처우나 시설 내 처우 처분을 결정하여 시설 내 강화된 통제로 인해 비행이 중단되거나 기존의 비행 취약성을 높이는 생활환경으로부터의 분리로 인해 비행이 중단되었을 수 있다. 둘째, 사회 내 처우 결정 이후 소년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및 관리감독, 교육 등으로 소년이 교화되어 추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셋째, 보호처분 결정 유형과 무관하게 단지 법원에 갔었던 것 자체가 이후 비행을 저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단순 호기심이나 또래 동조로 인해 심각한 의도 없이 실수로 경미한 비행을 했던 소년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소년보호재판 및 소년보호처분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관련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범죄유형별 특성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재산범죄로 전체 3,250명의 소년 중 52.8%가 재산범죄를 경험하였다. 재비행 소년의 재산범죄 비율도 23.2%로 다른 범죄보다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재산범죄는 단독으로 경험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유형과 함께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교통범죄, 기타범죄, 소년법 관련 사건의 재비행 소년은 해당 범죄유형의 사건 빈도보다 오히려 재산범죄의 사건 빈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교통 재비행 소년의 경우, 이들이 경험하는

사건의 32.4%가 교통범죄 사건이었는데 이보다 더 많은 52%가 재산범죄로 나타났다. 재산 재비행 소년도 다른 범죄유형을 함께 경험하지만, 재산범죄의 경험률이 69.9%로 가장 컸다. 또한 재비행 소년의 재비행 경험에서도 재산범죄가 두드러졌다. 따라서, 재산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재범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재비행 소년의 사건 및 재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범죄유형에 대해 사건 발생 간격이 한 달 이내인 경우가 가장 많아 사건 발생 간격이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비행 소년의 경우, 모든 범죄유형에 대해 소년의 80% 이상이 6개월 이내에 추가 사건을 저질렀다. 둘째, 사건 발생일부터 중국결정 재판일까지는 평균 7.6개월 소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이 사건을 저지르고 중국결정이 내려지는 사이에 추가로 가담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건 발생 후 재판이 열리고 중국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소년은 자기통제의 어려움이나 강한 비행동기와 같은 개인적 취약성과 가정이나 학교 및 또래 등 주변 환경의 취약성에 그대로 노출되고 방치되어 추가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 이전에 처분 전 교육 명령을 통한 청소년꿈키움센터 연계 등으로 소년사건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 규모가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재산범죄의 피해 금액과 피해 물품, 폭력범죄의 상해진단 일수 정보를 분석하였다. 첫째, 재산범죄 사건 중 피해 금액 정보가 있는 사건 2,025건(소년 972명)에 나타난 평균 피해 금액은 약 77만 원이다. 사건 순서에 따른 평균 피해 금액을 산출한 결과, 뚜렷한 증가세가 보이지 않았다. 또한, 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의 피해 금액을 비교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들의 재산범죄의 경우 범죄가 반복될수록 범죄가 전문화되고 지능화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범죄에 대한 경각심 없이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피해 물품 정보가 있는 재산범죄 사건 2,386건(소년 1,195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해 물품은 사건당 평균 1.2개였다. 빈도가 높은 물품은 오토바이, 현금 및 카드, 전자기기, 의류, 자전거 순이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청소년들의 소비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현대사회 청소년들은 소비를 과시하는 풍조,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소비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전수아 외, 2024). 이처럼 효율화와 수단화가 강조되면서 절도, 사기 등의 재산범죄는 보호소년들에게 효율적으로 원하는 돈이나 물건을 획득하게 돕는 극도로 합리적인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

재산범죄 경험 및 관련 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는 개인적 요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와의 미시적 체계에 국한되어 있어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소년들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폭력범죄 중 상해진단 일수 정보가 나타난 사건 455건(소년 411명)을 가지고 상해진단 일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전체 상해진단 일수의 평균은 24.6일이고, 사건이 반복될수록 평균 상해 일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소년들의 폭력성이 점점 강화되어 신체적 피해를 더 많이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상 속에서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과 능력을 함양하지 못한 소년들이 폭력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소년들의 폭력범죄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할 때, 소년들이 폭력적 방법으로 상황을 모면해 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제해결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의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초비행 소년과 재비행 소년의 위기요인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초비행 소년보다 재비행 소년들이 개인, 가정, 학교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성을 보였다. 재비행 소년은 주로 행동영역에서 개인 위기요인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의학적 관심과 치료가 요구되는 신체질병 및 질환(심장질환, 당뇨병, 신장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ADHD, 공황장애, 틱장애, 우울 등)을 경험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년들의 재비행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건강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치료적 접근이 동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는 많은 보호소년이 경험하고 있으며,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중 정신과 치료이력이 있거나 정신질환 소견이 있는 경우가 33.2%로 보고되었다(법무부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2023). 가정 위기요인 분석결과에서는 재비행 소년들이 가정 영역에서 다차원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가족구성원의 형 집행 경험, 형제자매의 비행 경험 등 사회학습 기제뿐 아니라, 경제적 취약성, 부모의 보호력 미약, 구성원 간의 부정적인 관계, 구성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 등의 긴장 기제들이 함께 작용하여 소년의 비행경험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화 접근보다는 가정의 취약성을 낮출 수 있는 가족구성원과 가정환경에 대한 포괄적 개입이 요구된다.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으로는 재비행 소년의 비행 또래와의 접촉 및 교류, 그리고 높은 빈도의 학업중단 경험이다. 학교는 가정 다음으로 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환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재비행 소년의 높은 학업중단율은 소년이 학교에서 편견이나 낙인을 경험하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일삼고, 결국 학교를 벗어나 또 다른 범죄로 유인되지는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교의 보호력을 강화하고 학습권을 보장하여 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전반적으로 초비행 소년보다 재비행 소년의 위기요인 경험률이 높지만, 범죄유형에 따라 상이한 특성이 발견되었다. 재산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에 가담한 소년은 개인, 가족, 학교 및 또래의 위기 영역에서 취약성이 높을수록 사건 빈도와 재비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강력범죄와 성범죄에서는 이와 다른 양상이 발견되었다. 해당 범죄유형의 경우, 오히려 사건 빈도가 높은 집단의 위기요인 경험률이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강력범죄 유형에서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의 경험률은 강력범죄 무경험 소년이 74.5%, 초비행 소년이 63.6%, 재비행 소년이 60.9%로 나타났고, 성범죄 유형에서 개인 위기요인 경험률은 성범죄 무경험 소년이 84.4%, 초비행 소년이 75.7%, 재비행 소년이 63.2%로 나타났다. 이때 참고할 점은 강력범죄의 91.4%가 성과 관련된 범죄라는 점이다. 범죄유형에 따라 상이한 위기요인 양상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으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재산, 교통, 폭력범죄는 선행 이론이 제시하는 기제로 설명 가능하다. 선행연구들은 개인, 가정, 학교 및 또래 영역에서 나타나는 소년의 개인적 특성, 비행 학습 기제, 부정적 긴장요인 등과 같은 비행 소년들의 취약성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성관련 범죄 사건인 강력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물리적 성범죄는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비행 기제들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로의 접근성의 증가, 미디어 과의존 등과 같은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기제에 대한 고찰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해당 범죄유형의 재비행 경험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재비행 경험과 위기요인의 관계는 더욱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를 가공하여 시퀀스 자료를 구축하고, 은닉마르코프모형(HMM)을 활용하여 소년 범죄의 이행 궤적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인 범죄 전환 확률을 고려할 때, 성범죄와 폭력범죄는 여타의 범죄와 혼합되거나 전환되지 않고 반복되는 특성을 보였다. 재산범죄, 교통범죄 등이 다른 범죄와 혼합되거나 다양한 상태로의 이행이 관찰되는 반면에, 이 두 범죄유형은 두 유형이 혼합되거나 각자의 궤적을 유지하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폭력범죄나 성범죄가 다른 유형의 범죄와는 다소 다른 발현 매커니즘에 기반한 범죄라는 점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경험하는 위기요인 영역의 수가 많을수록 폭력범죄의 발현과 이행이 두드러진 특성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폭력범죄를 유발하는 폭력성의 경우 개인의 정서적 특성과 환경 스트레스 요인,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증폭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셋째, 개인 위기요인이 있는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성범죄의 발현이나 이행이 두드러지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 위기요인 중 특히 어떤 세부요인이 성범죄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가족 위기요인이 있는 집단일수록 폭력범죄의 발현과 그 이행이 상대적으로 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 위기 세부요인에 포함되어 있는 가정 폭력, 학대 등을 포함한 폭력에의 노출 경험이 폭력범죄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해당 위기요인이 없는 집단에서는 일정 수준에서 성범죄 발현이 관찰됨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학교 및 또래 위기를 명확하게 경험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 일탈 행위와 관련한 주변의 개입에 있어 그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통상적인 관찰 대상으로부터 유리된 집단에서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청소년 집단 전반에 걸쳐 관련 범죄 예방 활동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가져다준다.

○ — 제4장 다양한 처우이력을 경험한 소년 대상 개별심층면접 조사 자료 분석

- 1. 조사 개요
- 2. 분석 결과
- 3. 요약 및 시사점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대상

다양한 처우이력을 경험한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심층면접 조사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개입 지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범죄 예방 정책과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제언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개별심층면접을 통해 청소년들이 비행 및 범죄를 저지르고 반복하는 과정과 영향요인을 이해하고, 이들이 소년 및 형사사법체계와 지역사회 내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질적연구의 자료수집 방식 중 하나인 개별심층면접 조사는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각 개인이 겪은 다양한 경험에 대해 심도 있는 탐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특히, 대규모 설문조사로 확인하기 어려운 연구참여자들의 특수한 상황과 상황 뒤에 숨겨진 배경이나 원인 등을 알아볼 때에 개별심층면접은 유용한 조사도구가 된다.

연구참여자 모집 및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경찰서, 보호관찰소, 1호 처분 소년 위탁 시설, 6호 처분 소년 위탁 시설, 소년원, 소년교도소, 자립생활관, 청소년쉼터, 위기청소년 지원 민간기관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에게 연구 목적과 조사 내용을 안내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청소년 중 면접 대상에 적합한 청소년 12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에는 가급적 성별과 지역에 편중이 없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처우이력을 경험한 소년을 면접하기 위해 20세 전후의 청소년을 우선 선정하였고 처분 이후에 현재 학업이나 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청소년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청소년 등을 포함하였다.

면접 전에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설명하였으며, 연구참

13) 이 장은 박선영 교수(한세대학교)가 공동집필 하였음.

여동의서를 받고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 조사 계획과 제반 추진사항에 대해 기관생 명윤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으며 2024년 6월 7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승인 번호 NYPI-202401-HR-고유-001). 면접 조사는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면접당 120분 내외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진이 연구참여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직접 면접을 실시하였다. 녹음이 허락되는 환경에서는 면접 내용을 녹음하여 추후에 연구진이 직접 녹취록을 듣고 전사하였으며, 녹음이 허락되지 않을 때는 현장에서 직접 전사하였다. 연구참여자 정보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개별심층면접 연구참여자 정보

번호	성별	가족관계	학업	처분이력	현재 상황
1	남	어머니 사망 아버지 방임	고등학교 졸업	벌금형, 1·2·3·5호, 5호, 8호	기초생활수급, 자립생활관, 4년제 대학생
2	남	부모님 계심	중3 자퇴 중졸 검정고시	훈방조치, 1·2·4호, 1·3·4호, 1·2·5호, 1·3·5호, 5호, 6호	가족과 거주, 특성화고등학교생
3	남	부모님 이혼	특성화고 졸업	1·3·4호, 5호, 9호, 기소유예, 징역형	복역 중
4	남	부모님 이혼 조부모 양육 삼촌 학대	고1 자퇴, 고졸 검정고시	훈방조치 2회, 1·3·5호, 1·6호	기초생활수급, 자취, 사회복무요원 근무
5	남	보육원	고1 자퇴, 방통고 졸업	사랑의교실(경찰단계), 6호, 10호	기초생활수급, LH 주택, 건설현장 인부, 방통대생
6	남	부모님 이혼 아버지 방임	고2 자퇴, 고졸 검정고시	1·3·4호, 6호	가족과 거주, 취업
7	여	보육원	고1 자퇴, 고졸 검정고시	5호, 6호, 10호	자취, 취업
8	여	보육원	고등학교 졸업	1·4호, 1·5호	기초생활수급, LH 주택, 대학 재학중
9	여	아버지 폭력 부모님 이혼	중2 자퇴, 중졸 검정고시	훈방조치, 1·4호, 6호, 7호	자취, 구직 중
10	여	부모님 계심 다문화 가정	고등학교 졸업	훈방조치, 1·2·5호, 1호	가족과 거주, 아르바이트
11	여	보육원	고졸 검정고시	10호, 5호	기초생활수급, 주거지원, 대입 준비
12	여	부모님 계심 다문화 가정	고1 자퇴	5·6호, 8호, 9호, 기소유예, 징역형	복역 중

2) 조사 내용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표 IV-2와 같이 비행 및 범죄경력, 소년 및 형사사법절차 상의 경험, 재비행, 현재 상황의 4가지 조사 영역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하위 조사 내용을 구성하였다. 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편안한 흐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질문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유의하였다. 조사 내용 또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표 IV-2. 개별심층면접 조사 내용

조사 영역	하위 내용
비행 및 범죄경력	• 일탈/비행의 시작 시기와 배경
	• 비행의 동기와 경로
	• 비행의 내용과 방법
	• 형사사법 인지 전단계의 비행 강화 요인들
소년 및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경험	• 처우이력 전반
	• 경찰단계의 긍정적/부정적 경험
	• 검찰단계의 긍정적/부정적 경험
	• 재판단계의 긍정적/부정적 경험
	• 소년보호시설에서의 긍정적/부정적 경험
	• 쉼터와 자립생활관 등 기타 지역사회 지원과 프로그램 경험
	• 절차별 경험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
재비행	• 시간에 따른 요인들의 변화
	• 재비행 이유
	• 재비행 억제를 위한 의견
현재 상황	• 현재 주거와 학업/취업 상황
	• 부정적 요인
	• 긍정적 요인

2. 분석 결과

1) 일탈과 비행에서 범죄가 되기까지

면접에 참여한 다양한 처우이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일탈과 비행을 시작하여 범죄에 이르기까지 어떤 배경 요인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비행의 원인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청소년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과 학교, 또래 집단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가족과 학교가 청소년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또래 집단은 끌어당기며 소속감과 유대감을 주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비행은 심화되어 범죄에 이르렀다.

(1) 가족

○ 보호자의 폭력과 갈등으로부터의 도피

연구참여자 12명 중 10명은 비행 전부터 가정이나 보육원에서 문제를 경험하였다. 부모님의 갈등과 폭력, 이혼을 경험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방임되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심터를 전전하거나 유기되기까지 한 경우도 있었다. 가정의 문제에서 오는 분노가 이들을 밀어냄으로써 일탈과 비행을 촉진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방임으로 혼자 살아가던 연구참여자는 홀로 외롭게 지내며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삭이다가 비행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일탈의 즐거움으로 ‘신나게’ 노는 경험을 맛보게 되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부모의 이혼 후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방임으로 스트레스와 분노가 컸다. 그러나 이를 ‘꼭꼭 눌러 참고’ 살다가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자신도 집 밖으로 나가 비행문화에 젖어 들었다고 하였다. 부모 이혼으로 조부모와 삼촌과 살았던 한 청소년은 삼촌의 지속적인 폭력으로부터 ‘죽지 않기 위해’ 가출을 한 경우로, 자신이 삼촌의 신체적 학대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보호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 절망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제가 한 7살 때쯤 이혼하기 한 1년 2년 전쯤에 그때부터 이제 이제 좀 가정이 무너져 내렸죠. 그냥 집에 가기가 싫고 집에 가도 이제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도 안 계시고. 그럴죠.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냥 처음부터 생활을 끝까지 이제 그때는 다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나이인데 그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중략) 중 2때 아버지 교도소 가셨어요. 집에는 이제 오늘 내일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계시죠. 전 지금까지 계속 꼭꼭 눌러 참고 살았는데 또 집에 있어봤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 내팽겨 쳐두고 간 느낌이라서 저도 밖으로 나돌았죠. 학교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고 다른 지역 다른 동네 친구들이랑도 어울리고. 술, 담배 하면서 불량하게 놀았어요. (참여자 6)

나를 때린 삼촌을 할머니가 그냥 그때 용서하라고 했을 때 그냥 가족이니까 그냥 저냥 넘어가자 하고 했을 때……. 그냥 내가 나가 죽어도 상관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4개월 동안인가 가출했었어요. 그냥 혼자 나간 거죠, 무턱대고. 뭐 집에 있으면 맞아 죽겠는데. 밖에서 죽는 게 차라리 덜 아프게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살 시도도 한번 해봤었어요. (참여자 4)

보육원에서 성장한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를 전혀 만난 적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지원을 받지는 못하였다. 보육원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성장과정에서 대규모 시설의 엄격한 규율과 답답함을 힘들어했고 반항하기도 하였으며, 사춘기가 시작 되면서는 음주나 흡연, 연애 등으로 시설 관리자들과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한 연구참여자는 보육원에 있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으며, 걸리지 않았을 뿐 숨겨진 비행이 다들 많다고 하였다. 자신 역시 어려서부터 보육원에서 만연한 원생들 간의 폭행과 시설의 묵인을 경험하였으며 이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가출을 감행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시설은 평소에 단체생활의 엄격한 규칙에 적응하지 못하고 반항적 태도를 보이던 청소년이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의 상실감과 반항심은 더욱 커졌다.

약간 이제 자기주장이 섰죠. 제가 말을 잘 안 듣고 규칙이 있거나 일단 단체생활을 싫어하거든요. 제가 또래 애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규칙 있는 것도 싫어하고 좀 워낙에 이계 내 생각이랑 그런 게 뚜렷한 사람이라서 좀 많이 빗나가는 행동을 했는데, 중 1 겨울방학 때 말 안 듣는 애들을 지방 시설로 보냈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참여자 7)

○ 비행에 대처하지 못하는 무관심한 보호자, 유대감 없는 시설 선생님

연구참여자의 일탈과 비행이 시작될 때 부모나 시설의 대응은 이들의 행동을 제지하고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부모들은 자녀의 일탈과 비행에 무관심했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부모의 방임으로 생계와 일상생활을 거의 혼자 해나가야 했던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가 자주 집을 비운 까닭에 자녀가 일탈행동을 시작하거나 비행집단에 깊이 연결되어 간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였고 개입과 중재 노력 또한 부재하였다. 한 연구참여자는 아버지에게 방임되어 혼자 지내면서 집에 노는 친구들을 자주 불러서 술을 마시는 등 집을 비행 친구들과 선후배의 아지트처럼 이용하였는데 이때 알게 된 선배들과 함께 범죄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일탈과 범죄가 집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음에도 부모들은 자신이 방임했던 자녀가 형사사법기관에 사건이 회부되고 나서야 자녀들의 비행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였다.

이제 집에 와서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집으로. 저밖에 없는 거 알고 집도 크니까 거기서 이제 술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잠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왔었고, 저도 많이 불렀었고, 이제 그래서 그 형들을 알게 되니까 그 형들도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실수를 한 게 일어나잖아요. (참여자 1)

한편 부모가 자녀의 사춘기 충동성과 반항 행동에 대해 놀라고 걱정하면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방치에 가까운 무기력한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해당하였던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의 부모들은 자녀의 심한 반항과 불안정함이 심리적 불안이 심해지는 사춘기 시기의 특성인지, 아니면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품행장애나 적대적 반항장애에 해당하는 행동인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녀에 대한 이해가 평소에 부족했던 부모들은 자녀가 부모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반항의 정도가 심각해질 때 자녀의 도전적 행동에 손을 놓아버리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모님이 잔소리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엄마랑 아빠랑 이제 좀 거리를 제가 뒀어요. 제가 너무 막 틀어져 버리니까, 엄마 아빠가 제가 또 성격도 너무 많이 변하고 막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쉽게 막 와서 막 버럭버럭하면서 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더 엇나갈까 봐. (참여자 3)

어떤 경우는 부모가 자녀의 일탈과 비행에 대해 제재하고 억제하기도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되어 자녀가 이러한 갈등 상황을 피해 기출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잦은 외박과 비행으로 부모님과 갈등을 빚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등 부모님이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혼내자, 집에 들어가기 무서워

오히려 점점 더 집에 안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제가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아빠한테 석발을 밀렸었어요. 너무 밖으로 나가고 사고치고 하니
간……. 그런 걸 안 지키니까 혼이 났고 집에 가기 무서웠고 집을 안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게
편하고 재밌었어요. (참여자 12)

보육원에서 성장한 연구참여자들은 시설 관계자들과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다수의 아동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성장한 면접참여자들은 시설 종사자들과 일반 가정에서의 부모자녀 관계만큼 개별적이고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음주, 흡연, 잦은 외박, 분노 표출, 가출 등의 일탈행동을 시작했을 때, 보육원은 나름의 대응을 했지만 청소년들의 일탈과 비행을 억제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했다. 보육원에서 자랐던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결국 시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가출을 하였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일탈과 비행을 본격화하였다. 분노조절에 문제가 있던 한 연구참여자는 다른 보육원으로 두 번이나 옮겨졌고 마지막 시설에서 비행을 저질렀다. 청소년들이 경험한 보육원은 원생들 간의 싸움이나 갈등이 일어나도 힘 있는 원생을 ‘무서워해서’ 모르는 척 회피하였고, 일탈행동에 대해서도 직접 통제력을 행사하기보다 나이 많은 연장자가 어린 동생들을 통제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곳이었다. 그러다가 청소년들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다시 시설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싸웠을 때도 싸우지 말라고, 반성문 쓰라고 했는데 안 쓰고 그냥 알아서 끝났어요. 쌤들은 알아도 모르는 척해요. 그냥 그 쌤이 형을 무서워해서. 쌤은 그냥 그 뭐지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참여자 5)

학교에서, 시설에서 징계받고도 계속 담배 폈어요, 반항심에. 수녀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면담을 했어요. 근데도 제가 말이 안 통하니까 저를 그냥 다른 반으로 보냈어요. 언니들 반으로. 어른들보다는 언니들이 더 무서우니까 언니들 반에 벌칙으로 보내요. 약간 기 좀 죽이려고, 한 한 달 동안 언니들 반에 간 적도 있고. (참여자 8)

그냥 일단 보육원은 집이니까 그냥 뱉둬 놓고 그냥 심심할 때 그냥 가출해서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왔다가. 쌤들이 터치는 안 했어요. 집은 잘 거면 집에 와서 자라고 사고는 치지 말라고.

처음에는 찾았어요. 애가 그래도 걱정되니까 찾더라고요. 제가 6호 갔을 때는 강제퇴소장 들고 오셨어요. (참여자 5)

(2) 학교

○ 어려워지는 학업, 건디기 어려운 왕따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초등학교 고학년 때 혹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 아이들은 어려워지는 학교 공부를 따라가지 못했고 부모나 학교도 아이들이 학업에 흥미를 잃지 않게 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육원에서 성장한 청소년들 역시 시설 차원에서 대상자들의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한 지원은 없었다고 인식하였다. 부모님 이혼 이후 방임되었던 한 연구참여자는 학습 면에서 지원을 받기는커녕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7살 때부터 생계와 일상생활에서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어떤 연구참여자는 부모와의 갈등으로 친구와 노는 문화에 빠져들었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수업 시간에 자거나 ‘멍때리고’ 공부를 놓아버렸으며 결국 자퇴를 하였다. 보육원에서 자란 한 연구참여자는 중학교 때는 공부를 곧잘 하였으나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보니 공부가 어려웠고 보충학습을 위한 학원에 다니지도 못해 성적이 떨어지자 점점 공부에 흥미를 잃었다고 하였다.

인문계를 갔어요. 1학년 그때 [보육원에서] 저를 학원을 안 보냈어요. 고등학교 인문계 여고가면 솔직히 좀 박세잖아요 애들 경쟁이. 그래서 미리 예습하고 오고 학교에서도 예습하고 오는 걸 알고 기초적인 거는 기초적인 건 아예 안 알려주고, [알려달라고] 약간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중학교 때만큼 성적이 안 나오고 공부에 흥미를 잃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그냥 그러저럭 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말쯤에 코로나 터지면서 집에서 원격 수업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밖에서 놀기 시작하면서. (참여자 8)

면접참여자의 3분의 1은 일탈이나 비행이 일어나기 전에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두 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전학 간 학교에서 텃세를 경험했는데, 특히 한 명은 아버지의 무능력으로 인한 가난과 한부모 가정을 이유로 전학과 동시에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다. 다문화가정의 자녀인 청소년들은 다른 생김새로 인해 초등학교 때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고 하였다. 학교에서 왕따를 경험했던 네

명의 청소년들은 모두 친구를 때리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 분노에 기인한 비행을 저질렀다.

저희가 이제 가난한 그런 느낌에다가 한부모 가정이어서 제가 좀 그걸로 왕따 당했었거든요 친구들한테. 저도 그때 이제 정신병 걸릴 것 같으니까 제 동생을 진짜 말도 안 되게 때렸거든요. 스트레스 많았어요. 제가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고 또래들한테 맞고 그랬었거든요. (참여자 6)

그런 거 있죠? 은따. 애들은 자기가 은따인지도 모르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게 딱 저였으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왜 나는 애들이 친한 것 같기도 한데 안 친하고 그러니까 그때 몰랐는데……. 막 재는 외국인이야 라면서 재 진짜 왜 저러냐 부모도 없고 하고……. 근데 그 한 명이 시작하면서 다른 애들도 줄지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잊혀지지 않고 힘들었어요. (참여자 11)

○ 무관심한 학교, 부족한 개입 효과

연구참여자들은 일탈과 비행이 시작되던 때에는 모두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는 이들의 일탈과 비행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알아도 무관심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 일부 청소년들에게는 스쿨폴리스(학교전담경찰관), 학교 상담사, 학교 교사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는 정도의 관심이나 노력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청소년들의 행동을 멈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무단결석이 지속되자 학교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온 적이 있으나 수면 문제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학교에 가지 않았다고 둘러대었을 뿐, 어머니 사망과 아버지 방임으로 혼자 지내고 있는 상황은 얘기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별도의 관리는 없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는 삼촌의 폭력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된 후 지자체에서 매주 두 번씩 상담사가 방문하였으나 상담 내용이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제가 학교를 너무 안 나가니까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선생님들이 두 분께서 이제 가정방문을 하셨는데 그냥 이제 저는 아무 일 없다. 그냥 제가 그냥 잠을 못 자서 못 일어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끝낸 적이 있었는데, 막 그렇게 무슨 상담을 하거나 막 그랬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돌아가셨다, 아버지 집에 안 들어오신다고 말 안 했어요. (참여자 1)

삼촌한테 폭력 당하고……. 학교 선생님 상담 그런 거 일절 없었고요. 상담은 이제 아무래도

학대를 당한 경험에 있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그냥 매주 이제 두 번씩 오셨었거든요. 그때마다 그냥 솔직히 이걸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참여자 4)

(3) 또래 집단

○ 친구들과 놀고 싶은 강렬한 욕구와 호기심

가정의 문제가 지속되고 깊어지며, 학교와 학업에 대한 흥미도 상실한 상황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또래 집단 및 선배들과의 유대관계가 강해지며 이들과 술, 담배, 연애 등을 함께 하기 시작했다. 중학교 때 보육원에서 형들이 술을 마시라고 해서 처음 음주를 시작한 청소년도 있었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 담배를 하고 PC방, 노래방에서의 유흥을 즐겨하였으며, ‘폭주를 뛰고 싶던’ 중에 친구가 훔친 오토바이를 처음 접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하기도 하였다. 노출이나 흡연 장면이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비행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였으며, 이성친구가 생기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우범사유에 해당하는 음주, 흡연, 가출을 중학교 때 시작하였다. 초등학교 때 비행이 시작된 경우는 부모나 보육원과의 갈등으로 초등학교 때 가출을 한 경우이고, 고등학교 때 비행을 시작한 친구는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의 사망과 아버지의 방임을 겪으며 혼자 생활하다가 비행친구를 만나면서 일탈과 비행을 시작한 경우이다. 12명 중 9명의 연구참여자가 사춘기로 접어들면서부터 놀고 싶은 욕구가 강렬해졌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비행 또래 및 선배들과 어울려 노는 과정에서 비행을 저질렀고, 연구참여자의 절반 이상은 일탈과 비행이 시작된 이후에 가출을 하면서 비행이 더욱 본격화되고 심화되었다. 또는, 부모의 방임으로 혼자 살아서 가출할 필요 없이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일탈과 비행을 지속한 경우도 있었다. 한 청소년은 중학교 때 이성친구를 사귀면서 함께 노는 즐거움에 밖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집에서 나와 며칠 동안 들어가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잘나가는’ 언니들과 다닐 때 ‘기세등등한’ 기분에 노는 언니들과 함께 일탈행동에 빠져든 청소년도 있었다.

근데 남자랑 노는 그걸 뭔가 재밌다라는 걸 알아버려서 그때부터 남자친구랑 같이 있고 하면서 집에서도 나와서 며칠 동안 안 들어가고. (참여자 8)

중1 때 저랑 같이 방황했던 언니 여동생이랑 저랑 친했었거든요. 그래서 3명에서 어울려 다니다가 사고도 치고 그랬었죠. 그때는 솔직히 약간 잘나가는 언니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기세등등하고 막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제 중학교 때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무시 안 당하려고. (참여자 10)

○ 또래 집단의 유인과 압력

부모와 학교의 보호와 개입이 없거나 효과가 미약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을 끌어당기는 또래 집단의 유인력과 압력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부모와의 갈등과 학교의 무관심 속에서 자신들이 믿고 의지할 사람들,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들은 또래 집단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것에 대해 큰 쾌감과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다. 부모님 이혼 이후 비행 친구들과 노는 즐거움에 빠져든 한 청소년은 밤늦게까지 놀면서 차를 타고 바다를 보러 다니는 등 재미있는 생활의 유혹을 떨쳐내기 어려웠다. 잘나가는 친구나 선배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선배들의 한마디에 다른 아이들이 꿈쩍 못 하는 것이 재미있었고, 노는 아이들 무리에 들어간 자신을 과거에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들이 무서워하게 되자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때는 그냥……. 친구가 1번이고……. 저희 동네 형들 막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은 형들은 이제 고3 때부터 자동차 면허증 딸 수 있잖아요. 자동차 면허증 딴 형들은 이제 자기 차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같이 놀고 전 자동차 좋아해서 막 드라이브 가고 하는 게 너무 좋아서 막 바다 보러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늦게 집에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요. (참여자 3)

그 언니들이 한마디 하니까 꿈쩍 못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서 어울렸던 것 같아요. (참여자 10)

초등학교 때 괴롭히던 애들이 같이 올라왔는데……. 그때 페이스북을 접하게 되고 옆 동네 애들을 만나게 되니까 놀리고 무시하던 애들이 저를 무서워하게 되었어요. 그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참여자 12)

어울리는 또래 집단으로는 같은 동네나 학교의 비행 친구나 선배가 가장 많았으며, SNS(페이스북 등)를 통해 연합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다. 비행 또래 집단의 유인력이

미치는 범위는 인터넷을 통해 더욱 확장되었고 다른 지역 친구들까지 만날 기회가 생기면 즐거움은 배가되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을 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그 지역의 노는 친구들과 미리 인사를 나누고 나서 실제로 만나니까 더 좋았다고 하였다. 가출하고 배회할 때도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여러 지역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니 낯선 지역을 가도 불안하지 않았다고 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근데 제가 가기 전에 또 이제 저희는 요새 또 인터넷이 잘 돼 있잖아요. 서로서로 이제 가기 전부터 그때 딱 고등학교 때는 페이스북 메시지가 딱. 또 방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또 막 서로 서로 인사를 했어요. 그쪽 노는 애들하고. 한 20명? 남자애들이 딱 해서 서로서로 인터넷상으로만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가니까 또 이제 저는 사람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참여자 3)

그렇게 놀다 보니 서울권 애들, 이쪽저쪽 애들을 만났어요. 한번도 얼굴 본 애들이 아니고 페이스북으로 연락한 애들인데, 거기에 한 30~40명이 홍대에서 만났어요. 거기서 애들이랑 얼굴 보고 친해진 거죠. (참여자 12)

즐거움으로 시작한 또래 집단과의 비행이 또래 압력으로 인한 비행으로 변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또래 집단에서는 비행 수법 전수와 비행 압박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비행에 대한 책임을 혼자 감당하도록 하는 소위 ‘총대’를 매게 하는 사례도 있었다. 담배 심부름을 하지 않으면 맞기도 했지만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친 후 선배들이 인정해 주면 기분이 좋았다고 말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선배들이 고가의 물건을 빌려주고 물건이 파손되자 그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면서 ‘너는 초범이어서 감형된다’며 차탈이 등 온갖 범죄를 앞장서서 하도록 시켰다고 이야기하였다.

담배……. 막 이렇게 언니가 사와 달라고 했는데 저희 안 사오면 맞아요. (참여자 8)

저 포함해서 두 명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주인분 따돌리고 저는 제가 주인분을 따돌리고 그 친구는 주인분 없는 틈을 타서 하고 갔죠. 놀던 언니들이 시켰어요. 그냥 저희가 약간 요즘 말로 치면 약간 총대 멘 거죠. (참여자 10)

그날 어떤 형, 형들께서 저한테 목걸이를 걸어주셨는데 그 목걸이가 한 천만 원 정도 되는 목걸이예요. 제가 스스로 빼려고 풀었는데 이게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 이 돈 갚아라 그렇게 말을

하셔 가지고. 아버지는 일을 안 하고 계신 상태니까 그럼 이제 말해 봤자 저는 혼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차털이를 형들이 시켜서 했어요. 초범은 이제 감형되는 거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온갖 범죄를 다 시키고. 그냥 이거까지 해라 이렇게 해서 어차피 이런 거 다 해도 너 초범이기 때문에 절대 안 들어간다. (참여자 1)

(4) 비행과 범죄의 심화

○ 구하기 쉬운 술과 담배, 하기 쉬운 문신

연구참여자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소년기에 음주와 흡연을 하였는데 미성년자였던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구매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에게는 판매가 금지된 술과 담배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편의점에서 훔치기, 편의점 앞에서 지나가는 어른에게 부탁하기, 채팅앱에서 어른에게 부탁하기, 훔친 신분증으로 구매하기, 성인이 된 선배가 구매해 주기, 편의점에서 신분증 검사 없이 그냥 구매하기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었다. 술이나 담배 구매 비용은 용돈이나 훔친 돈으로 충당하였다.

술담배요? 그냥 아무 데서나 사는데? (참여자 6)

제가 알기로는 그냥 뭐 편의점에서 신분증 검사를 안 해줄 때도 있고 뭐 어릴 때 막 중학교 1학년 그릴 때는 편의점에서 훔치고 그래서. (참여자 2)

술, 담배 주는 데가 있어요. 이제 화장하고 옷 좀 어른들처럼 입고 이렇게 가 가지고 이거 주세요 하면 줘요. 아니면 지나가는 어른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분들 자꾸 이제 사달라고 하면 사줘요, 사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여자 8)

연구참여자 중 4명은 미성년자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한 문신이 있었는데 미성년자임에도 별 어려움 없이 문신을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부모가 자녀의 문신을 보고 눈물을 흘린 사례도 있었지만 별다른 제재를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엔 형들이랑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해보자 해보자 해서 여기 다리를 했었는데, 여기 다리가 예쁘게 되진 않아서 여기 팔하고 여기부터 다 하면서. (참여자 2)

중학교 때 했어요. 우정으로. 그냥 친구 좋으니까 친구들끼리 했죠. (참여자 6)

○ 세를 과시하기 위한 폭행

연구참여자 중 절반은 폭행과 관련한 처분 이력이 있었는데 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또래 집단과 함께 절도 및 폭행을 저질렀다. 또래 집단과 어울려 폭행을 저지르는 이유로는 자신 또는 자신의 무리에게 거슬리는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집단으로 세를 과시하며 위협을 하기 위함이라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친구들끼리 학교 후배들을 돌아가면서 때리는 분위기 속에서 방관하다가 한 번 때린 것이 사건으로 이어진 경우, ‘애들이 때리니까 나도 괜찮겠지’라며 별생각 없이 폭행에 가담한 경우, 언니들이 지목한 ‘걸리적거리던’ 대상을 폭행한 경우 등 비행집단에 소속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과 집단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 언니들이 한마디 하니까(애들이) 꿈쩍 못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어울렸던 것 같아요……. 아는 동생 때렸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냥 걸리적거리가지고……. 옆에 그냥 따라붙으면서(언니들이) 너도 때려라 너도 때려라 이래가지고 때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참여자 10)

○ ‘돈’을 마련하기 위한 범죄

연구참여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상당수는 ‘돈’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하거나 사기를 저질렀고 성매매를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절도였는데 가출 후 생계를 위해서 또는 또래 집단과 어울려 놀기 위한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등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이유가 상이했다.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이자놀이’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해당 청소년은 이자를 갚지 않는 친구들에게 특수상해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집에 있으면 맞아 죽겠다 싶어서 가출했죠. 저금한 돈 가지고. 이제 그 돈 다 떨어지니까 생활비 부족해가지고 이제 근처로 와서 차 털고 막. 그냥 차문 열려 있는 차 쪽 들어가서 돈만 쓱 빼오고 그랬었죠. (참여자 4)

올리브영 같은 거 가가지고 화장품 훔치고 옷 같은 거 훔치고 지갑 같은 거 훔쳐가지고 지갑 쓰고 찜질방 가면 휴대폰 있거든요. 휴대폰 그거 막 훔쳐가지고 유심칩 빼가지고 그거 쓰고 되게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참여자 9)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저는 또 용돈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벌었어요. 그거 이제 또 나쁜 짓이지만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막 (참여자 3)

한 참여자는 오토바이 사고 피해보상을 위해 이자놀이를 했을 뿐 아니라 '마약'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면허를 취득하면서 타기 시작한 오토바이가 자주 사고가 나자 부모님이 피해보상을 해주시다가 중단하였고 스스로 비용을 마련할 방법을 궁리하다가 한 선택이었다고 하였다. 해당 청소년이 판매한 것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로 여러 병원을 돌면서 처방을 받아 되팔면서 돈을 벌었고 자신 또한 마약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마약성 진통제. 저희가 구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가지고 막 환자인 척한 거죠. 그냥 허리가, 저희가 허리 수술도 안 했는데 항상 의사들 속인 거예요. 작은 병원. 큰 병원은 절대 안 됩니다. (참여자 3)

여자 청소년들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기도 하였다. 주로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과 같은 성매매가 이루어졌으며, 가출팸에서 함께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후배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모든 의식주를 해결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솔직히 그렇게 청소년들을 써주는 알바가 없잖아요. 근데 애들은 솔직히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으니까 애들이랑 같이 다니다 보면 돈 필요하고. 그러면 슬슬 이제 성매매를 해본 친구들이 안 해본 친구한테 이제 '야, 너 이거 할래?' 이렇게 물어봐요. '나랑 같이 이거 하면은 그냥 몇 번만 그냥 대충 하면 그 돈 금방 번다' 해서 하루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막 그냥 남자랑 한 세 번 네 번 잤는데 돈이 막 100만 원이 넘게 벌리잖아요. (참여자 7)

저는 피곤해서 000[가해자] 집에 가고 있었는데, 제가 자고 있을 때, 조건을 돌리려고 했었나 봐요. 남자들이 계속 도망을 갔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오빠들한테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 돌렸나 봐요. (참여자 12)

○ 비행의 장기화: 가출과 가출팸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주된 비행 동기는 재미를 찾아 놀고 싶은 욕구와 가정의 폭력 및 갈등을 피하기 위한 생존전략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러한 동기를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공통적인 요인은 가출이었다. 가출하기 전부터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은 시작되었고 이들의 일탈에 대해 부모나 시설이 개입하면서 갈등이 생기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출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또래 친구들과 가출팸을 이루며 일탈과 비행이 본격화되고 장기화되었다. 보육원에서 선생님들과의 갈등이 컸던 한 청소년은 친구와 밖으로 놀러 나온 기회에 의기투합하여 가출을 감행했고, 가출 기간에 ‘헬퍼’의 지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청소년들은 가출 후에 가출팸을 이루고 주로 모텔에서 거주하였는데 모텔 대부분이 미성년자였던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남녀가 혼숙만 하지 않으면 출입을 막지 않았다. 가출팸들은 남자들이 먼저 방을 구하고, 나중에 여자들이 들어와 같이 지내는 방식을 이용했다.

가출해서 친구들이랑 차 타고 렌트카 타면서 그러면서 놀았어요. 잠은 그냥 그때 애들끼리 모텔 가서 자고. 렌트는 그 친구 아는 형이 성인인데 그 렌트카 계정을 받아가지고 렌트를 계속 빌리고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뭐 신분증을 위조로 쓰거나 그런 적이 없이 그냥 몇 명이냐고 해서 여자 안 오냐고 물어봐서 남자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냥 들어가라고. (참여자 2)

2) 소년 및 형사사법체계로의 유입

면접에 참여한 다양한 처우이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갈등이나 부모 부재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력이 상실되었으며, 비행 친구들과의 연합이 가출을 통해 더 강력해졌고, 생계비 마련을 위한 비행과 범죄는 더욱 심화되었다. 비행의 심화 끝에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사법체계나 형사사법체계에 유입된 연구참여자들의 처우이력은 아래의 표와 같다. 소년 및 형사사법체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했던 내용을 분석하여 각 단계의 특징을 도출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IV-3. 심층면접 참여자의 처분이력

번호	성별	처우이력	분류심사원/구치소	소년법 관련 사건
1	남	벌금형, 1·2·3·5호, 5호, 8호	분류심사원 2회, 구치소	보호관찰 위반
2	남	훈방조치, 1·2·4호, 1·3·4호, 1·2·5호, 1·3·5호, 5호, 6호	분류심사원 3회	우범통고 2회(가출), 보호관찰 위반 2회
3	남	1·3·4호, 5호, 9호, 기소유예, 징역형	분류심사원 3회, 구치소	보호관찰 위반
4	남	훈방조치 2회, 1·3·5호, 1·6호	분류심사원 2회	보호관찰 위반
5	남	경찰 사랑의 교실, 6호, 10호	분류심사원 2회	보호관찰 위반
6	남	1·3·4호, 6호	분류심사원	-
7	여	5호, 6호, 10호	분류심사원 2회	보호관찰 위반, 처분변경(시설 탈출)
8	여	1·4호, 1·5호	분류심사원 2회	우범통고 2회(가출)
9	여	훈방조치, 1·4호, 6호, 7호	분류심사원	처분변경(시설 내 난동)
10	여	훈방조치, 1·2·5호, 1호	분류심사원,	-
11	여	10호, 5호	분류심사원	-
12	여	5·6호, 8호, 9호, 기소유예, 징역형	분류심사원 2회, 구치소	보호관찰 위반

(1) 경찰단계 경험: 보호 없는 훈방

연구참여자들은 경찰단계에서 조사뿐 아니라 즉결심판, 훈방조치 등을 받았으며, 사랑의 교실에 참여하라는 권고를 받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이 혼재하였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 참여 조치를 받았던 한 연구참여자는 ‘더 놀고 싶어서’ 사랑의 교실에 참여하지 않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해당 사건은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재판을 받았다고 하였다. 경찰이 조사할 때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고 보호자와도 원활하게 소통하였다는 연구참여자, 경찰서를 자주 오는 자신에게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고 편하게 해주어 경찰에게 반항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연구참여자의 경우가 경찰단계에서의 비교적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지치니까 경찰들도 이제 ‘또 왔어?’ 이라고 ‘네, 친구랑 같이 왔어요’. 거기서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 먹고 그 경찰관들이랑 같이 담배 피고. 무섭게 했더라면 제가 더 반항했을 거예요. (참여자 5)

반면에 경찰이 자신을 이해하지 않는 태도와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청소년들도 상당수였다.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없이 조사를 받았다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고 최종 무혐의 판결이 난 성폭력 사건을 조사받을 때 경찰이 미성년자 수사 시에 지켜야 할 시간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보육원에서 생활한 한 연구참여자는 경찰 조사 때 항상 부모님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강압적인 분위기보다 더 싫었다고도 하였다.

근데 저는 경찰 조사하면서 경찰들이 딱히 막 좋게 말한 건 못 봤어요.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는 좀 막무가내로 해 가지고, 원래 무슨 시간까지 저를 데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시간이 넘게 있고. (참여자 2)

억박지르고 했었죠. 어쩔 때, 저도 살짝 같이 조금 있어가지고 경찰이 이제 저한테 막 너무 무례하다거나 막 소리를 지른다든가 모션을 취한다거나 이러면 저도 똑같이 했죠. (참여자 6)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경찰단계에서 미성년자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경우도 발견되었다. 연구참여자가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변명과 거짓말을 믿고 보호자를 소환하지 않고 훈방조치하거나 가출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가출하여 의식주 해결을 위해 ‘차털이’를 하다가 경찰에게 잡힌 청소년에게 경찰은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이 연구참여자는 훈방 이후에 또다시 거리를 방황하며 절도를 반복하였다.

첫 번째는 보호자 불렀어요. 두 번째는 안 불렀어요. 부를 사람 없다고 말했죠. 진짜 없었으니까. (참여자 6)

차털이 하다 걸려서 경찰서 갔어요. 보호자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고아원 출신이나 했을 때 아니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홍진] 1만 원 3장 그냥 다 돌려주고 훈방 조치되고. 경찰서 나와서 그냥 있었죠. 밖에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다니다가 또 차털이해서 잡혔어요. (참여자 4)

(2) 검찰단계 경험: 강도 높은 조사만 기억에 남을 뿐

범죄소년에 대한 검찰의 조치는 대부분 서류로 진행된다. 경찰이 소년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해당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법원 형사부에 기소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어떠한 정보나 안내를 받지 못했고 실제 검사를 만난 경우도 드물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참여자들은 검찰단계에서는 특별한 경험이나 기억이 부재하였다. 한 연구참여자가 검찰단계의 조사에 대해 경찰단계보다 조사 강도가 높았다고는 언급한 정도이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냥 모르는 척해 주는 거죠. 그냥 모르는 척해 주고 그냥 계속 유도 심문만. 그러다가 검찰로 올라갔거든요. 검찰로 올라갔는데 검찰은 이제 좀 박시게 조사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스트레스고 안 가고 싶어서 조사 오라 했는데 안 갔어요. '제가 안 했다는데 왜 자꾸 오랍니까? 안 갑니다' 하면서 그랬는데 일주일 뒤인가 잡혔어요. 저부터 잡혀서 들어오고 공범도 다 잡혔어요. (참여자 3)

(3) 법원단계 경험: 자세한 설명 없는 소년보호절차, 천차만별 재판 관계자

○ 자세한 설명 없는 소년보호절차

연구참여자들은 소년보호재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비행 사유와 처분내용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점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였다. 청소년들은 소년재판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절차와 소년의 법적 권리가 청소년 당사자와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과 방법으로 안내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위탁 결정 후 수감에 채워진 순간은 청소년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순간 중 하나였는데, 재판 절차와 판결에 따른 설명이 전혀 없어서 당황한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한 참여자는 부모님과 함께 재판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재판 후에 부모님과 함께 법정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임시조치 결정 후 바로 수감에 채워져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가게 되었고, 부모님은 소년분류심사원 임시위탁 결정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법원에서 계속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도 약간 부족해요. 내가 왜 재판을 받고 어떤 잘못을 했고 왜 때문에 이런 처분을 받았는지 그런 납득이 가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참여자 7)

뭐지? 이게 뭔가 신기했어요. 그 약간 교과서에서 보는 재판 현장에 내가 있더니 이게 왜 죄지? 집에 올 줄 알았는데 처음에 그리고 위탁을 들어간다 했을 때 막 애들이 다 울고 있는데 왜지? 왜 들어가지? 갑자기 수감 왜 채우지? (참여자 8)

처음에 저 근데 그 부모님이랑 인사할 거 인사하고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갑자기. 여기 무슨 문이 있는데. 수감 채우고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뭐 딱히 들은 말도 없었고. 저는 그때 보호관찰도 뭔지도 몰랐고 그냥 1호 처분이 부모님이랑 나가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거 받고 나가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빠도 소년분류심사원이 그렇게 한 번에 가는 건 줄은 몰랐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2시간 기다리시다가 거기 있는 경비분이 알려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참여자 2)

○ 천차만별 재판 관계자

12명의 연구참여자 모두는 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재판을 경험하였으며, 그중 2명은 법원 형사부의 소년형사재판도 경험하였다. 청소년들이 기억하는 판사는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일 때도 있었지만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어른일 때도 있었다. 한 연구참여자 소년부 판사가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헤아려주었고 검정고시를 위해 6호 시설 처분을 1개월 연장하고 싶다는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는 6호 처분이 종료된 후 시설에서 퇴소할 때 담당 판사의 도움으로 가정 폭력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도 하였다.

거기서 판사님이랑 나가기 한 달 전쯤에 OO 가가지고 밥 먹었어요. 검정고시 때문에 1개월 연장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연장해주셨어요. (참여자 2)

6호 나갈 때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다 이야기했죠. 그때는 이제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판사님한테 연락을 드려 가지고. 그래서 [판사님이] 신부님한테 잘 말씀드렸더라고요. 판사님이 제가 기초생활수급비 받고 자립지원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참여자 4)

반면에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또 다른 어른으로 판사를 만난 연구참여자도 상당수였다. 이들이 말한 법원 단계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는 판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지 않은 점, 반성문을 많이 쓰면 자세히 내용을 보지 않고 반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점,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데 선처를 위해 자녀를 돌보겠다고 형식적으로 하는 말을 쉽게 믿는 점, 부당하게 소년분류심사원 처분을 한 점, 부모가 있는 청소년보다 보육원 청소년들에게 강한 처분을 내리는 점 등이 있었다. 특히 보육원에서 자란 연구참여자들은 부모가 없어 재판에서 불리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부모가 같이 오는 아이들이 “부럽고”, “부모님 없는 게 죄인가”라는 생각을 하였다.

판사님이 갑자기 ‘나는 너를 못 믿겠다. 니가 지금 잘한다고 하지만 위탁에서도 생활을 잘했고 니가 지금 잘하겠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못 믿겠다.’ 어차피 판사님은 이미 애는 연장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저한테 거의 통보하듯이 얘기한 거라서 약간 내가 부모님 없는 게 죄인가(참여자 8)

반성문 그런 걸 이제 쓰잖아요. 사회 내 처분받으려고 어떻게든 이제 말을 지어내는 거죠 이제. 판사님은 그럼 애 얼굴을 한 번 보잖아요? 재판 때 딱 한 번. 근데 판사님들이 다 안 읽어요. 훑어보고. 왜냐하면 이만큼씩 쓰니까. 애들마다 다 거짓말인 거 아는 건데 아는데도 약간 훑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처분을 주시는데. (참여자 1)

그리고 이게 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에는 경범죄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아요. 피해 회복 그게 안 되니까 좀 더 중대 처벌받는 것 같아요. 부모 오는 애들 보면 부러워요. (참여자 7)

청소년들이 법원단계에서 만나는 또 다른 관계자로는 국선보조인(형사재판에서는 국선 변호인)이 있는데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 면이 있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어떤 청소년은 “없는 것보다 나은 것 같다”고 표현하였지만, 어떤 청소년들은 국선보조인에게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 잘하면 나올 수 있다”라던지 “여기서 잘못 지내면 10호 간다”는 얘기만 짧게 들었다고 하였다. 형사재

판을 받을 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던 한 연구참여자는 변호사가 재판 일주일 전에 연락을 하였으며, 이때에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처럼 국선보조인이나 국선변호인에 관해서는 재판 전 1회의 만남에 그친 점, 짧게 면담하는 점, 성의가 없는 점 등이 부정적인 경험으로 언급되었다. 청소년들의 경험에 비추어 짐작해 볼 때, 국선보조인이나 국선변호인이 청소년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살펴보고 법정에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데에 한계가 명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 잘하면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딱 그런 얘기밖에 안 했어요. 딱 한 번 5분, 10분? (참여자 2)

[도움] 1도 안 됐는데. 어차피 이야기들을 자세도 안 돼 있고, 그냥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된 거면 그냥 딱히 뭐 별. 너 그냥 여기서 잘못 지내면 10호 간다 그 말만 하고 가셨어요. (참여자 4)

저는 국선변호인을 썼었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전화로 끝내려고 하더라구요. 전화로 빨리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재판 보기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와서. [저는] 변호사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할 방법도 몰라요. (참여자 12)

3) 처분 시설에서 지냈던 시간들

연구참여자들이 재판 이후 경험한 내용을 분석하여 처분별로 경험의 주요 주제를 도출하고 이들이 경험한 다양한 처우가 이들의 재비행을 막을 수 있는 억제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처분 시설로는 소년분류심사원(임시위탁), 청소년회복지원시설(1호),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6호), 소년원(8~10호)이 있었으며, 보호관찰(4, 5호)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처분이기도 하고 시설 처분과 병합되는 경우도 많아서 본문에 포함하였다.

(1) 소년분류심사원: 동네 노는 애들을 모아둔 곳

연구참여자 12명은 모두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된 경험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중 한 명은 분류심사관이 상담 과정에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고 예상 처분 내용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고 하였다. 이 외에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경험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만을 이야기했으며 비행을 막는 데에 전혀 도움

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분류심사관과의 상담 외에는 하는 것이 없어서 재판에 선처받기 위해 반성문만 썼다는 청소년도 있었고, 다른 원생들의 잘못을 계속 스피커를 통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 괴로웠다는 이야기를 한 청소년도 했다.

재판에 반성문 이만큼 써서 갔어요. 심사원을 처음 갔을 때 들어간 날부터 반성문만 써야겠다. 생활 패턴이 있잖아요. 이제 일기장 쓰고 과제 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제 다 반성문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두 번째 들어갔을 때는 이제 학습을 해서 반성문만 계속 주구장창 쓴 거죠. (참여자 1)

연구참여자들은 효과도 없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왜 애들을 가두어놓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선처를 받겠다는 생각을 포기하면 불량한 생활 태도로 함부로 행동해도 되고 “동네에서 사고 좀 친다 하는 애들만” 모아둔 곳이라 오히려 안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배우게 된다고 하였다. 한 연구참여자는 엄격하고 고생스러운 경험을 해야 여기에 다시 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밖에서 알던 친구나 형들이 있으니 재미있고 오히려 생활이 편했다면서 임시위탁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표현하였다.

심사원 가서 뭐 바뀐다는 건 진짜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사원에서 지내면 어떤 거냐면 거기는 진짜 범죄를 더 엄청 많이 하는 형들이 누구든 올 수 있으니까, 그걸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거기 있으면 범죄 얘기밖에 안 하고. 선생님들도 딱히 저희한테 강의 해주는 거 빼고는 뭐 그냥 욕하고 그런 것밖에 듣는 게 그런 거밖에 없고 (참여자 2)

부정적인 경험이었죠. 너무 안 좋은 것들 많이 봐가지고. 그냥 센 애들이 막 약한 애들 괴롭히고 때리고, 물건 뺏고 막 갈구고 왕따시키고 이상한 게 많아서. 그런 사고 치는 애들만 이제 동네에서 사고 좀 친다 하는 애들만 이제 모아놓으니까 그냥 안 좋은 것밖에 없죠. (참여자 6)

분류심사원. 나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나빠야 되는데, 나쁘지 않아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또 너무, 가서 힘들고 고생하고 진짜 내가 여기 다시 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막상 가니까 또 밖에서 알던 형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또 생활이 편해요. 또 그리고 말동무도 있으니까 재밌어요. 그냥 저는 완전 그냥. 그래서 뭐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참여자 3)

(2) 1호 시설: 인생을 바꿔준 곳

12명의 연구참여자 중에 4명은 1호 시설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었는데 4명 모두 해당 시설에서의 경험이 긍정적이고 좋았다고 하였다.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분들이 부모님처럼 자신을 걱정해 주고 도와주며 관심을 가져주는 안정적인 환경이었고, 집에서는 가보지 못한 여행을 함께 가기도 했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 내 처분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지내더라도 생활을 잘하면 외박도 가능해서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2명의 남자 청소년은 퇴소 후에 재비행으로 다시 6호 처분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중 한 명은 현재 군복무를 하며 자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해당 청소년은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만난 신부님 덕분이라며 지금도 신부님에게 자주 전화하고 일자리 상담도 하고 있다고 하였다. 1호 시설에서 지냈던 여자 청소년 2명은 퇴소 후에도 재비행 없이 생활하면서 현재 공부나 일을 하고 있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시설의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칙으로 비행친구들과 연락이 끊기면서 정신을 차렸으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곳’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좋았어요. 부모님 같이 대해주시고 이제 진짜 확실하게 제 진로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자기가 도와줄 거 있으시면 다 도와주시고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확실히 마음 편했죠. (참여자 6)

여행 가는 거, 다 같이. 그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제주도도 가보고. (참여자 8)

아들 때리는 거 진짜 멈췄어요. 네. 핸드폰도 처음에 못하니까 친구들이랑도 끊어지고 진짜 정신 차렸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솔직히 저한테 딱 인생 바꿔준 곳이에요. 소년원 이런 데 갔었으면 오히려 더 망가졌을 것 같아요. 같이 놀고 밥 먹고 엄청 좋았죠. 저 진짜 좋았어요. (참여자 10)

그 신부님 때문에 어찌 보면 여기까지 온 것도 맞아요. 중간에 트러블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냥 믿고 도와주시고. 회복지원센터 다니면서 여행 잘 못 다녀봤는데 여행도 다녀보고 이곳저곳 많이 갔어요. 주말마다 시간 내서 가는데 좋더라고요. (참여자 4)

(3) 6호 시설: ‘제대로 된 어른’이 있는 곳, 혹은 범죄 모의 장소

12명의 연구참여자 중에 7명은 6호 처분을 받아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에 6개월 동안 위탁된 경험이 있었으며, 그중 4명은 6호 시설 퇴소 후에도 재비행을 하여 소년원을 가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6호 시설에서의 경험이 긍정적이었다고 이야기하

였다. 생활을 잘하면 외출이 가능하고 부모님과 캠프를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며, 선생님들은 자신에게 친절하였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하였다. 한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생활했던 6호 시설은 가족 같은 분위기였으며 자신이 노력하면 그에 대해 선생님들이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활 등급이 올라가는 등의 성취도 있으니 더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였다. 또한, 6호 시설에서 퇴소할 때 시설에서 자립정착금 등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최대한 알아봐 주어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는 6호 시설 선생님이 진심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신경 써 주며 조언해주는 것이 느껴져 잘 살고자 노력할 수 있었다면서 6호 시설을 통해 “제대로 된 어른을 만난 느낌”이 들었다고 하였다. 특히 시설 내 프로그램 중에 부모와 함께하는 캠프를 통해 마음을 열고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소년원같이 그냥 막 철창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6호는 되게 좀, 진짜 거기서 생활만 잘하면 막 외출도 나와서 영화도 보고. 제가 뭔가 노력을 하니까 노력한 거에 대해서 여기서는 샘들이 칭찬해 주고 그 노력한 거에 어쨌든 등급이 올라가니까 대가로 이렇게 해주니까 뭔가 더 잘 살려고 노력하고 싶고 그래서 더 잘 지내고 싶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냥 저희한테 여기는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나올 때까지 다 그냥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참여자 2)

반성하면서 살았죠. 반성하고. 거기는 이제 제가 좋아하던 샘들이 몇 명 있는데, 거기 선생님들이 이제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셔서. 그냥 좀 제대로 된 어른 만난 느낌. 진심으로 조언해 주시고 알게 모르게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런 게 좀 느껴졌기 때문에 거기서 되게 잘 살았죠. (중략) 도움이 됐던 거 퇴소하기 며칠 전인가 퇴소한 날 며칠 전인가 부모님이란 그거 캠프 가는 게 있거든요. 산 같은 데로. 거기서 이제 이제 부모님들이랑 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 같은 걸 좀 만들어주는데, 분위기랑 이런 거를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빠 왔었어요. (참여자 6)

그러나 6호 시설에서의 부정적인 경험도 분명히 존재했다. 시설에 있는 동안 출석은 인정 받았지만 중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부정적인 경험은 또래에게서 오는 것이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6호 시설 내에서 남자 청소년들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당당하게 자랑하며 서로 “물들게”

된다는 점을 언급했고, 여러 지역에서 온 범죄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모여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서로 범죄 계획을 모의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실제로 6호 시설에서 만나 친해진 친구들과 퇴소 후에 만나서 함께 비행을 저질렀다고도 하였다. 또, 시설 내에서는 힘 있는 애들이 힘없는 약한 애들을 괴롭히기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시설 선생님들이 24시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는 없어서 앞으로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이게 각자 범죄를 저지른 부분이 다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남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했던 범죄를 당당하게 말하면서 자랑을 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물들게 되죠. (참여자 4)

거기 안에서 애들이 범죄적인 걸 계획을 짜서 저지르까. 타 지역 애들이잖아요. 이제 범죄 계획을 세워요.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큰돈을 만질까. 약간 해킹해가지고 IP 따가지고 거기 돈 이렇게 빼 오자고. 사실 보이스피싱도 있기는 하죠. (참여자 5)

그냥 뭐 약한 애들을 괴롭히고. 선생님들이 개입해도 잘 안되죠. 애초에 24시간 같이 붙어 있는 사람들인데 저희는 생활하는 애들은. 선생님들은 뭐 그냥 근무시간에 자기 눈에 보일 때만 제재할 수 있는 거고. 안 되죠. (청소년 6)

(4) 소년원: 졸업장과 자격증으로 사회복귀를 도와줘야

12명의 연구참여자 중에 7명은 소년원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 중 5명은 이후 재비행을 하지 않았으나 2명은 재비행을 저질러 형사처분을 받아 면접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소년원에서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들로는 일찍 취침해야 하는 일과시간과 CCTV로 행동을 통제하는 시스템, 정신과 약을 많이 먹어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던 점 등이 있었다. 또한 소년원에서 사귀 “징역 친구”와 사회에 나가서 다시 비행을 저지르게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근데 약은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너무 몽롱해요. 그리고 저는 얼마나 많이 먹었냐면은 하루 안 먹으면 쇼크 오는 딱 그 정도로 이제 약을 많이 먹었어요. (참여자 7)

8호는 진짜 너무 뻑세더라고요. 할 것도 없는데 너무 일찍 일어나고 그래서 진짜 고개도 못

돌려 막 CCTV로 보고 있으니까, 6시인가 8시에 잠을 재우는데……. 집에 있을 때는 2시에 자던 애가 어떻게 8시에 자요? 그러니까 이제 뜯눈으로 밤을 새우는 거죠. 금단 현상 올대로 오고 잠은 맨날 못 자고 (참여자 1)

이제 징역 친구라는 게, 이제 징역을 갔다가 이제 6호나 9호, 10호 갔다가 나오면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또 이제 범죄를 하는 거예요. (참여자 1)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한 소년원에서의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었던 경험은 매우 적었으나 그중 한 연구참여자는 책을 많이 읽게 된 점이 기억에 남았다고 하였고, 또 다른 연구참여자는 소년원에서 지내면서 원했던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앞으로 “나가서 뭐부터 하지”라는 진로 고민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두 명의 참여자는 소년원에서의 교육 경험에서 아쉬운 점에 관해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본인이 있었던 소년원은 직업교육 과정만 운영되고 중고등학교 과정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자격증 과정도 다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 기초학력의 부족과 학업 중단으로 중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퇴원 이후에 탈비행하여 자립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하였다.

기본적인 고등(학교) 교육 같은 게 잘 안 돼 있고 기술교육을 듣잖아요. 솔직히 좀 저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머리가 좀 좋거나 한 사람은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기술교육 말고 다른 교육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면 좀 더 자리를 조금 더 빨리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참여자 7)

제가 있던 소년원은 고등학교 인정도 안 해주는 데 근데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소년원 가기 전에 고등학교 자퇴했는데, 거기는 검정고시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고등학교 과정 가르쳐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격증도 따고 학과 공부도 둘 다. (참여자 5)

(5) 소년보호관찰: 혼자서 지키기에 너무 어려운

12명의 연구참여자는 모두 보호관찰을 받은 경험이 있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은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5명은 가출로 주거지 상주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2명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다. 보호관찰을 무사히 마친 5명의 경우는 1호 시설이나 6호 시설의

도움으로 가능하였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보호관찰관의 관심이 싫지 않았으나 친구들이 불러내면 나가서 함께 어울리게 되고 비행은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며, 보호관찰관이 가정폭력 등 가족의 문제까지는 결국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하였다.

보호관찰관 만나는 거 저는 도움 됐어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말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먼저 물어보시거든요. 오늘 하루 어땠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친구들이 불러서 밖에 나가면 끝이에요 (참여자 10)

시설 나오면서 보호관찰 받고 집에 갔는데, 삼촌 무서워서 또 집 나왔어요. 보호관찰 위반으로 분류심사원에 갔다가 6호 받았어요. (참여자 4)

또한, 비행 친구와 노는 문화의 재미와 즐거움에 빠져있고 충동성이 강한 청소년이 가정에서 아무런 도움도 없이 갑자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절제력을 기르고, 비행 친구를 끊어내고 야간외출을 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스스로 지키기 어려워 준수사항 위반을 반복하다 보면 보호관찰법 위반 자체가 또 하나의 범죄 이력으로 쌓여가면서 더 심각한 범죄 경력자가 되어가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비행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해 처분이 계속 연장되면서 보호관찰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 자체가 힘들고 불안하여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더 큰 비행을 하게 되었다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보호관찰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호자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울 때에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탈비행에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 생활지도 등의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저는 경고장도 많이 받고 사고도 많이 쳐서 [분류등급이] 올라갔어요. 외출 제한 전화 안 받아서. 전화 안 받고 자꾸 이제 밤에 나가는 거 걸리고 또 이제 출석해라 했는데 출석 안 하고. 부모님은 못 도와주셨어요. 그때 또 아빠랑 있으니까 그 아빠는 10시 되면 잤단 말이에요 [일하러] 일찍 나가야 돼서. 그럼 또 제가 그래서 전화기를 뺐었어요. 나오는 날에. 그냥 나가서 놀고 싶다. 내가 이걸 왜 받아야 되지? (참여자 3)

그냥 근데 솔직히 저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보호관찰이 처음에 시작이 되잖아요. 제가

그냥 막 솔직히 제 생각인데 보호관찰이 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보호관찰을 하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보호관찰이 한 번 처분받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 한 번 받는 게 힘든 건데, 그 한 번이 처분받으면 그 후로부터는 한 번으로 절대 안 끝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으면 뭐에 연루가 되고 끝날 것 같으면 연루가 되고 보호관찰 위반이 되고 이러면서 그냥 끝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보호관찰이 있으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제가 이거를 훔쳤다고 치면 이거의 원래 처벌은 뭐 1, 2호일 수도 있는데 보호관찰에 있으면 무조건 4, 5호부터 받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냥 거기를 그 사고를 더 크게 만들려고 하고 더 치고. [그래서 보호관찰처분 말고 더 높은 처분 받도록] (참여자 2)

4) 처분 이후 다시 비행으로

(1) 쉼터와 자립생활관: 갈 데가 없어서 가기는 하지만

보호처분 등이 종료된 위기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복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설로 청소년 쉼터와 자립생활관이 있다.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 중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경험한 청소년이 있었다.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한 한 연구참여자는 쉼터의 존재를 몰라 길에서 생활하거나 ‘차털이’를 하며 모텔을 전전하다가 소년사법체계로 유입된 경우였다. 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3명은 모두 여성 청소년으로 보육원이나 집에서 나온 뒤에 쉼터를 이용하였다. 한 참여자는 보육원에서 가출한 후 비행을 저질러 6호 시설에 있는 동안 기존 보육원에서 퇴소 명령을 받아 처분이 종료된 이후에 갈 곳이 없어 쉼터에서 거주하게 되었으며, 쉼터에서도 가출하여 비행을 저지른 후에 결국 소년원을 가게 되었다. 청소년들은 쉼터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쉼터의 규칙을 견디지 못해 다시 나오는 일을 반복하였으며, 쉼터에서 만난 비행 친구들과 연합하여 다시 비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들 모두는 쉼터 규칙이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한 참여자는 자신이 머물렀던 쉼터를 “교도소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쉼터 이제 단기 일시 쉼터거든요. 일주일씩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거기 있다가 또 다른 쉼터 일주일 있다가 또 여기 일주일 있다가 또 이제 채팅에서 또 만나서 나갔다가 그런 식으로. 쉼터 왔다 갔다 하다가 놓고, 쉼터 내에 규칙을 따르는 것도 싫고. (참여자 7)

쉽터는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게 싫었고, 자유롭고 싶어서 나갔는데, 여기서 잡혀있는 게 싫어서 아예 쉽터는 들어가도 몰래 나가고 블랙리스트 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참여자 12)

그냥 거기서 규칙적인 게 좀 심했어요. 휴대폰을 막 걷고 담배도 하루에 세 번씩 피우라고 그러고 그래서 근데 거기 쉽터는 안 좋더라고요. 만약에 살려고 하면 규칙적인 게 너무 교도소 같아요. 조금 규칙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좀 많이 하고. (참여자 5)

한편, 연구참여자 중 3명은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었다. 그중 두 명은 보육원에서 성장하였고 처분이 종료된 이후 돌아갈 집이 없어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거주하다가 현재는 생활관에서 나와 혼자 살고 있었다. 한 명은 어머니의 사망과 아버지의 방임으로 혼자서 생활해야 하는 소년의 상황을 알게 된 보호관찰관의 권고로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거주하며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이 3명 모두는 소년원 출원 당시에 이미 성년에 이르러 공동생활에 거부감이 있었으며 여건이 된다면 독립하기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립생활관을 나와 혼자 살고 있는 참여자 중 한 명은 생활관 내 갈등으로 구성원과 싸운 뒤 자립생활관을 나오게 되었고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또 다른 한 명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민간기관 정보를 스스로 알아내어 주거지원을 받아 자취하고 있다.

선생님들이랑 좀 트러블도 있었어요. 제가 좀 자기 주장이 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잘못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사과를 안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나보고 잘못을 했다고 사과를 하라고, 친구한테 사과를 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랑 이제 싸우게 되고 애들이랑 점점 사이 멀어지면서 이제 거기도 있기 싫은 거죠. 근데 마침 제가 그때 00(민간지원단체)라고 이제 그걸 또 인터넷 쳐 갖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가기 하루 전날에 전화를 해서 '저 집 좀 해주세요' 하고 다음 날 자립생활관 나갔어요. (참여자 7)

(2) 재비행: 시설을 나와 다시 친구들에게로

12명의 연구참여자 중 1명을 제외한 11명은 처분 이후에 다시 비행을 저질렀다. 나머지

한 명은 보육원에서 분노조절장애에 의한 문제행동으로 정신병원에 수용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처분을 받은 경우로, 처분 이후에 다시 재처분을 받은 이력은 없지만 현재 문제행동이 멈춰졌다고 할 수는 없었다. 처분 이후에도 계속된 청소년들의 재비행의 이유는 이들의 비행 시작 동기와 매우 유사했다. 가정의 보호력 부재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또래 집단과 놀고 싶은 강한 욕구는 보호자나 소년사법의 제재력보다 더 강했다.

○ 더 심화되는 부모와의 갈등, 무기력해지는 부모

앞서 살펴보았듯이 면접참여자들이 일탈과 비행을 시작한 후에 소년 및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되기 전까지 대다수의 부모들은 당황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강한 통제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자녀와의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비행을 수사기관이 인지하고 조사와 재판을 받고 처분을 받는 기간에도 청소년과 부모 사이에 내재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보호자의 방임과 폭력은 더욱 심화되었고 잘못된 대응으로 갈등이 증폭되거나 개입을 아예 포기한 듯 무기력하였고, 보호자의 이러한 모습에 청소년들은 실망하였다. 연구참여자 중 한 명은 자신에게 문제가 발생하여 경찰서에 잡혀 있는데도 아버지가 경찰서에 오는 것을 거부하자 화가 나고 반항심이 생기면서 “내 멋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는 부모님이 재판에는 참석했으나 자신과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부모님과의 관계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들의 비행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개선의 계기 없이 지속되고 심화되었다.

아버지가 경찰서 오시는 거 거부하셨어요. 화났습니다. 그 온통 이제 약간 반항심도 생겼고 그냥 그냥 내 멋대로 해야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막 났습니다. (참여자 1)

엄마는 재판 오셨어요. 아버지는 그냥 저랑 말을 안 섞으시는데 더 무서웠어요. 아무 말 안 하니까. 차라리 무슨 말이라도 꺼내면 좋은데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피하니까 더 무서웠어요. (참여자 10)

부모나 보육원과의 갈등이 직접적인 비행동기가 되어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의 문제는 보호처분이 끝난다고 해결되지 않았다. 처분이 종료되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도

보호자의 폭력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보육원과의 갈등도 여전했다. 처분이 종료되어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생존과 유희를 위해 다시 절도와 폭력을 저질렀다. 가정폭력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가출했던 한 청소년은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절도 등 비행을 저지르다가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고 처분종료로 시설에서 퇴소한 후에 집으로 돌아갔었다고 했다. 그러나 폭행을 일삼던 가족과 계속 같이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다시 집을 나왔고 이로 인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중 주거지 상주 의무를 위반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폭력으로 가출하면서 비행 청소년의 길로 들어선 또 다른 참여자도 처분 이후 돌아간 집에서 여전히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집을 다시 나오게 되었다.

1호 시설 나와서 또 집에 가야 하잖아요. 삼촌 얼굴 볼 때마다 나는 살 떨려 죽겠고 집에서 잠자면 이게 잠을 자는 건지, 그냥 이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집에 돌아간 지 2주 만에 집 나왔어요. 보호관찰 위반으로 재범됐어요. (참여자 4)

(아빠에게) 또 술 먹나, 술 왜 또 드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몰래 먹는 거다 이리고 나서 또 술 취해서 이제 엄마를 때렸나, 엄마 때리고 저 때리고 하다가 이제 엄마가 소리 지르고 막 하다가 그냥 제가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또 나왔던 거죠. (참여자 9)

한편, 실제로는 부모가 방임하거나 무능력하게 대응하면서 자녀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재판에서 부모의 말만을 믿고 보호자 위탁과 보호관찰이라는 ‘선처’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청소년들도 있었다. 부모의 간청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지만 보호관찰 중에 부모가 다시 자녀를 방임하거나 충분히 보호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도 있었다.

아버지는 제가 좀 잘못 키웠으니까 그냥 ‘한 번만 봐달라, 더 잘 키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모습이 약간 별로 그렇게 마지못해 하는 느낌이다. 약간 재판이니까 그렇게밖에 안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판사님께 ‘집에서 산다, 같이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호관찰 받았어요. 이후에도 혼자 살았어요. 또 친구들이랑 놀았구요. (참여자 1)

그때는 아빠가 와서 빌었어요 판사님한테, 제발 진짜 신경 쓰다면서. 근데 그때 그 모습 처음 봤거든요. 오셔가지고 내가 잘 하겠다. 판사님이 원래 6호 보내려고 했는데, 변경해서 또 5호

받았어요. 아버지는 계속 엄청 잘해줬어요. 전보다 신경도 많이 쓰고 약간 좀 전화도 맨날 하고. 저는 또 이제 생각은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나와서 또 놓고 (참여자 3)

○ 학업중단과 학교의 포기

앞서 살펴보았듯이 12명의 연구참여자들의 일탈행동이 시작되고 소년 및 형사사법단계로 접어들기 전까지도 학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비행이 본격화된 시기에 큰 변화 중 하나는 가출로 인한 자연스러운 학업 중단이었다. 연구참여자 중 8명은 비행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학교를 자퇴하였으며, 4명은 보호처분 시설의 도움으로 학업 중단 없이 중·고등학교를 마쳤다. 의무교육단계에 해당하는 중학교의 경우 학교의 협조와 보호처분 시설의 도움으로 졸업이 가능하였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성적 부진으로 인해 본인이 원치 않는 원거리의 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통학에 어려움을 겪었고 학업에 더욱 흥미를 잃어 결국 자퇴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비행문화를 접하고 나서는 밤늦게까지 놀다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지각과 결석을 반복하고 유급을 당하는 등 적응이 어려워 자퇴한 경우, 고등학교 진학 후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워 자퇴한 경우도 있었다.

청소년들의 일탈과 비행을 알고 있었으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학교는 특히 이들이 소년 및 형사사법체계에 유입된 이후로는 더더욱 관여와 개입이 부족하였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지 않는 학교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문제학생이라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선생님이 깨우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또 다른 참여자는 선생님이 자신을 사고칠 것 같은 학생으로 생각하며 뒷자리 앉혀두고 관심을 주지 않자 “마음의 문을 더 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때 저까지 3명 보호관찰 받는 걸로 알고 있었고, 이제 그렇게 보호관찰 받는 도중에 전화가 와서 재판 왜 받는 거냐, 그렇게 해서 (스쿨폴리스가) 많은 질문들을 하셨어요. 찾아오시기는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막 범죄 기록이 있으니까 막 누군지 알려고 막 찾아왔는데 저랑 시간대가 안 맞아서. (참여자 1)

그냥 잠만 자고 학교 끝날 때 일어나고 그랬어요. 제가 들었던 걸로는 어떤 선생님은 저한테 재 그냥 자게 놔두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걸 들었고 근데 제가 막 그때는 어떤 선생님이 깨웠었는데 다시 자고 막 그래서 그 후로는 잘 깨우지 않았어요. (참여자 2)

학교는 조금이라도 사고 칠 것 같다 하면 그냥 포기해요. 선생님이 저희를 맨날 뒷자리, 창가 뒷자리에 앉게 하고 손을 들어도 안 시켜주고 포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더 닫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12)

○ 비행 청소년으로서의 정체성

처분 이후 면접참여자들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주변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았다고 말하는 청소년도 있었던 반면, 자신을 “인생 패배자”로 보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부정적인 시선을 느꼈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비행 청소년이 되어 화장을 진하게 하고 말투도 바꾸었더니 전에는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들이 자신을 무서워하거나 잘해주며 친해지고 싶어 했다고 하였다.

같은 중학교에 괴롭히던 애들이 있는데, 제가 무서워져 보이고, 화장도 짙히고 말하는 투도 바뀌고 하다 보니깐, 친해지고 싶었나 봐요. 괴롭히던 애들이 저한테 잘해주고 챙겨주고, 어디 놀러 가자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무서워지니깐 날 챙기네? 무섭게 해야 날 보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12)

자신의 처분이력에 대해 면접참여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복잡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럴까’ 하며 자책도 했지만 비행과 처분이력으로 인해 비행 친구들 사이에서 “가오”가 생기면서 점점 일탈과 비행에 무감각해지고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는 현상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청소년들은 자신을 스스로 비행 청소년으로 여기며 비행 청소년으로서의 정체성이 점점 굳어져 갔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들어갔다 나왔던 게 그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자랑거리가 되니까. 그때는 어리니까 가오 같은 게 좋잖아요. 뭉쳐 댕기는 것도 좋았고, 애들이 랑.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는 괜히 세 보이고 싶어서 (참여자 9)

근데 약간 이제 약간 이런 재판을 많이 받는 애들은 그런 걸 약간 출신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그런 게 자기 막 커리어인 줄 알아요. 나 어디 출신이다, 어디 나왔다. (참여자 1)

그땐 울지도 않고, 처음 6호 받을 때는 울었는데, 그다음에는 무덤덤하게 (참여자 12)

○ 비행친구들과의 강한 유대와 출원 후 만남 지속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어느 정도 성장한 시기가 될 때까지는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또래 집단과 함께 어울려서 놀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지 않았으며, 친구의 영향력이 강해서 자신의 의지가 잘 제어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은 보호관찰 중에도 비행 친구들과의 만남을 지속했으며, 소년분류심사원, 1호 시설과 6호 시설, 소년원에서 처분을 받고 나와서도 다시 또래 친구들을 만나 비행을 저질렀다. 한 연구참여자는 범죄를 여럿이 저지르고 그 중 한 명이 책임지고 처분을 받는 “총대” 때는 행위를 통해 집단의 결속을 다시고 유대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비행집단의 문화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다져진 강한 유대를 쉽게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가출과 또래 집단과의 연합에서 시작한 유흥과 쾌락은 부모나 소년보호제도의 제재를 뛰어넘는 강렬한 것이었다. 보호관찰을 잘 받다가도, 시설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퇴소를 했어도 청소년들은 습관처럼 다시 비행 친구들을 만나 다른 친구들을 괴롭혔고, 유흥을 지속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비행을 저질렀다. 연구참여자들은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 등 시설 안에 있을 때는 과거를 반성하며 나가서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짐도 했지만 사회로 나오면 여전히 그대로인 환경에 던져지면서 다시 이전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고 하였다.

위탁에 있을 때는 다 반성을 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나가면 검정고시 쳐야겠다, 공부해야겠다. 솔직히 근데 그 안에서는 다 반성하고 하거든요. 매일 일기 쓰고 하니까. 근데 나가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나가면 솔직히 이제 좀 다시 그때 기억을 잊고 다시 뭔가 그 재미를 찾아서 (참여자 8)

5호 보호관찰 받고 분류심사원 나온 날, 거기 딱 가가지고 이제 애들이랑 고생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날 집에서 나오면 안 됐었어요. 가족이랑 이제 밥 먹고 엄마가 분명히 ‘나가지 마라, 집에서 자라, 애들 만나지 마라’ 이랬는데. 알겠다, 말은 알겠다 하고 애들 연락 오는데 못 참겠는 거예요. 나갔어요. 새벽 탈출 (참여자 3)

나오자마자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죠. 출소 2주 만에 공범인 친구, 밖에서 기다리던 친구를 만나게 된 거죠. 그 친구랑 같이 술을 먹고 아는 애 만나서 때리게 됐어요. (참여자 12)

사춘기 시절 끊을 수 없던 비행 친구와의 유대는 성인이 되자 대부분 자연스럽게 관계가 끊어졌고 그 유대감은 이성친구에게로 옮겨갔다. 교정시설에 수용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가 끊어졌다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중 2명은 20대가 된 지금도 친구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으며 여전히 비행 친구들과의 만남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자신은 한 번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줄줄 따라” 다니게 된다고 하며 처음 비행집단에 발 디딜 때 따랐던 “엄청 무서웠던 언니”를 끊어내지 못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일탈행동을 즐겼던 “꽤락 친구”와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끝내지 못하고 “질질 끌고”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비행 또래 집단은 소속감을 주는 거의 유일한 애착의 대상이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상이 삶에 등장하기까지는 관계를 쉽게 끊어낼 수 없고, 이로 인해 비행의 중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술집은 끊었는데 친구들을 못 끊었죠. 이게 한 번 친구를 사귀잖아요? 약간 저 같은 경우는 남들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정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으니까 우정을 끝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개네한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꽤락 친구죠. 그냥 그냥 말만 친구인 약간 기떨 것도 안 되는 약간 갈대 같은 친구 그런 거죠. 그냥 그 우정을 끝내고 싶지 않아서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일과 추억들을 이제 악몽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제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참여자 1)

○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춘기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사춘기는 질풍노도와 같았으며, 그 당시에는 그 어떤 말로도 자신들의 욕구와 행동을 제재하기는 힘들었다고 하였다. 사춘기는 발달단계상 정체성을 형성하고 독립적 자아가 발달하는 시기로 일방향의 통제적 양육방식과는 부딪칠 수밖에 없는 당연한 특성을 가진다. 이때 나타나는 비행 행동 중 많은 부분은 특정 시기가 지나면 소멸되는 지위 비행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해 즉각적인 사법적 개입보다 교육적 접근과 복지적 지원을 우선하여 과도기가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낙인 없는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경미한 지위 비행에서 시작되었다가 사춘기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모와 갈등을 겪고 가정의 안전망을 벗어나면서 비행 유인력이 높은 유해 환경으로 유입되고 범죄 이력이 누적되는 경로를 걷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래서 사춘기 그 감정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지 진짜 머릿속으로 안 돼 이랬는데 몸 저기가 있고. 근데 그 사춘기 때 심정이랑 주변 사람들이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완전 오락가락 하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딱 내 의지만 있어야 되고 이걸 진짜 하기 싫은데 이래도 몸은 저기가 있고 막 그래요. (참여자 10)

그때는 뭘 하든지 좀 말 잘 듣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면 그게 가능한데 그때는 솔직히 그냥 뭘 하든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근데 그때는 제가 아무리 이제가 되돌아봐도 그때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특별한 계기도 없고 이제 막 진짜 마음먹고 이제 놀아보아겠다라는 마음을 딱 들어버리니까 뒤돌아볼 생각조차 안 해 봤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왜 그렇게 살았나 생각할 정도로 이해가 안 돼요. (참여자 3)

(3) 재비행 억제를 위한 연구참여자들의 제언

연구참여자들은 끊임없이 재비행을 하며 방황했던 지난 시간을 회상하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청소년들의 재비행을 억제하기 위한 각자의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공통적인 의견들을 뽑아 종합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근원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져야

청소년들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청소년들의 상황과 말에 좀 더 귀 기울여야 하며 문제의 원인을 진단한 후에는 이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은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자신들의 가정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며 보호자의 폭력과 방임, 부모와의 갈등은 여전하였고,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사춘기 시기의 특성이 조절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와 원인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해주는 기관 또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가정의 보호력 부재의 대표적 사례인 연구참여자 4는 부모 이혼 후 삼촌과 살게 되면서 학대를 받다가 폭력의 고통에서 탈출하기 위해 가출하였으며, 먹고 살기 위해 생계형

절도를 하게 된 경우인데, 삼촌의 학대와 조부모의 방임이라는 자신의 근원적 문제를 먼저 들여다보고 누군가 도움을 주었더라면 사법체계에 유입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냥 아동학대 받았을 때 그때 그냥 삼촌하고 딱 떨어졌으면, 그냥 그때 딱 떨어졌으면 솔직히 그냥 아무 일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그냥. 사실 그냥 딱 그때 떨어졌으면 그냥 애들하고 그냥저냥 지냈을 것 같고 (참여자 4)

○ 공감하고 지지해 주는 부모 역할이 필요

12명의 연구참여자 가운데 11명이 부모의 이혼, 방임, 부재 및 보육원 유기 등을 겪었으며, 부모를 그리워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부모의 대응을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청소년의 비행은 막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계셔야 하고, 부모와의 건강한 유대가 있어야 자녀가 가정 밖으로 튕겨 나가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연구참여자는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부모님을 의지할 수 없으면 친구를 의지하게 되고, 친구를 의지할 수 없으면 비행 집단의 선배에게라도 의지할 수 밖에 없다며, 인생의 “첫 시작이 가정”인데 가정이 없으면 아이가 혼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는 부모 있어 자신에게 애정을 많이 주고 잘해주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청소년들에게는 기댈 사람, 공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보육원에서 자란 연구참여자 중 한 명은 부모가 아무리 사정이 열악해도 아이는 시설보다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이 더 낫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가정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이제 부모님을 의지할 수 없으면 친구들을 의지하게 되고 친구들을 의지할 수 없으면 또 그 형들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보다. (참여자 1)

○ 나를 잡아줄 ‘어른’이 필요

부모의 부재가 컸던 청소년들이나 부모가 없는 보육원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믿고 의지할, 자신을 잡아줄 ‘어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부모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도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좋은 어른들과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비행을 그만두고 좀 더 안정적인 상태로 삶을 꾸려갈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처분 기관에서 만난 선생님들이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내가 발전이 있을 것 같고 진짜 간절하게 보이면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라면 보호처분이 효과를 발휘하고 청소년들은 재비행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뭘 해도 괜찮다고 해줄 수 있는”, “내 편인 어른”이 있었다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연구참여자도 있었고, 비록 부모에게서 버려졌지만 보육원이라는 시설 대신 진짜 ‘부모님 같은 사람’이 나를 돌봐주는 ‘위탁 가정’에서라도 자랄 수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른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해도 내 편이고, 이걸 해도 내 편인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차탈이도 안 했을 텐데. 엄마든 선생님 이든 엄마가 되었던, 나이 많은 사람 중에 제 편이 있었으면, 저보다 언니들, 뭘 해도 괜찮다고 해줄 수 있는. (참여자 12)

○ 처벌은 엄격하고 단호해야

소년법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거나 단호하지 못하고 다소 관대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끊기 어려운 또래 친구들과의 결속을 제대로 끊어내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한데 오히려 시설 수용이 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소년 및 형사사법절차의 각 단계마다 청소년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더 단호하고 엄격하게 개입하는것이 필요하다고도 하였다. 한 연구참여자는 자신은 이미 6호 시설에 다녀온 상황임으로 여기서 더 문제를 일으키면 2년 장기 소년원 송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고를 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어떤 청소년들은 차라리 10호 처분과 같은 큰 처벌을 바로 주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주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이와 같은 진술들은 청소년들이 폭력적이거나 강력한 처벌 자체를 원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은 탈비행을 누군가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줬더라면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지 하는 아쉬움의 표현으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핸드폰이랑 몇 개월 동안 그냥 다 없애고 거기서 진짜 ○○(6호 시설) 같은 시설에 들어갔다

나오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기서 한번 더 사고를 치면 진짜 2년 동안 그거를 그것보다 더 심한 게 2년을 살아야 된단니까 그것 때문에 더 사고를 안 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2)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사고를 쳤으면 애초에 그냥 10호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큰 처벌을 받고 그냥 갇다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갇다 오면 생각이 바뀌죠. (참여자 5)

○ 청소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어야

면접참여자들은 부모나 경찰, 판사 등 어른들이 자신들의 말에 좀 더 귀 기울여 주고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알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연구참여자는 자신은 우범소년으로 재판을 받아 폭행이나 사기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과 같은 처벌을 받았으면서 부모가 없고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판사가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억울해하였다. 아동학대로 어려움을 겪은 한 연구참여자는 어른들이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일단 너무 청소년의 사연을 좀 안 듣는 것 같아요. 저 때도 그랬고 이게 그래도 애가 사고를 쳐도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듣고 원하는 게 있거나 좀 이러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막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할 말 있냐 반성문을 썼냐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거기서 불만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형식적인 그런 절차 말고 좀 더 어른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조금만 더 잘 들어줬더라면 좀 좋았을까 싶은 (참여자 7)

○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면접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일탈과 비행을 심화시킨 술과 담배 구입, 펜타닐(마약) 처방, 문신, 모텔 투숙, 렌트카 대여 등이 미성년자에게 너무도 쉬운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대로 엄격한 단속과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장소에서 청소년들이 집단 폭행을 행사하여도 성인들이 그 상황에 개입하지 않고 외면하고 묵인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가출하여 생계비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끌어들이는 것, 여자 청소년 대상으로는 특히 랜덤채팅 앱이나 노래방 도우미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 착취가 만연한 현실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한 상황을 전하며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술, 담배, 렌트카, 이게 그게 다 좀 엄격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청소년들이 그런 거에 대해 너무 노출이 쉽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유도하는 것도 있고 (참여자 3)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는 형들이 너 통장만 이렇게 하면은 돈 벌 수 있다. 야 너 이거 차 대치만 하면은 돈 얼마 줄게. 아니면 핸드폰 같은 거 개통만 해주면 얼마 줄게 해서 남자애들은 보통 그쪽 사기예요. 보이스피싱, 배달책, 남자들은 그렇게 해서 빚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참여자 7)

○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연구참여자들은 비행 말고는 할게 없는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생활을 같이 하는 캠프 등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또래와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하는 기회를 통해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단기간이 아니라 좀 더 장기 프로젝트로 한 청소년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상황을 체크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그걸 계속 활동을 시켜주면 범죄를 안 저지르게 되고 그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자기가 일단 먼저 좋아하는 만큼 물어보고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걸 캐치해 가지고 그쪽으로 할 수 있게끔 (참여자 5)

제가 제 주변을 봤을 때도 어떤 그런 캠프나 어떤 활동이 마련돼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이제 다 이제 술에만 취해 있고 다 이제 안 좋은 것들에만 취해있는 거죠. 왜냐하면 할 게 없다 보니까 (참여자 1)

저는 어릴 때, 그냥 계속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자……. (참여자 12)

○ 아동양육시설의 소규모화가 필요

아동양육시설에서 성장하며 일탈과 가출, 비행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은 대규모 시설이 가진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시설의 소규모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생활규율을 완화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좀 더 지지하고 배려하는 긍정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유대감과 정서적 교류에 기반한 대안 가정으로서의 보호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방향의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성장한 연구참여자 중 두 명은 시설 내에서 문제행동을 일으켜 다른 시설로 보내졌던 경험과 이때의 ‘버림받는’ 상실감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이들은 자라온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전원 되는 것은 가정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을 다시 버리는 것이라며 이를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도 하였다.

약간 가정 위탁을 보내서 뭔가 소규모로.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 약간 가정 위탁 이런 조그마한 곳에서 관심을 좀 더 많이 주고 약간 이런 게 진짜 사랑이다. 그러니까 너를, 좀 더 잘해준다고 해서 다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조금 더 알려주면 (참여자 8)

보육원에서 살면 다 나오면 애들이랑 연락 자주 해보고 그런데 다 힘들어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든 꼭 참고 살려고 하는데……. 보육원 친구가 작년에 자살했어요. (참여자 5)

살짝은 좀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 왜냐하면 시설은 쉽터는 몰라도 시설은 생각보다 규칙이 엄격해요. 워낙에 사람이 많고 한니까. 근데 그게 좀 너무 답답해요. 어느 정도는 좀 유도리 있게 풀어주면 좋겠어요. 그냥 일반 부모가 있는 집 그 정도로 가정집 정도로. 그룹홈 같은 거 있잖아요. 저 진짜 어릴 때부터 느낀 거거든요. 소규모로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참여자 7)

(시설을) 한 번 옮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옮기는 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나 또 버림받았구나. (참여자 11)

5) 현재 상황

12명의 연구참여자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조사하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인과 겪고 있는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먼저 이들의 현재 주거 현황을 살펴보면, 본 장을 시작할 때 표 VI-2에 제시한 바와 같이 5명은 자취, 3명은 가족과 함께 거주, 1명은 자립생활관에서 거주, 1명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시설에서 선생님과 거주, 2명은 교정시설 복역

중이었다. 자취를 하는 경우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 주택지원을 받거나 일을 해서 월세를 내고 있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도 받고 있었다. 학업 및 직업 생활 현황으로는 2명은 대학생, 1명은 고등학생, 1명은 대입 준비 중이었고 1명은 군복무 중이었다. 4명은 일을 하고 있었으며 1명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고 쉬는 중이었다. 대학생 두 명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었지만 다른 한 명은 고등학교 때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아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대학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면접 당시까지는 별다른 비행 행동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2명은 보호관찰 중에 있었다.

(1) 긍정적 요인

○ 가족과 지인들의 지원과 지지

모든 연구참여자들에게 현재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자신을 믿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의 지원과 지지였다. 갈등은 있었지만 결국 오랜 시간을 참고 인내해 준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례, 가족은 아니지만 보호처분을 받아 머물렀던 1호 시설과 6호 시설의 시설장과 직원, 도움을 준 자립생활관이나 민간단체 관계자 등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좋은 어른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긍정적인 사례들도 있었다.

부모님이 참고 기다려주셨어요. 저를 약간 '니가 빨리 돌아오라는 말은 안 할게. 근데 이렇게라도 해줘서 고마워' 이랬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바뀌어도 '고마워'라는 말을 계속해줬던 것 같아요. (참여자 10)

친구들, 아예 안 만나죠. 지금은 그러니까 한 명도 안만나요. 그냥 솔직히 전 친구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도. 제일 소중한 건 가족이더라고요. 저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게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한 20살 때 깨달았죠. (참여자 6)

의지할 어른이요? 계시죠. 지금 제가 있었을 때 회복지원센터 신부님 아직도 연락하고 있고. 그 신부님 때문에 어찌 보면 여기까지 온 것도 맞아요. 중간에 트러블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냥 믿고 도와주시고. (참여자 4)

(자립생활관) 들어가서 보니까는 이제 많이 이제 따뜻한 분이시고 관장님들이랑 다른 실장님들도 다 이제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경험도 있으시고 경력도 있으시니까

많이 믿음이 가더라고요. (참여자 1)

○ 드디어 생긴 목표

연구참여자 12명 중 9명은 구체적인 목표와 향후 계획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4명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참여자 중 한 명은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한 연구참여자는 용접 분야에 취직하기 위해 학원 신청을 해놓았고 다른 자격증 2개도 필기시험에 합격한 상태라고 했으며, 또 다른 참여자는 간호조무사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었다. 타일 자격증을 따고 타일 회사를 차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면접참여자도 있었다.

용접 쪽으로 이제 취직할 계획이라서 국비로 학원을 용접학원을 갈 거예요. 검색해서 그냥 뭐 학원 수강비나 위치 이런 거 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아보고 국비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해서 이제 신청하고, 학원 졸업하고 지금은 필기, 제가 자격증 지금 응시하고 있는 게 두 개인데 이제 필기는 두 개 다 따놓은 상태고 실기만 이제 응시하면 자격증 나오고 자격증 나오고 나서 이제 제가 용접 쪽으로 취직하려고 이번 연도 안으로 (참여자 6)

타일 회사를 차리려고요. 일단 타일 자격증 따가지고 타 회사 한 1년도 다니고 호주 워킹 그거 가지고 2년 살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또다시 조금 더 배운 다음 사업장을 내려구요. (참여자 5)

(2) 부정적 요인

○ 경제적 어려움과 자립

연구참여자들이 처분 종료 후 마주한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현재 혼자 살고 있거나 향후 자립을 계획하고는 있지만 안정적인 직장과 주거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돈'에 대한 걱정과 압박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었다. LH 등에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한 연구참여자들은 집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빚을 지기도 하였고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지출하고 있었다. 청소년자립생활관에 거주하거나 민간단체 지원시설에서 거주하는 연구참여자들 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연구참여자 1인도 독립을 희망하

고는 있었지만 주거에 대한 별다른 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고용 불안정의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하였다. 면접 당시 직업활동을 하고 있던 4명 중에서도 정규직은 1명뿐이었고 나머지 3명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어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활동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고 쉬고 있던 한 청소년은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월세와 생활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취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일을 하고 있더라도 생활비가 부족하여 대출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이야기한 사례들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중 한 명은 큰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냈다가 오히려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였다.

○ 회복되지 않은 가족관계와 의존적인 이성관계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중 4명은 여전히 부모와 만나지 않거나 갈등이 남아있었다. 아동 양육시설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진짜 “가족”이 없어서 외롭다며,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기초생활수급비 등의 경제적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누군가 들여다보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해주면 좋겠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20대가 되면서 청소년들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는 10대 때 자신들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던 비행 또래 집단과 자연스럽게 사이가 소원해진 것이었다. 현재 그들에게 친구들을 대신하는 가장 큰 인간관계는 가족이나 연인이었는데, 부모가 없거나 여전히 부모와 갈등이 깊은 청소년들은 이성친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3.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다양한 처우이력이 있는 소년을 면접한 결과를 아래 표 IV-4에 요약하였다.

표 IV-4. 다양한 처우이력을 경험한 소년 개별심층면접 조사 분석 결과 요약

입찰과 비행에서 범죄가 되기까지	소년 및 형사사법체계로의 유입	처분 이후 다시 비행으로	현재 상황
(1) 가족 - 보호자의 폭력과 갈등으로부터의 도피 - 비행에 대처하지 못하는 무관심한 보호자, 유대감 없는 사설 생활터 (2) 학교 - 아려우지는 학업, 견디기 어려운 왕따 - 무관심한 학교, 부족한 개인 효과 (3) 또래 집단 - 친구들과 놀고 싶은 강렬한 욕구와 호기심 - 또래 집단의 유인과 압력 (4) 비행과 범죄의 심화 - 구하기 쉬운 술과 담배, 하기 쉬운 문신 - 세를 과사하기 위한 폭행 '돈'을 마련하기 위한 범죄 - 비행의 장기화: 기율과 기술패	(1) 경찰단계 경험 - 보호 없는 훈방 (2) 검찰단계 경험 - 강도 높은 조사만 기억에 남을 뿐 (3) 법원단계 경험 - 자세한 설명 없는 소년보호조치 - 천차만별 재판 관계자 처분 시점에서 지냈던 시간들 (1) 소년부류심사원 - 동네 노는 애들을 모이든 곳 (2) 1호 시설 - 인생을 바꾼 곳 (3) 6호 시설 '제대로 된 어른이 있는 곳' 혹은 범죄 모의 장소 (4) 소년원 - 출입장과 자격증으로 사회복귀를 도와줘야 (5) 소년보호관찰 - 혼자서 지키기에 너무 어려운	(1) 원터와 자립생활관 - 갈 때가 없어서 기기는 하지만 재비행: 시설을 나와 다시 친구들에게로 - 더 심화되는 부모와의 갈등: 무기력해지는 부모 - 학업중단과 학교의 포기 - 비행 청소년으로서의 정체성 - 비행 친구들과의 강한 유대와 출원 후 만남 지속 -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춘기 (3) 재비행 여제를 위한 면접참여자들의 제언 - 근원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져야 - 공감하고 지지해 주는 부모 역할이 필요 - 나를 잡아줄 '어른'이 필요 - 차별은 엄격하고 단호해야 - 청소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어야 -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 이동양육시설의 소규모화가 필요	(1) 긍정적 요인 - 가족과 지인들의 지원과 지지 - 드디어 생긴 목표 (2) 부정적 요인 - 경제적 어려움과 자립 - 회복되지 않은 가족관계와 의존적인 이성관계

2) 시사점

일탈, 비행, 거듭된 재비행을 거치며 다양한 처우이력을 경험한 12명의 청소년들의 경험과 의견을 토대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사춘기 시기 발달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대처

연구참여자의 일탈과 비행의 시작 시기는 중학생 시절인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들은 당시에는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돌이켜보면 사춘기가 찾아왔던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들의 보호자들 역시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이혼, 방임, 학대에도 별다른 저항이 없던 아이가 중학교에 가서 돌변하자 당황해하며 잘못된 대응으로 오히려 갈등을 초래하였다. 보호자나 교사들이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과 사춘기의 어려움, 정체성 위기 등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와 학생들의 비행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청소년들이 요구한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가족 캠프, 진로 탐색 등 즐겁고 신나는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모색해야 할 것이다.

○ 1차 안전망 가정의 회복

가정은 1차 사회화 기관이자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사회통제이론 상의 사회통제기관이다. Hirschi(1969)는 사회통제이론에서 부모 및 학교와의 약한 유대감이 약한 통제력으로 이어지고 청소년들은 결국 비행과 범죄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 대부분은 부모의 이혼, 폭력, 방임, 유기 등을 경험했으며, 비행의 주된 동기가 부모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집을 나오면서 가정을 통한 사회화와 유대감 형성 기회를 상실하였고 그 어떠한 통제력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청소년들의 재비행과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관계성 회복과 유대감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현재 이들이 가진 긍정적인 요인으로도 기다려준 부모, 회복된 가족관계가 주효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을 중심으로 가족으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가족단위의 상담이나 치료 등 위기가정에 대한 가족 중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에 위탁하는 시설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 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를 1호 보호자위탁 처분에도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의 부재로 아동양육시설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대규모 시설의 한계를 크게 경험하였으며 대안 가정으로서 기능하지 못하였던 시설을 나와 거리에서 지내면서 더 심한 비행에 빠지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시설 내에서도 대안 가정 수준의 유대감과 정서적 교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을 소규모화하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개입과 지원을 개별화할 뿐 아니라, 자립 후에도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2차 안전망 학교의 기능 회복

학교는 2차 사회화 기관이자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사회통제기관이다. 면접참여자들은 가정의 폭력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혹은 비행 친구들과의 본격적인 연합을 위해 가출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던 학교도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었다. 1차 사회화 기관에서의 사회화에 실패한 청소년들이 학교를 통한 2차 사회화에도 실패하면서 사회의 어떤 통제도 받으려 하지 않는 ‘막 나가는’ 무리가 되어 사회를 떠돌았다. 여기에 학교는 무대응하고 무관심했으며, 일부 스쿨폴리스와 교사의 노력이 있기도 하였지만 청소년들의 폭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나를 잡아줄 어른들’의 필요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였고, 학교 선생님들 대신 만났던 소년보호처분 1호와 6호 시설의 좋은 어른들과의 긍정적이고 새로운 경험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2차 사회화 기관인 학교는 비행 청소년들을 학교 밖으로 몰아낼 것이 아니라 상담교사, 학교 사회복지사, 스쿨폴리스 등의 인력을 확충하고 학교 안에서 청소년들을 끌어안아 이들이 처한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는 앞서 이야기했던 가족 단위 지원의 주체가 되어 내실 있는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회복을 위한 가족 상담, 가족 캠프 등을 개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일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 대안교육의 다양화를 위한 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3차 안전망 지역사회 회복

가정과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은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출팸을 이루고 술, 담배, 마약, 문신, 무면허 운전은 물론 유흥비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절도, 마약 판매, 성매매 등을 하였다. 지역사회의 성인들은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고 문신을 해주었으며, 돈을 받고 모텔방을 내어주고, 성을 착취하였다. 이때 미성년자로서 법과 규칙을 어긴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 유해환경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청소년들이 비행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밀도 있는 청소년 보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정을 떠난 청소년들이 가출팸을 형성하여 비행과 범죄를 저지르거나 돈을 마련하기 위해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해 성 착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법적인 제재보다는 복지적인 지원을 우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 경찰단계의 다이버전 강화

경찰은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격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지만 동시에 소년과 보호자에게 현재 소년이 처한 상황과 앞으로의 절차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비행 청소년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형사사법체계인 경찰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지역사회 자원과 적절히 연계해 줄 때, 청소년들의 비행이 심화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튼튼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등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찰이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비행 초기의 위태로운 시기들을 잘 지나 보낼 수 있도록 중장기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박지수 외, 2023).

○ 소년분류심사원의 구금 지양

소년분류심사원의 구금은 성인의 구속과 비교할 때 판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고 객관적 기준이 없는 결정이라는 한계가 있다. 소년분류심사원 수용을 통해 소년의 비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면접참여자들은 아무런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미성년자에 대한 미결구금

의 최소화를 국제기준에서 권고(국가인권위원회, 2021)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실무적으로 소년에 대한 일시적인 보호의 목적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재판에서 임시위탁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수갑을 채워 이송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 고유의 기능을 고려하여 단순 수용 기간을 줄이고 분류심사관의 수를 확충하여 신속하고 심도 있는 분류심사를 위해 심사관이 청소년을 여러 차례 면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자신이 현재 왜 분류심사원에 있으며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이해와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를 이해하고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소년보호처분 민간 감호위탁 시설의 확대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소년보호처분 1호와 6호를 위탁하는 시설은 기본적으로 6개월간 소년에 대한 처분을 위탁하여 집행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소규모 시설인 1호 시설과 6호 시설에서의 경험이 긍정적이었으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정서적 지지와 개별적인 돌봄이 가능했고 여행, 캠프 등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경험한 6개월은 몸에 밴 생활 습관을 바꾸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아이들이 시설을 나와 돌아간 세상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유혹과 비행 친구들의 영향력은 강했다. 연구참여자들이 긍정적 경험을 했던 시설을 나오자마자 다시 친구들을 만나 비행을 저지른 사실을 고려한다면, 1호와 6호 시설에서의 보호와 교육이 보다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소년보호 현장에서는 처분이 종료되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시설에 계속 거주하면서 보호를 받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춘 시설이 있으며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를 제도화하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시설에 머물며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자립을 준비하여 사회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소년원의 학교화와 소규모화

면접참여자들은 소년원이 비행 친구 및 유해환경과 차단되어 자격증을 따거나 학업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간과 공간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출원 후에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고 비행 친구들과의 연합 또한 자기 자신의 의지만으로 끊어내기 어렵다면서 소년원 내에서 졸업장과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소년원이 학교교육을 개설하고 교육과정의 학력 인정이 가능하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수용 기간을 늘려 재원 중에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고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1호와 6호 시설의 장점을 소년원에도 반영하여 소규모화를 시도하고 소년원 내에서 다양한 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소년전문법원 설립

소년부 재판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촉박한 재판시간, 설명 없는 소년분류심사원 입원, 보호력이 부족한 가정의 청소년에게 효과 없는 보호관찰 처분의 남발, 지나치게 과하거나 약한 처벌 등이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아동사법제도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4호’를 통해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과제의 하나로 소년법원(아동법원) 설립을 권고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현재 국내 사법제도의 틀 안에서는 소년조사관 수를 늘리고 전문성을 확대하여 법원의 소년보호 집행 감독 기능 강화 및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소년단독판사, 소년합의부, 소년참심법원으로 소년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독일의 제도를 검토하여 소년법원의 국내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박지수 외, 2023).

연구참여자들의 처우이력과 생활사를 교차하여 살펴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단계별로 여러 가지 중재 및 제재가 이루어졌으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휘발성이 강했다. 연구참여자들은 재비행 억제를 위해서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일탈의 시작부터 비행과 처벌, 처분 완료 후 생활지도 등의 사후관리까지 전체를 통합하는 포괄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소년법원의 설치의 장기적으로는 소년사법체계의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는 일이며,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연속성 있고 일관성 있는 개입과 지원을 담보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제5장 청소년 범죄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 1. 프로그램 검토의 필요성
및 방법
- 2. 청소년 범죄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사례
- 3. 요약 및 시사점

1. 프로그램 검토의 필요성 및 방법

이 장에서는 청소년 범죄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 예방 및 개입이란 이미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과 개입을 의미하며,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을 포함하지 않음을 밝힌다.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고 수사기관을 거쳐 법정에 서고 처분을 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들이 비행을 중단하고 더 이상 범죄의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돕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단계마다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소년보호처분 집행에 한정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의 자원 정도에 따라서, 또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이러한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도 한다(박지수 외, 2023). 같은 단계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공유할 장이 없어 ‘각자도생’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지수 외, 2023). 프로그램 운영의 질 전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매뉴얼이 상세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때 매뉴얼은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을 제공하여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잘 개발된 프로그램이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장에까지 제대로 내려가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개발과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소년보호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부분적으로나마 기여하기 위하여 1회의 포럼과 2회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포럼은 민간기관으로서 보호처분 1호와 6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의 신병을 인수하여 생활을 함께하는 청소년 및 아동복지시설과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첫 번째 워크숍은 여성가족부 유관기관으로서 경찰청과

법원의 위탁을 받아 경찰 사랑의 교실과 보호처분 2호 수강명령을 집행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두 번째 워크숍은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보호처분 7, 8, 9, 10호를 받은 소년들을 수용하여 교육하는 소년원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함께 공유할만한 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위해 10회 이상의 현장 방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각종 보고서와 연구논문, 웹사이트 자료 등을 살펴보았다. 포럼과 워크숍에서는 형사사법기관의 처분을 집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자신들이 운영 중인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의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각자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참여자 상호 간에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한 포럼과 워크숍은 현장 실무자들이 현실을 개선하고 지식을 생산 및 공유하는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일종의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부터는 포럼 및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수집하고 선별한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비행과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현장에서 만나는 실무자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에도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청소년 범죄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사례

1) 경찰 단계

경찰 선도프로그램이 전국의 각 경찰청이나 위탁기관마다 운영의 질에 큰 차이가 나지 않으려면 표준안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경찰은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 선도프로그램을 희망동행교실, 사랑의 교실, 마음나눔교실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 이에 더하여 2023년에 범죄유형과 연령별로 구체적인 매뉴얼을 개발한 바 있다.

한편, 각 경찰이 외부의 청소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의 경우, 경찰 조직이 아닌 외부 기관들에게는 선도프로그램의 목적과 참여자인 비행 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도전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랑의 교실에 오는 청소년들이 형사사법 절차상에서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의 이수 및 미이수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이해도가 기관마다 매우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¹⁴⁾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워크숍 자료 중 경찰청에서 제공한 범죄유형·연령별 선도프로그램, 그리고 현장에서 사랑의 교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소년법 특성을 고려한 범죄유형·연령별 선도프로그램

경찰청은 기존 선도프로그램 표준모델을 범죄유형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소년법 특성을 고려한 범죄유형·연령별 선도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는 모든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과 범죄 종류에 따른 차별요인을 추출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공통 비행 예방 프로그램(재범 17시간, 초범 11시간)

모듈	주제	프로그램명	
공통 1 (3시간)	프로그램 구조화 및 관계 형성	공통 1-1	*프로그램 소개 (60분)
		공통 1-2	*친해지기 (40분)
		공통 1-3	*집단 규칙 정하기 (30분)
	동기부여	공통 1-4	*동기 부여하기 (50분)
공통 2 (2시간)	가치탐색	공통 2-1	행복한 삶 (60분)
		공통 2-2	가치경매 (60분)
공통 3 (4시간)	대인관계 및 의사표현	공통 3-1	좋은 가족 구성원 되기 (60분)
		공통 3-2	좋은 관계 유지하기 (60분)
		공통 3-3	*나쁜 관계 멀어지기 (60분)
		공통 3-4	*거절하기 (60분)
공통 4 (4시간)	자기통제력 향상	공통 4-1	*감정 인식하고 조절하기 (60분)
		공통 4-2	*생각 바꾸기 (30분)
		공통 4-3	스트레스 관리하기 (60분)
		공통 4-4	문제 해결하기 (60분)

14)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법원과 경찰청이 각각 수감명령과 사랑의 교실 집행 또는 운영을 위탁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전국에 240개소가 있다.

모듈	주제	프로그램명	
		공통 4-5	*중독 조절하기 (30분)
공통 5 (4시간)	자존감 향상하기	공통 5-1	*자존감 향상하기 (60분)
	재범방지하기	공통 5-2	*재범방지 계획하기 (45분)
		공통 5-3	*미래 계획하기 (45분)
	격려 및 마무리	공통 5-4	*인사 및 격려하기 (90분)

* 출처: 경찰청, 경기대학교(2023). 소년법 특성을 고려한 범죄유형·연령별 선도프로그램 개발 연구 프로그램 매뉴얼. 2023년도 경찰청 연구용역 보고서(경찰청 내부자료). pp.12-13.

* 주: 초범은 *표시된 차시만으로 구성하여 총 11시간 교육

그림 V-1. 경찰청 선도프로그램: 공통 비행

○ 중독범죄 예방 프로그램(6시간)

모듈	주제	프로그램명	
중독 1 (2시간)	법의 필요성	중독 1-1	법의 필요성 (30분)
	비행의 영향	중독 1-2	나의 사건 돌아보기 (30분)
		중독 1-3	중독범죄의 영향 (60분)
중독 2 (2시간)	중독 이해하기	중독 2-1	중독의 개념 및 위험성 (60분)
		중독 2-2	중독 관련 법률 (60분)
중독 3 (2시간)	중독 원인 파악하기	중독 3-1	중독 원인 찾기 (60분)
		중독 3-2	위험신호 알아차리기 (60분)

* 출처: 경찰청, 경기대학교(2023). 소년법 특성을 고려한 범죄유형·연령별 선도프로그램 개발 연구 프로그램 매뉴얼. 2023년도 경찰청 연구용역 보고서(경찰청 내부자료). p.14.

그림 V-2. 경찰청 선도프로그램: 중독범죄

○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8시간)

모듈	주제	프로그램명	
성 1 (2시간)	법의 필요성	성 1-1	법의 필요성 (30분)
	비행의 영향	성 1-2	나의 사건 돌아보기 (30분)
		성 1-3	성범죄의 영향 (60분)
성 2 (4시간)	성폭력 이해하기	성 2-1	성폭력의 개념 및 관련 법률 (60분)
		성 2-2	동의 및 성적자기결정권 이해하기 (60분)
	성인지 감수성 키우기	성 2-3	성인지 감수성 키우기 (60분)
	피해자 공감하기	성 2-4	피해자 공감하기 (60분)
성 3 (2시간)	성범죄 원인 파악하기	성 3-1	성범죄 원인 찾기 (60분)
	재범방지하기	성 3-2	사건 경로 분석하기 (60분)

* 출처: 경찰청, 경기대학교(2023). 소년범 특성을 고려한 범죄유형-연령별 선도프로그램 개발 연구 프로그램 매뉴얼. 2023년도 경찰청 연구용역 보고서(경찰청 내부자료). p.15.

그림 V-3. 경찰청 선도프로그램: 성범죄

○ 상습절도 예방 프로그램(6시간)

모듈	주제	프로그램명	
절도 1 (2시간)	법의 필요성	절도 1-1	법의 필요성 (30분)
	비행의 영향	절도 1-2	나의 사건 돌아보기 (30분)
		절도 1-3	절도범죄의 영향 (60분)
절도 2 (2시간)	절도 이해하기	절도 2-1	절도범죄 이해하기 (60분)
		절도 2-2	절도원인 탐색하기 (60분)
절도 3 (2시간)	경제관념 깨우기	절도 3-1	합리적인 소비하기 (60분)
		절도 3-2	합법적인 소득 얻기 (60분)

* 출처: 경찰청, 경기대학교(2023). 소년범 특성을 고려한 범죄유형-연령별 선도프로그램 개발 연구 프로그램 매뉴얼. 2023년도 경찰청 연구용역 보고서(경찰청 내부자료). p.16.

그림 V-4. 경찰청 선도프로그램: 상습절도

○ 촉법소년 비행 예방 프로그램(12시간)

모듈	주제	세부활동
촉법 1 (2시간)	프로그램 구조화 및 관계 형성	1. 프로그램 구조화 (10분) 2. 사전검사 실시 (40분) 3. 별칭 정하기 (10분) 4. 자기소개하기 (15분) 5. 서로를 알아가기 (15분) 6. 집단 규칙 정하기 (20분) 7. 서약서 작성하기 (10분)
촉법 2 (2시간)	변화 동기 부여	1. 나의 사건 돌아보고 부정적인 감정 나누기 (30분) 2. 비행의 영향 (30분) 3. 비행의 장·단점 비교하기 (30분) 4. 변화 동기 부여하기 (30분)
촉법 3 (2시간)	법 이해하기	1. 법의 필요성 (30분) 2. 내 사건 관련 법 이해하기 (30분) 3. 법 OX 퀴즈 (60분)
촉법 4 (2시간)	대인관계 및 의사표현	1. 관계도 그리기 (20분) 2. 좋은 관계 이해하기 (20분) 3. 나의 자원 찾기 (20분) 4.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대화법 (10분) 5. 나쁜 영향을 주는 친구 인식하기 (15분) 6. 나쁜 친구와 멀어지는 방법 탐색 (15분) 7. 거절 연습하기 (20분)
촉법 5 (2시간)	자기통제력 향상	1. 감정 인식하기 (20분) 2. 해로운 대처 인식하기 (20분) 3. 정서 조절하기 (20분) 4. 문제 해결 방식 살펴보기 (20분) 5. 나의 문제 해결하기 (20분) 6. 멈추고 생각하기 (20분)
촉법 6 (2시간)	재범방지하기	1. 다짐 카드 만들기 (20분) 2. 미래 계획 세우기 (30분) 3. 격려하기 (15분) 4. 사후검사 실시 (40분) 5. 소감 나누기 (15분)

* 출처: 경찰청, 경기대학교(2023). 소년법 특성을 고려한 범죄유형·연령별 선도프로그램 개발 연구 프로그램 매뉴얼. 2023년도 경찰청 연구용역 보고서(경찰청 내부자료). p.17.

그림 V-5. 경찰청 선도프로그램: 촉법소년 비행

(2) 사랑의 교실 위탁운영 기관 사례: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경기지방경찰청 의뢰로 사랑의 교실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수원남부경찰서의 의뢰로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위탁기관들이 연계 청소년의 수가 적어 효율적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3년 기준 115명의 비행소년에 대해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운영한 워크숍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기관의 사랑의 교실 운영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V-1.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랑의 교실 운영 개요

구분	내용																					
전략 및 강점	• 근거에 기반한 프로그램 구성 - 참여자의 주호소문제* 파악에 기초한 프로그램 구성 *억울함, 처벌에 대한 불안, 정서조절 어려움, 진로적응 어려움, 성격 및 가치관 문제 - 선행연구에 기반한 프로그램 구성 • 참여자의 출석을 제고 노력 - 참가 안내 전화부터 전략적 개입: 처벌보다 유익함 강조, 참여동기 고취 - 출결관리: 4번 알림 서비스(청소년, 부모) - 운영시간: 청소년 참여가 쉬운 저녁시간에 실시 • 청소년의 참여와 흥미를 끌 수 있는 운영방식 - 강의식 교육이 아닌 집단상담 - 미술치료, 드라마 치료, 동영상 자료 등을 다양하게 활용 • 만족도 조사 등 피드백을 통한 운영 개선 노력 - 프로그램 만족도, 도움받은 영역, 후기 작성 등 • 경찰서와 신뢰 및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안전망 강화																					
운영내용	• 집단상담 10시간(3일에 나누어 실시) • 프로그램 구성 <table><tr><th>구분</th><th>회기</th><th>주제</th><th>세부내용</th></tr><tr><td rowspan="3">1일차</td><td>1</td><td>소개시간</td><td>• 규칙 정하기, 서로 알아보기</td></tr><tr><td>2</td><td>폭력의 올바른 이해, 법 교육</td><td>• 폭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 폭력의 결과, 파급효과, 처벌 이해하기 • 법관련 Q&A, 청소년 비행사례 토의하기</td></tr><tr><td>3</td><td>분노조절</td><td>• 나의 분노패턴 발견하기 • 부정적인 감정 다루는 방법 익히기</td></tr><tr><td rowspan="2">2일차</td><td>4</td><td>공감능력 타인이해</td><td>• 다양한 관점으로 상대방 이해하기 • 상대방 감정 느껴보기(역지사지, 역할극)</td></tr><tr><td>5-6</td><td>문제해결력 향상</td><td>• 나의 갈등대처 유형 알아보기 • 평화롭고 지혜로운 문제해결방법 연습하기</td></tr></table>	구분	회기	주제	세부내용	1일차	1	소개시간	• 규칙 정하기, 서로 알아보기	2	폭력의 올바른 이해, 법 교육	• 폭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 폭력의 결과, 파급효과, 처벌 이해하기 • 법관련 Q&A, 청소년 비행사례 토의하기	3	분노조절	• 나의 분노패턴 발견하기 • 부정적인 감정 다루는 방법 익히기	2일차	4	공감능력 타인이해	• 다양한 관점으로 상대방 이해하기 • 상대방 감정 느껴보기(역지사지, 역할극)	5-6	문제해결력 향상	• 나의 갈등대처 유형 알아보기 • 평화롭고 지혜로운 문제해결방법 연습하기
구분	회기	주제	세부내용																			
1일차	1	소개시간	• 규칙 정하기, 서로 알아보기																			
	2	폭력의 올바른 이해, 법 교육	• 폭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 폭력의 결과, 파급효과, 처벌 이해하기 • 법관련 Q&A, 청소년 비행사례 토의하기																			
	3	분노조절	• 나의 분노패턴 발견하기 • 부정적인 감정 다루는 방법 익히기																			
2일차	4	공감능력 타인이해	• 다양한 관점으로 상대방 이해하기 • 상대방 감정 느껴보기(역지사지, 역할극)																			
	5-6	문제해결력 향상	• 나의 갈등대처 유형 알아보기 • 평화롭고 지혜로운 문제해결방법 연습하기																			

구분	내용			
3일차	7	의사소통 훈련	• 공감과 긍정적 의사표현 익히기 • 나 전달법 연습하기	
	8	긍정적 자아상 형성	• 프로그램을 통해 달라진 내 모습 찾기 • 긍정적인 자기상 형성하기(강점 찾기)	
	9-10	진로탐색	• 나의 흥미, 능력 알아보기 • 나의 흥미, 능력, 강점과 진로 연결하기 • 미래모습 그려보고 진로 설계하기	

2) 검찰 단계: 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는 그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다. 전국의 각 검찰청 및 지청이 개별적으로 위탁하며, 지역사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기타 조건부 기소유예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멘토링 조건부 기소유예로 청소년희망재단에 위탁하는 파랑마니또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내용은 기관 방문을 통해 얻은 자료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집한 멘토의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1) 멘토링 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희망재단 파랑마니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2년부터 멘토링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청소년희망재단에 위탁하고 있다. 청소년희망재단은 법무부 등록법인이자 법무부 법무화 진흥센터로 지정된 공익법인으로 멘토링 조건부 기소유예뿐만 아니라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소년희망재단이 멘토링 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파랑마니또를 운영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소유예소년을 청소년희망재단에 의뢰한다. 의뢰 시, 검찰은 기소유예소년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선도조건부 상담·멘토링 위탁카드, 동의서, 책임인수서 각 1부를 재단 팩스로 발송한다. 청소년희망재단은 날인한 책임인수서를 다시 검사실로 팩스 발송한다. 이후에 재단은 기소유예소년에게 멘토링 일정을 안내하고 멘토링 결연식을 진행하며, 결연식 이후에 멘토와 멘티(기소유예 소년)는 한 달에 한 번 멘토링 활동을 하고 멘토는 재단에 활동 결과를 보고한다. 멘토링 활동이 종결되면 재단은 검찰청 사건과로 결과보고서를 발송한다. 멘토는 직장인이나 관련학과 대학생들이며, 2024년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청소년 희망재단 이

사장 공동명의로 63명의 파랑마니또 멘토가 위촉되었다.

○ 멘토 교육

검찰에서 범죄경력조화를 거친 멘토는 멘토링 활동을 위한 사전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 내용은 파랑마니또 활동 전반에 관한 안내, 멘토로서의 책임, 청소년 문제행동의 동향과 원인, 멘토-멘티 관계 형성 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멘토링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멘티에 대한 전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멘토의 경우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한다. 멘토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위촉장이 수여되며, 멘토 위촉식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루어진다.

○ 결연캠프

멘토와 멘티의 매칭은 주거지, 취미, 성향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파랑마니또는 멘토-멘티의 친밀감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결연캠프로 멘토링 활동을 시작하도록 한다. 코로나 이전에는 주말을 활용하여 6시간에 걸쳐 결연캠프를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소수 또는 개별로 2시간 30분 이상 결연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 멘토링 활동

멘토링 활동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1년까지 가능하다. 멘토링은 월 1회를 기본으로 하며 전화, 문자, SNS 등 일상생활 관리, 여가 및 취미생활 함께하기, 학습지원, 상담 등 멘토의 특성과 멘티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멘토들은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청소년희망재단은 이를 통해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지속한다.

3) 법원 단계: 처분 전 조사

법원의 처분 전 조사는 보통 「소년법」 제11조(조사명령)와 제12조(전문가의 진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게 된다. 조사는 기본적으로 소년과 보호자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상담조사 등을 통해 조사 자체로 소년이 변화하도록 이끌고 조사관이 이 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상담조사는 소년을 3~5일간 센터로 출석하게 하여 전문가가 비행 원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법원행정처, 2014).

(1) 상담조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¹⁵⁾

○ 상담조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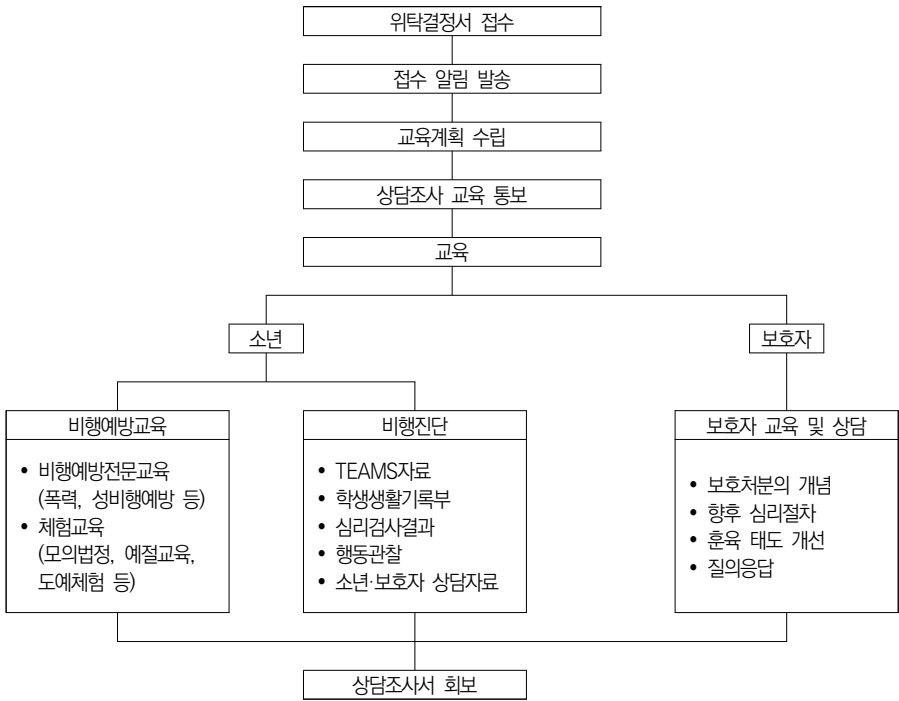


그림 V-6.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 절차

15) 해당 내용은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내부자료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상담조사 접수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부 ○○청소년꿈키움센터입니다. ○○가정법원에서 귀하 자녀의 상담조사가 의뢰되었습니다. 기한은 2024.9.14.~12.13.이고 교육 진행 안내는 교육일정 확정 시 문자와 우편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상담조사는 전문지식이나 관련 자격을 갖춘 직원이 담당하며, 공정하고 청렴하게 임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000-000-0000로 연락바랍니다. [상담조사 교육 통보] 안녕하세요? 법무부 ○○청소년꿈키움센터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조사교육이 11월 5일(화)~7일(목), 3일 동안 실시됩니다. * 수업시간(09:20~15:30) * 준비물(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학교생활기록부)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첫날은 학부모 면담이 있고 소년이 교육 불참 시 법원에 통보됩니다. * 교육 첫날부터 벌점이 부과되므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단정한 복장(운동화 착용, 담배 및 라이터 소지 시 벌점 후 폐기, 색조 화장 금지) * 센터 주소: ○○시 ○○구 xxx * 셔틀버스 운행시간: 9시 00분 ○○역 1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정류장 번호 ○○-○○○) * ○○청소년꿈키움센터는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임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도착할 우편물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000-000-0000로 연락 바랍니다.
--

그림 V-7.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 접수 알림 발송 및 교육 통보 예시

○ 상담조사 교육 내용

	화(11.5.)	수(11.6.)	목(11.7.)
09:20~10:00	소년법의 이해 (상담조사관)	성비행예방 (외부강사)	안녕 폭력 안녕 공감 (상담조사관)
10:10~10:50	진단자료 작성 (상담조사관)		
11:00~11:40	심리검사 (상담조사관)	생명존중 (외부강사)	절도예방 (상담조사관)
11:50~12:30			
12:30~13:00	점심시간		
13:00~13:40	인권교육 (외부강사)	미술로 보는 나의 심리 (외부강사)	심리검사 해석 (외부강사)
13:50~14:30			
14:40~15:20	법무직업체험 (지원과장)	피해자 공감 모의법정 (교육과장)	소감문 작성 및 수료식

그림 V-8.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담조사 시간표 예시

○ 행동관찰 일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원에 회보할 상담조사서에 교육 및 조사 기간에 작성한 행동관찰 일지를 첨부한다. 이를 통해 성실하게 상담조사에 임한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법원에 알리고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출결 및 복장: 3일간 정시 출석, 단정한 복장
- 보호자 교육 참석 여부: 보호자 참석
- 행동관찰
 - 1일차: 가장 적극적인 모습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자발적으로 수업 역할에 참여해 강사의 칭찬을 받았음
 - 2일차: 수업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손을 들어 질문하는 등 수업에 적극성을 보이며 교사에게 예의바른 태도로 수업에 참여함
 - 3일차: 성실하게 수업을 듣고자 하지만, 수업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활동지 작성 등을 하지 못함
- 총평: 교육에 긴장하여 첫날은 경직되었으나 적응한 이후 교사의 지도에 순응하며 타 교육생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함
- 소감문: 교육을 받으며 잘못된 점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함

그림 V-9. 행동관찰 교육태도 작성 예시

4) 보호처분 단계: 수강명령

소년보호처분 2호 수강명령은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년에게 소규모 집단상담이나 개인상담이 필요할 때는 상담 기관에서 상담교육을 받도록 법원이 수강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수강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앞서 경찰단계 프로그램에 대한 서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법원의 수강명령을 위탁집행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이다. 보호관찰소의 보호직 공무원과 달리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외부 상담기관의 상담사들은 소년사법절차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따라서 2호 처분을 받아서 위탁된 보호소년들이 형사사법절차상 어떤 위치에 있는지, 수강명령의 미이수로 인한 보호처분 변경 신청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 또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앞서 경찰단계에서 언급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대상 온라인 워크숍에서는 법원의 수강명령 위탁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도 함께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워크숍 자료 중 부산가정법원의 수강명령 처분을 위탁집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수강명령 위탁집행 기관 사례: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표 V-2.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강명령 위탁집행 개요

구분	내용				
절차	- 수강명령의 대상: 보호처분 등 필요성이 인정된 소년 중 2호 처분을 받은 자로 소규모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이 필요한 경우 - 접수 및 집행: 법원 처분 결정문 우편 접수 후 상담사 배정 및 대기 - 개인상담 실시: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개인상담만을 실시하며 주 1회 개인상담을 최소 10회기 이상 실시함 - 부모상담 실시: 법원이 보호자특별교육을 명령하고 위탁할 경우 부모 대상 상담도 실시 - 상담종결 및 행정: 집행상황보고서 작성 및 발송				
운영내용	- 수강명령 20시간 집행의 예: 개인상담 주 1회 2시간 진행 - 프로그램 구성				
	단계	회기	목표	내용	세부내용
	초기	1~4	- 상담관계 형성 - 문제 명료화 - 사례 개념화	- 상담구조화 (회기, 시간, 장소 등) - 라포 형성 - 범죄원인 규명 및 명료화(가족, 학교, 사회) - 재범방지 및 개인목표 설정	- 초기면접, 위기스크리닝 (개인, 가족, 학교, 사회) - 범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처리절차, 가중처벌에 대한 안내 - 재범방지 및 개인목표설정 (진로, 자립, 기타 등)
	중기	5~17	부적응적 습관적 패턴의 인지 정서 행동 수정 및 개선 경험 촉진	- 긍정 정화 경험 촉진 - 긍정 행동 경험 촉진 - 타인과의 이해 경험 촉진 - 인지 정서 행동의 대안 설정 경험 촉진	- 자신 및 타인의 감정에 대한 명확한 인식 및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증진 - 자신의 정확한 감정 및 행동 표현 - 왜곡된 신념의 인지, 정서, 행동의 교정 -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기술 습득 - 자신의 결림돌 찾아보기, 자신을 이해하기 - 나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 설계 및 실행, 점검 후 재실행
	말기	18~20	- 종결관계 마무리 - 목표달성 여부 - 미해결과제에 대한 조치 - 상담 후 조치	- 종결 논의 (종결시점, 감정 처리) - 상담평가 (상담결과 측정 및 성취판단) - 상담 마무리 및 조치	- 상담평가: 목표 여부 점검 - 미해결된 과제에 대한 조치 - 상담 마무리

5) 보호처분 단계: 민간시설 감호위탁

소년보호처분 1호를 받은 청소년들을 감호위탁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6호를 받은 청소년들을 감호위탁하는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은 청소년들과 숙식을 같이 하며 생활지도와 교육을 제공한다. 6호 처분 감호위탁 시설의 대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인 아동보호치료시설로 그 역사가 상당하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8개 시설이 함께 모여 소년보호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매우 적고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보호소년 관련 전문성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박지수 외, 2023). 청소년복지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중심으로 연 1회 이상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5개 과정 이상의 원격 연수 이수를 권고하고 있다. 2016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역사가 길지 않고 설립 지역에 편중이 크기도 하여 지역마다 법원과 기관의 관계 형성이 상이한 측면이 있다(박지수 외, 2023).

본 연구는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감호위탁하는 민간시설들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소년보호실무연구회의 주축이 되는 수원가정법원이 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법원과 민간시설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특히, 최근에 소년범 중 정신질환을 가진 청소년의 증가와 더불어 이슈가 되고 있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주제로 하여 생활지도가 어려운 보호소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각 시설의 실무요령과 프로그램을 공유하였다. 포럼 자료를 바탕으로 1호 처분 소년 감호위탁시설인 광주광역시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동지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사례, 6호 처분 소년 감호위탁시설인 나사로 청소년의 집과 세상을 품은 아이들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광주광역시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 부모 전문 상담 치료와 가정 복귀

광주광역시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전국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중 유일하게 지방정부인 광주광역시가 설치한 시설이며 한국 천주교 살레시오회가 위탁운영 하고 있다. 해당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특징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부모 전문 심리 상담 치료를 꼽을 수 있다. 기관이 청소년들에게 사법형 그룹홈을 6개월간 제공하지만 처분이 종료되면 청소년들은 결국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은 가정의 보호력 제고를 위해 전문 심리상담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부모 대상 상담을 시작하였다.

부모교육에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는 보호자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2022년부터는 법원의 보호자특별교육 명령을 집행하는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남자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이 직접 전문 심리 상담사에게 비용을 지불하여 시설 거주 보호소년의 부모들에게 양질의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보호소년이 입소한 직후에 부모들은 대부분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입소 두 달 후부터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가계도 그리기 등을 통해 부모의 상태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됨을 확인시키고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상담 치료 회기를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담 치료를 통해 마음이 조금씩 회복된 부모들은 시설에 대한 신뢰감이 함께 높아져 협조적인 태도로 변화하게 된다. 보호소년이 퇴소할 시기가 다가오면 부부 단위로 이루어지던 부모상담을 가족상담으로 전환하여 보호소년의 가정 복귀를 준비한다.

(2) 동지청소년회복지원시설: 경계를 넘나들며 함께 살아가기

동지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일반 주택에서 시설장과 그의 배우자가 1호 처분을 받은 여자 보호소년들과 주거를 함께하는 대안 가정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소년원 상황과 유사하게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역시 여자 보호소년을 위탁하는 곳은 정신건강 문제로 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남자 시설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병원 진료를 데리고 다니고 생활지도를 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동지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전국청소년회복센터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이며, 사단법인 만사소년으로부터 여러 가지 후원을 받고 있다. 사단법인 만사소년은 국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뿐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아 1호 처분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청소년회복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동지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사단법인 만사소년을 비롯하여 여러 기관과 개인의 후원을 통해 보호소년들에게 학습지도, 진로 및 직업교육, 문화체험, 국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아동보호치료시설 나사로 청소년의 집: 학습, 또 하나의 치유와 성장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6호 처분을 받은 여자 청소년들을 감호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이다.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수용된 아이들을 돌보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아이들의

일과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검정고시 지도이다. 6호 처분은 시설 내에 수용을 명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보호소년들의 출입이 통제되고 학교에 다닐 수 없다. 소년원과 마찬가지로 보호소년들이 시설에 머무르는 동안 출석 일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과 교육을 제공하고, 원적 학교가 없는 청소년들도 검정고시를 준비한다.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학교에서 학습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 좌절을 경험하고 학교에 부적응한 경험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보호소년들에게 학습에서의 성취를 제공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학습의 과정을 통해 단순히 성적이 아닌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에서 설명하며 성취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 나사로 청소년의 집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 수업 과정을 포함한 생활시간표를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표 V-3. 나사로 청소년의 집 검정고시 수업 개요

구분	내용							
검정고시 준비 계획	2024년도 1회 검정고시 준비 과정 1/2 ~ 3/16: 과목별 진도 3/18 ~ 3/28: 기출문제 풀이 3/18 ~ 4/5: 집중지도(오답노트 정리) 4/6: 검정고시 응시							
주간 시간표	단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0:00 ~ 10:50	피아노 고검수학 대검사회 스마일영어 신입교육	고검국어 대검한국사 스마일수학	고검과학 대검국어 스마일국어	고검영어 대검수학 스마일국어	피아노 고검수학 대검과학 스마일수학	역할 외	
	11:00 ~ 11:50	피아노 고검영어 대검영어 스마일상식 신입교육	고검도덕 대검영어 스마일한국사	고검사회 대검도덕 스마일영어	고검국어 대검국어 스마일사회	피아노 고검사회 대검수학 스마일과학		예배/독서
	12:00 ~ 12:50	점심시간						
	13:00 ~ 13:45	애견 피아노 어반스캐치 워십	매주: 사례회의 2주: 금연교육 3주: 여전도회 4주: 금연교육	정신건강 자립	1주: 반미팅 2주: 대청소 3주: 반미팅 4주: 담임회의 /아동자치회의 + 반미팅 5주: 대청소	CJ 음악교실 동아리 (도서, 봉사, Q.T., 오목, 영화)	자율학습 밴드 댄스 TV 시청 노래방 성경공부	애견미용
	13:45 ~ 14:30	캘리그래피 자격증 미술놀이 꽃차						TV 시청 자유시간

구분	내용							
	14:30 ~ 15:00	간식						
	15:00 ~ 16:00	컴퓨터활용 텃밭가꾸기 나사로엔터	컴퓨터 활용 텃밭가꾸기 요가 홀트 줌바	애견 피아노 어반스케치 워십 캘리그래피 자격증 도예 꽃차	쓰일소재 (환경교육) 힐링캠프	합창	요가 홀트 줌바	
	16:00 ~ 16:30							
	16:30 ~ 17:30							
* 고검은 고등학교 입학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으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의미하고, 대검은 대학교 입학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으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의미함. 스마일은 기초학습증진 수업을 의미함. **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따라 셀 안에 있는 수업(활동) 중 하나에 참석함								

(4) 소년보호시설 세상을품은아이들: 똑똑(knock knock)수업

사단법인 세상을품은아이들(이하 세품아)은 소년보호시설로서 6호 처분을 받은 남자 청소년들을 위탁하여 감호하고 있다. 세품아는 청소년들이 처분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룹홈과 자립홈을 마련해 두고 단계별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한다. 6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생활관에서 지내는 6개월 동안 수료하게 되는 특화프로그램 중 하나로는 똑똑수업이 있다. 세품아는 보호처분을 받아 위탁된 아이들이 소통에 서투르고 단답형으로 대답한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들의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해 똑똑수업을 만들었다. 보호소년들이 자주 경험하는 상황들로 구성된 교재를 만들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생각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된 똑똑수업은 아이들의 ‘닫힌 마음’과 ‘다친 마음’을 열고 회복하기 위해 문을 두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품아에 위탁된 청소년들의 교육과정과 주간시간표 및 똑똑수업 교재의 목차를 정리하여 다음 표와 그림에 제시하였다.

표 V-4. 세상물품은아이들 생활관 운영 개요

구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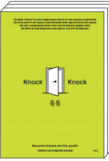
과정

신입 적응 과정 (1주)	생활관 프로그램 (22주)		마무리 프로그램 (3주)	
[INTRO] - 입소절차 - 생활관 규칙 숙지 [BASIC] - 교육 OT: 공간 사용 규칙, 필수/선택/선택 프로그램 소개, 교사 소개 - 검사: YSR, 문장완성검사 - 자기 소개: 자서전 작성 / 가족 인물 그림 그리기 / 나와 가족의 관계에 대한 글 작성 - 생각펼치기: 독서/영화 - 조작활동: 퍼즐 맞추기, 비즈 그림 완성하기 [OUTRO] - 마무리 테스트 6개월 후 나에게 보내는 영상편지	[BASIC] 1:1 상담 (1인 1시간/주) - 조례/종례: 스케줄 - 일기	[TRACK1(필수)] - 똑똑수업 - 돈과진로수업 - 몸 수업 - 음악 수업 - 금연지원상담 [TRACK2(선택)] - 기초연산 - 영단어/파닉스 - 독서모임 - 개별공부 - 검정고시공부	[퇴소 준비 과정(필수/선택)] - 퇴소상담 '세동이의 6개월' 제작 - 퇴소식	[그룹품 이전 준비 과정(필수/선택)] SCT(Second Chance Table)

주간
시간표

단계	월	화	수	목	금
9시	조례 정비	조례 정비	조례 정비	조례 한국사	조례 축구 수업
10시	음악 레슨	똑똑 수업	똑똑 수업	한국사	축구 수업
11시	일대일 미팅	똑똑 수업	똑똑 수업		
12시	점심시간				
13시		기초연산	기초연산		
14시		기초연산		금연지원상담	그룹피티
15시	검정고시 공부		독서모임		일대일 미팅
16시		몸 수업	독서모임 영어 파닉스	몸 수업	
17시	팀운동	몸 수업		몸 수업	

* 출처: Brian Impact 홈페이지. 2022 세상물품은아이들 임팩트 리포트. <https://brianimpact.org/organizer/555> 에서 2024년 10월 9일 인출.

1권 	1장 새로운 출발 • 임소 첫 날 • 새로운 습관 • 의지만으로 안돼 • 내가 하면 장난이고 내가 하면 폭력이야 • 이게 사과야 • 여기 애들한테 관심 없어요 • 왜 그럴까 • 호구데이 • 참는다 나를 위해	2장 모든 감정엔 이유가 있다 • 나도 노력하느라 죽을 뻔 했어야 • 존중의 언어 • 나의 아버지 • 나의 어머니 • 모든 감정과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 이간질 #1 • 이간질 #2 • 이간질 #3	3장 발목 잡는 과거 • 지랄 가요 vs. 보살 가요 • 종재의 정식 • 집으로 돌아간 둘째 날 • 발목 잡는 과거 #1 • 발목 잡는 과거 #2 • 집으로 돌아간 첫 날 • 악한 것 vs. 악한 것 •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지
2권 	1장 감정은 사실과 다릅니다 • '핑계천재'가 '공감천재'를 만날 때 • 질문은 타이레놀이다 • 그럴만한 이유 • 상처와 거짓말 • 여긴 지긋지긋해 • 예외는 없다 • '아차'의 순간 • 성공과 실패 • 내면의 속삭임 • 엄마도 두 번 실패하기 싫어	2장 힘들다는 건 산을 넘고 있다는 겁니다 • 열심히 하면 만나게 되는 갈딱 고개들 #1 • 열심히 하면 만나게 되는 갈딱 고개들 #2 • 66 챌린지 • 민호의 챌린지 #1 • 민호의 챌린지 #2 • 하진이의 속마음 • 하진이는 성장중 #1 • 하진이는 성장중 #2	3장 변화는 기분이 아닙니다 • 형이 형다워야 형대점을 받아요 • 형을 형답게 만들어주는 동생 • 편지 한 통 • 변화는 기분이 아니야 • 이해할 수 없는 아이 #1 • 이해할 수 없는 아이 #2 • 대화의 기술 #1 • 대화의 기술 #2

* 출처: 김지영, 박세미, 이성진, 임수미, 최승호(2021). 똑똑 Knock Knock: 거북이보다 느린 친구들을 위한 관계나침반. 경기: 사단법인 세상을품은아이들.
 김지영, 서경민, 임수미, 최승호(2022). 똑똑 no.2 Knock Knock: 거북이보다 느린 친구들을 위한 관계나침반. 경기: 사단법인 세상을품은아이들.

그림 V-10. 똑똑수업 교재 목차

6) 보호처분 단계: 소년원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도움은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원학교장이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는 2022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중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년원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보장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2023년 11월에는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에 보호소년 학업지원 강화 과제와 더불어 꿈이음 사업 등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과 진로설계 지원 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법률상 각급학교인 소년원에 재원하며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등을 받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소년에 대하여 교육부가 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소년원생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개별 교육청과 소년원 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직업소년원인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다른 직업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출석 인정이 불가하여 자퇴 후 검정고시에 응시하거나 거주지와 멀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는 교과소년원 수용을 선택해야 했었다. 그런데 2022년 10월에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 발표되자 이를 근거로 부산소년원장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의 협업 기회를 모색하였고, 2023년 2월에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부산소년원을 방문하여 시설을 참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에 이른다. 보호소년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한 소년원과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업의 결과로 부산소년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요건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였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부산소년원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에 학적이 있는 부산소년원 재원생도 수업일수를 인정받아 원적교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1호 처분 시설이나 6호 처분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제공되었던 기회이지만 직업소년원으로는 부산소년원이 전국에서 최초로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승인된 사례이다.

소년원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소년원과 교육청의 협업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본 연구는 전국 소년원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실무상으로 부산소년원에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만 수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려면 소년원 소재지 외에 타 시·도교육청과도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아래에 해당 워크숍 자료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보호소년에 대한 교육청의 교육지원의 예를 제공하고자 한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부산소년원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서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부터 실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한 내용을 아래 표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V-5.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부산소년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 및 학적 회복 지원 개요

구분	내용																								
추진배경	-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 재원생의 학업 유지 기회 제공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예방 및 교정교육의 효과 제고 -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보호소년의 지역 기반 학령기 맞춤형 진로 지원 강화																								
근거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의 위탁)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교육과정)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운영 및 학력인정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과정 운영	(운영형태)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운영 (대상) 부산지역 10호 소년원생 중·고등학교 진학 또는 학적 회복 의지가 있거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소년 (교사·학보) 공통과목 중 국어·한국사 교육청 강사 파견, 이외 교과목 소년원 학교 교사 활용 (출원 후 학업 연계) 원적학교 복귀, 위탁교육기관 또는 각종학교 위탁과정 연계 (학적 회복) 오륜학교에서 학적회복 대상자 명단 작성 후 교육청 송부 ※ 2024학년도 1학기부터 고교진학 희망자 거주지 인근 고교 배정 가능 (생활기록부 기재 안내)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해당 학교 대상 공문 시행 ※ 2024학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반영 • (학기제) 1년 2학기제 <table><tr><th>학기</th><th>기간</th><th>비고</th></tr><tr><td>1학기</td><td>1월 2주 ~ 6월 3주</td><td>24주</td></tr><tr><td>2학기</td><td>7월 2주 ~ 12월 3주</td><td>24주</td></tr></table> ※ 7월 말 ~ 8월 초 중 10일 동안 학기 중 방학 실시 ※ 1학기 3월 2주, 2학기 7월 2주까지 원적교 학적 협의 가능 • (수업시수) 주별 총 35학점 <table><tr><th>구분</th><th>주별 시수</th><th>학기별 시수</th></tr><tr><td>전공과목 (직업훈련과정)</td><td>17학점</td><td>408시간</td></tr><tr><td>공통과목 (국·사·사·정보·체 등)</td><td>11학점</td><td>264시간</td></tr><tr><td>자율편성 (봉사/체험/담임시간 등)</td><td>7학점</td><td>168시간</td></tr><tr><td>합계</td><td>35학점</td><td>840시간</td></tr></table>	학기	기간	비고	1학기	1월 2주 ~ 6월 3주	24주	2학기	7월 2주 ~ 12월 3주	24주	구분	주별 시수	학기별 시수	전공과목 (직업훈련과정)	17학점	408시간	공통과목 (국·사·사·정보·체 등)	11학점	264시간	자율편성 (봉사/체험/담임시간 등)	7학점	168시간	합계	35학점	840시간
학기	기간	비고																							
1학기	1월 2주 ~ 6월 3주	24주																							
2학기	7월 2주 ~ 12월 3주	24주																							
구분	주별 시수	학기별 시수																							
전공과목 (직업훈련과정)	17학점	408시간																							
공통과목 (국·사·사·정보·체 등)	11학점	264시간																							
자율편성 (봉사/체험/담임시간 등)	7학점	168시간																							
합계	35학점	840시간																							

구분

내용

• (학점편성) 1학년 공통과목 - 국어, 한국사, 사회, 정보, 체육
2~3학년 공통과목 - 식품위생, 식품과학, 사회, 정보, 체육

1학년		학점	계	2~3학년		학점	계
전공실기	제빵 제과	9 8	17	전공실기	제빵 제과	9 8	17
공통과목	국어	2	11	공통과목	식품위생(실)	2	11
	한국사	2			식품과학(실)	2	
	통합사회(인성교육)	2			통합사회(인성교육)	2	
	정보	3			정보	3	
	체육	2			체육	2	
자율편성	봉사/체험/담임시간 등	7	7	자율편성	봉사/체험/담임시간 등	7	7
합계		35	35	합계		35	35

• (평가방식) 학기별 지필평가 1회, 수행평가 2회

구분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	비고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전공실기	제빵	○	○	○	5단계	○	-	석차등급 산출 안함
	제과	○	○	○	5단계	○	-	
보통교과	국어	○	○	○	5단계	○	○	석차등급 산출
	한국사	○	○	○	5단계	○	○	
	사회	○	○	○	5단계	○	○	
	정보	○	○	○	5단계	○	○	
전문교과 II	식품과학(실)	○	○	○	5단계	○	-	석차등급 산출 안함
	식품위생(실)	○	○	○	5단계	○	-	
보통교과	체육	-	-	-	3단계	-	-	
자율편성	봉사/체험/담임시간 등	창의적 체험활동 기준에 맞춰 기록						
※ 전공 및 공통과목의 경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학생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의의 및
기대 효과

• 전국 최초 직업훈련 소년원의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수업일수 인정

• 소년원 소재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예방

• 지역의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자 접근권 강화 및 선도 효과 제고

교육부
요청 및
부서별
협조 사항

• (교육부) 시범운영 관련 교육부 공문 시행 및 나이스 시스템의 위탁교육 등록 방식 협의 : 대안교육(기타) 또는 직업교육

• (교육정책과) 오륜학교 대상 위탁교육기관(대안 또는 직업위탁) 지정 국어, 한국사 강사 선발(퇴직교원지원센터 협조)

• (중등교육과) 희망 학생 대상 원격교 학적 회복 및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지원 교과서 지원

구분	내용
	• (예산기획과) 오륜학교 수업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기부 기관 발굴/연계 국어, 한국어 강사비 지원 교육기부 연계
업무 추진 경과	• 2023. 2. 부산시교육감 부산소년원 방문, 시설참관 및 협력방안 논의 • 2023. 5. 위탁교육기관 지정 관련 수시 업무협의 부산시교육청 주관 소년원교사 대상 수업-평가-기록일체화 연수 • 2023. 6. 부산광역시 교육감-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업무협약 체결 • 2023. 7. 부산광역시교육청 주관 위탁교육기관 운영 협의회 개최 부산소년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학칙 제정 2023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승인(시범 운영) • 2023. 8. 부산소년원 위탁교육 대상자 자체 선정 • 2023. 9. 위탁교육 대상자 원적교 학적 회복 조치 후 교육과정 운영 • 2023. 12. 원적교 학업성적 및 학교생활기록부 통보 • 2024. 1. 2024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재지정 승인 ※ 시범운영 종료, 제과제방, 헤어디자인, 자동화용접 각 2학급(6학급) 확대 운영 승인 • 2024. 3. 보호소년 1명 원적 학교 졸업
향후 과제	• 위탁교육 대상자 원적교 학적 회복을 요청하여도 학교가 자체 교칙으로 불허하는 상황을 타개할 만한 정책 방안이 필요 • 졸업 전에 소년원을 퇴원하는 경우에 원적교에서 학생을 다시 받아주지 않거나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 • 부산지역 외에 타지역 보호소년들에 대한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도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승인 및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음(2024년 9월 기준으로 부산소년원은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도 지정이 완료되었으며,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음)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부자료, 청소년정책위크숍 '보호소년 학업지원을 위한 교육청-소년원 연계·협력 방안: 부산광역시 교육청-부산소년원 협업사례 공유' 자료집.	

(2)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 검정고시 등 교육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부산소년원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재원생이 원적교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외에도 직업소년원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검정고시반에 퇴직 교원을 강사로 매칭하는 등의 교육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표 V-6.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부산소년원 검정고시 등 교육지원 개요

구분	내용
검정고시 교육 지원	- 기간: 2024. 2. 5. ~ 4. 5. 13:30 ~ 15:00 - 대상: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응시학생 49명(고졸 45, 중졸 4) - 강사: 과목별 퇴직교사 6명(국·영·수·과·사·史) 수업 지원 - 내용: 검정고시 기출문제 풀이 및 이론 교육 - 성과: 2023년 기준 상반기 16/25 합격, 하반기 27/30 합격
명장 특강 지원	3개 직업반(자동화용접, 제과제빵, 헤어디자인)에 명장 특강 제공
교육환경 개선 지원	- 체육기구 지원(탁구대 3대, 배트민턴 지주대 2세트, 미니골대 2개) - 제과제빵반 스마트 교실 조성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부자료, 청소년정책연구소 '보호소년 학업지원을 위한 교육청-소년원 연계·협력 방안: 부산광역시 교육청-부산소년원 협업사례 공유' 자료집.

7) 처분 이후 자립 지원 단계

처분 이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단계에서 참고할 만한 프로그램으로는 여성가족부 관리기관인 청소년자립지원관 중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별바라기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보호소년의 자립 지원을 운영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다. 지자체와 여성가족부가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쉼터 퇴소 이후에도 가정과 학교 또는 사회복지가 불안정한 19~24세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주거지원을 기반으로 개인별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소득·생계·금융지원, 교육·진학지원, 취업 훈련 지원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소년의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한다.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후기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출발하였다. 2016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라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자를 대신하여 감호 위탁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청소년복지시설에 포함되면서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별바라기: 자활작업장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별바라기는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고객 응대를 위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경계성 지능이나 ADHD 등의 영향으로

산만하고 부주의한 경향이 있는 등 학습과 적응에 많은 시간이 필요함에도 사회에서는 이를 인내하고 배려하지 않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을 꾸려나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 주거지원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립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자립은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문제점을 경험을 통해 인지하게 된 별바라기는 별도의 주거 공간을 운영하며 자립 준비를 시킨 다음 주거연계를 통해 독립시키고 사례관리를 이어간다.

별바라기의 자활사업 중 자활작업장의 운영은 보호처분 이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단계에서 참고해 볼 수 있는 사례이다. 별바라기의 자활작업장은 취업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근로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역량을 강화시키고, 훈련비를 지급하여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초 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자격증 취득지원을 통해 취업조건을 만들어 주고 사회진입 가능성을 높여 주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근로 훈련 중인 청소년들에게 사업장에 불을 켜고 창문을 여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상세하게 포함한 단계별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따라 하며 반복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재단법인 카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별바라기는 재단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인근 성당 두 곳의 카페를 자활훈련을 위한 자활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근로작업장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복지시설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장 등록이 불가하다. 이러한 사정으로 별바라기는 종교시설에 있는 카페를 근로훈련을 위한 자활작업장으로 활용하거나 인근 카페나 편의점을 운영하는 별도의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별바라기가 제시하는 청소년 자활작업장의 의의 및 필요성은 표 V-7과 같으며, 카페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표 V-8에 정리하였다.

표 V-7.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별바라기의 자활작업장의 의의 및 필요성

내용
- 경쟁적인 고용환경으로 진입하기 위한 훈련소 - 직업능력이 낮은 자립청소년(후기청소년)에게 직업활동, 일상생활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기초 근로능력을 습득시키고, 직업평가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을 실시하여 경쟁적인 환경 및 고용 시장으로 진입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업 필요

내요

- * 출처: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별바라기 내부자료.

단계	내용
----	----

- 모집공고 및 훈련지원

- | <h2 style="margin: 0;">자기 소개서</h2> | |
|---|--|
| 1. 현행직 제호 | |
| 2. 생년월일 | |
| 3. 경력 및 단절 | |
| 4. 내력사항 | |
|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0px;"> 지문인 : 물 봉
 지문대 : (가려움) </div> | |

인간노동조합사무처장(위원장)김영환, 부위원장 김성우

단계	내용
	• 면접 및 참여자 선발 •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계약서 작성
2단계: 근로 훈련 (자활작업장 운영)	• 매장운영 실무 및 고객 응대 실습 • 주 3~4회 단계별 근로훈련 진행 • 직위 및 직급별 훈련비 차등 지급
3단계: 카페 인턴십 연계	• 실제 매장을 매칭하여 예비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실제 매장 자체 업무 매뉴얼 숙지 및 이행 • 고객 응대 및 서비스 제공 • 실제 매장 업무 등급(베이직-어시스턴트-프로-치프-바리스타)에 따른 실무훈련 배치 • 주 3회 인턴십 배치
4단계: 사회진입	• 훈련청소년 구직 및 취업 지원 • 전문 훈련기관 연계 • 학업 및 진학 지원 • 자립기관 연계 및 자립 조력
전과정	• 기술훈련 - 바리스타 관련 기본기술교육(이론·실습) - 단계별 테스트 진행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 교육지원 - 자격취득 교육비, 자격증 발급비 지원 - 관련 서적 구입, 응시료 지원 - 최종 자격증 취득 목표 • 사회성훈련 - 고객서비스, 노동인권, 구직능력 향상, 위생, 시설안전교육 실시 - 연 6회 자치회의 진행 - 반기별 청소년 만족도 조사 - 훈련평가회: 우수청소년 장학금 지급 • 활동지원 - 연 4회 문화체험 - 연 2회 특별활동 • 정서지원 - 초기 면담 및 자활 계획 수립 - 훈련 중 고충 파악 - 가족, 진로, 성, 대인관계, 정신건강, 정보제공, 직무지도, 기타상담 진행 - 종결상담 및 평가진행

* 출처: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별바라기 내부자료.

3. 요약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비행 또는 범죄로 인해 소년 및 형사사법체계로 유입된 청소년들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사례를 단계별로 살펴보았다. 현장 방문과 포럼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선별하고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청소년 범죄 관련 현장 실무자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단계별 개입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본 장의 주요 내용을 시사점과 함께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 단계에서 운영되는 선도프로그램은 범죄유형과 연령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는 등 질적 제고를 시도하고 있다. 앞서 3장의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분석 결과에서 범죄유형과 경로에 따라 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 요인이 다름을 확인한 바 있다. 경찰 선도프로그램 역시 범죄유형별로 발생원인과 소년 특성이 다름을 포착하여 근거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경찰의 초기 단계 비행 예방을 위한 개입 방향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검찰과 법원 및 처분 단계에서도 범죄유형에 따른 효과적인 개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찰에서는 개발된 범죄유형별 선도프로그램이 실제로 범죄 원인에 맞게 설계되어 효과를 거두는지 모니터링하고 연구를 통해 효과성을 검토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된 워크숍에 200여 명의 현장 실무자들이 참석하였는데 프로그램 매뉴얼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일선 현장까지 프로그램이 잘 전달되도록 교육 기회 등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본 장에서 소개한 서울지방검찰청의 멘토링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법사랑위원에게 위탁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달리 청소년희망재단이 구심점이 되어 멘토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결연캠프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밖에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2장에서 제시하였던 선도조건부, 선도위탁조건부, 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건수 정도가 대검찰청의 검찰연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전부였고, 이승현과 권해수(2018)의 연구에서 검찰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일부 특색있는 기타 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해 정리한 내용 정도가 참고할 만한 자료였다. 그 밖에는 검찰청 및 지청 단위의 기타 조건부 기소유예를 홍보하는 언론보도 정도를 찾아볼 수 있을 뿐이었다. 2장의 통계자료에서 살펴보았듯

이 검찰 단계에서 소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비중이 상당하다. 불기소처분이기는 하나 혐의가 없는 것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를 소년과 보호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경미한 비행성을 개선하여 다시 범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지검 또는 검찰국을 중심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처분 전 조사는 법원 단계에서 조사 명령을 통해 재범 예방을 위해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3장의 재판 준비 메모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른 시점부터 법원에서 종국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별다른 개입 없이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사안이 경미하여 불처분이나 보호자위탁 처분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년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교육할 수 있는 수단으로 처분 전 교육은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또한,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찰이나 검찰 단계의 다이버전과 달리 법원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처분 전 조사는 소년과 보호자의 협조적인 태도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장에서 제시한 처분 전 조사로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상담조사는 국가기관에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체계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만큼 재범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보호처분을 위탁집행하는 복지기관이나 상담 기관은 치유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를 바라보고 있다. 법원의 위탁으로 수감명령 처분을 집행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의 왜곡된 인지를 재구조화하고 필요에 따라 가족상담을 함께 진행하여 청소년뿐 아니라 이들의 주된 생활 환경인 가족의 변화를 도모한다. 1호 및 6호 처분 소년의 신병을 인수하여 감호하는 복지기관 중 본 장에서 소개한 사례들 역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부족한 의사소통 능력, 가족의 문제에 주목하고 정신과 진료를 병행한 생활지도, 공감 및 소통 능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부모 상담 제공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치유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다. 3장의 재판 준비 메모 분석과 4장의 면접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소년범들은 가정의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적절한 양육을 통해 길러져야 하는 여러 가지 사회 및 생활 기술의 부족을 경험한다. 소년범들의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복지시설 및 상담 기관의 치유적 접근과 보호력 제고 노력은 그 방향이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공통의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감호가 모든 시설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원과 정부가 관리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들이 비행 및 범죄로 인해 처분을 받더라도 학업이 중단되지 않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본 장에서 제시한 6호 처분 시설의 사례에서 학습이 소년범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성취와 그 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해당 사례는 비행으로 처분을 받기 이전에도 학업성취도가 낮고 학교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청소년들이 비행 환경과 단절되어 6호 처분 시설에 머물면서 자신의 수준과 성향에 맞는 교육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으며 학력을 취득하는 과정을 학습을 통한 치유와 성장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부산 소년원의 사례는 소년범들이 직업소년원에 수용되더라도 학적을 유지하며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년들의 사회재적응을 용이하게 하여 재범을 예방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3장의 재판 준비 메모 분석과 4장의 심층면접에서도 소년범들의 학업중단과 재범의 연관성이 상당함을 확인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재범 예방을 위해 학교가 보호체계로서 기능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된 바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 이력이 있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청소년들이 처분 종료 후 범죄의 경로에서 빠져나와 사회로 복귀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자활사업이 필요하다. 4장의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이 탈비행에 원인으로 꼽힌 바 있다. 본 장에서 제시한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자활작업장은 취업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근로 훈련과 직업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단계별 맞춤형 반복 훈련을 제공한다. 해당 사례는 가정이나 학교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생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학습과 적응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이 직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 단계를 세분화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근로 자활을 위한 작업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법적인 한계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소년범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도 직업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정원에 비해 실제 지원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자활 지원 프로그램은 소년범들의 성공적인 자활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협회의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때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 제6장 주요 결과 및 정책제언

- 1. 정책 제언 배경
- 2. 정책제언

1. 정책 제언 배경

1) 연구 추진 배경 및 과정

우리나라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명시적으로 전면에 내세운 소년 및 형사사법체계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정책과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실증연구의 수행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가 비행 및 범죄 청소년들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해 단계마다 어떠한 교육적·복지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지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청소년들의 범죄 환경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다. 수사기록이나 범죄경력은 일반의 접근이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고, 소년형사사법 절차상의 각 기관들이 소년에 대해 가지고 있는 파편적인 정보는 국가기관 간에도 연계가 어렵다. 이를 부분적으로나마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연구방법을 다각화하여 청소년들의 범죄 환경과 원인 및 경로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지방의 법원 소년부에서 5년간 이루어진 소년보호재판에 대한 준비 메모 자료를 가공하고 정제하여 범죄 경로와 위기요인 등에 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고, 다양한 처우이력을 경험한 소년들을 심층면접하여 이들의 생애과정과 범죄 경로를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여 비행 및 범죄소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고 비행 예방에 효과가 있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수집하였다. 이 모든 연구과정을 적절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이론과 실증연구, 법령과 제도, 국가통계자료들을 검토하였고, 정부 및 국가기관 등과 열 번의 협의회를 거쳤으며, 청소년 보호 및 비행 예방 관계자들을 위한 포럼과

워크숍을 3회에 걸쳐 개최하고 법원 소년보호실무연구회 워크숍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본 연구는 청소년 범죄 예방 환경 및 관련 현안, 청소년 범죄의 특성과 경로를 분석하여 청소년 범죄 경로에서 개입이 필요한 지점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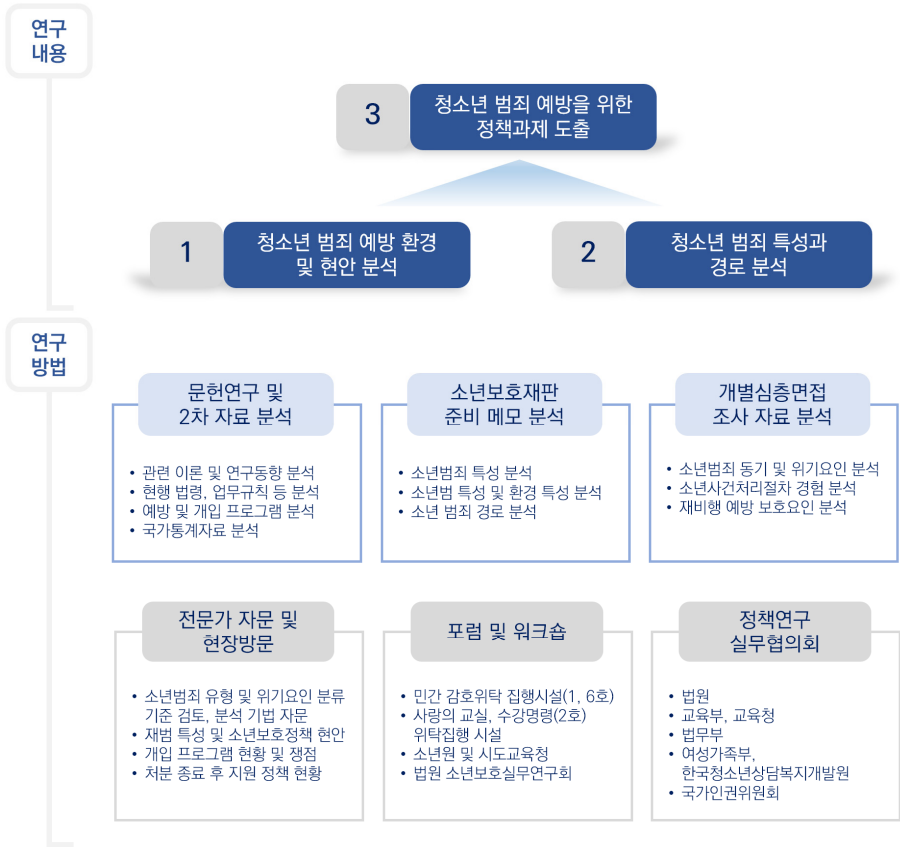


그림 VI-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 방법

2) 주요 연구 결과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주요 연구방법에 따라 장별로 나누어 보고서에 담았다. 2장에서는 청소년 범죄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청소년 범죄 및 비행 대응 관련 법령 및 제도, 국가통계에 나타난 청소년 범죄 현황 및 쟁점을 정리하여 논의의 기초를 다졌다. 3장에서는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박지수 외(2023)의 연구에서 해당 자료의 일부를 분석하였던 것에서 그 대상을 더욱 확장하여 해당 자료 내에 있는 모든 소년과 그 소년의 사건 및 재판, 위기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재비행 특성과 범죄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소년범죄의 경로를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다양한 처우이력을 경험한 소년 12명에 대해 개별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소년들의 생애사를 통해 소년범죄 동기 및 위기요인을 분석하고, 소년사건 처리 절차에서의 경험을 분석하여 재비행 예방에 중요한 보호요인이 무엇인지 주제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5장에는 비행 및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소년 및 형사사법절차마다 만나게 되는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하였다. 포럼 및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수집하고 선별한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현장 실무자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각 장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소년범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현행 제도의 한계 등의 문제점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청소년 범죄 예방 정책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표 VI-1은 주요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포함한 정책과제 발굴의 근거와 방향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 VI-1. 정책과제 도출 근거

문제점	주요 연구 결과	시사점	정책 방향
소년에 대한 가정의 보호력이 낮으며, 이에 대한 보완 및 대안이 부족함	• 문헌 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 청소년 범죄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설명하고자 시도한 많은 이론이 존재함 • 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 개인 위기로인이 있는 보호소년 83.2%, 가정 위기로인이 있는 보호소년 61.8%, 학교 위기로인이 있는 보호소년 72.8% - 재비행 소년의 가정 위기로인 평균 개수가 초비행 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음 - 가정 위기로인이 있는 집단일수록 폭력범죄의 발현과 이행이 상대적으로 명확함 - 무단결석을 초비행소년 4.3%, 재비행소년 8.2% - 재판 당시 학업중단을 초비행소년 17.5%, 재비행소년 33.2% • 개별심층면접 조사 분석 - 청소년은 부모들이 자신의 보호처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적절한 대응이나 지도 등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낌 - 대규모 아동양육시설은 소년에 대한 보호력이 발휘되기 어려운 환경임 - 부모의 방임으로 생계와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야 했던 청소년들에게서 '어른'의 부재 속에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은 (비행)또래 집단이라는 강한 신념이 발견됨 - 무단결석 등에 대한 학교의 관심 및 조치가 미흡하며 개입 효과가 부족함 • 예방/개입 프로그램 - 1호 처분 시설에서 보호자특별교육을 통한 부모 및 가족상담의 효과를 확인함 - 조건부 기소유에 자처에 대한 부모의 이해가 부족하여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 가정의 보호력 부족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소년을 위탁하는 경우 보호자특별 교육 명령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소년 및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보호자의 이해를 높여 소년이 처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 보호자의 보호력이 부재할 때 이를 보완하거나 대신해 줄 수 있는 지지체계를 마련해야 함	소년에 대한 가정의 보호력 제고 및 보완을 위한 제도 활성화
소년법들의 학업중단율이	• 문헌 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 학습에 대한 관여와 참여는 청소년에게 목표를 갖도록 하여 비행을 예방하는 효과	• 소년원 처분이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소	소년법 학습권 보장을 위한

문제점	주요 연구 결과	시사점	정책 방향
높으며,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이어짐	과가 있음 • 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 재판 당시 학업중단율이 초비행 소년은 17.5%인 반면 재비행 소년 33.2%였음 • 개별심층면접 조사 분석 - 직업훈련소년원에서 자격증 취득뿐 아니라 학과 공부도 병행하기를 원함 - 사회에 나와서 혼자서 검정고시를 보는 것은 강한 의지가 필요한 일여서 학력 취득에 어려움을 겪음 - 중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사회복귀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겪음 • 예방/개입 프로그램 - 보호소년들의 수준을 고려한 학습지도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성취감을 심어 주어 학습자세를 하나의 치유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함 - 부산소년원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협업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직업훈련소년원인 부산소년원에서 학업을 이어간 사례가 있음	년원에서 학과 교육을 제공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 보호처분 기간에 다양한 학습 성취 기회를 제공하여 소년들에게 학업중단의 좌절감 대신 성취감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학교가 아닌 보호처분 시설에서도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소년법에 대해 교육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부처 간 협력 확대
범죄유형별로 소년 특성과 원인이 다르나 처분의 개별성과 다양성은 부족함	• 문헌 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 형사사법기관 통계에서 일관적으로 재산범죄 접수 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범죄의 증가 추세가 발견됨 • 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 성범죄의 경우 타 범죄와 위기요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 • 성비행 재비행 소년은 위기요인 경험률이 무경험 소년보다 오히려 낮음 •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혼합되거나 전환되지 않고 반복되는 특성을 보임 • 개인 위기요인을 경험하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성범죄의 발현이나 이행이 두드러	• 성범죄는 가장 위기요인 보다는 개인 위기요인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일 수 있으므로 이에 맞는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재산범죄의 원인은 생계비 마련과 유혹비 마련으로 양분될 수 있으므로 원인에 따	소년범죄 원인과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개입 강화

문제점	주요 연구 결과	시사점	정책 방향
	리지는 패턴이 확인됨 - 재산범죄는 자료에 등장한 소년의 52.8%가 저질렀으며 최대 26번까지 반복됨 • 재산범죄 횟수의 증가에 따라 평균 피해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지 않음 • 피해 물품은 오토바이, 현금/카드, 전자기기, 의류, 자전거 순으로 빈도가 높음 • 개별심층면접 조사 분석 - 생계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았음 • 예방/개입 프로그램 - 학교나 또래들이 가정에서 지원받는 모습을 보며 박탈감과 자괴감을 느끼며 보상심리와 충동조절 능력의 부족이 더해져 올바른 경제관념을 형성해줄 필요가 있음	라 차별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 • 경제적 박탈감이 재산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교육하는 등 올바른 경제관념을 형성해줄 필요가 있음	
증가하는 우범소년에 대한 별도의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문헌 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 '13년 우범 107명(0.2%) → '22년 우범 960명(2.2%) • 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 소년법 관련 사건 재비행소년의 27.8%가 시설 거주경험이 있으며, 소년법 관련 사건은 우범통고에 해당함 • 개별심층면접 조사 분석 - 기출법에서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한 성매매가 이루어진 정황이 포착됨 -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처분 종료 후 시설 거부로 인해 주거지를 잃은 경우가 확인됨 - 우범통고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과 같은 처벌을 받은 것에 억울해함 - 생존을 위해 절도 등을 저지른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연계가 부재	•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이 우범사건으로 소년사법체계에 들어올 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시설장 통고 등으로 우범 송치된 소년들에게 사법처리보다 복지적 지원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문제점	주요 연구 결과	시사점	정책 방향
차분 종료나 사회 내 처우 전환 시 소년들이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적응해나갈 수 있는 훈련의 기회가 부족함	• 문헌 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 소년법에 대한 낙인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제한되고 사회적 기회로부터 배제되면서 다시 비행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 • 개별심층면접 조사 분석 - 성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보호관찰 규칙을 준수하기 힘들어하며 차라리 위반하고 시설 처분을 받는 게 낫다고 자포자기하였던 경험에 발견됨 -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차분 종료 후 시설 거부로 인해 주거지를 잃은 경우가 확인됨 - 연구참여자 중 안정적인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청소년은 1명에 불과하며, 상당수가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소한 비행으로 시작하였으나 문제아라는 주변의 시선과 낙인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도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됨 • 예방/개입 프로그램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생활 훈련과 자기돌봄 기술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초부터 단계별로 진행하는 자활작업장 및 직업훈련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둬 6호 처분 시설이 보호처분이 종료된 이후에도 생활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기술과 역량을 강화시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함	• 보호처분으로 인해 소년들의 사회적 능력이 오히려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보호력의 부재로 인해 길러지지 못했던 역량을 보호처분 기간에 함양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 제도를 내실화해야 함 • 처분 종료 후에도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중간지대가 필요함 • 재범방지과 사회복귀를 위해해서는 생활훈련을 병행한 직업훈련의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응 지원 내실화 및 근거 마련
소년형사법 절차에서 소년법에 대한 개입의 공백이	• 문헌 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 현재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음 - '22년 검찰의 소년부 송치 비율 40.5%, 범죄소년에 대한 기소유예 26.5% - 불기소 중 기소유예 비율이 최근(2022년 기준) 88.8%까지 상향됨	• 검찰 단계에서 소년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큼 • 국선보조인이나 법원 지정	소년보호 관계자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문제점	주요 연구 결과	시사점	정책 방향
• 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 사건 발생일부터 종국결정까지 평균 6.8개월이 소요됨 - 선행사건 이후 한 달 이내에 다른 사건을 저지른 소년이 41.2% • 개별심층면접 조사 분석 -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국선보호인에 대해 소년들의 부정적인 경험이 발견되었음 - 자립지원 등 보호자의 역할을 해준 보호직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형식적인 보호 관찰로 통제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었음 - 검찰단계에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기억 외에는 별다른 개인 경험 없음 • 예방/개입 프로그램 - 법원에서 지정한 보호처분 위탁집행 시설에 대해 소년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해당 보호처분의 의미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음	• 소년범죄에 대한 민간 관계자들의 이해가 고르지 않음	보호처분 위탁집행 시설 관계자들이 소년범의 특성과 소년사법체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 필요함 • 보호처분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년이 없도록 주기적이고 효과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함	마련
소년범죄에 관한 통계자료가 파편적이고 제한적이어서 실제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 문헌 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 경찰 소년사건 처리 시 KICS에 소년카드(소년환경조사서)를 등록하며, 검찰 또한 KICS에 소년범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함 - 법원 소년부에는 소년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 형사부 자료가 모두 취합됨 - 검찰의 소년부 송치율이 20년 41.4%, 21년 38.7%, 22년 40.5%로 높게 나타나며, 법원 형사부에서 소년부로 다시 사건을 송치하는 비율도 20년 40.4%, 21년 35.6%, 22년 42.9%로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경찰, 검찰, 법원의 소년범죄분류체계가 모두 상이함 • 경찰의 성범죄 분류와 검찰의 성범죄 분류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움 • 법원은 범죄유형을 경찰이나 검찰만큼 상세히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소년범의 범죄유형 발달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음	• 보호처분의 특성상 소년사건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정보 접근이 가능한 해당 부처에서 접근 가능한 내부 자료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근거기반 정책 마련을 위해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소년사건을 다루는 기관에서 소년범죄 분류 체계를 통일하여 소년범죄 현황을 효율	소년범죄예방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통계기반 마련

문제점	주요 연구 결과	시사점	정책 방향
	• 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 재판 준비 메모 자료를 통해 기존 통계자료에서 모두 강력범죄로 분류되던 성범죄의 유형 중 디지털 성범죄를 별도로 살펴볼 수 있어 범죄 동향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음 - 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을 통해 소년 및 사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년범죄의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여 개입 지점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올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함	

2. 정책제언

주요 연구 결과 통해 파악한 소년범죄 예방 정책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근거로 도출한 총 6가지 정책과제와 19개 세부과제를 표 VI-2에 제시하였다.

표 VI-2.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
1 보호소년 보호력 제고	1. 시설위탁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보호자특별교육명령 부과 2.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부모에 대한 보호자 특별교육 병행 3.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 제도를 활용한 교사 개입 촉진 4. 학생맞춤통합지원 학교사회복지사 필수 배치를 통한 학교 보호력 제고
2 보호소년 학습권 보장	1. 전국 직업소년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으로 지역에 관계없는 보호소년 학습권 보장 도모 2. 소년원 퇴원 후 학업지속 방안 다양화 3. 현직교원 소년원 파견을 위한 법령 개정
3 소년범죄 유형에 따른 개입방안 마련	1. 우범소년에 대한 복지개입 우선 근거 마련 2.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치료 및 교육적 접근 강화 3. 재산범죄 관련 소년 대상 경제 및 소비교육 강화 추진
4 사회복귀 지원을 통한 재범 방지	1. 직업교육을 위한 청소년 자활작업장 활성화 및 설치 근거 마련 2. 소년원 입사퇴원 후 사회정착지원 방안 내실화 도모 3. 소년범 낙인 방지를 위한 소년보호사건 수사경력자료 삭제 근거 마련
5 사법체계 내 소년중심 전문성 제고	1.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소년보호관계자 역량 강화 2. 소년보호 관련 종사자 교육 효과성 검증 및 내실화 3. 검찰 수사단계 및 기소유예 청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 교육 역량 강화
6 소년범죄예방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통계 기반 마련	1.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정보를 활용한 소년범죄 현황 관련 연구 추진 2. 통계청 승인통계 등록을 통한 법원 사법연감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정확성 제고 3. 소년범죄통계 정확도 제고를 위한 소년범죄분류체계 개발 및 소년형사사법기관 전부 도입

○ 제언배경

청소년 범죄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은 여러 이론과 많은 선행연구들이 규명하고자 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다양한 실증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확인되었다.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결과 재비행 집단의 가정 위기로인 경험률이 높았고, 가정 위기로인인 있는 집단일수록 폭력범죄 발현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개별심층면접에 참여한 다양한 처우이력을 경험한 청소년 대부분은 부모의 유기, 방임, 폭력 등에 노출된 가정환경에서 적절한 양육과 훈육을 받지 못하며 자라왔고, 비행에 시작하면서는 부모와의 갈등이 심해 되고 부모의 지지가 부재한 틈을 비행 친구와의 유대감이 채우면서 범죄를 지속하는 양상을 보였다. 소년보호처분은 청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행동을 교정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과 학교, 그리고 그 안에서 청소년을 지지해 주는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정의 보호력 강화를 위해 청소년을 둘러싼 의미 있는 성인으로서 부모에 대한 교육과 보호소년에 대한 교사의 개입 활성화를 통해 소년에 대한 보호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설위탁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보호자특별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 제도를 활용한 교사 개입 촉진의 과제를 제언하였다.

1-1 시설위탁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보호자특별교육명령 부과

- 관련 법령: 「소년법」 제32조의2
- 관련 부처 및 기관: 법원, 법무부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법 제71조

제2호에 의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동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소년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처분이다. 전체 보호처분 중 병합처분과 단독처분을 포함한 1호 처분 비율은 2023년 기준 약 80%에 이른다(법원행정처, 2023). 이 중 대부분은 소년의 부모에게 위탁하는 처분일 것이나 보호자가 보호력이 없을 때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형태가 시설장을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소년을 위탁하는 것이다.

1호 처분을 통한 소년의 감호를 보호자가 아닌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맡긴 경우는 소년에 대한 보호자의 보호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년이 사범형 그룹홈의 형태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보호자의 보호력 역시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광주광역시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2022년부터 보호자특별교육의 일환으로 보호소년이 입소한 지 두 달이 지나면 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호소년 퇴소 시기를 즈음하여 부모상담을 자녀를 포함한 가족상담으로 전환하여 소년이 가정으로 복귀할 준비를 돕는다. 이러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관계 회복 및 재비행 예방 효과가 확인되고 있어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보호자와 소년을 단위로 하는 가족상담·치료프로그램 등을 확산하고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로 현재 부가처분으로 내려지는 보호자특별교육명령을 시설위탁 1호 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년보호 처분에서 보호자에 대한 개입을 강화할 수 있으며, 부모상담 및 교육의 적극적 시행을 통해 가정의 보호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표 VI-3. 소년법 제32조의2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② (생 략) ③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의2(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u>소년부 판사는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할 때에는 소년의 보호자에게 제3항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u>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https://www.law.go.kr/법령/소년법>에서 2024년 10월 25일 인출. 개정안은 연구진 작성.

1-2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 부모에 대한 보호자 특별교육 병행

- 관련 법령: 「소년법」 제49조의3
- 관련 부처 및 기관: 법무부 및 검찰청

「소년법」 제49조의3에 근거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소년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 내 선도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함으로써 사회적 낙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 소년은 부모의 보호력이 조금만 강화되면 개선될 여지가 있고 비행력이 경미하므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는 등의 선도교육을 통해 개선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에 대한 대상 소년과 부모의 이해 부족 등으로 교육의 실효성이 낮다(이승현, 권해수, 2018). 본 연구를 통해 소개한 서울지방검찰청의 멘토링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 역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취지와 의미를 알지 못하는 보호자 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행연구는 보호자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나 가족캠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등 조건부 기소유예 다양화를 제안하기도 하였다(이승현, 권해수, 2018). 이와 같은 실무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에 대한 보호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소년에 대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때 보호자에게 해당 처분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보호자 특별교육의 형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표 VI-4. 소년법 제49조의3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생략)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에게 필요한 교육과 설명을 실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https://www.law.go.kr/법령/소년법>에서 2024년 10월 25일 인출. 개정안은 연구진 작성.

- 관련 법령 및 규칙: 「소년법」 제32조, 「소년심판규칙」 제33조
- 관련 기관: 법원, 교육청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의 감호를 위탁받을 사람을 위탁보호위원이라고 하며, 「소년심판규칙」 제33조 제1항은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중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각 법원에서 지역별 소년보호사건의 양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원의 위탁보호위원을 공개 모집 형태로 위촉한다. 앞서 살펴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신병인수 위탁보호 외에 신병불인수 위탁보호도 이루어지며,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은 매월 2회 보호소년을 만나고 면접 관찰하고 감호일지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하게 된다(법원행정처, 2014). 지역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SPO)이나 현직 교사들을 특별모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사의 경우 학생생활지도나 상담 업무 담당교사의 참여를 권장한다. 학생 신분의 보호소년이 사회와 단절 없이 보호처분을 받을 때에 처분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는 교사의 도움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가정법원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보호소년의 비행 예방과 선도를 목표로 협력하기 위해 부산광역시학생비행예방협의회를 창립하고 중고등학교 생활지도업무 담당교사를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재학 중인 보호소년의 교육적 선도를 도모한 바 있으며, 이는 실제 학업중단율 감소 성과로 이어졌다(부산광역시교육청, 2014. 10. 28.). 해당 사례를 참고하여 교사를 위탁보호위원으로 지정하고 소년의 처분 사실에 관한 비밀을 엄수하여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도 학교 내에서 비행 청소년이 의지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각 지역의 법원과 교육청이 연계하여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서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호소년을 위한 학교의 보호력을 제고함으로써 청소년의 선도와 재비행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4 학생맞춤통합지원 학교사회복지사 필수 배치를 통한 학교 보호력 제고

-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가칭)학생맞춤통합지원법」
- 관련 부처: 교육부 및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초비행 소년의 재판 당시 학업중단율은 17.5%였으며, 재비행 소년은 33.2%로 더 높았다. 학업 중단뿐 아니라 무단결석이나 학업에 대한 낮은 흥미 등 비행 및 범죄소년들의 학교 관련 위기요인은 상당하다. 개별심층면접 조사 분석에서도 무단결석 등에 대해 학교의 관심이나 조치가 미흡하고 개입 효과가 부족하였음이 발견되었고, 부모나 교사와 같은 어른의 부재 속에 비행 또래 집단에서 강한 소속감과 지지를 얻고 있었다. 가정의 보호력이 약한 소년에게 학교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교사 외에 학교사회복지사를 학교 내 지지체제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고 있어 지속적인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거법을 마련하고 학교사회복지사업의 목적에 따라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안전망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22대 국회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과 관련된 법안이 4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며, 지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관련 법안은 공통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담기구’의 설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구 학교사회복지사를 포함하도록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직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포함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VI-5.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 개정안(문정복 의원 등 10인)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또는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에서 2024년 10월 25일 인출(의안번호: 2125499).

○ 제언배경

학습에 대한 관여와 참여는 소년에게 목표를 갖도록 하여 비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나 상당수의 소년범이 가정과 학교의 안전망을 떠나면서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 이들은 학업중단으로 인한 기초 학력 부족으로 처분 이후에도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재비행 경로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본 연구의 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재비행 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개별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직업훈련소년원에서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교과교육도 함께 받아 졸업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따라서 소년보호처분이 소년들의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학교가 아닌 보호처분 시설에서도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년법에 대해 교육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 모든 소년원에서 학교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년원에 학력 인정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교육청)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교육부는 교육정책의 대상인 모든 학령기 아동·청소년에 보호소년 또한 포함되어 있음을 교육 관련 법과 관련 계획 및 사업 등에 명시하고 보호소년의 교육적 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년법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부처 간 협력 확대의 과제로 전국 직업소년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통한 지역에 관계 없는 학습권 보장 도모, 소년원 퇴원 후 학업지속 방안 다양화, 현직교원 소년원 파견을 위한 법령 개정을 제안하였다.

2-1

전국 직업소년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으로 지역에 관계 없는 보호소년 학습권 보장 도모

- 관련 법령 및 근거: 「초·중등교육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 관련 부처: 교육부 및 교육청, 법무부

정부는 2022년 10월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과 2023년 11월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에서 교육부, 교육청, 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보호소년 학업지원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직업훈련소년원을 대안 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 소년원 재원 중 교육기간을 원적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하고, 출원 후 원적교 복교 또는 원적교 졸업장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보호소년 학업지원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의 좋은 예이다. 2023년 7월 전국에서 최초로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승인하였고, 2024년도에도 위탁교육기관 재지정 승인하였다. 이를 통해 보호소년들은 집과 멀리 않은 직업훈련소년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면서도 소년원 내에서 교과 수업을 받으며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4년 2월 재원생 1명이 원적학교 졸업장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런데 소년원에는 소년원 소재지에 적을 두고 있는 청소년만 수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이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발전하려면 전국에 있는 모든 소년원과 교육청 간 협약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은 시도교육청의 사무이지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정책의 틀에서 중앙부처인 교육부와 법무부 차원의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안교육 과정이 있는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원적교 학적을 인정받는 제도로 시도교육청이 매년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 심의 후 지정한다. 단, 특정 분야 전국 단위 위탁교육기관¹⁶⁾의 경우 관내를 넘어 전국 교육청에서 위탁 지정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국 소년원과 시도교육청 간의 협약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도 이와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 학적관리와 학업성적 관리 등에서 세부 기준 차이가 있을 경우 최소 공통사항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이므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실무협의체가 꾸려질 필요가 있다. 2023년 11월 발표된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은 특수한 위기 상황을 고려한 돌봄, 보호, 재활, 치유 목적 전문기관을 발굴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해당 방안의 세부 추진과제의 대상에 소년원학교를 포함하도록 설정하고 이행 노력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16) 해맑음센터(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등

2-2 소년원 퇴원 후 학업지속 방안 다양화

-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관련 부처: 교육부 및 교육청, 법무부, 법원

소년원에서 원적교 학적을 유지하고 있었고 복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학업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착륙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원적교에서 다시 적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는 청소년이 원하면 원적교의 학적을 유지하면서 해당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것이 제도상으로는 가능하다. 다양한 교육철학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민간, 인가/미인가 대안학교가 있으므로 원하는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퇴원 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도움을 주는 등 보호소년의 학업지속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학교부적응 사유가 있는 보호소년에게는 교과중심보다는 치유형 프로그램 중심의 대안학교를 찾아 안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산의 국제금융고등학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서 창원지방법원에 창원분교를 설치하고 소년범들에게 정규교육과정을 제공하여 1년을 3학기로 나누어 2년 과정을 마치면 정규 고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범죄 이력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처분 종료 후에 일반 학교로 돌아가더라도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설된 이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국제금융고교나 부산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에서 8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수업은 과제물과 독서, 문화·체험·봉사활동 등으로 채워졌다. 창원분교의 입학식과 졸업식은 창원지방법원 청사에서 이루어졌으며, 졸업하면 취업이나 대학 진학 등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학교부적응의 문제도 피하면서 학교를 통해 사회에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평가받는다(동아일보, 2015. 3. 16.). 이처럼 일반 학교에 적응이 어려운 보호소년이 다양한 학업 과정과 진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대안학교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2-3 현직교원 소년원 파견을 위한 법령 개정

- 관련 법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 관련 부처: 법무부, 교육부

소년원학교에서 양질의 학과 교육을 제공하고 보호소년들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사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교육청의 상황에 따라 퇴직교원 인력풀을 활용하여 소년원에 교과목을 담당할 인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는 소년원 교과교사로 채용된 인원에 한정하여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에 의한 파견근무 형식으로 소년원에 교원 인력을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기관 간 직제 등 조직 형태와 방향 등 근무 조건에 차이가 있어 세부 운영방식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능한 일반 학교의 학사일정과 유사하게 조정해야 파견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강태경, 유진, 2023).

최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204265; 제출일 2024.9.25.)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편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29조 제2항)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다. 현재 법무부가 소년원학교의 교육을 관리하고 있으나 교원 및 교육 기자재의 만성적인 부족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소년범죄의 재범률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 말하는 교육과정 개발·편성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원에 교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추후 파견 형태의 교사 지원을 고려한다면 표 VI-6의 제30조 개정안과 같이 교사 파견과 관련한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¹⁷⁾ 또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파견 교사에게 인사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관심 있는 교사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 일례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는 교육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교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표 VI-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생략) 〈신설〉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무부장관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편성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교원 등) ④ 소년원학교장은 소년원학교의 교 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교 육청의 장에게 소년원학교 교사와 다른 중·고등학교 교사간 교환수업 등 상호 교류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교원 등) ④ 법무부장관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부장관에게 교사의 파 견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에서 2024년 10월 23일 인출(의안번호: 2204265)

* 위 표에서 제29조는 개정안은 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안이며, 제30조는 개정안은 연구진이 작성함.

○ 제언배경

실증연구 결과, 범죄유형별로 소년의 특성과 가정 및 학교에서의 위기로인 특성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으며, 사건의 반복이나 혼합 등의 양상 또한 달랐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자라온 보육원의 시설장이 통고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소년이 있었고, 가정의 위기나 학교에서의 위기 경험률이 낮아도 성범죄를 지속해서 저지르는 소년도 있었다. 또한, 치밀한 계획 없이 때로는 생계를 위해, 때로는 잘못된 소비문화를 접하면서 경제적 박탈감을 보상받기 위해 보이는 대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소년도 있었다. 청소년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 놓인 소년의 특성과 범죄유형별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특성에 맞는 개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소년범죄 유형에 따른 개입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과제로 본 연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에게 복지적 개입을 우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치료 및 교육을 강화하는 것, 재산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는 올바른 경제관념과 소비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3-1 우범소년에 대한 복지개입 우선 근거 마련

- 관련 법령: 「소년법」 제4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
- 관련 부처: 법원, 법무부, 여성가족부

우범소년은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체계상 우범소년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범소년에게 내려지는 소년보호처분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내려지는 소년보호처분과 다르지 않다. 최근 10년간 법원 자료에 따르면 우범 사건 접수는 2013년 107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무려 960명으로 그 수가 약 9배 증가하였다. 다양한 처우이력을 가진 면접대상자 중 우범통고로 재판을 받은 대상자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과 같은 처우를 받는

것에 억울해했으며, 대부분의 우범 사유는 가출이었다. 소년들은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해 가출하기도 하며, 가출팸을 이루면서 조건만남과 같은 성매매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재판 준비 메모에 나타난 우범사건의 위키요인 양상을 살펴보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보다 우범사건을 경험한 소년이 더 많은 개인 위기와 가정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범소년을 소년사법체계로 우선 편입시키기보다는 복지 서비스의 개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복지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범소년으로 통고되는 가출청소년, 성매매 피해 청소년 등 요보호성이 높으나 형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경우는 지역사회 자원 및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필요한 복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범소년에 대한 복지개입 우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복지 및 자활시설이나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가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범소년에게 복지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를 개정하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에 우범소년을 포함할 수 있다.

표 VI-7.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①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1. 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4. 사회적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② (생략)	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① 좌동 1. ~ 4. (현행과 같음) 5. 「소년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하 생략) ② (생략)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에서 2024년 10월 23일 인출. 개정안은 연구진 작성.

3-2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치료 및 교육적 접근 강화

- 관련 근거: 소년범죄 종합대책
- 관련 부처: 법무부

소년법의 성관련 범죄 검거 및 접수 추이는 경찰, 검찰, 법원 통계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디지털 매체 등을 활용한 성범죄의 증가로 일부 설명할 수 있으며, 급속한 통신매체 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이 소년의 범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재판 메모 자료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범죄 재비행 소년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소년보다 오히려 가정과 학교에서의 위기 경험률이 낮게 나타난다. 또한, 사건 이행 궤적을 살펴보면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혼합되거나 전환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특성이 발견되며, 개인 위기로인이 있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성범죄의 발현이나 이행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타 유형의 범죄 특성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성범죄에는 차별적인 개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범죄 소년에게는 가정의 보호력의 개선이나 학교에서의 개입보다 개인의 심리적 위기에 초점을 맞춘 치료와 교육이 더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2022. 10. 26.)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통해 소년교도소 수형자 대상 성폭력 사범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소년 중심 심리치료 실시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개발 진행 상황에 관해서는 확인이 어려웠으나 프로그램 개발이 되었다면 효과성을 검증하여 성범죄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대상으로도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급증을 반영하여 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물리적 성범죄와 같이 치료 및 교육적 접근을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이미 디지털 성범죄의 급증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을 연구하고 이에 기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한 바 있는데(윤정숙, 김남희, 이태현, 2021), 이와 같은 매뉴얼을 소년 성범죄자 대상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효과성을 검토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3-3 재산범죄 관련 소년 대상 경제 및 소비교육 강화 추진

-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의2
- 관련 부처 및 기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법무부

재산범죄는 소년범죄 유형 중에 계속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이다. 재판 준비 메모 자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년들의 재산범죄는 사건 횟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평균 피해 금액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피해 물품은 주로 오토바이, 현금/카드, 전자기기, 의류, 전자거 순이었다. 이를 개별심층면접 조사 결과나 예방/개입 프로그램 조사 결과와 종합해 보면 소년의 재산범죄는 치밀하게 의도하여 행해지는 범죄가 아니라 생계비나 유흥비 마련, 경제적 박탈감으로 타인의 재산에 손을 대는 충동 범죄의 성격이 강하다. 이처럼 재산범죄는 적절치 못한 소비문화나 부족한 경제관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경제 및 소비 교육이 필요하다.

실제로 법무부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업무협약을 맺고 전문교육강사를 지원받아 소년원생과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실용경제금융교육’을 실시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한 바 있다(법무부, 2014. 6. 27. 보도자료). 이와 같은 협력체계를 잘 활용하여 현재 청소년들의 변화된 소비패턴과 소년법의 특성을 파악하고 소년법들에게 필요한 경제 및 소비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생애주기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금융교육 추진 방안(금융위원회, 2022.12.22.)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교육 정책에는 아동·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년법들도 정책 대상에 적극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자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밖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획재정부가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에 근거하여 지역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도에 설치한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취약계층 대상 경제교육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9조의2에 의해 설립된 경제교육 단체협의회는 학교 밖 현장까지 포함하여 경제교육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원을 포함한 소년보호기관이 관할 지역의 지역경제교육센터나 경제교육단체협의회 등을 통해 재산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에게 경제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소년법 대상 경제교육 교재개발을 추진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 제언배경

청소년들은 처분기간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여도 소년법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와 기회로부터 배제되기도 하고 유대감이 강한 비행 또래와의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하기도 한다. 또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소년들은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규칙을 지키기가 어려워 자포자기하며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며,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란 소년들은 처분이 종료된 후 시설의 거부로 돌아갈 곳이 없어 거리로 나가 다시 범죄의 길에 들어서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실증연구 결과는 소년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응 지원 내실화 및 근거 마련을 정책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청소년 자활작업장을 마련하여 단계적 직업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것, 소년원 입시퇴원 후 보호관찰을 받을 때 소년이 해당 처분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사회정착지원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 보호사건의 처분 결정이 소년의 장래신상에 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4-1 직업교육을 위한 청소년 자활작업장 활성화 및 설치 근거 마련

- 관련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개별심층면접을 통해 만난 다양한 처우이력을 경험한 소년들은 부모의 방임으로 가정에서 돌봄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생활 능력이나 자기돌봄 기술을 충분히 익히지 않으면 자립을 위한 주거를 지원받겠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생활을 꾸려나가지 못하여 자립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나 체계적 사고방식이 훈련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근로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천주교 관련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생활하며 생활 훈련을 시키는 동시에 아주 사소한 생활 기술을 포함하여 기초부터 단계별로 진행되는 훈련 프로그램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자활작업장을 운영하여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돕는데 유용한 터전이 되는 자활작업장은 복지시설로서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종교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까닭에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의 청소년 자활작업장 사례를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다른 기관에 적용하여 활성화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3항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 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59조에서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근로작업장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참고하여 청소년복지시설 또한 청소년의 자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복지시설에 자활작업장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근로 훈련을 통해 직업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응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개정안을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표 VI-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4. (생략)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종류) ① 좌동 1. ~4. (현행과 같음) 5. <u>청소년자활작업장: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근로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역량을 강화시키고, 사회적응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u>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 에서 2024년 10월 25일 인출. 개정안은 연구진 작성.

4-2 소년원 입시퇴원 후 사회정착지원 방안 내실화 도모

- 관련 법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1조
- 관련 부처: 법무부

소년원 처분을 받은 뒤에는 「소년법」 제44조에 따라 교정성적이 양호한 자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시퇴원을 하게 된다. 입시퇴원을 하면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 처분으로 전환되어 남은 소년원 처분 기간만큼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2022년 기준 입시퇴원으로 보호관찰이 개시된 경우는 1,443건 정도 되는데, 입시퇴원 보호관찰의 재범률은 16.6%로, 단기와 장기보호관찰 재범률인 10.3%, 13.3%보다 높았다(법무부, 2023). 소년원에서 입시퇴원한 소년이 사회에 잘 적응하여 재범을 하지 않도록 보호관찰의 효과성을 높일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적으로 4호 처분과 5호 처분으로 불리는 단기 및 장기 보호관찰과 달리 소년원 입시퇴원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소년은 시설 내 처우에서 사회 내 처우로 전환되면서 수용시설 밖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소년원 입시퇴원 후 사회정착지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와 제51조의2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소년보호협회와 소년보호위원을 통한 지원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년원장은 입시퇴원 소년에게 동법 제45조의2를 근거로 소년보호협회와 소년보호위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소년보호협회는 청소년자립생활관과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이용 소년의 사회적응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이 소년의 재범방지에 효과적인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시설의 이용자 수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간과하지 않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소년보호위원을 통한 자립 지원 또한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정착지원위원의 활동이 장학금 연계를 위주로 하는 경제적 원호에 그치지 않도록 체계를 개선하고, 멘토 결연도 1회성의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멘토가 보호관찰관과 연계 및 협력 체계를 이루어 소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정착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4-3 소년법 낙인 방지를 위한 소년보호사건 수사경력자료 삭제 근거 마련

- 관련 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소년법」 제32조제6항
- 관련 부처: 법무부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분 이력은 범죄경력으로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는 여전히 남아 소년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소년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것이 이후 범죄의 상습성으로 인정된 예도 있으므로 소년법의 이념과 상충하는 지점이 되는 것이다(최병각, 2009). 최근 헌법재판소는 소년보호사건 불처분 결정 및 심리불개시 결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이나 삭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여 삭제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게 되었다(법률 제19515호, 2023. 7. 6., 일부개정). 그러나 이는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나 법원의 공소기각 및 무죄판결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었던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제한 규정이 소년보호사건을 누락하고 있어 이를 개정한 것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제한이 없다. 따라서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나타난 소년법의 이념과 합치하도록 소년보호처분 결정에 해당하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한을 두고 삭제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표 VI-9.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 4. (중략) 5.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하략)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좌동 1. ~ 4. (현행과 같음) 5.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하략)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에서 2024년 10월 25일 인출. 개정안 연구진 작성.

정책과제 5 사법체계 내 소년중심 전문성 제고

○ 제언배경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다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기도 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형사부에서 소년부로 송치하면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기도 한다. 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아무런 개입 없이 사건이 종결되기도 한다. 검찰이 처리한 소년사건 중 22년 기준 기소유예 비율이 26.5%, 소년부 송치 비율이 40.5% 인 것을 고려하면 앞서 서술한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는 소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사건이 종결처리 될 때까지 소년은 여러 기관에서 많은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지만 소년법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가 고르지 않아 적절한 자원이 연계되지 않을 때도 있고 소년에 대한 개입에 공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체계 내에서 소년중심 전문성을 제고하여 소년보호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설립 예정인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소년보호 관계자의 역량 강화, 소년보호관련 종사자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효과성 검증 및 내실화, 검찰 수사단계 및 기소유예 처분에서 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역량 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5-1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소년보호관계자 역량 강화

- 관련 법령 및 규칙: 「소년법」 제17조의2,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
- 관련 기관: 대법원

심층면접 조사 결과, 소년뿐 아니라 소년의 보호자도 법원 소년부의 역할이나 보호처분의 유형 및 집행 절차에 대해 알지 못해 당황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현행법은 이러한 상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년법」 제17조의2를 두어 소년의 조건¹⁸⁾에 따라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소년들이

18)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이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는 ① 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②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경험한 국선보조인은 무성의하고 형식적이었으며 도움을 준 것이 거의 없다고 응답하는 등 해당 경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년들이 소년사법절차에서 관계자들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국선보조인, 그리고 법원이 지정하는 보호처분 위탁집행 민간시설의 관계자들이 소년법의 특성과 소년사법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처분을 집행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선보조인이나 법원 지정 보호처분 위탁집행 담당 소년보호관계자의 역량 강화의 주체는 대법원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가 될 수 있다.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는 대법원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2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후견 및 복지적 업무 지원을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담당사무표(별표1의12)에 따르면, 소년사건 관련 세부적인 업무로는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업무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소년보호사건 관련 후견·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소년보호사건 당사자 및 절차관계인에 대한 교육, 가정법원 후견·복지적 업무 담당자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소년사법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 관련 업무 등이 있다.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가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선보조인이나 보호처분 위탁집행 민간기관 종사자(1호, 2호, 6호 등) 등 소년보호 민간관계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소년사법절차에서 수행하는 역할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법원과 소통하여 소년보호처분의 위탁집행을 위해 법원 지정한 기관들에게 소년을 적절히 지원하고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다.

5-2 소년보호 관련 종사자 교육 효과성 검증 및 내실화

- 관련 법령: 「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 등
- 관련 부처: 법무부, 법원행정처, 경찰청

비행 또는 범죄로 처분을 받은 소년이 재범을 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소년 특성을 이해하고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며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주는 보호직 공무원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사법체계 내 소년증심 전문성 제고에 필수적인 과제이다. 소년보호관찰 및 소년원, 분류심사원을 담당하는 보호직 공무원의 직무역량에 따라 소년보호의 질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보호소년 관련 교과목의 내용이 시의성 있는지, 교육이 실전에서 도움이 되는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등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 교육 또는 집체교육 운영 횟수 증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성인 보호관찰 등에서 소년보호관찰로 업무가 변경된 후에는 보호소년과 관련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소년을 직접 만나는 민간기관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또한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경찰, 검찰, 법원이 소년을 위탁하는 민간기관에 대해 직접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민간기관 종사자들은 상담이나 복지 등 각자의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나 소년사법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위탁 집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소년에 대한 개입에 공백이 발생하기도 한다. 경찰과 검찰의 다이버전, 소년보호처분 등의 의미가 무엇이며 위탁하는 소년이 법적으로 어떤 지위에 놓여있는지 등에 대해 위탁하는 경찰, 검찰, 법원이 직접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운영 방법의 측면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종사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교육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년법의 취지에 맞게 소년의 행동교정과 환경조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고 보호처분변경신청 절차 등 소년 사법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교육의 내용을 최신화하고 효과성 검증을 통해 콘텐츠의 질을 제고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3 검찰 수사단계 및 기소유에 청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 교육 역량 강화

- 관련 법령 및 규칙: 「소년법」 제49조의2, 제49조의3,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 관련 부처 및 기관: 법무부 및 검찰청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건 발생일로부터 종국결정에 이르기까지 평균 6.8개월이 소요된다. 이 기간에는 사건 발생과 인지 사이의 간격, 소년의 불출석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겠으나 검사선의주의에 따라 범죄소년의 사건이 우선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의 판단에 따라 불기소와 기소,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는 절차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소년들은 강도 높은 수사(조사)를 받았던 것 말고는 검찰단계에서 별다른 개입 경험이 없었다. 실제로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소년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교육이나 선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에서 처분 전 단계로 상담조사나 처분 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른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요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년형사사건에 대해 조기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실무상에서 검찰청에 대응하는 조사기관은 보호관찰소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해당 기관들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처분 전 조사와 상담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결정 전 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관이 범죄 예방을 위해 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제5조 제3항의 개정을 검토하고 소년보호혁신위원회의 권고와 같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요구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표 VI-10.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제5조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조(조사의 원칙 및 방법) ① ~ ② 생략 ③ 조사관은 결정 전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소년 또는 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④ 생략	제5조(조사의 원칙 및 방법) ① ~ ② 생략 ③ 조사관은 결정 전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소년 또는 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행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생략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년사건_검사의_결정_전_조사_처리_규정/ 에서 2024년 10월 23일 인출.

또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범죄예방위원을 포함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을 위탁하는 관련 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조건부 기소유예와 관련된 인력 중 법사랑위원은 법무부훈령으로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을 두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부재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가 감소하여 해당 처분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랑위원을 포함하여 각 검찰청 및 지청 단위에서 지정이 이루어지는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 운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지원을 통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소유예 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제안배경

정책 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그러나 소년범죄에 관한 통계 자료는 파편적이고 제한적이어서 실태 파악이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소년범죄예방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통계 기반 마련을 정책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는 먼저 소년보호처분의 특성상 소년사건 정보를 기관 간에 연계하는 데는 제한이 있으므로 각 기관마다 소년사건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자료를 가공하고 분석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 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을 국가승인통계로 등록하고 보호소년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확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소년범죄 통계가 기관마다 다르게 정리되지 않도록 소년범죄 분류 체계를 개발하여 형사사법 기관에 일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관별 소년범죄의 현황과 특성을 비교·대조하여 형사사법 단계별로 소년들의 비행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6-1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보를 활용한 소년범죄 현황 관련 연구 추진

- 관련 법령: 「소년업무규칙」, 「소년법」 제67조의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관련 부처 및 기관: 법무부, 경찰청

소년범죄에 관한 자료는 소년사건의 특성으로 인해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에 제한이 있다. 그러나 각 기관마다 축적하고 있는 소년사건 관련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기관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은 「소년업무규칙」에 따라 소년사건을 수사할 때 범죄의 원인, 동기, 소년의 특성 및 환경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고 소년환경조사서를 작성한다. 이처럼 경찰은 모든 소년사건에 대해 규칙에 따라 기록하기 때문에 수사 기록의 보존 연한 내에서 축적된 자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자체적으로 활용하여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소년범죄 예방 대책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은 「소년법」 제67조의2에 따라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하여 비행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해당 법에 근거하여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축적된 내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사 및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특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년마다 개별처우 계획을 수립하는데, 「보호소년 처우지침」에 따르면 개별처우 계획은 각 소년의 연령, 학력, 건강 상태, 사회복귀 목표, 보호자의 보호력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며(제13조), 교육 과정에 대한 처우 계획부터 인성, 가정기능회복, 정신건강증진 관련 등의 처우까지 소년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수립한다(제13조의2). 또한 소년의 상담 및 행동관찰에 대한 정보도 시스템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제15조), 이렇게 축적된 자료는 목표 달성도 등을 기반으로 퇴원 및 임시퇴원 신청 시 활용하고 있다(제13조의5). 법에 따라 수집되는 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활용하면 맞춤형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처우의 효과성 검증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얻어진 실증근거에 기반하여 소년의 재범 예방과 사회복귀에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보다 전문적인 자료 분석과 연구를 위해 외부에 용역을 위탁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존에 분류심사서를 기반으로 연구된 조운오(2011)의 연구처럼 개인식별 자료를 모두 삭제한 후 정보를 가공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관련 법령: 「통계법」 제15조
- 관련 부처 및 기관: 법원행정처, 통계청

대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는 1976년부터, 경찰청의 「경찰청범죄통계」는 2007년부터 통계청 승인을 받아 각각 범죄현황 분석과 범죄추세 파악을 통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사법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축인 법원의 「사법연감」은 1976년부터 발간된 사법부의 주요 기록물이지만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관리되지 않고 법원행정처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공표하고 있다.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법원의 기록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의 모든 수사 기록, 처분 기록, 조사관 조사를 통한 가정환경 등의 정보를 해당 기록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법연감」에서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정보에 대해 처분 시 연령, 행위 원인, 직업, 교육정도, 가족관계, 주거 형태 등에 대한 정보를 축약한 형태로만 발간되고 있다. 「사법연감」을 발간하는 법원행정처에는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다룬 소년보호사건의 전체 자료가 수집되므로 법원과 법원행정처의 통계 자료는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해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된다. 법원의 소년부 및 형사부의 자료를 국가승인통계로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소년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입 방안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통계법」 제15조 제1항이 지칭하고 있는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이용되는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고 있는 기관’에 해당하므로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통계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새로운 통계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요건에는 새로운 통계를 이용하려는 20명 이상의 공동 요청이 있을 것, 이미 승인받은 통계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할 것,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등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것에 해당한다. 법원에서 수집할 수 있는 소년사건 유형, 소년 행동특성 및 가정의 보호력 관련 특성, 처분 이력 등의 정보를 모아 통계 체계를 구축한다면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가장 핵심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 관련 법령: 「소년법」 제67조의2
- 관련 부처 및 기관: 경찰청, 법무부 및 검찰청, 법원행정처

소년범죄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 단계별로 처리하는 범위가 다르므로 처분 현황에 대한 통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다소 불가피할 수 있으나, 기관마다 범죄유형을 다르게 분류하는 것은 소년범죄의 추이를 살펴보는 데 큰 제한점으로 작용한다. 소년사법 절차에서 단계별 범죄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관마다 다른 소년범죄 분류 체계이다. 예를 들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는 경찰의 통계에선 성폭속범죄로 분류되어 디지털 기기나 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의 통계에선 통신매체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촬영 및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도 강력(흉악)범죄로 분류하여 강력(흉악)범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청소년들의 성범죄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도 제한이 있다. 법원의 통계에서는 범죄유형을 경찰이나 검찰만큼 상세하게 분류하지 않아 더욱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디지털 성범죄는 특히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초연결사회가 되면서 나타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범죄일 수 있고 청소년들은 디지털 세상에 성인보다 훨씬 더 익숙하다. 기존의 강력 성범죄로 직접적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강간이나 간음 등과 같은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는 발생 양상이나 특징에 차이가 있어 서로 구분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 통계 자료로는 소년 성범죄의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소년범죄의 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소년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소년범죄 분류 체계를 개발하고, 개발된 분류 체계를 경찰, 검찰, 법원이 모두 사용하도록 동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소년법」 제67조의2에 따라 소년의 범죄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하여 비행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법무부가 중심이 되어 효과적인 비행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소년범죄 분류 체계를 개발하는 연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제안한 바대로 소년범죄 분류 체계가 개발되고 개발된 분류체계를 소년사법과 관련된 기관이 모두 도입하여 일관성 있는 자료를 산출한다면 소년보호에 관한 자료 연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단행본 및 논문

- 강태경, 유진 (2023). **소년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연구총서 23-AB-09). 서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경찰청 (2023). **2022 경찰통계연보**. 서울: 경찰청.
- 경찰청, 경기대학교 (2023). **소년범 특성을 고려한 범죄유형·연령별 선도프로그램 개발 연구 프로그램 매뉴얼**. 2023년도 경찰청 연구용역 보고서(경찰청 내부자료).
- 교육부 (2022).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세종: 교육부.
- 교육부, 여성가족부 (2023).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세종: 교육부, 서울: 여성가족부.
- 국가인권위원회 (2007).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2007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 역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21).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2021년 개정판: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경숙, 남현우 (2014). 탈비행 청소년의 비행정체성에 대한 낙인이론과 정체성이론의 변인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5(2), 209-236.
- 김소희, 황의갑 (2015). 학교 내 공식처벌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자아낙인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9(3), 103-129.
- 김주영, 장현석 (2016). 부부싸움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일반긴장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0(2), 69-94.
- 김지연, 이유진, 정소연, 박선영 (2018).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연구보고 18-R0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영, 박새미, 이성진, 임수미, 최승호 (2021). **똑똑 Knock Knock: 거북이보다 느린**

- 친구들을 위한 관계나침반**. 경기: 사단법인 세상을품은아이들.
- 김지영, 서경민, 임수미, 최승호 (2022). **똑똑 no.2 Knock Knock: 거북이보다 느린 친구들을 위한 관계나침반**. 경기: 사단법인 세상을품은아이들.
- 김혁 (2016). 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 **형사정책**, 28(3), 35-72.
- 대검찰청 (2014~2023).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 문화관광위원회 (2003). **청소년복지지원법원(심재권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문화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성수.
- 민수홍, 이유미 (2015).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전후 가해경험, 자기통제력, 비행친구. **사회이론**, 48, 163-196.
- 민원홍 (2014).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중심으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5(2), 265-290.
- 박병선, 배성우 (2016). 메타경로분석을 이용한 청소년 비행의 일반긴장이론 검증. **보건사회연구**, 36(3), 270-302.
- 박지수, 이지연, 한운선, 김혁 (2023).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연구보고23-기본0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배상균, 임정재, 김성규, 김혜경, 박찬걸 (2022). **의료재활소년원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7호 처분 시설을 중심으로**(연구총서 22-AB-02). 서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법무부 (2018, 2024). **법무연감**. 경기: 법무부.
- 법무부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2023). **2023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경기: 법무부.
- 법원행정처 (2014). **법원실무제요: 소년**. 서울: 법원행정처.
- 송주영, 한영선 (2014). 한국 남자 청소년의 범죄지속 위험예측 요인분석: 데이터마ining 의사결정나무 적용. **형사정책연구**, 98, 239-260.
- 신소라, 이유나 (2016). 애착과 참여가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경찰학논총**, 11(3), 183-207.
- 신지희, 홍명기, 황의갑 (2022).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청소년 사이버범죄 가해경험 영향요인의 변화에 대한 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ternet Information**, 23(2), 87-95.
- 양윤식, 김수민, 이태현 (2019). 긴장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정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0(2), 5-31.

- 윤민영, 노성훈 (2023). 청소년 사이버범죄의 가해-피해 중첩성 영향요인. **경찰학연구**, 23(1), 141-169.
- 윤정숙, 김남희, 이태현 (2021). **디지털 성범죄자 특성연구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기초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서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래혁 (2021).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충동성을 통한 학업중단 기간의 조절된 매개효과. **보건과 복지**, 23(2), 165-190.
- 이석영, 이택호, 한운선 (2015). 청소년의 폭력비행 피해가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 우울,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50), 27-53.
- 이승현, 권수진, 박선영, 고기원 (2022). **보호소년 사회정착 지원사업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재)한국소년보호협회를 중심으로**(연구총서 21-AB-05). 서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승현, 권해수 (2018). **소년범 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내실화방안 연구**(연구총서 18-AA-05). 서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완희, 황성현 (2016).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사회학습이론과 일반긴장이론의 비교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8(4), 91-111.
- 임숙희, 김예나, 권선중 (2019). 주변인의 불법도박이 청소년의 불법도박 행동에 미치는 영향-사이버 범죄행동의 조절효과. **경찰학논총**, 14(4), 307-327.
- 임희연, 정일환, 문상호 (2023). 청소년 비행의 영향 요인 분석: 학교생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3(1), 111-134.
- 전수아, 권하늬, 한운선 (2024). 디지털 시대의 구조적 특징과 청소년 비행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6(2), 85-117.
- 정제영, 선미숙, 장선희 (2016). 중학생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2), 325-352.
- 정진성, 장응혁 (2021). 약한 자기통제력과 부정적 양육방식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형사정책연구**, 32(1), 345-378.
- 정진성, 정하보, 김정민 (2020).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사회유대이론 검증: 비행의 경중에 따른 유대 요소별 영향력 비교. **경찰학연구**, 20(4), 137-168.
- 조영오 (2019). 자기통제와 애착변인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성차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19(2), 217-244.

- 조영오 (2021). 청소년비행에 대한 일반긴장이론의 조절효과 검증. **경찰학연구**, 21(2), 137-162.
- 조윤오 (2011). 소년분류심사서 시설내처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폭력청소년의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2(4), 33-62.
- 조제성, 조윤오 (2019). 물질사용 경험 청소년의 범죄행동에 관한 연구-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1), 223-246.
- 주용휘 (2021).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자녀 주관적 행복감의 매개효과. **한국범죄학**, 15(3), 149-162.
- 최병각 (2009). 소년보호처분의 전과와 형가중. **형사정책연구**, 20(1), 973-996.
- 최재용, 한보영, 이운호 (2014). 청소년 지위비행 원인의 성별비교: 일반범죄이론들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8(1), 35-65.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부자료. **청소년정책워크숍 ‘보호소년 학업지원을 위한 교육청-소년원 연계·협력 방안: 부산광역시교육청-부산소년원 협업사례 공유’ 자료집**.
- 홍명기, 홍성주, 이민식 (2019).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통제와 기회: 개인적·환경적 기회요인의 통합. **형사정책연구**, 30(4), 203-240.
- 황성현 (2016). 청소년비행에서 비행친구가 선행하는가, 비행이 선행하는가?: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사회과학연구**, 23(2), 53-70.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8.
- Akers, R. (1973).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Belmont, CA: Wadsworth.
- Akers, R. (1998). *Social learning and social structure: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deviance*.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Becker, H. S. (1963). *Outsider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London: Free Press Glencoe.
- Bernburg, J. G. (2019). Labeling theory. In M. D. Krohn, N. Hendrix, H. G. Penly, & A. J. Lizotte (Eds.), *Handbook on crime and deviance*, (pp. 179-196).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AG.
- Bernburg, J. G., Krohn, M. D., & Rivera, C. (2006). Official labeling, criminal

- embeddedness, and subsequent delinquency: A longitudinal test of labeling theor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3, 67-88.
- Brauer, J. R., & De Coster, S. (2015). Social relationships and delinquency: Revisiting parent and peer influence during adolescence. *Youth & Society*, 47(3), 374-394.
- Burgess, R. L., & Akers, R. L. (1966). A differential association-reinforcement theory of criminal behavior. *Social Problems*, 14(2), 128-147.
- Cohen, L. E., &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4), 588-608.
- Craig, J. M. (2016). Which bond matters more? Assessing the differential strengths of parental bonding measures on adolescent delinquency over time.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14(3), 225-242.
- Eitle, D., & Eitle, T. M. (2016). General strain theory and delinquency: Extending a popular explanation to American Indian youth. *Youth & Society*, 48(4), 470-495.
- Evans, S. Z., Simons, L. G., & Simons, R. L. (2016). Factors that influence trajectories of delinquency throughout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5, 156-171.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rris-McKoy, D. (2016). Adolescent delinquency: Is too much or too little parental control a problem?.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5, 2079-2088.
- Helske, S., & Helske, J. (2019). Mixture Hidden Markov Models for Sequence Data: The seqHMM Package in R.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88(3), 1-32.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eben, E. M., & Weerman, F. M. (2016). Why is involvement in unstructured socializing related to adolescent delinquency?. *Criminology*, 54(2), 242-281.
- Huijsmans, T., Nivette, A. E., Eisner, M., & Ribeaud, D. (2021). Social influences,

- peer delinquency, and low self-control: An examination of time-varying and reciprocal effects on delinquency over adolescence.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18(2), 192-212.
- Hwang, S. H., & Akers, R. L. (2003). Substance use by Korean adolescents: A Cross-Cultural test of social learning, social bonding, and self-control theories, pp. 39-64 in Ronald L. Akers and Gary F. Jensen (eds.), *Social learning theory and the explanation of crime: A guide for the new century*. NY: Routledge.
- Janssen, H. J., Eichelsheim, V. I., Deković, M., & Bruinsma, G. J. (2016). How is parenting related to adolescent delinquency? A between-and within-person analysis of the mediating role of self-control, delinquent attitudes, peer delinquency, and time spent in criminogenic settings.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13(2), 169-194.
- Laub, J. H., & Sampson, R. J. (1993). Turning points in the life course: Why change matters to the study of crime. *Criminology*, 31(3), 301-325.
- Matsueda, R. L. (1992). Reflected appraisals, parental labeling, and delinquency: Specifying a symbolic interactionist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6), 1577-1611.
- Merton, R. K. (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 672-682.
- Moon, B., & Morash, M. (2017). Gender and general strain theory: A comparison of strains,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explaining three types of delinquency. *Youth & Society*, 49(4), 484-504.
- Osgood, D. W., Wilson, J. K., O'malley, P. M., Bachman, J. G., & Johnston, L. D. (1996). Routine activities and individual deviant behavi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4) 635-655.
- Peterson, B. E., Lee, D., Henninger, A. M., & Cubellis, M. A. (2016). Social bonds, juvenile delinquency, and Korean adolescents: Intra-and inter-individual implications of Hirschi's social bonds theory using panel data. *Crime & Delinquency*, 62(10), 1337-1363.

Sampson, R. J., & Laub, J. H. (1997). A life course theory of cumulative disadvantage and the stability of delinquency. In T. P. Thornberry (Ed.),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pp. 133-161). Transaction Publishers.

Sutherland, E. H. (1939). *Principles of Criminology*. NY: Lippincott.

인터넷 자료

Brian Impact. 2022 세상을품은아이들 임팩트 리포트. <https://brianimpact.org/organizer/555>에서 2024년 10월 9일 인출.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Code=1115&estnColumn2=%EB%85%84%EB%8F%84에서 2024년 10월 10일 인출.

경향신문 (2023.5.12.). ‘촉법소년’ 혐오에 기생하는 사이다 서사는 어떻게 웹툰의 대세가 되었나. <https://www.khan.co.kr/culture/culture-general/article/202305121621015>에서 2024년 8월 20일 인출.

금융위원회 (2022.12.22.). [보도자료] 금융소비자의 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 증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 - ‘22년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23년 금융교육 추진방향 발표 -. <https://www.fsc.go.kr/no010101/79151?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에서 2024년 10월 25일 인출.

대한민국 법원. 사법통계 법원통계월보 소년보호(2014~2022). https://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CodeAction.work?gubun_code=G01에서 2024년 10월 11일 인출.

동아일보 (2015. 3. 16.). 법원에서 열리는 ‘특별한 입학식’.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50315/70138469/1>에서 2024년 10월 23일 인출.

매일경제 (2024. 2. 11.). “난 강간해도, 살인해도 감옥 안가”...‘촉법소년’ 6만명, 해결책 없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0940519>에서 2024년 8월 20일 인출.

법무부 (2022. 10. 26.).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https://www.moj.go.kr/bbs/moj/182/564175/artclView.do>에서 2024년 8월 20일 인출.

법무부 (2014. 6. 27.). 금융·경제 교육으로 소년원생의 경제적 자립 돕는다-법무부와 금융감독원, 소년원학생의 사회정착 지원 업무협약 체결-.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MjIyOTYyJTJGYXJ0Y2xWaWV3LmRvJTNG>에서 2024년 10월 24일 인출.

법원행정처. 사법통계. 2013년~2022년 사법연감(통계). <https://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ListAction.work?gubun=10>에서 2024년 10월 10일 인출.

부산광역시교육청 (2014. 10. 28.). 부산광역시학생비행예방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http://www.pen.go.kr/main/na/ntt/selectNttInfo.do?mi=30397&bbsId=2286&nttSn=616263>에서 2024년 10월 23일 인출.

유스폴넷. 경찰단계 청소년 선도 제도. <https://theyouthacademy.police.go.kr/main/Content.do?cid=policy13>에서 2024년 5월 21일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211921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T2U2N1Z2O2P8T1T7O0J5O1H7D6O6M0&ageFrom=21&ageTo=21에서 5월 21일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212549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G3P0N9N2M1M1L5H4H2G4G6F1F6E7에서 2024년 10월 25일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220426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4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X4Y0W8X0F2F1D3C0D5B1B3X8Y4W0에서 10월 23일 인출.

한국소년보호협회. 청소년 자립 생활관. <https://www.kjpa-e.or.kr/53>에서 2024년 10월 14일에 인출.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https://www.yescenter2014.co.kr>에서 2024년 10월 14일 인출.

법령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99호, 2021. 7. 20.). <https://www.law.go.kr/법령/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서> 2024년 5월 21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https://www.law.go.kr/법령/소년법/에서> 2024년 10월 25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법무부훈령 제1393호, 2022. 1. 1.).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에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년사건_검사의_결정_전_조사_처리_규정/에서) 2024년 10월 23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심판규칙(대법원규칙 제2696호, 2016. 11. 29.). <https://www.law.go.kr/법령/소년심판규칙/에서> 2024년 5월 21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업무규칙(경찰청예규 제579호, 2020. 12. 31.).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년업무규칙/\(579,20201231\)에서](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년업무규칙/(579,20201231)에서) 2024년 5월 21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법률 제20218호, 2024. 2. 6.). <https://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에서> 2024년 5월 21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기본법(법률 제20420호, 2024. 3. 26.).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 기본법/에서](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_기본법/에서) 2024년 5월 21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17호, 2024. 4. 16.).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서](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_지원법_시행령/에서) 2024년 10월 23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법률 제19761호, 2023. 10. 24.).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_지원법/에서) 2024년 5월 21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법(법률 제20408호, 2024. 3. 26.). <https://www.law.go.kr/법령/통계법/에서> 2024년 5월 21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https://www.law.go.kr/법령/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https://www.law.go.kr/법령/특정강력범죄의_처벌에_관한_특례법/에서) 2024년 5월 21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법률 제20265호, 2024. 2. 13.).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에서> 2024년 5월 21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15호, 2023. 7. 6.). [https://www.law.go.kr/법령/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https://www.law.go.kr/법령/형의_실효_등에_관한_법률/에서)

www.law.go.kr/법령/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2024년 10월 25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https://www.law.go.kr/법령/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2024년 5월 21일 인출.

법무부. 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법무부훈령 제1358호, 2021. 5. 21.). <https://www.corrections.go.kr/bbs/moj/154/548007/artclView.do>에서 2024년 8월 80일 인출.

법무부.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법무부훈령 제1182호, 2018. 12. 17.). <https://www.corrections.go.kr/bbs/moj/154/423104/artclView.do>에서 2024년 8월 20일 인출.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운영지침(법무부훈령 제1469호, 2023. 4. 24.). <https://www.corrections.go.kr/bbs/moj/154/569957/artclView.do>에서 2024년 8월 20일 인출.

법무부. 비행예방교육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1369호, 2021. 8. 10.). <https://www.corrections.go.kr/bbs/moj/154/550718/artclView.do>에서 2024년 8월 20일 인출.

법무부. 소년선도보호지침(법무부훈령 제1066호, 2016. 5. 27.). <https://www.corrections.go.kr/bbs/moj/154/238553/artclView.do>에서 2024년 8월 20일 인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법무부훈령 제1523호, 2024. 4. 8.). <https://www.moj.go.kr/bbs/moj/154/581986/artclView.do>에서 2024년 8월 20일 인출.

국문초록

이 연구는 청소년 범죄의 특성과 환경 및 경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가 청소년들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해 단계마다 어떠한 교육적·복지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지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실효성 있는 청소년 범죄 예방 정책을 마련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문헌 검토와 국가통계자료 및 소년보호재판 준비 메모 자료 통계 분석, 다양한 처우를 경험한 소년 대상 심층 개별면접 조사, 프로그램 수집 및 워크숍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발견한 주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최종결과로 6개 정책과제와 19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의 위기요인을 경험하고 있는 비행 및 범죄 청소년에게 다양한 지지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가정의 보호력 제고 및 보완을 위한 제도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처분 등으로 학업 기회가 단절되지 않도록 소년범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부처 간 협력 확대를 제안하였다. 셋째, 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이나 보호관찰 등의 사회적응 지원을 내실화하고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소년범죄의 유형별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여 효과성 있는 맞춤형 개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수사 및 사법기관, 처분기관에서 소년에게 적시에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종사자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년범죄예방 정책을 실증 근거에 입각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통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How do adolescents become involved in criminal behavior
: Trajectories of juvenile delinquency and prevention measur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environment, and pathways of juvenile delinquency. Additionally, it seek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rough various research methods, how South Korea's policies and systems are attempting to utilize educational and welfare-based approaches at each stage to modify the environment and correct the behavior of adolescents. Based on the above,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policy tasks that can disrupt the cycle of juvenile delinquency and provide foundational data necessary for establishing effective prevention policies. To achieve this objective,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study was conducted utilizing methodologies such as literature reviews, analysis of national statistical data and preparatory notes for juvenile protection trials,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with juveniles who have undergone various forms of treatment, collection of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olicies and programs, and workshops. The study identified problems and derive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key findings obtained from these diverse research methodologies.

At the conclusion of the study, six key policy tasks and 19 detailed tasks were identified. The key policy tasks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recommends implementing systems to enhance and supplement family protective capacity, enabling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support systems for juvenile delinquents and offenders facing multiple risk factors at home, school, and in the community. Second, the study suggests expanding inter-ministry cooperation to ensure the right to education for juvenile offenders, thus preventing interruptions in their educational opportunities due to legal dispositions. Third, the study suggests consolidating the internal structure of social adaptation support, including self-reliance support and probation, and establishing relevant frameworks to facilitate the reintegration of these juveniles into society without recidivism following the conclusion of their disposition or during their transition to community-based treatment. Fourth,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dentifying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juvenile delinquency by type and designing effective, tailored interventions for each type. Fifth, the study recommends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to enhance the competencies of juvenile protection personnel ensuring timely and appropriate interventions for juveniles by investigation, judicial, and disposition agencies. Lastly, the study calls for the systematic development of a statistical base to effectively implement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policies grounded in empirical evidence.

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4-기본01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강화방안 연구 / 김지경·송현주·김일우·김윤희
연구보고24-기본02	청소년의 생형 AI 이용실태 및 리터러시 증진방안 연구 / 이창호·모상현·배상률·이세영
연구보고24-기본03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Erasmus+ 모형 구축방안 연구 / 이윤주·김형주·오해섭·박대승
연구보고24-기본04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이수정
연구보고24-기본05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 / 황세영·김정숙·최정원·이은주·손윤희
연구보고24-기본06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 이지연·김영지·박지수·한윤선·박선영
연구보고24-기본07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강경균·최홍일·허창수
연구보고24-일반01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 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설희·유성렬
연구보고24-일반01-01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설희
연구보고24-일반05	2024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김기현·최인재·한지형
연구보고24-일반05-01	2024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기현·오병돈
연구보고24-일반06	202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신동훈·김희진·이정민·이용해·장윤선
연구보고24-일반06-01	202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신동훈·김희진·이정민·이용해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4-01 청년종합연구Ⅲ: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2)	/ 김승경·김지연·백혜정·전현정·김성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4-02	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2-01)	김승경·김지연·백혜정·전현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5-01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3)	/ 최용환·김영한·권오영·박윤수·오문준·이경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6-01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4)	연구 I : 사이버도박 / 임지연·황진구·성윤숙·조제성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4-수시0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개선방안 / 김정숙·조남익
연구보고24-수시02	일경험으로서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 연구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을 중심으로 / 이윤주·황세영·하형석·서교운·최홍일·이용해
연구보고24-수시03	청소년기 인문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 강경균·최홍일
연구보고24-수시0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성윤숙

연구개발직립금 과제

연구보고24-연적금01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 :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 김희진·김경준·박지수·조혜영
연구보고24-연적금01-01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 :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 기초분석보고서 / 김희진·박지수
연구보고24-연적금02	미래지향 정책연구 수행사업 / 김대웅·이진아·이유정·김정숙·권오영·변주영·조은혜·이윤주

수 탁 과 제

< 일 반 >

연구보고24-수탁01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장근영·김기현·문호영·이용해·최홍일·구본호·이자경·서지형
-------------	--

연구보고24-수탁02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의식과 세대지향적 저출생 정책지원망 구축 연구 / 김형주·정세정·박미선·김동훈·김지민
연구보고24-수탁03	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 대안교육기관 현황조사 / 최인재·오해섭·권오영·유설희·김소연·박진수·윤철경
연구보고24-수탁03-01	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 교원, 학생 및 학부모 실태조사 / 최인재·유설희·김소연·윤철경
연구보고24-수탁03-02	2024 대안교육기관 운영 사례집 / 최인재·오해섭·권오영·유설희·김소연·박진수
연구보고24-수탁04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이지연·하형석·박지수
연구보고24-수탁05	2024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서고운·김영지·김지연·이정민·최홍일
연구보고24-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플랫폼 운영지원 및 성과평가 / 임지연
연구보고24-수탁07	청소년 진로 및 디지털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연구보고24-수탁08	2024년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동성·박윤수·장혜윤·임채홍·임지영
연구보고24-수탁09	2024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창호·임지영
연구보고24-수탁10	2024년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이행점검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최용환·박윤수·장혜윤·김보경·임지영·이경아
연구보고24-수탁11	2024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이경아
연구보고24-수탁12	202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황진구·김영지·모상현·이용해·김경준
연구보고24-수탁13	광역지역단위 청소년활동 진흥 및 협력강화 방안 연구 / 황세영·유민상·남화성
연구보고24-수탁1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기초연구 / 조연수·하형석·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5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5-01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6	보호관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분석 및 지도감독 방안 / 박지수·이지연
연구보고24-수탁17	2024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화·김일우
연구보고24-수탁18	학교안팎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연구 / 유민상·이경상·황세영·최인재·최홍일
연구보고24-수탁19	취약청년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1인가구 청년 및 경계선 지능 청년을 중심으로 / 유민상·김기현·신동훈·변민수·박미선·한지형
연구보고24-수탁20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장여옥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4-학폭01	2024 학부모용 소식지 모음집 / 모상현·박재욱·전원지
연구보고24-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김승혜·최희영·차민희·송채원
연구보고24-학폭03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전원지·문은솔
연구보고24-학폭04	2023년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 모상현·박선영·김예지
연구보고24-학폭05	2024년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박선영
연구보고24-학폭06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 모상현·최지윤
연구보고24-학폭07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1~2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연구보고24-학폭08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1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연구보고24-학폭09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1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연구보고24-학폭10	2024 학교폭력예방 컨설팅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문은솔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연구보고24-대안01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 황세영
연구보고24-대안02	청소년부모·한부모 지원매뉴얼 / 황세영·이진아·김시경·김미혜
연구보고24-대안03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실태조사 구축방안 / 김영지·임지연·유성렬·김강호·이종숙·정유경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연구보고24-위센터01	2024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김지연·김영지·백혜정·김승경·이정민·전현정·최홍일·양하나·김주영·문세진· 나예인·이유진
--------------	---

자 료 집

〈 세 미 나 〉

세미나24-01	청소년의 생성형 AI 리터러시 증진방안 세미나 (24.5.24.)
----------	--------------------------------------

〈 위 크 슝 〉

- 워크숍24-01 소년사건의 이해: 경찰 사랑의 교실, 법원 수강명령 이해하기 (24.8.29.)
워크숍24-02 2024 꿈지락 운영 워크숍 (24.8.7.)

〈 포 럼 〉

- 포럼24-01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 방안 (24.3.18.)
포럼24-02 청소년-가족 시설간 정책 연계 협업 관련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포럼 (24.4.29.)
포럼24-03 다문화청소년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지원 정책의 현안과 발전방안 (24.7.18.)
포럼24-04 제1회 청소년 형사 법무 국제심포지엄 청소년 약물 남용과 도박문제 (24.8.19.)
포럼24-05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 (24.12.10.)

〈 콜 로 키 움 〉

- 콜로키움24-01 가명정보 활용절차의 이해 - 청년종합연구 II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24.4.24.)

〈 기 타 자 료 집 〉

- 자료24-01 2024년 저경력 전문상담교사 연수
자료24-02 위(Wee) 센터 실장 역량강화 연수 자료집
자료24-03 가정형 위(Wee)센터 컨설팅
자료24-04 제1회 청소년 형사 법무 국제심포지엄 청소년 약물 남용과 도박문제
자료24-05 지역사회 환경교육 협력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안내서
자료24-06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1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4-07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2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4-08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3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4-09 위(Wee) 이슈브리프
자료24-10 (초등학교) 위기사안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
자료24-11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자료24-12 가정형 위(Wee)센터 매뉴얼
자료24-13 제13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자료24-14 위(Wee) 뉴스레터

자료24-15	제1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4-16	2024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자료24-17	제11회 학업중단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자료24-18	2024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자료24-19	2024 꿈지락 운영 워크숍 2차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1호(통권 제11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2호(통권 제11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3호(통권 제11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4호(통권 제115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51호 어울림 프로그램 현안 진단을 위한 탐색적 연구
- 152호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 153호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 가족실태와 지원방안

〈 NYPI Bluenote 통계 〉

- 77호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실태조사
- 78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참여
- 79호 소년보호재판 준비메모(2013~2018) 데이터 구축 및 주요 결과
- 80호 청소년활동 실태
- 81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 82호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 83호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 84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6차년도 패널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연구보고24-기본06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인 쇄 2024년 12월 31일

발 행 2024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다원기획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425-8 93330

연구보고24-기본06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
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9 791156 544258

93330

ISBN 979-11-5654-425-8